

#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OCTOBER 1982, No. 163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施設作品

1982.10

# 세계에 자랑할 原色大百科

## 東亞原色世界大百科事典

全國特約店에서 絶讚裡(1·2卷) 配本中  
菊倍判 各卷 640面, '83年 12月 完刊

全 **30** 卷

○겨레의 자랑, 나라의 자랑! 出版史上 初有의 壯舉

이제 우리의 印刷水準·出版水準도 世界先進隊列에 들어섰음을  
証明해 주는 우리 4,000萬 온 겨레의 宿願事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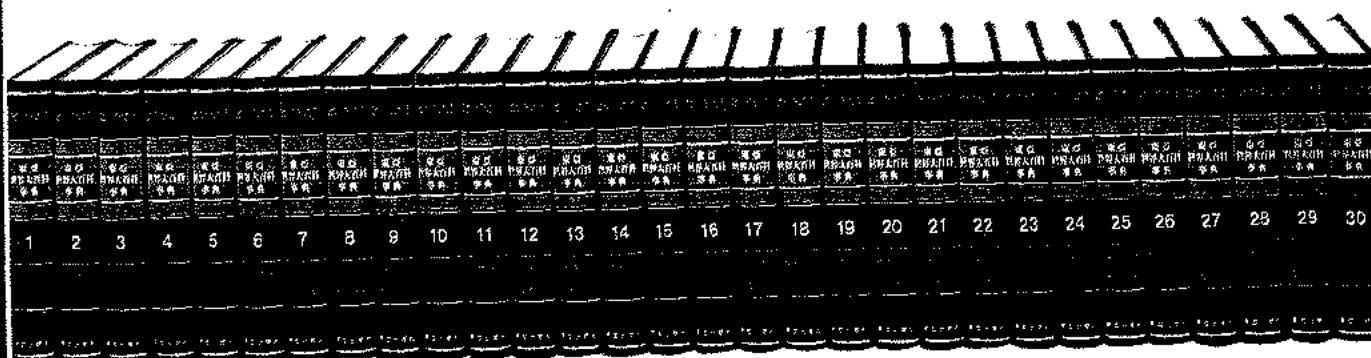
○19萬 餘項目收錄, 世界頂上級類書를 凌駕!

斯界碩學·專門學者 3,000餘名 動員, 總19萬餘 項目을 50餘萬장의  
新稿로 壓縮한 人類文化의 一大파노라마!

○完刊時까지 100億원이 投入될 大企劃!

國家的 次元의 大事業을 代行한다는 文化的 使命感으로 1,800名  
從業員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金字塔.

原色大百科가 당신의 書架에 꽃힐 때, 그것은 곧  
文化人의 얼굴이요, 品位요, 資格입니다.



◆ 歷史的 發刊 自祝紀念으로 先着順 30,000名에 限하여 다음과 같이 特別奉仕價로 드립니다.

### 豫約 및 割賦販賣

- ① 卷當 20,000원(生産原價에 가까운 廉價)
- ② 每回 30,000원씩 20回 分割收金
- ③ 代金收金 시작은 第3卷 配本時부터
- ④ 完刊時까지 紙質·價格 變動없음.

自祝紀念奉仕期間이 지난  
後에는 全帙 750,000원  
(卷當 25,000원: 每月  
50,000원씩 分割拂入.)

 株式會社 東亞出版社

구로구 독산1동 295-15  
TEL. { 856-9383~8  
853-0941



# 月刊 建築士

October 1982. No. 163

U. D. C. 69/72(054-2) : 0612(519)

發行所: 大韓建築士協會 / 서울特別市 鍾路區 瑞齡洞89 / 郵便番号: 110  
光化門郵遞局 刊行函 第795番 / 電話 723-9491 ~ 2, 723-4287, 724-1045  
發行人 兼 編輯人: 具 珣 會 / 登錄番号: 第라-125 / 登錄: 1967.3.23  
發行: 1982.10.15 / 非売品 / 印刷人: 金 允 坤 (福祿文化社 / 265-7323)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 目次

1982.10

論 壇 協會發展을 위한 提言 具珣會 2

프 리 즈 獨立紀念館 建立을 앞두고 宋旼求 8

“우리 文化創造의 指標가 되도록 해야” 金慶洙 10

“紀念館建築의 美學的 問題” 金光文 14

✓病院建築의 近代化와 우리들의 課題 李特求 17

✓病院建築에 대한 小考 會員建築設計作品 / 病院施設 29

✓●의료법인 성남병원 (도화건축설계사무소) 金英瓊 30

✓●의료법인 제천 중앙병원 (명성건축) 成河哲 32

✓●순천향 천안병원 (권익건축설계사무소) 李元澤 34

✓●동래 광혜병원 (서강건축설계사) 金伸宰 36

✓●가야병원 (대륜건축설계사무소) 李珍煥 3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영동병원 (현신건축기술공사) 金希洙 · 李彰斗 40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Ⅱ): 連載 43

建築搬送設備工事標準示方 (설비연구분과위원회제공) 宋 煥 56

✓建築物의 開口部에 對한 氣密性能基準制定의 試驗分析 丁鍾汶 63

✓構內通信線路設備에 關한 解說(完) 金文洙 72

인테리어 디자인의 實際(Ⅰ): 連載 朴 弘 24

環境Designer 養成의 必要性 姜健熙 23

現 場 “눈길끄는 各社의 獨立館들” / 82 SITRA 54

青 寫 眞 “푸른 漢江”을 만든다 / 漢江綜合開發事業을 실현다 28

海外作品 호주의 최신건축 68

□ 협회소식 3

□ 건축계뉴스 48

□ 질의응답 52

□ 법개정내용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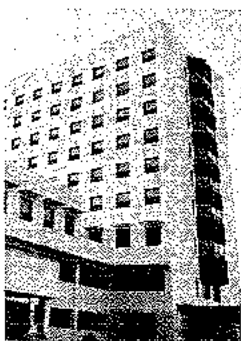
□ 건축자재해설 79

□ 회원동정 98

|                 |            |
|-----------------|------------|
| 분류번호            | 建 築 士 誌    |
| 도서번호            | 통권 제 163 호 |
| 구입년월일           | 19 . . .   |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

### 編輯委員會

|     |     |
|-----|-----|
| 委員長 | 朴商浩 |
| 委 員 | 李明浩 |
| “   | 姜健熙 |
| “   | 朴勇煥 |
| “   | 李榮一 |
| “   | 金漢根 |
| “   | 金基哲 |
| “   | 姜哲求 |
| “   | 趙東榮 |



표지설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영동병원  
설계: 金希洙 · 李彰斗  
촬영: 문순화

# 協會發展을 위한 提言

具 琬 會 —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 □ 創立 18年……새 면모 갖추어

協會가 創立된지도 오는 10월 23일로 서 18周年이 됩니다.

돌이켜 보면 1965년 이날 創立總會에서 初代 故 金錫河會長을 비롯한 불과 1백 28명의 會員과 11개 支部로 出帆한 協會가 오늘에는 13個 支部에 2千余名の 會員을 포용한; 크게 成長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量的인 增大뿐만 아니라 機能면에서 있어서도 草創期와는 比較할 수 없을 정도로 向上되었으며, 따라서 우리 協會의 社會의 地位도 예전과는 그 比價를 달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發展的으로 變化는 가져왔으나 이에 비례해서 會員의 權益이나 地位가 아울러 바람직스러울 程度로 向上되었는가 하는 實利的인 側面을 생각하면 기대만큼 伸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은 아직도 우리 社會가 建築士의 專門職業性에 대한 인식이 不足하다는 社會性에도 한 原因이 있겠으나, 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努力의 부족과 不實性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過去를 더듬어 現在를 파악하고 나아가 未來를 밝히고자 할 때 항상 저어스러워 지는 점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이며 이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것에서 더욱 아쉬움을 느낍니다.

會員業務와 관련된 고질적인 부조리로 인한 사회적 지탄뿐만 아니라 協會에 대한 非協調와 불필요한 敬遠 등이 결국 우리 스스로의 權益과 地位를 실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本人은 지난 2년간 會長으로서 在職하면서 가장 比重을 두고 처리한 문제도 會員의 權益과 地位向上을 위한 提言은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方法의 하나로 보다 強力한 求心體로서의 協會像 具現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協會를 보는 對外 이미지를 提高하고 아울러 協會機能을 活性化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事務處의 行政體系를 確立해서 本연의 업무를 遂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協會機能의 正常軌道進入이 가능했고 그 역할을 어느정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時點에서 協會는 現實에 머물지 않고 보다 能動的인 자세로 지속적인 발전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의 進路設定이 무엇보다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2천여 회원의 權益伸張과 地位向上의 責任을 確信합니다.

이런 觀點에서 協會는 長·短期의 方向을 設定하고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만 우리가 追求하는 理想이 實現되리라 믿습니다.

## □ 長·短期 進路設定 꼭 必要

長期的 方向設定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近年에 들어 여러 分野의 질서가 官主導型에서 벗어나 차츰 民主主導型으로 轉換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건축분야, 특히 建築士界의 제반 사항도 당사자인 우리의 힘에 의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세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建築文化를 이끌어 나간다는 使命感을 가지고 권위와 權威를 지쳐 우리 스스로가 官의 依存에서 벗어나 建築士界를 主導해 나갈만한 힘을 하루속히 培養해야 만이 진정한 의미의 건축문화가 꽃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 일련의 건축적 관심사인 올림픽 개최에 따른 施設문제라든가 獨立紀念館 건립문제, 또는 漢江綜合開發計劃 등에 있어서 基本政策 外에 專門建築人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分野는 協會가 中心이 되어 綜合的인 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提示할 수 있는 體制가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힘의 集約이 要求되며 會員 각자의 國家에 대한 忠誠心과 투철한 國家觀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모든 關係法規의 改正 혹은 制定에는 建築士의 自律의 참여로 建築文化發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建築士의 生業과 關係되거나 또는 건축계의 將來를 가름하는 諸法規의 改正 또는 制定에 있어 關係전문인이나 利害關係人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國家 百年大計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長期的인 方向이 設定되고, 나아가 성취되도록 協會를 求心點으로 힘을 모아 推進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先行條件으로 短期的인 方向設定과 이의 解決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 發展責任 우리 自体에 있어

즉 現實에 맞는 協會體制의 變化모색이라든가 忠誠·지도층 회원의 協力참여 적극화, 회원간의 친목강화, 대외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協회의 기반을 공고히 다진 연후에야 만이 長期的인 목표가 쉽게 이루어 진다고 믿

습니다.

사실 現在의 協會體制로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각종 不條理 提議이나 질서확립이 어려운 實情입니다. 한 예로서 8백 50여명의 회원을 포용하고 있는 서울지부의 경우 현재의 협회체제 안에서는 일사불란한 支部運營은 요원하며 聯合會制度를 통한 有機的機能 부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견 및 지도층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양심적인 다수의 회원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不實會員 提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는 當面과제로서 生業과 直結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훌륭한 작품을 위한 일의 競合이 아닌, 모략과 중상비방이 만연하는 풍토를 일소하기 위해서도 회원간의 친목강화는 중요한 몫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각 研究委員會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많은 회원이 참여해서 협회의 중추적 기능이 이에 뿌리를 두고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의 폭을 넓혀 海外進出方案 등을 면밀히 모색하는 作業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분야뿐만 아니라 有關分野의 人士 등을 망라한 顧問制度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줄 압니다. 또 對外 弘報活動을 강화해서 一般의 인식제고와 各界와의 유대강화도 도모해야 합니다. 한 方法으로서 회지발간에 힘써 대변지로서의 機能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 □ 使命感 갖고 沃土 가꿔야

이상의 장단기적 방향설정은 비단 이 時點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해온 일이며, 지난 2년간 본인이 수행한 제반업무도 이에 根幹을 두고 한 일입니다.

취임 첫해인 지난 81년도와 5大基本政策과 그밖의 모든 업무도 결국 장기적인 방향설정과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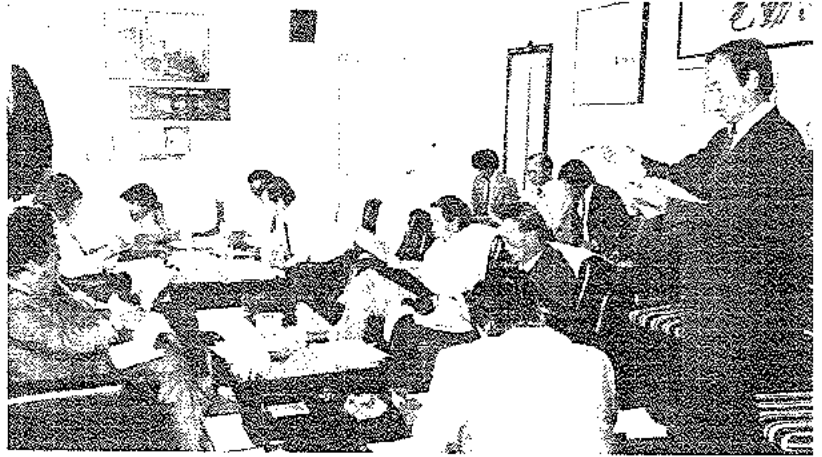
이제 협회의 지난 歷史를 더듬어 오늘을 바로 알고 내일의 나아갈 길을 밝힘에 있어 새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문제의 발생도 우리 자체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그 解決방안도 우리 자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권익과 지위가 伸張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여하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18年前的의 협회가 오늘날 이만큼 성장했듯이 또 앞으로의 협회가 크게 成長할 수 있도록 비옥한 옥토를 가꾸는 책임이 오늘의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在任中 협회 발전을 위해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會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 定期理事會 개최 총회의안 등 결정

오는 월말 개최 예정인 제17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총회 일정 및 의안결정을 위한 제9회 정기 이사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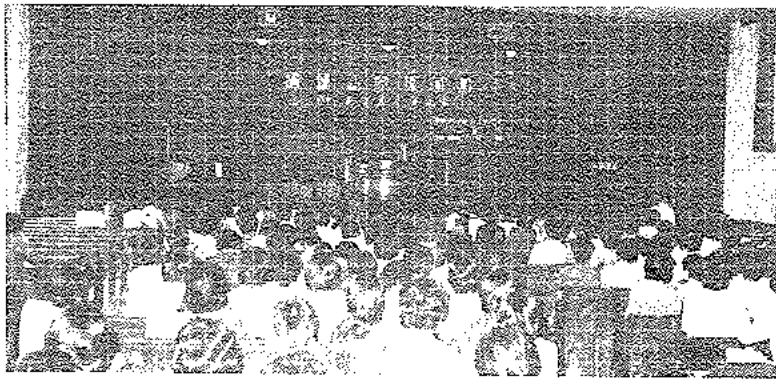
具統會회장 주재로 지난달 2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이날 이사회에는 총회 관계 의안 외에 예산 목간전용 및 예비비 사용승인, 추대회원 승인, 정관 및 제규정 개정, 83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확정, 윤리위원회 결과 여부, 직원표창, 신규직원채용 등과 기타사항이 차례로 논의되었다.



한편 이에 앞서 주요업무 보고로는 본지 주택특집 컬러판 발간을 비롯, 회원 의료보험조합 가입신청, 건축사법·령·규칙개정내용 책자제작배부, 사무국장회의, 감사패전달 등을 차례로 보고했다.

이날 이사회의 주요 결정사항인 총회시 주요 의안 결정 내용은 모두 8개 의안으로 정관개정, 제규정개정,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승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예산, 임원 개선 등과 기타 사항으로 의결되었다.

## 具會長, 세미나서 강연



인덕공업전문학교가 개최한 건축학술세미나에서 본회 具統會회장은 〈한국건축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강연했다.

지난 9월10일, 오전 11시부터 동교대강당에서 건축과 학생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具統會회장은 건축이란 매우 어려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면 할수록 매력력을 느끼는 분야라고 전제하고 “건축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인간 본연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고 건축에다 자신의 모든 정열을 불태우기 위해서는 시와

문학작품을 많이 접해서 자신의 확고한 철학과 정신세계를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具統會회장은 보수문제로 대학졸업자들이 설계사무소를 외면하고 있는 요즘의 실태와 보조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계사무소의 고충에 대해 언급하면서 “본협회에서도 보조사의 지위와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도 졸업 후 설계사무소에 많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건축의 밝은 앞날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任員協議會

8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대한 제반협의를 위한 임원협의회가 지난 7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具統會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제반 문제점에 해결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에 따른 평년도 계획 등을 확정짓기 위한 것으로 예산규모 및 각종사업계획에 합당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검토도 함께 했다.

그 외에 협회운영에 대한 현안 문제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도 있었다.

## 事務局長 會議 열어 支部業務 지침 시달

시도지부 사무국장회의가 지난달 20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각 시도지부 운영에 대한 업무지침시달과 8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사무국장회의에 앞서 具琬會 회장은 회원사무소의 운영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회원을 위한 협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각 시도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 인혁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열린 회의에서는 새해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대한 요청 및 주요 지침 등을 전달한데 이어 각 부서별 업무협조 등이 세부적으로 논의되었다.

## 獨立紀念館건립성금 기탁

1 천 1 만 5 천 원 한국일보 통해

본회는 독립기념관건립성금을 마련 지난 9월19일 한국일보사를 통해 기탁했다.

본회 회원 및 임직원 이름으로 기탁한 성금 총액은 1천 1만 5천원으로 본회 소속회원 모두와 본부 및 13개

각시도지부 소속직원들이 낸 것이다.

한편 각 시도지부는 이밖에도 해당 지역 언론기관 및 관계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성금을 기탁, 민족의지를 표상할 기념관 건립사업에 솔선 참여했다.

## 韓奎峯씨에 感謝牌



본회는 지난 9월16일 그동안 본회 발전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韓奎峯(주택공사 개발이사)씨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감사패를 증정하는 자리에는 具琬會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진과 건설부 및 건설연구소 관계인사 등이 참석해서 뜻을 기렸다.

韓奎峯씨는 오랫동안 건설부 주택관리관과 건설연구소 건축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 건축계 발전에 큰 공헌을 했으며 특히 본회 건축연구위원으로 동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력하는 등 본회발전에 이바지한 바 컸다.

이에 본회는 지난 7월 주택공사로 자리를 옮긴 韓奎峯씨의 그간의 협조를 새기기 위해 이날 감사패를 증정하고 오찬모임을 마련했다.

## 건축연구 분과위원회 활동상황

### 1. 법 연구 분과 위원회 (위원장 : 박우하)

- ① 경과 : 제 4 차 회의 개최
- ② 내용 :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행정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 ③ 결과 : 건축법 및 건축사법 정부 개정(안)에 따른 본 협회 개정안을 연구 작성하여 건설부에 제출 건의

### 2. 도시환경 연구 분과 위원회 (위원장 : 김진일)

- ① 경과 : 제 2 차 회의 개최
- ② 내용 : 선진 외국의 도시 환경을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 현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사업을 연구
- ③ 결과 : 연구 진행 중

### 3. 구조연구 분과 위원회 (위원장 : 유경철)

- ① 경과 : 제 3 차 회의개최
- ② 내용 : 건축구조개선 법령연구, 건축구조도의 표준화 연구 및 건축구조 계산방법 등의 연구
- ③ 결과 : 건축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정부안에 대하여 본협회 개정안을 연구 작성하여 건설부에 제출.

### 4. 설비연구 분과 위원회 (위원장 : 윤봉원)

- ① 경과 : 제 4 차 회의개최
- ② 내용 : 건축설비 각 분야를 전기 기계, 방재 분야로 세분하여 건축사와 관련있는 내용으로 연구
- ③ 결과 : 건축사지 9월호에 전기, 기계, 소방 분야의 연구 논문을 게재

### 5. 시공재료 연구 분과 위원회 (위원장 : 신현식)

- ① 경과 : 제 1 차 회의개최
- ② 내용 : 재료 부문의 문제점, 시공 부문의 문제점, 건물별 문제점 및 재료 사용법과 시공법연구
- ③ 결과 : 연구진행 중

### 6. 한국 전통건축 연구 분과 위원회 (위원장 : 장기인)

- ① 경과 : 제 1 차 회의개최
- ② 내용 : 한국건축자료 수집, 사진 촬영, 도면수집, 실측도 작성, 문헌 목록 작성 등을 총합해서 50여점 정도 발췌하여 연구
- ③ 결과 : 1 차로 고건축에 대한 연구 내용을 건축사지에 게재

### 7. 설계도서 연구 분과 위원회 (위원장 : 이승우)

- ① 경과 : 제 3 차 회의개최
- ② 내용 : 외국의 설계도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안 작성
- ③ 결과 : 연구 책임위원을 결정하고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현재 연구 발표 준비 중

### 8. 건축물 에너지 연구 분과 위원회 (위원장 : 이종관)

- ① 경과 : 제 1 차 회의개최
- ② 내용 : "에너지를 이용한 건축물의 설계" 분야에 대한 외국자료를 연구 정리하여 건축사지에 게재
- ③ 결과 : 연구진행 중

委員會소식

倫理委員會

제 4 회 윤리위원회(위원장 閔榮基)가 지난달 17일 본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명예손상행위를 비롯, 설계용역응찰, 사무소 경영권 양도, 윤리규약 위배행위 등 4 건에 대한 의안을 처리했다.

처리 결과는 명예손상 부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개월, 설계용역 응찰은 경고, 윤리규약 위배에 대해서는 주의하기로 해서 각기 이사회를 통과 집행하기로 했다.

編纂委員會



10회 편찬위원회(위원장 朴簡滯)가 지난 8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10월호 편집계획안 확정과 편찬방향 설정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10월호에 병원설계작품을 수집 게재하기로 하는 한편 청탁원고에 대한 필자선정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지난 9월 주택 특집호에 대한 종합 합평과 10월호 편집상의 재반 문제점을 열거하고 이의 방향설정 등이 논의되었다.

設備分科委  
83년연구사업확정

설비분과위원회(위원장 尹鳳源)의 다섯번째 회의가 지난 12일 오후 본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83년도 연구사업내용을 확정하는 한편, 전문위원 추가



선정건을 논의했다.

동 분과위원회가 정한 명년도 사업계획은 연구논문 등을 회지에 연 6회 이상 발표한다는 것과 별도로 2회에 걸쳐 설비관계 논문책자를 발간하기로 했다. 또 공동연구 과제로 우리나라에 맞는 급수량을 조사하기로 했으며 조사대상을 아파트와 사무실건축물로 정했다.

한편 정화조부문의 전문위원을 추가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支部소식

농촌일손돕기참가  
서울지부버베키작업



서울지부(지부장 金枝泰)는 수확의 계절을 맞아 바쁜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버베키 작업을 벌였다.

새마을 운동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실천한 서울지부는 지난 5일 근교인 경기도 고양군 일산에서 임직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버베키 작업에 들어갔다.

고귀한 땅의 결실인 벼를 약 6백여평의 논에서 모두 거둬들이고 이날 오후 늦게 귀경했다.

거래질서 확립교육  
부산지부 소속회원 참석

거래질서확립 추진 교육이 지난달 7

에너지연구분과 첫 회의  
위원장에 李鍾寬회원

건축물 에너지 연구분과 위원회가 첫번째 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린 동분과위원회는 첫 모임을 갖고 위원장선출과 장단기 연구사업과제를 채택했다.

동위원회 위원장에는 이 종관(한국은성건축) 회원이 선출되었으며 단기 연구사업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이용화 설계"부문에 대한 외국자료 등을 정리하여 시디즈로 회지에 게재할 것과 관계법규 등을 취합하여 가이드 형식으로 회원에게 소개토록 했다. 이어서 장기연구사업으로는 태양열에 관한 외국도서, 외국의 설계지침용자료 등을 책자로 묶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했다.

일 부산지부(지부장 張起秀)에서 열렸다.

동지부 소속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張지부장과 정화위원 등이 교육을 담당했다.

주요교육 내용은 건축사 준비합양에 관한 내용과 거래질서 확립추진, 건축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교육 등으로 진행했다.



대회출전 격려금 전달

안양·부천회원들 공고학생에

경기지부(지부장 李錫九) 안양분소와 부천분소 회원들이 제17회 전국기능대회에 출전하는 학생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안양분소 회원들은 동대회에 출전하



는 안양공고 학생에게 5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한데 이어 부천분소 소속회원들도 부천공고 학생에게 격려금 20만원을 전달하고 좋은 성적을 올릴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양분소 회원들은 범국민적으로 벌이고 있는 독립기념관 건립기금 마련에 호응해서 경인일보사에 3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 자매 결연식 가져

全南支部 완도군 모북리와

전남지부(지부장 金映植)는 새마을운동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완도군 청산면 모북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지난 8월31일 모북리 국민학교 교정에서 있었던 자매 결연식에는 전남지부 회원 및 임직원과 마을 주민 등 1백50여명이 참석, 자매 결연의 뜻을 기렸다.

자매결연장 교환에 이어 인사 교환 등이 있었으며 이어서 기념품 전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동지부는 회원들이 보온 성금 50만원과 이발기구, 의약품, 학용품 등 1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증정했다. 한편 기념식에 이어 지역 현황에 대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 천선 낚시대회 개최

全南·北支部 장성호에서

전남·북지부는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천선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유대를 강화했다.

지난달 17일 전남 장성호에서 열린 낚시대회에는 모두 71명의 소속 회원

들이 참석해서 낚시대회에 이어 노래자랑 등으로 하루를 즐겼다.

두 지부는 매년 친목도모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역을 바꿔가며 낚시대회를 개최해서 상호간의 유대강화는 물론이고 업무협조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이 수(전남), 주형진(전남), 엄주호(전북) 회원 등이 각각 대어상을 받았다.

### 회원특별교육 실시

慶北支部 결의문 채택

경북지부(지부장 孫在守)는 의식개혁을 위한 회원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23일 포항시 죽도2동 금관예식장 2층에서 실시한 이날 교육에는 경북지부 소속회원 50명을 비롯, 내빈 등이 참석했다.

이날 초빙된 육중수(대구대학교)교수는 의식개혁의 배경 및 실천내용과 방향, 3대부정심리 추방, 9대실천요강 해설이 있었으며 이어서 최희옥(경남도 주택과장)의 건축사 행정실무교육과 손재수(지부장의 의식개혁추진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교육에 이어 질의시간을 갖고 업무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 앞서 의식개혁을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 資料기증/감사합니다

### ■ 건축관련논문 및 자료소개

□ 季刊 “에너지 研究” ’82 가을號

(韓國動資源研究所 發行)

- 自然型 太陽熱시스템에 의한 學校教室의 暖房에 관한 研究 / 李鍾鎬 外
- 에너지節約型 試驗住宅建設 및 運用 / 朴相東 外
- 斷熱基準의 制定과 그 活用 / 朴相東

東

□ “建築” ’82 7~8月號(大韓建築學會誌)

- 우리나라에서의 建築尺度調整(MC)에 관한 研究 / 李廷德 등 11개 論文 수록

### ■ 새로 나온 책

□ 建築諸法規

82년 9월 현재까지의 건축관계법규를 요약해서 해설한 것으로 건축에 종사하는 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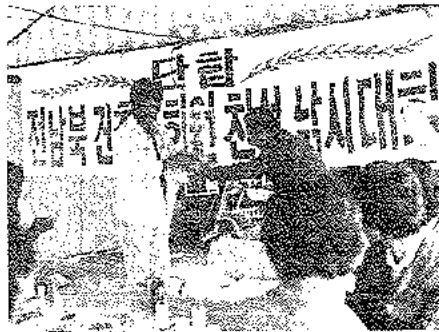
개정·신설·삭제된 건축관계법규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여 법의 근본 취지에 맞게 해설했으며 난해한 조항은 건설부 및 관계처의 유권해석을 곁들였다.

아울러 수험을 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근의 출제경향에 따른 예상문제를 함께 마련했다.

□ 기문당 발행 / 장동찬 편저  
값 8,000원



□ 전남지부 자매결연



□ 전남·북지부 낚시대회



□ 경북지부 회원교육



## 洪淳寅회원 別世

지난달 10일 영결식 거행



서울지부소속 洪淳寅(대우건축연구원) 회원이 지난달 8일 급환으로 별세했다.

뛰어난 예술적 감각으로 많은 작품 활동을 해온 故 洪淳寅회원의 유해는 별세 3일만인 9월10일 오전 9시 자택에서 유족과 1백여 건축계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결식을 마치고 경기도 용인묘원에 안장됐다.

고인은 지난 65년 홍익대학 건축과와 대학원을 마친 후 75년부터 대우건축을 설립, 그동안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건축부문 특선, 대한건축사협회상을 수상하는 등 외유적으로 작품활동을 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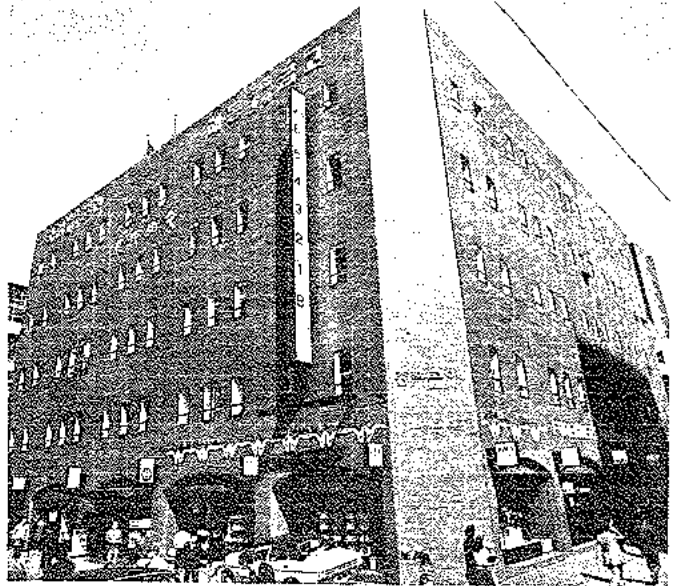
주요경력 및 남긴 작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학력 및 설계연구경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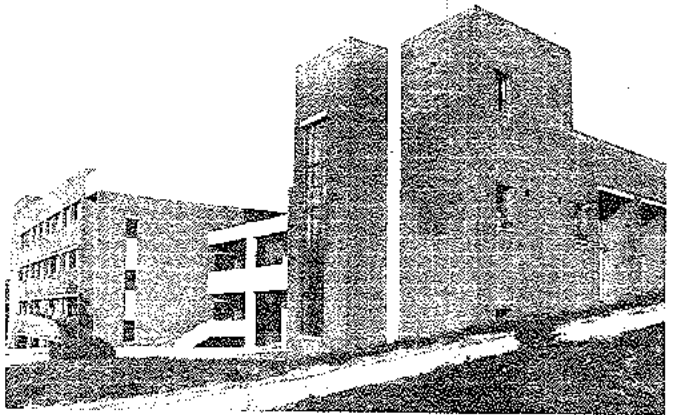
- 1965년 2월 홍익대학건축과졸업(同대학원 졸업)
- 1966~1971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건축부근무
- 1972년 9월 嚴德敎건축연구소근무
- 1973년 4월 嚴德敎건축연구소근무
- 1975년 중앙대서 건축의장 및 계획각론 강의  
대우건축연구소 自營
- 1963년 제13회대한민국미술전람회건축부문특선
- 1973년 서울시민회관현상설계에 가작입상
- 1975년 대한건축사협회상수상

### ● 주요설계실적 ●

- 1968년 한전본사(퇴계로위치)사옥신축공사 현상설계응모 당선
- 1969년 상공부종합청사 계획설계
- 1971년 남대문시장 종합계획 및 설계
- 1972년 충주비료 사원 APART 설계  
마산도립병원설계(종합병원)
- 1973년 서울시민회관현상설계가작입상(3석)
- 1974년 조달청 중앙보급소 및 청사설계  
서울대학교 관악 CAMPUS 예술관(음대·미대)설계  
출판문화회관설계 및 감리  
인동동원고등학교 MASTER PLAN 및 본관설계
- 1975년 강원여자고등학교 학생회관설계  
조달청 부산사무소 및 창고설계  
한국은행본점 현상설계응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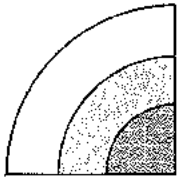


□중로로아빌딩



□충북대학교

- 1976년 우진 Bldg. (백화점) 설계, 감리  
운양민속박물관 기본설계  
YMCA 근로여성회관 설계, 감리
- 1977년 인천 화랑교회 설계  
인천 제물포중앙교회 설계, 감리  
JUMEIRAH 비치모텔 및 레크레이션시설 설계 (SAUDI)
- 1978년 SAUDI 주택성 PUBLIC HOUSING PROJECT 설계 (50만평규모)  
충북대학교 종합캠퍼스 MASTER PLAN  
춘천교육대학 본관, 설계감리
- 1979년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설계  
춘천교육대학 도서관, 학생회관 설계감리  
SAUDI ARABIA, ENANY COMMERCIAL CENTER BLDG, JEDDAH, 기본설계  
정우개발 본사 신축공사 기본설계 (중구 양동·8,807평)
- 1980년 논현빌딩 신축공사 설계(현재 시공 중) (5,000평)  
利馬회관 신축공사 기본설계 (10,000평)  
충북대학교 인문사회관 신축공사 설계
- 1981년 충북대학교 농대 2호관 신축공사 설계  
충북대학교 건설공학관 신축공사 설계  
충북대학교 농대 부속건물 신축공사 설계  
강원대학교 학생연수원 기본설계  
강원대학교 교수회관 기본설계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MASTER PLAN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 신축공사 설계  
강릉영동여자고등학교 기본설계  
利馬회관 신축공사 설계감리(현재 시공 중)



## “우리 文化創造의 指標가 되도록 해야”

宋 敗 求 — 송민구건축연구소

### □建築言語에 있어서의 傳統과 現代性 생각할 때

독립기념관 건립에 온 국민이 앞을 다투어 그 정성을 다 하는데 즈음하여 그것이 지녀야 할 형태가 어떤 것이라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 건축가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잘못 판단을 내리기 쉬운 어려운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전통계승 자체의 문제에 있어서 서구사상에 물들어 전통타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통은 계승되어야 한다고 하여 생각들이 분열되고 있는 처지이다.

우리의 언어를 단절할 수 없듯이 전통은 단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전통을 계승하여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면서 우리의 전통이 무엇인가를 어느 누가 명확히 정의할 내렸던가. 건축에서의 전통계승 문제는 비단 건축에서 뿐 아니라 타분야에서도 규명되어야 할 문제인 것을 지금까지도 아무런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마치 고건축의 양식이 우리의 전통인양 막연히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은 동양 3국이 다 지닌 건축양식이며 우리의 고유한 문화는 아니다.

또, 그 곡선이 지닌 의미론적(Semantic) 해석을 내려 확증된 바도 없다. 필자가 해석하기를 그러한 정현곡선(正弦曲線)은 다름아닌 황도(黃道)의 곡선을 상징한 것이며, 고대에 있어서 제왕은 자신이 하늘이요 임금이라는 것을 상징한 것에서 비롯되었었고, 평민은 조가에 그 부드러운 곡선을 도입하여 수복강령을 빌었던 것이다.

좋은 예가 태극문양이며, 원은 하늘을 상징하였고 곡선은 황도를 상징한 것이다.

우리민족이 언어에서 Ural-Altai 계 언어를 사용함에서 유추되는 민족의 뿌리가 Scythia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 Scythia의 예술에는 10자형 태극문양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도 두 곡선은 황도와 백도(白道, 달의 궤적)를 상징한 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그러한 곡선에 대한 해석이 옳고 그르건, 가장 특징적인 곡선을 직선화하여 그것으로 전통계승을 한 양 건축가들은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의 고유의 것으로 직선과 곡선이 병존하여 현대감각마저 풍기며, 설사 그 형태의 기원이 어디에 있었든 우리 조상이 독창력을 발휘한 3차원적 예술작품은 신라시대 석탑 이외는 없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중국은 전탑(塼塔), 일본은 목탑(木塔)이 그들의 자랑이나, 우리의 석탑은 독창력을 넘어서 현대에 이을 수 있는 가능성마저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비단 독립기념관과 같은 상징성을 강조하여야 할 건축에서 뿐 아니라 우리의 건축문화 창조에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깊고 철저하게 문제를 파헤치고 밝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역사상 우리의 문화는 중국의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며, 또 해방 후 서구의 기계관적 사고에 휩쓸려 이에 시야가 흐려진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는 못한다.

한국건축역사를 정립함에 있어서 하나같이 형식주의에 몰려 비교역사학적 방법에서 탈피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결함의 하나이다. 왜 정신사적 방법에서 맥맥이 흐르는 우리 민족의 연을 건축사에서 찾지 못하였던가.

그 속에는 삶에 대한 집념이 미화되고 상징화되어 있으며,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같을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삶을 부인하고 죽음을 긍정하는 문화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표현하였는가에 따라 형태는 변천의 길을 따라왔던 것이다.

독립기념관 또한 그러하다. 그것이 지녀야 할 1차적 기능이라는 것은, 물론 역사상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투쟁의 흔적을 담음으로써 후세에 길이길이 삶의 의미를 알리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에 소장될 모든 것은 영구보존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르는 건축으로서의 기술적 코드(Technical Code)는 어떠한 것이라야 할 것이고, 보존과학적으로는 어떠한 기술적 코드라야 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또, 통사적 코드(統辭的 코드, Syntactic Code), 다시 말하여 공간형식은 어떠한 형식이라야 한다는 것도 그러하다.

### □우리의 建築言語로서 표출 바람직

그러나 의미적 코드(Semantic Code)에 있어서, 다시 말하여 2차적 기능의 복합체로서의 상징성을 어떻게 가다듬어야 되는가.

우리의 건축언어가 아닌 외국의 건축언어로서 표현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이 이제는 건축언어라는 말에 익숙해져서 아무런 이화감을 느끼지 않고 사용하면서도 건축언어라는 개념조차 명확히 지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것이 못내 안타깝기만하다는 것이다.

무한전쟁에서 인류가 헤어날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언어의 매매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세계의 지성들의 노력이 언어학, 논리적 실증주의의 철학을 발달케 하였던 것이고, 그에서 파생되어 나온 건축언어라는 낱말을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앞서 가고 있는 관찰방법으로서 건축이라는 조형예술을 건축언어로서 바라다 보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Umberto Eco의 말을 빌려 건축기호론(Semiotics of Architecture)의 측면에서 바라다 볼 때

건축언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현대는 모든 것을 의미를 지닌 기호(記号, Sign)로 간주하며, 언어 역시 언어기호로 보고 있다.

그 언어라는 것을, 인간이 사물을

### □次元높은 建築言語로서 표현

표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언어 이외는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모든 것을 언어화하며, 조형예술에서조차도 시각영상(Image Visual)을 언어화하여 영상과 함께 기억의 흔적(E-gram)으로 담아 그 감정을 가슴 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다만 언어를 사용하는 예술, 말하자면 문학·연극 등과 같은 논술형식(論述的 形式, Discursive Form)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은 언어의 Model에 따를 수는 없고, 언어를 아름답게 가다듬는 수사론적(Rhetorical) 정식화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건축이 사에 비유되는 것도 모든 설명적인 요소는 제거되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건축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소멸과 재생과 치환(置換)의 길을 걷는 것이다.

또 건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기초·기둥·보·지붕·벽·창·문 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통합체(統合體, Syntagm)이며 각 구성요소, 즉 계열체(系列體, Paradigm) 중에서 하나 또는 몇가지의 형식을 택하여 작가가 그의 문법 또는 사상에 따라 과장·반복·압축 등 수사론적 수법을 구사하여 조합을 만들어 건축이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는 어떤 문맥(Context)을 담으려 하고, 판조자 또는 이용자는 그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건축언어를 읽음(Reading)에 있어서 그 나름의 해석을 하고 감동을 느끼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문맥에 또는 영감에 가까이 하였을 때는 더욱 감동이 강렬하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문맥이 난해한 것, 전혀 새로운 것, 전문가간의 말에 가득차야 할 것인가. 쉬운 말, 즉 구어체로서 대중을 설득하여 차원 높은 정보에

로 이끌어 가는 것이 지금의 세계적인 건축사조의 흐름인 것이다.

건축언어로서의 구어체, 우리들의 일상 언어와 같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전통을 계승해야 된다는 것의 근거인 것이다.

점하여 어떤 기능이 완수되려면, 필연적으로 코드화(略号化, Codification) 되어야 하고, 그 코드에 근거를 두어 전달(Communication)이 되며 관습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시골사람에게 Elevator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 시골사람은 앞에서 말한바 과정을 밟아 Elevator를 조작할줄 알게 되고 Elevator로서 층이 다른 층으로 가고자 하는 기능이 완수되는 것이다.

관습화 된다는 그 자체는 새로운 것, 즉 항상 유행에 뒤지는 어떤 것을 남기는 까닭이 되는 것이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전위조각가들이 시도하고 있는 형태에서 Modiooperandi적인 것이 건축에서도 시도되어 마을의 전체가 초현대적인 것을 이루고 있는 실험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 □생존권 수호위한 투쟁 역사 답이야

그렇다고 하여 생활마저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생활방식을 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언어자체도 그러하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사물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한정된 수의 어휘로서는 모든 인간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애매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언어는 문법을 초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며, 일상언어는 발화(發話)되는 그 당시의 장면(Situation), 건축에서는 환경 또는 외적 코드, 말하는 사람의 음성·표정·몸짓 모든 것이 뒤따름으로써 이해되는 것이다.

이렇듯 언어의 다의적(多義的, Multivalent)인 것과 같이, 건축언어는 더욱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Modernist들은 일의적(1義的, Univalent)

으로 취급함으로써 급기야는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일상성 부재로 미국의 프루이트 아이고(Pruit Igoe) 아파트단지를 폭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언어 자체도 그러한데, 더욱 해명하기 어려운 건축언어를 Pattern Language로서 Design Method로 삼았던 Christopher Alexander도 스스로 그 이론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요컨대, 언어에서 개념의 외연(外延, Extension, Denotation) 또는 1차 언어체, 기층언어체(基層言語體), 또는 Parole, 구체음(具體音), Signifiant(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며, 이에 해당하는 건축언어의 1차적 기능 또한 분명하다.

### □모든 건축가가

#### 참여·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개념의 내포(內包, Intension, Connotation) 또는 2차 언어체, 장식언어체(裝飾言語體), 또는 Langue, 말의 뜻, Signifié(이미 지워지는 것)은 다의적(多義的)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건축언어의 2차적 기능의 복합체는 비단 건축언어 뿐이 아니라 모든 예술의 내용은 표현과 같이 1의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건축언어에 Vernacular (방언)한 것이 병존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고정성과 근대성이 병존되어 일종의 절충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건축사조인 것이다.

이것이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전통계승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형태를 그대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정신을 이어 받아야 하고 형태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로서는 우리들이 우리들 것이고, 구어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유형의 민속학적 자료들일 것이다.

Umberto Eco가 지적하듯, 우리에게 익숙한 유행에 뒤진 것이 필연적으로 남으며 그와 함께 시대를 앞서는 문명이 그것을 감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또 Bruno Zevi가 말하듯, 건축의 본질은 내부공간의 의미에 있다는 논

리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가장 상징성을 강하게 표현하여야 하고, 면면히 흘러온 우리의 역사를 담을 독립기념관은 어떠한 관념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명확히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학자, 말하자면 역사학·과학사학·민속학·언어학·인류학 등 관련이 있는 분야와 기술분야의 모든 학자들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우리의 전통이 무엇인가를 더욱 분명히 부각시켜 주어야 한다.

점하여 건축행위에 있어서도 한 사람의 재능에 의존하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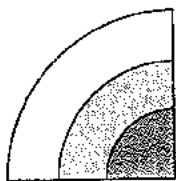
일관된 문맥 속에서 예술가 각자의 작품이 융화되는 것이라야 하며, 한 작가의 감각이 부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성급이 모금되는 과정에서, 내 소원을 벽돌 한장에 담는 그러한 독립기념관일전대, 모든 건축가 모든 예술가가 건립에 참여하여 봉사한다는 그러한 독립기념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 독립기념관이 그 건립을 계기로 우리 문화창조의 지표가 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필자의 논리에 어긋남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항상 이념은 모든 것을 앞서는 것이며, 올바른 이념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히 서두름으로 해서 응축한 일이 있다거나 잘못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필자 나름의 소감의 일단을 피력하는 바다.



## 紀念館建築의 美學的 問題

### ：獨立紀念館의 場所性

金 慶 洙 — 明知大學校 專任講師

#### 1. 場所性的 建築論的 의미

문제를 적절한 것으로서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그 해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된다고 할 때, 한국건축계에 주어진 커다란 도전으로서의 독립기념관 건축에 대해 어떠한 물음을 건축가들 스스로가 물어야 할 것인가? 1983년이라는 착공시기의 설정에서 보이는 그 조급성으로 인하여 이 문제는 실로 건축가들에게 절박한 것으로서 부상하게 되었다. 충분한 설계기간을 확보하는 일뿐만 아니라 건축가들 자신의 건축철학을 재확인하고 정비하기 위해서도 건축계 내외에서의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의 실마리를 건축계 내에 열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우선 기념관건축의 미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며, 독립기념관의 기념성, 특히 현대건축의 중심문제라고까지 주장되고 있는 장소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다.

장소성(Placeness)이 건축 예술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견해가 있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그러한 논의를 넘어서서 기념관건축의 기념성 자체가 그러한 장소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독립기념

관의 미학적 조건들을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철학적 논쟁들이 그 논쟁 속에 등장하는 개념들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결된다고 보는 논리실증주의자들의 견해는 비록 지나친 것이기는 하지만, 건축적 논의 속에 등장하는 용어들이야말로 그러한 개념적 한정이 없이는 조금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때로는 오히려 말의 혼란이 건축가의 설계행위를 오도할 위험까지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건축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장소성의 개념이란 어떠한 것인가? 미국의 현대건축가인 찰스 무어에 의하면, 장소를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건축가가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또한 해야만 할— 유일한 의미있는 일이며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건축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있으며 나아가서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규정은 바로 독립기념관이 지녀야 할 장소성으로서 규정될 수 있다. 즉 그곳은 무엇보다도 우리들 한국인과 그 후손들이 자신들의 자기 동일성(Identity)을 확인하게 될 장소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미래의

자아상을 갖는다는 것과 통하는 것이지만 그 미래상은 과거에 대한 반정립관계에 놓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20세기 초반의 전위예술가들의 끊임없는 과거부정이라는 창의성개념이 한계에 다다름으로서 드러나게 된 사실이며, 서구현대 건축에서의 탈근대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역사를 건축창작의 근본토양으로 삼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장소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우선 크게 말해서 장소는 하나의 공간에 사건(Event)이 결부될 때에 생겨나며, 그 사건이 시간적 거리를 갖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기억에 담겨있을 때 그 기억을 자극하는 수법에 의해서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전자는 행위들에 의해, 후자는 역사적 암시로서 장소성을 환기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하자면 독립기념관이 장소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그곳에서 어떠한 행위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 요구되며 둘째로 그곳에서 어떠한 역사적 기억을 건축적 어휘로서 불러일으켜야 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현대의 건축 이론가인 브롤린(Brolin)과 노르버그-슐츠(Norberg-Schulz)가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기존 건축 환경에 대한 고려(Contextualism), 즉 주변환경의 문맥과 현재의 상황적 의미로부터 부여되는 장소성과, 과거의 건축사뿐 아니라 현대도시의 상업 지구의 복잡한 가로에서 일상적 삶의 생동감을 잃고 이를 건축창작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벤추리(Venturi)의 장소성 개념 등을 고려에 넣으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의 미학적 조건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위치의 문제 — 어느 곳에 세울 것인가?

독립기념관으로서 적절한 위치적 조건은 미학적 고려의 선결조건으로서 다른 어떠한 조건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에 논의한 장소성 실현의 가장 큰 걸거리는 바로 그 건물이 놓이게 될 자리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장소성이 부여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건축가의 자유분방한 조형적 작업에 제한적 작용을 하리라고 볼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건축가의 불필요한 자의적 형태조작의 수고를 덜어주고 건축 언어의 정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독립기념관의 입지조건으로서 첫째 조건은 역시 역사성을 들어야 하겠다. 그것은 독립기념관이 일단은 역사박물관의 성격을 띄게 됨으로써 그 건립위치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판정성이야말로 바로 그 건물이 기념해야 할 일차적 대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독립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위치에 기념관이 세워짐으로써 생생한 현장감을 주게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연전에 우리들이 겪었던 몇번의 문화재 이전복원작업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일인 것이다. 벨기에 영사관이 장소성을 잃고 번두리로 물러나 앉았을 때, 그리고 특히 독립기념관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독립문이 고가도로 뒤흔으로 쫓겨 났을 때, 이들 기념적인 건축물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그들의 역사성을 상실하고 초라한 물골로 변해버렸던 것인가? 친일했던 사람들의 소행

이 아니고 미배지향적인 근대화의 기수들의 철학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회에 그러한 생산성 위주의 직선적 사고방식을 반성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위치적 조건의 두번째는 중심성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심적 위치에 놓여야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전 국민의 열망이 대변될 수 있는 대표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대표성은 대외적으로도 간파될 수 없는 중요성을 띄게 된다. 독립은 우리들만의 독립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세력관계의 역학 속에서 비극적으로 잉태된 국토 분단의 현실을 세계에 분명히 알리는 일도 독립기념관의 위치선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의 편의성이라 하겠다. 이는 앞에서 말한 중심성과도 통하는 것이겠으나 독립기념관이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층 강조되어야 할 점인 것이다. 그곳은 하루의 일과 중에 스스럼없이 만나게 되는 장소이어야 하며 결코 산중의 사찰처럼 우리의 일상생활로부터 유리된 것이어서는 안된다. 독립을 기념하는 일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일부로서 영원토록 이어져 나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일수록 쉽게 망각해버리는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밖에 현실적인 문제로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지역계획적 측면에서의 고려를 들 수가 있다. 사실 국토개발의 불균형을 고려에 넣는다는 수도 서울의 끊임없는 팽창은 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이며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불공정한 사태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그러한 국토계획적 측면을 다루는 것이 외도하는 바가 아니므로 일단 남북한의 중심적 위치라 할 수 있는 서울시에 한정시켜서 예상할 수 있는 대상지별로 위치적 조건들을 논의해 보겠다.

우선 서울시내에서도 중심성의 기준에 따르자면 첫째로 들 수 있는 후보지는 중앙청 앞 세종로 일대가 될

것이다. 광화문 베기리로부터 중앙청에 이르는 지역의 교통문제를 도시설계기법으로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이 지역을 역사광장화 하여 완전히 보행인들에 개방하는 것이다. 좀더 과욕을 내자면 남대문으로부터 광화문까지를 역사의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부리가 있을 것이다. 이 세종로지역은 세종문화회관을 비롯 역사박물관으로 개조될 예정인 중앙청(조선총독부), 치안국(내부청사) 등 기념적 건물들이 군집해 있어서 가장 생생한 현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도 좋기는 하지만, 그 역사성에 있어서 주로 치욕과 수모의 상징이 우세하다. 또한 대한제국의 황제가 경복궁에서 국권을 대변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은 봉건적 질서인 왕권을 고수했던 것으로서 자연 오늘의 민중들에게는 괴리감을 느끼게 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의 긴 역사와, 대한민국의 오늘이 결코 역사의 단절 속에서 태어난 사생아가 아님을 생각한다면 이 지역이 갖는 장소성은 독립기념관 및 역사광장의 위치로서 적절한 것일 수 있다.

역사적 사건들과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두번째 후보지를 든다면 독립문과 서대문 형무소 일대가 될 것이다. 이 기회에 독립문을 푸대접했던 파오를 씻고 특히 옥고를 치르며 일제에 항거한 선인들의 외연한 자취를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아울러 일제의 잔악성을 실감하게 해 줄 것이다.

역사성을 지닌 서울 도심의 장소로서 파고다공원 일대가 앞의 두 후보지보다도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능하다. 전자의 두 곳이 주로 지식층과 지도적 계층의 역사를 대변한다면 3·1공원이야말로 전 민중의 항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바로 민주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감각을 반영할 수 있는 곳이라 할 것이다. 단지 이곳은 현실적으로 거대한 규모의 재개발을 유발하지 되므로 독립기념관의 규모가 위축되고 말 소지가 있다.

남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개발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무난하겠으나 역사성·중심성·접근성에서는 다소 뒤

지는 감이 있다. 실제로 남산공원은 서울시민들을 강력하게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가지 장점이 있다면 서울시내 어느 곳에서나 조망될 수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의 확산현상으로 서의 신개발지에 눈을 돌려보자. 마침 1988년도의 세계올림픽이 개최될 강남의 올림픽타운 주변이나 고속터미널 주위, 또는 강남 전지역의 중심이 될 위치에——과천 신도시까지를 고려하고——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은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대규모의 인구가 정주환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시설의 균형적인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단조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므로 독립기념관 같은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주게 될 영향은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고 한편으로는 아직 미개발지가 많으므로 현실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적다. 이런 신개발지라면 치욕과 고난보다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긍지를 표현하는 데에 더욱 좋은 후보지가 된다 할 것이다.

### 3. 표현내용의 문제 — 독립기념관은 어떠한 장소이어야 하는가?

독립기념관이 어떠한 장소로서 설계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미규정의 문제는 첫째로 “독립”이라는 개념과 “기념한다”는 행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바, 전자는 그 건물이 무엇을 담고 표현하는가에 관한 물음이며 후자는 그곳에서 어떠한 행위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또한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 어떠한 체험들을 방문객이 갖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모든 문화현상을 기호작용으로 보는 기호학자들의 체제를 따르자면 기호 삼각형의 세 정점 중에서 건물을 記標(Signifier)로 보고 그 의미되어지는 대상, 즉 지시대상(Referent)과 그에 대한 우리의 관념(Idea) 양자를 記意(Signified)라 볼 때 바로 이 記意를 살펴보는 것이 첫번째 작업이 되는 것이다.

우선 “독립”이라는 개념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독립이란 非독립의 속박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항상 누

군가의 대상에 대한 의존·종속 또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와짐을, 그리하여 스스로의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게되는 상태를 뜻한다. 그것은 결코 타인의 자비에 의하여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항상 자립하겠다는 주체의 의지에 의해,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힘에 대해 대항함으로써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은 반드시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인 것이며 이러한 근본성격이야말로 건축적 표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 전시실의 역사적 유물들이나 건축외적인 방법들——조각이나 기타 시각매체들——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겠지만 건축물의 조형이나 공간구성에 의해 줄 수 있는 강렬한 긴장감에 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감각적 느낌뿐 아니라 건물의 프로그램에서부터 그런 식의 압제자의 존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예를 들어 일본제국주의나 모든 종류의 침략전쟁에 대한 연구소를 기념관 곁에 병치시키는 것은 어떠한가? 광화문 네거리의 충무공 동상이 물론 상징적으로는 왜구의 침입을 내포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적인 시야에서 긴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종류의 대립적 존재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음에서가 아닐까? 예를 들어 파고다공원의 담을 독립만세를 저지하는 일경들의 총점을 든 모습으로 둘러 놓는다면 어떠한 것인가? 고전주의의 차가운 미학에서 보면 소박하고 유치한 발상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독립기념은 고상하고 유식한 어른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후세의 교육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주의적인 표현도 필요할 것이다.

다시 “독립”의 개념으로 돌아가 보자. “독립”이란 대상언어가 아니고 상태를 표시하는 말이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가? 무엇보다도 그것은 주권의 회복이며 동시에 영토를 되찾는 일이며 한편으로는 국민이 다시 뭉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국토는 갈라져 있고 따라서 주권도 양분된 상태이며 해외에는 귀환하지 못한 동포들이 여전히 남

아 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독립은 미완성의 독립인 것이며 아직 경제적인 대외의존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므로 그나마 절반도 이루었다고 하기 힘들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립기념관은 “독립” 자체가 아직 미완성의 과제라는 사실과 동일이라는 미래에의 책임을 끊임없이 되새겨주는 장소이어야 한다. 대청형 건물로 설계하고 그 어느 반쪽만을 건설하여 나머지 절반은 통일 후에 건설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왜 저 건물이 반쪽인가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직 독립을 완수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면 된다.

“독립”이라는 상태의 이면에는 수치와 고난 그리고 잔악한 압제자와 그에 대한 항거가 있었음을 말했고 아직도 그 독립이 미완성임을 건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왔다. 이제 독립기념관에 장소성을 부여할 두번째 요소로서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일어나야 할 행위들을 생각해 보고 그때에 어떠한 체험이나 감정 또는 건축가가 의도하는 효과들을 전제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곳이 우리들 자신의 자기동일성을 확인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우선 발견과 재확인 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다시 알게 되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되돌아 보게 될 것이고 나아가 미래에의 방향설정과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그곳은 속박으로부터 독립을 행취한, 빛을 되찾은 사실을 기념하는 곳으로서 이는 바로 환희의 장소이며 밝음의 장소로서 축제가 열릴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최소한 광복절 행사는 그곳에서 온 국민의 축제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외식의 엄숙함이 광복의 회열을 억제하지 못할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겠다. 삼일독립운동이나 광주학생의거 등 각종 기념행사는 물론 시민들의 일상적인 휴식처로서도 쓰일 수 있는, 그리하여 항상 우리들 곁에 친근하게 서 있고 우리의 뿌리깊음을 확인시켜 주는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해야 한다. 공지와 미래에의 임무를 환기시켜 주면서도 항상

에착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너 나아가 일본인들에게는 그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반성하게 해주고 외국의 관광객에게는 우리의 궁지와 역사를, 그리고 침략적 제국주의의 잔혹성을 환기시켜주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다.

독립기념관이 표현해야 할 이러한 내용들의 목록을 열거하자면 아마도 끝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 건축물이 지니게 될 의미는 큰 것이며 전국민의 열망이 건축가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어느 건축가가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건축가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최대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는 타인을 감동시키려는 자이지만 결코 설계작업 속에서 흥분에 끌리지는 않는다. 물론 이 말이 건축가가 비정한 인간이어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의미에서 건축가는 해탈의 경지에 서서 감동의 세계를 관조하게 되는 인간일 수도 있다.

#### 4. 형식의 문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제 건축설계의 기법문제를 생각해 보자. 앞서서의 모든 논의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는 결국 자신의 작업매 앞에 홀로 서게 된다. 내용이 어떻게 형식으로 바뀌어 가는가? 이점에 대해서 한국의 건축가들은 그다지 운이 좋은 편은 못된다. 서구의 건축가들은 상당히 누적된 건축이론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은 항상 되돌아 갈 수 있는 고전주의라는 건축의 규율을 정립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건축가가 사용할 수 있는 모국어에 갖고 있는 것에 해당된다. 한국의 건축가는 건축적 어휘를 어떻게 얻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조와 신라는 서양의 회람만큼이나 먼 나라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건축적 모국어에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된 것도 몇십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

여 그간의 시행착오로 남겨진 건축환경들은 쿨크리트보 복제된 고도읍이며 다시 판료들의 행정력 앞에 무력했던 건축가들의 고전아닌 고전양식이었던 것이다. 전통건축언어에 대한 논란조차도 제 뿌리를 찾지 못한 채 오늘에까지도 달걀색 단청이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건축의 형식에 대한 규범이 결코 사회적 상황과 무관한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회일반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건축가의 독자적 창조란 간과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건축가들은 나름대로 모국어를 찾는 인고를 치러 왔으며 이제 그러한 노력의 결산을 볼 시기가 온 것이라 하겠다. 문제는 그러한 각자의 건축적 어휘들을 얼마나 명확하게 또 능숙하게 구사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건축가의 자기훈련과 창작의 도구로서의 전통, 즉 한 사회의 형식에 대한 동시대적 규범문제와 함께 공시대적(共時代的)인 형식체계에 대한 판단이 설계자들에게 요구된다. 한 사회 속에는 상이한 여러가지의 기호집단이 존재하는 바 이들 각 집단이 동일 형태의 기호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여박물관의 왜색시비같은 것은 바로 그러한 형태해석의 집단의존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축가가 의도한 기호는 결코 왜색이 아니었는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나타난 기호를 대다수 집단이 왜색인 것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기호집단의 근원적 보수성—언어자체의 보수성이기도 하다—뿐만 아니라 그 대다수 집단의 기호에 대한 건축가의 감수성의 결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탈근대건축을 지지하는 건축사자들이 말하는 이중신호화(Dual Coding)는 근대건축의 엘리트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한 방도로서 독립기념관 건축에 있어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그것은 고급예술의 언어—필연적으로 난해성을 띄게 되는—와 대중예술의 언어를 공유하는 건축을 창조함으로써 문화적 다원론(Pluralism)의 입장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건축은 당연히 모호성을 갖게 되며 동시에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의미로서 읽혀지는 풍부한 문화적 환경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고급언어에 대한 체제있는 이론이나 대중언어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결국 문제는 건축가의 무모할 정도의 상상력에 맡기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 건축언어의 미완성은 독립의 미완성과 어울려 그대로 이 시대의 거울로서 반영될 지도 모른다.

#### 5. 공동작업으로서의 건축언어

독립기념관은 어떤 양식의 건물이어야 하는가? 서구나 한국의 고전양식인가? 기하학적 추상양식인가? 아니면 양식을 거부하고 기능만을 그대로 드러내겠다는 기능주의의 양식인가? 앞서 논의한 표현내용들을 상징할 수 있는 규칙들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우리로서는 이러한 표현형식의 문제뿐 아니라 구조나 기술·재료 등에 대해서도 전혀 개방적인 상태로 놓여 있을 수 밖에 없다. 한국건축의 언어, 즉 1970년대 이후의 현대건축가들이 창작의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있는 전통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기약하고 본고에서는 독립기념관이 지녀야 할 비학적 조건들을 장소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학계에서는 경험의 잡다한 현상들을 체계적인 틀 속에 정리하려 하고 예술가들은 그 체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단순화시켜 본다면 결국 이 양자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야말로 한국건축의 언어를 정립하는 길일 것이며 바로 독립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그러한 공동작업의 장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 病院建築의 近代化와 우리들의 課題

金 光 文 — 한양대학교 교수

## MODERNIZATION OF THE HOSPITAL AND OUR TASK

Kim, Kwang Moon — Professor / Han Yang University

### 1. 病院建築設計는 專門家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독일의 어느 建築家와 대화하는 기회가 있어, 독일에서는 어떤 식으로 病院設計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물어본 적이 있다. 독일의 경우 病院은 대개가 公立 또는 國立이기 때문에 어느 特定人에게 設計를 의뢰할 수가 없어 病院建築인 경우라도 競價(Competition)에 의한다는 것이다. 즉 病院을 建立하여야 할 경우 建立準備委員會를 설립, 그 委員會는 각종 專門家로 構成되어 病院建立에 필요한 세밀한 設計條件書를 작성한다고 한다. 이 設計條件書는 수백 페이지의 책자로서 5~6권에 달하기도 한다. 흔히 그와 같은 것을 작성하는데 2~3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病院만을 專門으로 設計하는 사람 이외의 建築家에 의한 새로운 構想으로 풍부한 디자인 감각을 살린 病院이 탄생할 수 있는 素地가 많다고 한다. 또 하나 주목하여야 할 점은 독일에서는 병원설계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어 그 기준을 따라 設計하는 것은 기능적인 면에서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그와 같은 예가 없을 까 하여 일본의 病院建築協會의 여러 專門家들과의 대화에서 독일의 예를 소개하면서 문의한 결과, 독일과 유사한 예가 최근 실시한 病院에서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것은 금년 3월에 완성된 群馬小兒病院이 일본에서는 처음있는 設計競技였다고 한다. 그것은 1차로 23個社를 指名하여 論文과 設計취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5個社를 선정하였으며 2차로는 5個社로 하여금 基本計劃 및 Report를

제출케 하여 최종 設計者를 선정, 實施設計를 위촉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때에는 各社에 약 7,000불에 해당하는 비용을 支出하였다고 한다. 당선된 設計者는 以前에도 몇개 病院의 実績은 있기는 하나 病院設計 專門家라고는 말할 수 없는 事務室의 소유자라고 한다.

독일과 일본의 小兒病院 例는, 病院設計는 반드시 경험이 있는 建築家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게 한다. 병원에 대한 專門의인 지식의 축적이나 경험이 귀중하기는 하나 과거의 어느 정도 実績으로 타당적이 되어 研究心이 없는 建築家보다는, 병원에 대한 경험은 비록 적어도 정말로 바른 자세로 病院設計와 씨름을 할 수 있는 建築家에게서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医学의 진보와 더불어 建築的인 해결에 있어서도 급속한 변화가 뒤따르는 시점에서 실적이나 경험만에 의존하게 될 때, 때로는 진보를 방해하는 길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볼 때 本稿에서는 일반 건축가에게 최근의 病院建築의 動向 또는 思考方式에 대한 推移를 論함으로써 病院建築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2. 病院이란?

病院이란 최선의 建築技術·環境制御技術을 최대한 이용하여 복잡한 高度의 医療機器를 가지고 환자의 치료를 가장 効率的으로 행하기 위한 기능적인 건축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효율적인 病院을 計劃함에 있어 무엇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또 무엇이 문제로 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病院建築이 거대한 치료의 장소로 대두된 것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30~40년 정도의 역사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전에는 医療라든가 看護의 場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病院은 집이 없거나 갈곳이 없는 사람을 위한 수용소적인 性格이었으며 그것이 발전하여 치료까지를 하는 시설로 된 것이다. 고로 初期의 病院에서는 病棟이 차지하는 면적이 全建物의 80~90%였고 病院의 역사는, 즉 病棟의 역사인 것이다. 그 후 의학, 특히 外科学의 분야에서 무균·마취·止血의 기술 등에 따라 近代西洋医学이 많은 발전을 보게 되었다. 특히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細菌學에서의 많은 발전, X線 또는 라듐(Radium)의 医療에의 応用, 抗生物質에 의한 内科学·藥學의 業績이 病院의 医療를 크게 바꾸어 놓은 결과로 된 것이다. 그로 인하여 病院建築도 高度의 医療技術을 뒷받침하는 部門이 重視되고 医学의 專門化에 따라 그 設計에 있어서도 점차 專門의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게 되고 있다. 최근에는 病院設計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医療機器의 性能이라든가 專門用語의 이해에 급급하여 医療側의 요구에 만족하는 建物을 構成하는 것만으로 모든 힘을 다 써버리는 식의 設計가 되고 있는 것 같다.

### 3. 病院建築의 제 3의 물결

우리나라의 경우 病院建築의 近代化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 동기로 서울大學校 부속병원과 漢陽大學校 부속병원을 예로 열거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두 大學病院은 그 어느 것이나 70년 초기부터 중반에 완성된 것

으로서 완공 후 5년을 전후해서 증축 또는 개축이 되었다. 이와 같이 病院建築은 항상 성장·변화한다는 전제 아래 초기부터 성장·변화에 대응한 것으로計劃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최근 世界各國의 近代化된 病院建築의 動向을 볼 때 이 성장·변화에 建築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그와 같은 대응을 고려한 病院建築計劃을 필요는 病院建築의 “제3의 물결”이라 부르고 싶다. 이 제3의 물결이라 부르는 計劃의 方向을 좀더 세밀히 관찰하여 보면

①今後 예상되는 増築을 고려, 初期建築時에 미리 여유있게 面積을 확보하여 두는 방식이 있다. 이것은 北歐의 몇몇 病院에서 볼 수 있는 예인데 어느 정도의 여유를 고려할 것이며 어디까지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인지의 결정이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에서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 不可能에 가까운 방법이라 생각된다. 최근 일본의 神戸市立病院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초의 高層病院을 완성하고 있어 話題가 되고 있다. (그림 1)

②제2의 방법으로는 장래의 증·개축을 예상한 建築시스템으로 計劃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建築을 Hard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Soft한 것으로 하여 둔다는 것이다. 建築의 構造나 設備은 無機質로서 본래 Hard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Soft한 것, 말하자면 有機的인 性格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病院의 平面型은 증·개축의 가능성에 큰 支配力을 갖고 있다. 動線의 단속, 建築形態의 推移 등으로 해서 한때 많이 있었던 콤팩트한 型(예: 漢陽大病院·서울大病院)은 증·개축이 어려운 것이다.

그와 같은 콤팩트型的의 반성으로 多翼型(Multi-Wing)이라는 것이 새로이 등장한 것도 이미 수년이 지났다. 多翼型이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各部의 끝을 完結型으로 하지 않고 未完成으로 해두어 장래의 増築에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미국의 建築家가 提案한 Indeterminate Architecture로

장래사용  
생행하여 建設하여  
두는 경우(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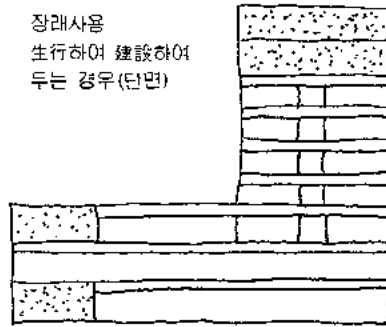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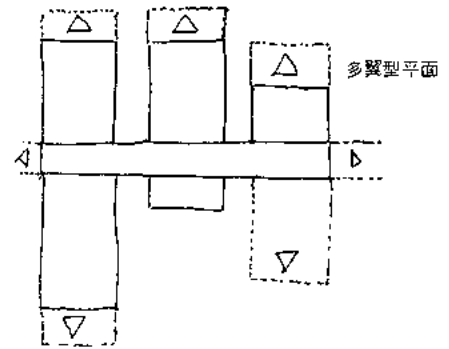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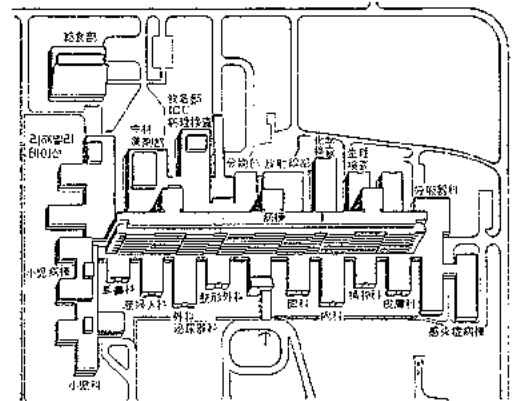


그림 2 (a)

그림 2 (b) 多翼型 病院의 예  
스웨덴의 스텔라 병원  
예(1150床)



표현하고 있다. (그림 2 참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構造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변화가 예상되는 機能空間에는 空間構成에 있어 支配的이라고 말할 수 있는 構造上의 기둥은 없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것은 内部空間의 機能의 増減에 대응할 수 있고 자유로이 칸막이를 변경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고로 최근에는 긴 스패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病院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때문일 것이다.

病院의 확대와 변화에 있어서의 문제는 空間의 拡大變化(건축의 증·개축)와 더불어 設備을 어떻게 대응시켜 가야 하는가가 문제로 남게 된다. 電氣 또는 設備 등의 Power Plant에서 各部門의 主動脈 중 특히 大断面의 部分變化가 예상되는 부분을 “設備專用”의 복도를 둔다든가 또는 建物外部에 설비를 위한 기둥을 설치하는, 소위 말하는 “設備기둥” 또는 “設備스커트” 등의 設置는 増·改築時에 내부 機能空間의 작업에 방해됨이 없이 증·개축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림 3·4)

設備上의 拡大變化를 위한 보다 철저한 방법으로는 “設備層 = Interstitial Story”를 설치하는 방법도 提案되고 있다. 작업이라든가 생활을 위한 機能空間과 空調·電氣·通信·輸送 등의 設備專門空間을 서로 쌓아 올리는 이 방법은 장래의 成長變化에 대하여 많은 耐久力을 가질 것이 예상된다.

흔히 생각하기에는 構造上 層高가 높아지고 특수한 構造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建築費가 많아 진다는 점도 염려되지만 “10%의 초기투자가 장래에 100%의 이익을 낳는다”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5 참조)

③ 뉴클리어(Nuclear) 시스템(單位體增殖)

영국에서 개발된 시스템으로서 뉴클리어(核) 방식이다. 그림과 같은 十字形의 設備을 포함하여 1單位로서 필요에 따라 교환이나 内部改築 또는 增殖할 수가 있다. 이 시스템으로 영국내 또는 國外에서 몇가지 建設된 病院의 예가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을 採用하려고 할 때 많은 空地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郡心部에서는 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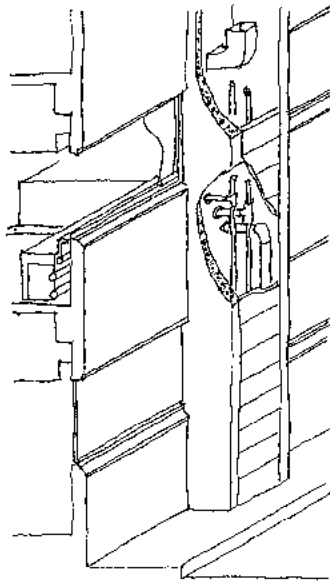


그림 3 설비용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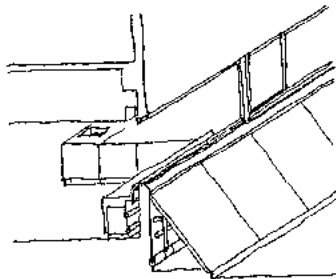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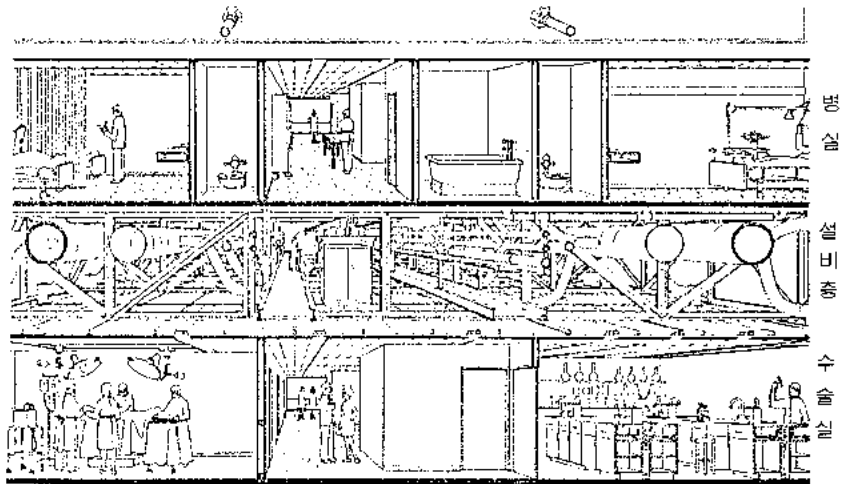
그림 4 서비스커트

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또 진찰·간호 등에 内部의 機能이 어느 정도 標準化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당장 활용할 수가 있을지 의문시 되기는 하나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提示하는 것으로서 注意할만한 것이다.(그림 6 참조)

#### 4. 結 語

이상 各國의 病院設計를 통해 어떻게 하면 좀더 病院建築의 수명을 길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成長變化에 대응할 수 있는 病院計劃 방안을 소개하였다. 그와 같은 문제를 깨닫게 된 동기는 현재 建設되는 病院이 20~30년 이후에 建物の 物理的인 수명은 아직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옛 病院을 허물고 새로운 病院을 建設해야 하는 쓰라림을 덜기 위한 방안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近代病院이 建設되기 시작한지 겨우 10년의 역사 밖에 되지

그림 5 설비층이 있는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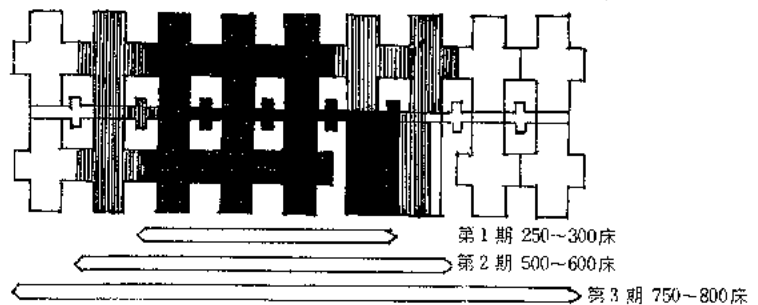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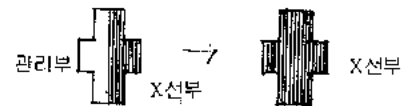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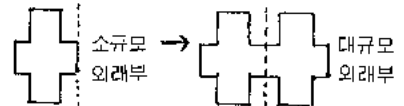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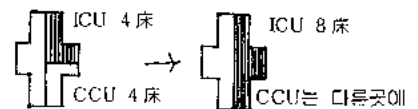
복잡한 설비조직의 증가로 인한 트러스 트러스 사용의 예. 이것은 변위를 방해하는 고정요소를 제거하며 이 트러스의 바닥은 설비층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6 뉴클리어스(Nuclear) 病院의 단계적 建設과 増築

각부분(各部門)

각부분은 3가지 방법으로 증식한다

1. 類似部門 (例: 病床의 어느 部門을 転用시켜준다)
2. 같은 部門을 단순히 증식시킨다.
3. 복잡하지 않고 低建設費의 部門 (예: 사무소)을 他部門으로 改造시킨다.



병원전체

病院全体는 2가지 方法으로 増築이 된다.

서비스 部門은 他部門과 同時 또는 獨立으로 増築이 가능하다.

않아 구라파나 일본 등지에서서의 쓰라림을 아직 느끼지 못한 채 당장 눈앞의 病床不足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영국 또는 일본에서는 이미 病床數가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 새로이 病院을 建設하여야 할 지역에서도, 經濟的인 압박때문에 運營的인 측면에서의 연구로 어떻게 病院을 더 이상 建設하지 않고 효과적

으로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쪽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都心地에서는 포화에 가까운 상태로 계속 병원이 建設되어 있어 때가 늦은 감도 있으나 앞으로는 病院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巨視的인 생각으로 임해야 하지 않을까. 그와 같은 문제는 建築家의 관심 밖의 일이라고 방관할 수 만은 없을 것 같다.

# 病院建築에 대한 小考

李 特 求 — 서울市立大學 助教授

## A STUDY ON THE HOSPITAL AND MEDICAL FACILITIES

Lee, Teuk Koo — Assistant Professor / The City University of Seoul

### 1. 序

인류는 그가 생겨나면서 질병과 끊임없이 투쟁하여 왔다. 人類歷史의 한 쪽은 질병을 추방하려는 인류의 노력으로 장식되어 왔다. 原始時代의 醫術이라고 하는 것은 土俗의이며 呪術의인 것이었다. 고대 동양에서는 神農氏가 있어 草根木皮의 藥性을 가리고(神農氏 嘗百草定藥性), 黃帝 軒轅氏가 있어 治病의 理를 가리킨 이래 오늘날까지 漢方이라는 이름으로 면면히 이어오고 있으며, 고대 서양에서는 히포크라테스(그리스인)가 醫學을 가르치고 醫學의 基本精神을 세운 이래 갈레노스(로마인)를 거쳐 16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現代醫學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는 급속한 발전을 거두어 科學文明의 발달과 더불어 오늘날의 醫學을 이루었으니 이른바 이것을 洋醫라고 일컫고 있다.

醫學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인간은 질병을 완전히 정복치 못하고 있으며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세계적인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 한나라의 富強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社會保障과 預防醫學의 발달과 더불어 현대적인 醫療施設을 충분히 갖는 것이 가장 좋은, 이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醫療制度가 도입된지 근 1 세기가 되었고 최근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社會保障制度의 일환으로 醫療保險制度가 시행되어 많은 病院들이 건설되고 있지만 先進諸國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더 많은 病院들이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病院建築을 설계하는 데에는 專門

的인 연구와 지식이 필요하다. 世界各國의 醫療制度와 社會적·경제적·기타 諸般條件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外國의 설계 예나 자료를 모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용자나 경영자에게 커다란 불편과 不利益을 줄 것이다. 歐美各國에서는 病院建築의 연구가 國家의 支援下에 이루어지고 있다.

本稿에서는 病院建築의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일반적으로 看過하기 쉬운 점, 즉 病院建築의 歷史的背景, 醫療制度의 비교, 醫療機關의 정의 및 시설기준, 의뢰기관 현황, 病院의 기능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記述하고자 한다.

### 2. 歷史的背景

#### 가. 西歐病院의 歷史的背景

인류가 최초의 共同社會를 이루었을 때 벌써 환자를 모아 치료하는 시설을 가졌다는 증거가 있다. 醫療行為는 항상 宗教儀式과 關連되어 왔으며 초기의 聖職者는 의사와 약사로서의 역할도 했다. B.C. 4000년 경에는 神이 그들을 치료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Saturn(이탈리아의 農神), Asclepius(그리스의 醫藥의 神), Hygieia(그리스의 건강의 女神) 등을 위한 神殿을 특별히 建築하였다.

그리스와 로마時代에는 이들 神殿이 醫療行為者(Practitioner)를 위한 醫學校와, 관찰과 치료 중의 환자를 위한 장소로서 이용되어 일종의 病院性格을 띄긴 했지만 진정한 病院은 없었다. 이러한 것의 예로는 Epidaurus에 있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이곳에는 치료용 浴室과 여행자들의 宿泊施設과 特殊治療室·相談室이 있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리스·이집트·

바빌로니아·인도에 이러한 유형의 建築物이 있었다는 것을 證明하고 있다.

初期基督教時代에는 특히 近東地方에서 노쇠하거나 病弱한 여행자들을 무로로 돌봐주는 시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奉仕機關은 病院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A.D. 4세기 경 로마帝國의 基督教教徒들은 나병환자·불구자·맹인·貧病者를 위한 病院(일종의 收容所)을 세웠다. 프랑스 리옹에 있는 Hotel Dieu는 A.D. 542에 세워졌고 아라비아王國의 病院들은 스페인·북아프리카·서아시아 등의 도처에 있었다. 최초의 看護職은 1155년에 조직된 聖Augustine의 修女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세 초기 博愛主義者들과 聖職者들이 기존건물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소규모의 財團을 세우기 시작하여 15세기 경까지엔 많은 病院들이 지어졌다. 이들 病院들은 때로는 잘 設計되어 충분한 채광과 통풍이 되게 하였고 患者用個室를 가지고 있었다.

Burgundy의 Hospice de Beaune는 바로 이러한 유형이었다.

중세 말경에는 보다 훌륭한 病院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中世時代에 病院에서 內科醫와 外科醫의 작업의 분할이 생겼다.

文藝復興時代에 이탈리아에 대규모의 病院들이 세워졌지만 그 計劃的인 면에서는 아무런 진보가 없었다.

18세기에 유럽의 科學의 發展은 영국의 種豆法의 발견과 더불어 病院患者治療에 크게 반영되었으며 미국 등지에 많은 病院의 설립을 보게 하였다.

病院設計의 文藝復興時代라고 할 수 있는 때는 대략 1880년대에 발티모어에 Johns Hopkins病院을 計劃한 때부터이다. 1900년 파리의 Pasteur

Institute의 준공은 전염병 환자를 위한 病院을 計劃하는데 대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病院이 세워진 이후부터는 경이적인 진보가 오늘날 까지 계속되어 왔다.

나. 우리나라 病院의 歷史的背景  
우리나라 上古醫學은 呪術的인 民間醫學이었으며 三國時代에 이르러 우수한 漢醫學이 도입되었고 불교의 傳來는 佛典과 더불어 印度醫說이 전래되어 이 시대의 醫療發展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 후 漢醫學은 우리나라 醫學의 根幹이 되었다.

醫療機關으로서의 고려 光宗 때 (963) 설치한 濟危室, 文宗 때 설치한 東西大悲院, 그리고 廢宗 때 설치한 惠民局이 있어 주로 貧民患者를 치료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李朝初의 서민을 위한 救療機關으로서 고려시대의 명칭을 그대로襲用한 惠民局(惠民署)과 濟生院, 그리고 東西活人署(東西大悲院)을 두어 서민들에 대한 施療와 함께 醫學教育機關의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에 西洋醫學이 소개된 것은 仁祖 때 (1645)에 독일인 선교사 아담·샬의 醫書傳來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며 西洋醫學이 이 땅에 발붙이기 시작한 것은 高宗 12년 江華島條約 이후 문호의 개방과 더불어 일본영사관이 일본 거주민을 보호한다는 구실 아래 高宗 14년 (1877) 부산에 西醫法에 의한 濟生醫院이 세워진 때부터이며 이후 점차로 원산에 生生病院, 인천에 일본병원, 서울에 日本館醫院들을 개설하게 되었다.

현대적인 病院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884~5년 (高宗 21~22년)에 서울의 제동에 미국인 의사 H. N. Allen에 의하여 王立惠民院(濟衆院)을 둔 것이 그 시초이다. 이 病院은 그 후 갑오경장 이후 재정난으로 운영권이 미국선교회로 넘어가고 현 도동에 病院을 신축하여 세브란스病院으로 改稱하였으며 우리나라에 西歐醫學의 본격적인 소개와 醫學徒 양성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 후 1899년 (光武 3년)에 内部病院을 설립하고 그 이듬해 廣濟院으로 개칭하였으며 이곳은 西醫法에 의한 의료 이외에 漢醫方이 併設되어 있다는 것이 그 특

징이다. 일반환자 이외에 죄수의 진찰과 전염병자의 隔離病棟施設을 가지고 있었다. 또 1907년 (光武 11년), 議政府直轄로 大韓醫院이 설립되었으며 이의 主業務는 ①治療部 ②教育部 ③衛生部로 나뉘어 치료 이외에 醫學教育和 公衆衛生도 관장하였으며 1909년에는 附屬醫學校를 두었다.

1909년 8월 (隆熙 3년), 内部大臣 管轄로 빈궁자의 질병을 救療할 목적으로 地方慈惠醫院이 개설되어 전주·청주·함흥의 3개소에 설치하고 그 다음해 7월 수원·공주·광주·대구·진주·해주·춘천·평양·의주·경성 등 10개소에 증설하여 그 업무를 확장하였다. 또 1909년 (隆熙 3년)에는 8, 9월 경부터 유행하게 된 콜레라患者를 收容하기 위한 隔離病院으로서 그해 10월 인왕산 밑에 順化病院을 설치하였으며 이것은 그 후 改築하여 300余病床을 갖는 傳染病患者 전용병원으로 발전하였다. 이보다 앞서 1905년 (光武 9년)에는 大韓赤十字會社에 의하여 大韓赤十字病院이 설립되었다.

이렇듯 유럽과 미국 등의 先進諸國의 現代醫學技術이 도입되고 醫學教育이 활발하여지자 醫學教育機關에 併設되는 附屬病院을 비롯하여 各道立病院·赤十字病院 등이 설립되었으며 慢性疾患인 결핵·나병患者들의 收容治療를 위한 大規模療養所 등이 설립되었다.

특히 해방 이후 6·25동란을 계기로 외국의 발달된 醫療技術援助는, 醫療技術의 발전은 물론 病院制度의 많은 확충과 개선을 가져 왔으며 病院建築分野에도 많은 진보를 가져 왔다. 또 各野戰病院 및 後方의 各軍病院과 戰災民을 위한 救護病院 등 많은 病院施設들을 時局의 요청에 따라 각지에 설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病院施設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획기적인 진보와 발전과 향상을 보여 주었는데 특히 외국의 원조로 신축 또는 복구된 각지의 病院들은 보다 새로운 病院體制와 대규모의 건축으로 企劃되었다. 國立結核病院·各大學附屬病院·國立精神病院·國立醫療院 등은 종래 同種의 어느 病院보다도 대규모의 建物로 이룩되었고 현대적인 醫療施設의 發展

상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서울의 國立醫療院은 스칸디나비아 3國의 U-NKRA援助로 建設된 病院으로서 500病床을 보유한, 당시 한국 최대 규모 의 시설이었으며 現代式病院의 모범으로 한국 의료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에 따른 국력신장으로 大學病院 등을 중심으로 한 많은 超現代施設을 갖춘 病院들이 건설되어 의료의 質的向上을 가져 왔다. 또한 1979년 1월부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擴大施行되어 온 醫療保險의 시행은 기존 醫療制度의 개혁과 아울러 施療人口의 증가를 가져와 더욱 많은 병원의 건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 3. 醫療制度의 比較

국가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지역적 특색에 따라 각각 독특한 의료제도를 택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美·英의 의료제도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 가. 英國의 醫療制度

醫療은 원칙적으로 國營이며 모두 무료의 診療서비스가 행하여지고 그 범위는 예방에서부터 社會復歸에 이르기까지 한다. 주민은 保健醫로 등록되어 있는 一般醫 중에서 担当醫師(家庭醫)를 선정한다. 家庭醫는 그 가족의 醫療保健의 책임을 지며 專門診療를 필요로 할 때는 환자를 地區病院이나 地域中心病院으로 보낸다. 그들은 각기 진보소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될 수 있는대로 신설된 보건소에서 일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이 장려되고 있다. 地域中心病院과 地區病院은 父子의 관계와 같아서 조직적인 醫療保健施設網을 구성하여 父病院은 검사·대수술·어려운 X線治療 및 세탁·약품구입·製劑·修理工의 파견 등을 맡고 있다. 따라서 子病院은 이러한 特殊施設을 갖추는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인한 인원도 절약되고 入院機能을 완수할 수 있다. 이것을 Group Administration이라고 한다. 또 病院이 개별적인 경영이 아니므로 지역의 父病院·子病院, 또는 정신병원·결핵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産科·소아·老人·慢性病·回復期 등을 위한 專門病院이 있고 서로가 연

관되어 각기의 특색을 발휘하고 있다.

#### 나. 美国의 医療制度

의사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開業医로 각각 Office(診療所)를 갖고 있으며 다수는 동시에 Part Time制로 자기가 등록된 병원에서 자기의 환자를 진료한다. 환자는 Office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에 따라 上記病院의 病床과 診療施設을 이용하며 의사에 대해서는 診療料를, 병원에 대해서는 設備의 사용료를 지불한다. 따라서 병원은 入院施設과 附屬診療施設(手術·X線·檢査·物療 등)을 설비하면 되고 원칙적으로 外來診療部를 가질 필요는 없다. 外來診療部를 가질 경우 대부분은 慈善的인 施療에 종당되며 登録醫師가 無報酬로 Service한다. 한편 도시에서는 각종 開業医의 Office가 모여서 外來만의 병원이라 할 수 있는 진료센터를 형성할 때도 있다. 專門醫가 있는 병원은 施療를 많이 취급하는 州立病院 등에 한정되며 미국의 主流가 되는 篤志病院에서는 修練中の Resident가 있을 뿐이다. 이와같이 Office나 병원에서나 의사는 Part Time 근무가 원칙적이므로 매일 오전·오후는 각각 1 Session으로 시

간을 만들어 몇명의 의사가 1개의 진료실을 교대로 사용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다.

健康保險制度는 Blue Cross 등의 민營이 있고 병원간의 조직은 영국과 같이 철저하지 않다.

#### 다. 韓國의 医療制度

開業医와 病院医가 뚜렷이 나누어져 있어 병원(Clinic-診療所)과 병원간의 유대는 없다. 同一地域에 있는 병원간에도 별로 조직화가 되어있지 않고 經營主体도 여러가지 있으나 私立病院(주로 大學附屬病院)이 발전된 것이 많으며 어느 병원이나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성격상 현저한 특색은 볼 수 없다. 환자는 가까운 開業医를 이용하거나 유명한 開業医를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입원과 특수요양을 요할 경우, 開業医를 통하여 병원에 소개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며 대개는 환자 스스로가 직접 병원을 선택하여 찾아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병원의 外來診療部를 이용하는 환자가 많아지며 大病院일수록 큰 外來部를 갖게 된다. 즉 환자는 輕症일 경우에도 醫院을 이용하지 않고 病院을 이용하므로 外來部

는 혼잡하여 좋은 Service를 할 여유가 없게 된다. 開業医는 병원의 診療施設을 이용할 수 없으며 病院医는 Full Time 근무로 病院外에서의 의료가 허가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醫療保險의 실시로 大病院에 환자의 집중을 막기 위해 保險患者診療에 대하여 병원의 조직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제도적 결함때문에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病院施設을 이용하거나 입원하려 할 때 救急患者를 제외하고는 一般醫 또는 家庭醫를 통하여 병원을 이용하게 된다. 이것은 국가 또는 지방의 재정으로 고도로 설비한 병원의 이용자를 一般醫에 의해서 한번 濫過시킨 다음에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시설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先進諸國의 醫療施設이 발달하였다 하여 이러한 제도적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한채 無批判的으로 이들을 받아들여 病院設計에 임하려고 한다면 많은 무리와 不合理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表 1 의 료 기 관<sup>1)</sup> 분 포 상 황 (Distribution of Medical Facilities)

단위: 개소

| 계       | Total  | 병 와 원<br>Hospital and Clinic |                 |               | 특 수 병 원<br>Specialized Hospitals |                       |                        | 치과병의원<br>Dental Hospital and Clinic |                | 한방병의원<br>Oriental Medical Hospital and Clinic |                 | 부설의원 <sup>2)</sup><br>Dispensary | 조 산 소<br>Midwifery Clinic |
|---------|--------|------------------------------|-----------------|---------------|----------------------------------|-----------------------|------------------------|-------------------------------------|----------------|-----------------------------------------------|-----------------|----------------------------------|---------------------------|
|         |        | 종합병원<br>General Hospital     | 병 원<br>Hospital | 의 원<br>Clinic | 결 핵<br>Tuberculous Hospital      | 나<br>Leprosy Hospital | 정 신<br>Mental Hospital | 치과병원<br>Hospital                    | 치과의원<br>Clinic | 한방의원<br>Hospital                              | 한 의 원<br>Clinic |                                  |                           |
| 1981    | 12,233 | 89                           | 256             | 6,604         | 4                                | 1                     | 7                      | 3                                   | 2,155          | 11                                            | 2,345           | 278                              | 480                       |
| 서울특별시   | 4,964  | 34                           | 71              | 2,374         | 1                                | —                     | 4                      | 2                                   | 1,170          | 5                                             | 1,097           | 79                               | 127                       |
| 부산직할시   | 1,480  | 8                            | 27              | 844           | —                                | —                     | —                      | —                                   | 215            | 1                                             | 250             | 43                               | 92                        |
| 대구직할시   | 731    | 4                            | 6               | 441           | —                                | —                     | —                      | —                                   | 131            | 3                                             | 118             | 12                               | 16                        |
| 인천직할시   | 354    | 4                            | 9               | 190           | —                                | —                     | —                      | —                                   | 58             | —                                             | 63              | 10                               | 20                        |
| 경 기 도   | 869    | 3                            | 33              | 484           | —                                | —                     | 1                      | —                                   | 123            | —                                             | 162             | 23                               | 40                        |
| 강 원 도   | 350    | 6                            | 7               | 198           | —                                | —                     | —                      | —                                   | 37             | —                                             | 63              | 13                               | 26                        |
| 충 청 북 도 | 303    | 1                            | 9               | 171           | —                                | —                     | —                      | —                                   | 39             | —                                             | 61              | 10                               | 12                        |
| 충 청 남 도 | 727    | 4                            | 15              | 403           | 1                                | —                     | —                      | —                                   | 95             | —                                             | 172             | 12                               | 25                        |
| 전 라 북 도 | 449    | 5                            | 6               | 279           | —                                | —                     | 1                      | —                                   | 44             | 1                                             | 90              | 5                                | 18                        |
| 전 라 남 도 | 657    | 6                            | 30              | 440           | 1                                | 1                     | 1                      | 1                                   | 61             | 1                                             | 49              | 22                               | 44                        |
| 경 상 북 도 | 509    | 6                            | 17              | 301           | —                                | —                     | —                      | —                                   | 74             | —                                             | 85              | 21                               | 5                         |
| 경 상 남 도 | 736    | 8                            | 18              | 409           | 1                                | —                     | —                      | —                                   | 96             | —                                             | 128             | 26                               | 50                        |
| 제 주 도   | 104    | —                            | 8               | 70            | —                                | —                     | —                      | —                                   | 12             | —                                             | 7               | 2                                | 5                         |

주: 1)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분류임.

2) 사무기관 또는 산업노동기관에 부설된 의원임.

#### 4. 醫療機關의 定義

医療法 제 3 조에 의하면 “医療機關”이라 함은 医療人이 公衆 또는 特定多數人을 위하여 医療·助産의 業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醫療機關의 種別은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漢方病院·医院·漢医院 및 助産所로 나눈다. “綜合病院”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入院患者 8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診療科目이 적어도 內科·一般外科·小兒科·産婦人科·放射線科·麻酔科·病理科 및 齒科가 설치되어 있고 各科마다 필요한 専門醫를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 “病院”·“齒科病院” 또는 “漢方病院”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医療을 행하는 곳으로서 2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 다만 齒科病院만은 그 入院施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医院”·“齒科医院” 또는 “漢医院”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医療을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 “助産所”라 함은 助産員이 助産과 妊婦·解産婦·産褥婦 및 新生兒에 대한 보건과 看護指導를 행하는 곳으로서 助産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醫療機關을 말한다.

#### 5. 醫療機關現況

우리나라 醫療機關現況은 保健社會部統計(82년도)에 의하면 表 1과 같으며 病床數는 圖 1과 같다. 여기에 의하면 전국의료기관은 12,233개소로서 總病床數는 65,283 病床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총인구(80년 11월 현재—37,449千名)를 기준으로 볼 때 病床當人口 574명으로 諸外國(미국—160名/床, 일본—106名/床, 서독—80名/床, 스위스—90名/床, 영국—120名/床)과 비교하여 볼 때 엄청난 격차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많은 醫療施設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인구증가와 醫療保險擴大에 따른 醫療施設의 수요는 보다 증대될 것임으로 長期計劃에 의한 病院建設은 國家的인 과제가 하나가 되고 있다.

圖 1 의료기관별 병상수(1981)

Number of Beds by Medical Facilities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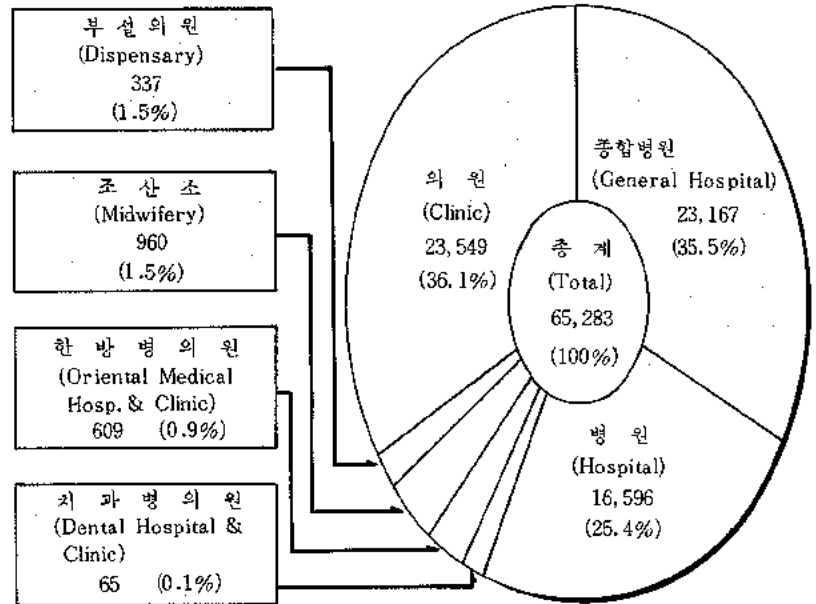


表 2 醫療機關別施設基準

(1977. 8. 16 改正)

| 시 설        | 종합병원<br>과 병상<br>80개 이상<br>의 병원    | 병상 80<br>개 미만<br>의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의 원                                                                                    | 치과<br>의원        | 한의원             | 조산<br>소        |
|------------|-----------------------------------|-----------------------------------|------------------------------|------------------------------|----------------------------------------------------------------------------------------|-----------------|-----------------|----------------|
| 1. 진료실     | 각과별로<br>1                         | 각과별로<br>1                         | 각과별로<br>1                    | 각과별로<br>1                    | 각과별로<br>1                                                                              | 1               | 1               | 1              |
| 2. 입원실     | 병상 80<br>개 이상<br>수용가능<br>입원실      | 병상 20<br>개 이상<br>수용가능<br>입원실      | 병상 10<br>개 이상<br>수용가능<br>입원실 | 병상 20<br>개 이상<br>수용가능<br>입원실 | 병상 20<br>개 미만<br>다만, 전<br>문과목이<br>상부인과<br>인원은<br>병상 3개<br>이상 20<br>개 미만<br>수용가능<br>입원실 | 병상<br>10개<br>미만 | 병상<br>20개<br>미만 | (분<br>실<br>검용) |
| 3. 요양실     |                                   |                                   |                              |                              |                                                                                        |                 |                 | 1              |
| 4. 수술실     | 1<br>(외과계<br>과목이<br>있는경우<br>에 한함) | 1<br>(외과계<br>과목이<br>있는경우<br>에 한함) |                              |                              |                                                                                        |                 |                 |                |
| 5. 산 실     | 1<br>(산부인<br>과에 한<br>함)           | 1<br>(산부인<br>과에 한<br>함)           |                              |                              |                                                                                        |                 |                 |                |
| 6. 처치실     | 1                                 | 1<br>(응급실<br>검용)                  | 1<br>(응급실<br>검용)             | 1<br>(응급실<br>검용)             |                                                                                        |                 |                 |                |
| 7. 응급실     | 1                                 |                                   |                              |                              |                                                                                        |                 |                 |                |
| 8. 임상검사실   | 1                                 | 1                                 | 1                            |                              |                                                                                        |                 |                 |                |
| 9. 약물관리검사실 |                                   |                                   |                              | 1                            |                                                                                        |                 |                 |                |

|             |                                   |                              |                              |                              |   |   |   |   |
|-------------|-----------------------------------|------------------------------|------------------------------|------------------------------|---|---|---|---|
| 10. 방사선장치   | 1                                 | 1                            | 1                            |                              |   |   |   |   |
| 11. 마취준비실   | 1<br>(외과계<br>과목이<br>있는경우<br>에 한함) |                              |                              |                              |   |   |   |   |
| 12. 회복실     | 1<br>(외과계<br>과목이<br>있는경우<br>에 한함) |                              |                              |                              |   |   |   |   |
| 13. 물리치료실   | 1<br>(외과계<br>과목이<br>있는경우<br>에 한함) |                              |                              |                              |   |   |   |   |
| 14. 한방요법실   |                                   |                              |                              | 1                            |   |   |   |   |
| 15. 병리해부실   | 1                                 |                              |                              |                              |   |   |   |   |
| 16. 약제실     | 1                                 | 1                            | 1                            |                              |   |   |   |   |
| 17. 조제실     |                                   |                              |                              | 1                            | 1 |   |   |   |
| 18. 약 실     |                                   |                              |                              |                              |   |   | 1 |   |
| 19. 치과기공실   | 1<br>(종합병<br>원에 한<br>함)           |                              | 1                            |                              |   |   |   |   |
| 20. 대기실     | 1                                 | 1                            | 1                            | 1                            | 1 | 1 | 1 |   |
| 21. 중앙공급실   | 1                                 |                              |                              |                              |   |   |   |   |
| 22. 의무기록실   | 1                                 |                              |                              |                              |   |   |   |   |
| 23. 소독시설    | 1                                 | 1                            | 1                            | 1                            | 1 | 1 |   | 1 |
| 24. 급식시설    | 1                                 | 1                            | 1                            | 1                            |   |   |   |   |
| 25. 난방시설    | 1                                 | 1                            | 1                            | 1                            |   |   |   |   |
| 26. 급수시설    | 공공급수<br>시설 1<br>자가급수<br>시설 1      | 공공급수<br>시설 1<br>자가급수<br>시설 1 | 공공급수<br>시설 1<br>자가급수<br>시설 1 | 공공급수<br>시설 1<br>자가급수<br>시설 1 |   |   |   |   |
| 27. 세탁시설    | 1                                 | 1                            |                              | 1                            |   |   |   |   |
| 28. 오물처리시설  | 1                                 | 1                            | 1                            | 1                            |   |   |   |   |
| 29. 연구실     | 1                                 |                              |                              |                              |   |   |   |   |
| 30. 회의실     | 1                                 |                              |                              |                              |   |   |   |   |
| 31. 도서실     | 1                                 |                              |                              |                              |   |   |   |   |
| 32. 시체실     | 1                                 |                              |                              |                              |   |   |   |   |
| 33. 적출물관리시설 | 1                                 | 1                            | 1                            | 1                            |   |   |   |   |
| 34. 적출물소각시설 | 1                                 |                              |                              |                              |   |   |   |   |
| 35. 탕전실     |                                   |                              |                              | 1                            |   |   |   |   |
| 36. 구급자동차   | 1                                 | 1                            |                              |                              |   |   |   |   |
| 37. 자가발전시설  | 1                                 | 1                            | 1                            | 1                            |   |   |   |   |
| 38. 구급낭     | 1                                 | 1                            | 1                            |                              | 1 | 1 |   | 1 |

- ① 病棟部 (Ward)
- ② 中央診療部 (Adjunct Diagnostic & Treatment Facilities)
- ③ 外来診療部 (Out Patient Department)
- ④ 管理部 (Administration Department)
- ⑤ 서비스部 (Service Department)
- ⑥ 宿舎 (Dormitory)

등과 같은 Block으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 그 중 ①~③은 病院独自の 활동을 하는 부문이고 ④~⑤는 그 運營을 支持하는 부문이다. 中央診療施設의 내용은 진단·진료 및 보급 (Supply) 등의 시설을 포함하지만 원래 中央이란 말은 病棟部·外来部の 中央에 있는 것으로, 診斷施設을 中央化한 것을 의미하며 일본에서 불리어진 명칭이고 미국에서는 附屬診療施設 (Adjunct Diagnostic and Treatment Facilities)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外来部가 病院의 필수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며 단지 병동에 부속된 시설로 취급되고 있다. 또 中央診療施設이라는 말로서 總括되고 있는 시설은 결코 전체로서 하나의 종합된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며 제각기 단독적인 것의 集合이므로 오히려 附屬施設이라는 명칭 쪽이 타당할는지 모른다는 의견도 있다.

病院各部의 構成

(1) 病棟部

病種에 따라

㉑ 一般病棟 (内科系·外科系·産科·小兒 및 混合看護單位로 구성)

㉒ 特殊病棟 (結核·伝染病·精神病의 看護單位로 구성)

病勢와 看護度에 따라

㉓ Intensive Care Units (I.C.U)

㉔ Intermediate Care Units

㉕ Self-Care Units

㉖ Long-Term Care Units

(2) 外来診療部

㉗ 接受·会計 등의 事務

㉘ 各科診療室

㉙ 救急処置室

㉚ 待合 Space

(3) 中央診療施設

㉛ 検査部

㉜ 放射線部

## 6. 医療機關施設基準

医療機關의 施設基準 및 施設規格은 医療法施行令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다. 表 2는 医療機關別施設基準이다.

## 7. 病院의 機能 및 構成

綜合病院·病院의 기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社會의 縮小物”이라 할 수

있다. 즉 출생·치료·검사·연구·교육·숙식·사망·장례·각종 비즈니스·경영 등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各種行事が 남녀 노소·환자와 의사, 경영자와 이용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 다양한 계층간에 발생되며 24시간 주야로 가동되는 곳이다. 이러한 病院의 여러가지 기능을 크게 분류하면



- ㉔ 物理治療部      ㉕ 手術部
- ㉖ 分娩部          ㉗ 中央材料部
- ㉘ 藥 局          ㉙ 輸血部

(4) 管理部

- ㉚ 管理關係
- ㉛ 事 務
- ㉜ 医 務

(5) Service 部

- ㉝ 廚 房          ㉞ 洗濯室
- ㉟ 機械關係諸室   ㊱ 厚生施設
- ㊲ 施設維持를 위한 諸室

(6) 宿 舍

- ㊳ 醫師宿舍
- ㊴ 職員宿舍
- ㊵ 看護員宿舍

이상의 各部의 構成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圖 2·3이다.

8. 結 語

이상과 같이 医療施設과 病院에 대하여 概念的인 考察을 하였으나 한정된 지면이기 때문에 不充分한 것이 많으리라 思料되며 病院 各部의 設計에 대한 詳細한 考察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参 考 文 献

1. 李海成·金光文  
“中小病院의 標準化에 關한 研究”  
1980
2. Talbot Hamlin, F. A. I. A.  
“Forms and Functions of 20th —  
Century Architecture” Vol. IV
3. Alden B. Mills  
“Functional Planning of General  
Hospitals” 1969
4. Rex Whitaker Allen  
“Hospital Planning Handbook” 1976
5. 李特求  
“救急医療施設에 대한 研究” 建築  
(建築学会誌 26卷 107号) 1982
6. 金斗鍾  
“韓國醫學史”
7. 洪承奎  
“韓國醫療制度에 關한 研究” 1970
8. ENCYCLOPAEDIA BRITAN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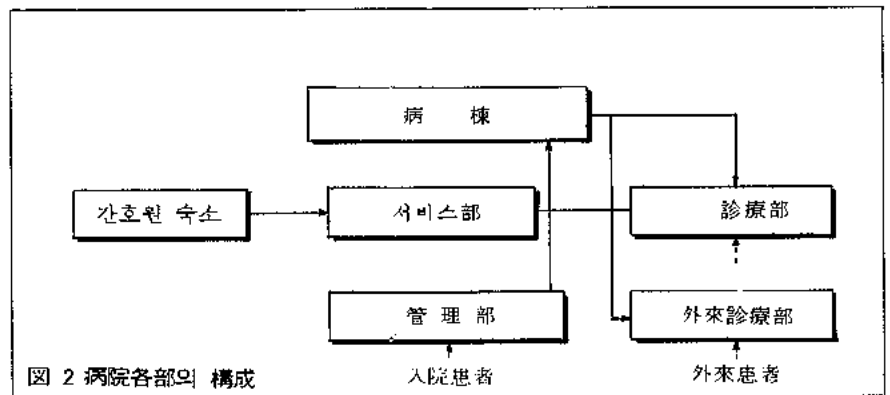


圖 2 病院各部의 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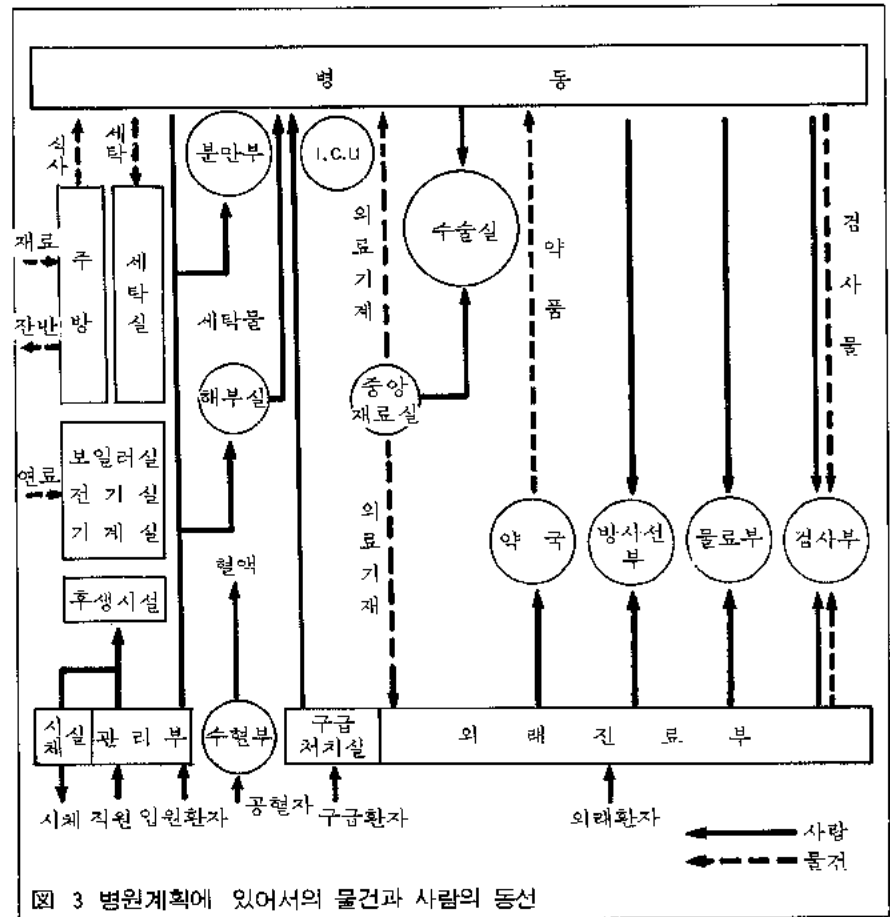


圖 3 병원계획에 있어서의 물건과 사람의 동선

- CA (MACROPAEDIA) Vol. 9
9. 法典(医療法 및 同施行令) 玄岩社  
1982
10. “建築設計資料集成” Vol. 2 彰國社
11.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統計年報” 1982
12. Louis G. Redstone, F. A. I. A.  
“Hospitals and Health Care Facilities” 1978
13. Wheeler E. Todd, F. A. I. A.  
“Hospital Design and Function”  
1964
14. Isadore Rosenfield  
“Hospital Architecture and Beyond” 1969
15. Peter Stone  
“British Hospital and Health-care Buildings” 1980

# 環境 Designer 養成의 必要性

姜 健 熙 — 홍익대학교교수 / 본지편집위원

自然生態系의 破壞가 매스컴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環境의 汚染 등이 그 要因임에 틀림이 없다. 이로 인하여 人間은 여러 方面으로 災害를 입고 있다. 또한 도시의 Sky-Line이 어떻게 都市美觀이 어찌되었다는 등의 生活上 편리하지 못한 現實이 많은 점에서 指摘되고 있다. 여기에서 環境이란 우리 人間의 生活母胎로서 그것의 變化가, 또한 惡化가 우리 人間의 변화이자 惡化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環境保存의 總體的 해결책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도 심각히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이 해결점은 環境의 效率의 이용과 전체 내려오는 自然을 保護·保存·育成하는 것이 現在를 이룩해 가는 우리의 使命이자 課題인 것이다.

現在 여러 分野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축·建設活動·都市開發·造景 등, 專門分野로서 關連은 있으나 綜合을 시키지 못하여 결국 모두가 散發的인 형태로서 기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奇型的인 成長의 부분 부분을 統制·制御하여 정상적인 脈絡을 이루는 그런 能力을 현실은 요청하고 있다. 즉 그 能力이란 建築·都市計劃·造景·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總合한 Total Design을 다루는 環境Designer의 다수 輩出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人間環境을 이해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은 環境의 機能, 環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變數, 變數의 相互關係, 기능과 變數와의 關係, 기능의 選拔 등을 명확히 하는 일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科學은 一連의 事實이 아니라 自然의 事實에 秩序를 주어, 그것에 의하여 그것들의 사실에 統一과 理解可能性을 주는 하나의 方法이다』라고 한 Jacob Bronowski의 말은 環境Design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科學의 一般論的인 解析이나 分類에 의해서만 環境이 理解될 수 없으며, 보다 넓고 높은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環境

Design의 對象이 人間과 또한 그의 모든 活動영역에 귀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當然하며, 이는 人類歷史의 發展段階를 보면 더욱 그 事實이 분명해진다. 人間과 環境과의 相互作用은 두가지의 과정이 있다. 어느 것을 살펴 보아도 環境의 形式은 사람들의 心理的 特性에 의하여 틀이 잡혀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關連해서 環境의 문제는 여러가지 形의 相互作用을 돕기도 하며, 또한 속박하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環境Design의 궁극적인 목표는 適應이 아닌, 調和인 것이다. 人間은 어떤 環境에 대해서도 적응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人間들은 좋지 못한 條件에 적응한 것에 대한 結果를, 後에는 어떠한 形態로든 반계되고, 그것은 人間價値의 退墜라는 形態로 나타나게 되었다. 파괴화된 環境은 더럽혀져 추하고 非人間的이어서, 경제성장이나 정치·권력파도 兩立하여 이들 環境은 人間生活의 肉體的·정신적 측면을 파괴한다. 有機體의 生命과는 兩立하지만 人間의 限界를 파괴하는 마위의 環境에 대하여 人間이 적응력을 갖는다는 것은 Community計劃으로는 곤란한 問題로 提起된다. 그러나 人間이 더욱 필요로 하는 것, 環境Design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物質的 要因이 아니라, 人間生活 維持를 위한 Privacy·獨立·靜의분위기, 그리고 Open Space에서 欲求를 滿足시키는 일이 곧 可能的인 環境인 것이다. 이것은 장식품도 아니고 사치품도 아니며 生物學的으로 진실한 필수적인 것이다.

人間의 肉體를 유지시키기 위한 산업을 확대시키는 Energy源이나, 深刻한 資源부족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훨씬 以前에 生物學의 必需品의 供給을 위한 環境Design의 역할은 매우 의미 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專門家로서의 環境Designer의 必要性이 전실히 요구된다. 環境Desi-

gner는 社會에서의 저널리스트는 아니며, 다만 모든 것을 검토·分析·指揮할 수 있는 Conductor이어야 한다.

環境Design은 社會的 學問을 意味하며, 더욱 넓은 면에 適應하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環境Design이란, 時代에 있어서의 새로운 概念, 새로운 思想 및 社會體系에로의 어프로우치인 것이다.

環境Designer의 役割과 意味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계획과정은 多樣的 關心을 統合하는 努力으로 考慮되어야 하며, 여러 形態의 사람들과 集團의 表現에 나타난, 또 숨겨진 관심의 雙方을 事實에 立脚하여 分析해야만 한다. 또한 計劃過程中 權力의 基礎를 開發하는 方法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파괴나 再建이나 확장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活性劑의 混入」에 넣는 壓力이나 說得의 여러 形態를 鑑定하는 技術을 발달시켜야만 하며, 여러가지 側面에서 計劃을 透視하는 많은 전문가를 意識적으로 開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實際로 環境Designer란 일을 하는 能力을 가지며, 一定한 目的을 갖는 組織을 經營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環境Designer는 環境의 변모를 투철히 認識하고 人造環境으로서의 建築을 알고 그 속성의 인식에서 出發한 건축적 概念을 一般化하여, 거기서 다시 새로운 環境을 造成해야 하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들어 낸 장소가 그 特異性을 지니고 있는가를 認識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人間은 그의 運命을 책임지고 선택하는 特權을 가지며, 이것은 人間條件 가운데 가장 高貴하고 Unique한 속성일 것이다. 이러한 人間의 環境을 Design하는 것은 人間의 또다른 특징이며, 또한 特權이다. 이것을 달성하는데 Conductor의 역할을 하는 環境Designer의 必要性은 곧 自然保護의 解決이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친 逆說은 아니리라 생각된다. (\* )

## 文化空間과 「인테리어」의 役割

朴 弘 — 건축가 · 中央大교수

### ● 「인테리어」의 現代的 意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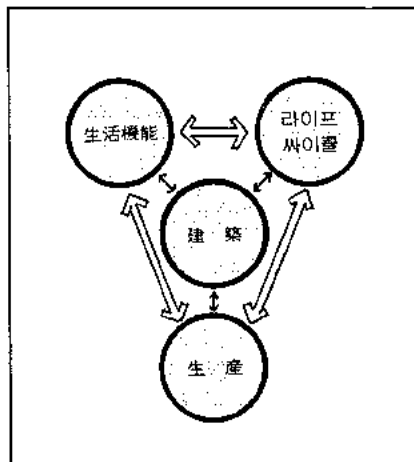
近來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일 반의 관심이 점고되고 있으며 하나의 뚜렷한 專門領域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테리어라는 것의 概念的 혼동이 惹起하게 되는 것까지 현상은 자칫 「인테리어 디자인」의 근본목적과 相反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Interior Design)이란 말은 흔히 室內裝飾 또는 室內裝置라는 어휘로 혼동되어 풀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테리어 디자인」의 目的이 人間을 위한 쾌적성 추구하고 그 創造에 있다고 볼 때, 그 語意를 단순히 「裝置」 또는 「裝飾」이라는 말로 대체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生活空間의 쾌적성 추구는 機能의 해결과 感性的 충족을 나같이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넓은 의미의 環境에 대한 이해와 建築的인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室內(Interior)를 장식한다는 것은 建物內的 求心的 매스, 즉 건물내부를 사용목적과 필요기능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個性에 맞도록 아름답고 合理的인 마무리를 짓는 디자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人間은 그 자신의 생활이나 여러가지 일을 영위하기 위해서 넓이, 즉 空間이 필요하게 된다. 이 공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의 변화인 風 · 雨 · 寒 · 暑 등과 다른 生物의 위협, 또는 인위적인 위협이 되는 盜難 등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保護體(Shelter)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곧 住宅이요 建築인 것이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돌아 보면 人類는 이런 空間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연구를 거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室內空間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리기 위한 設計, 즉 디자인을 「인테리어 디자인」(Interior Design)이라 한다.



그러나 「인테리어 디자인」은 극히 최근까지도 「家具와 室內裝飾」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커튼 · 카펫 또는 꽃꽂이가 그 代名詞처럼 인식되기도 했었다.

室內裝飾(Interior Decoration)은 어디까지나 加飾的인 것, 즉 장식하여 늘어 놓는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機能과의 차이로 모순을 느끼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第1次世界大戰 이후 이것은 建築에 한하지 않고 船舶 · 車輛 · 航空機 등을 포함하여 居住空間과 生活用具의 디자인은 사용기능을 기반으로 한 것을 요망하게 되고 家具나 室內裝飾도 이러한 경향을 배경으로 하여 생겼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인테리어 디자인」인 것이다.

### ● 發想의 變移와 新傾向

우리가 걸음만 입었을 때 오는 人體의 불편함을 절충하기 위해 內服을 입어야 하듯이 遠心的 「매스」로서의 건물과 인간의 생활과의 사이에서 속옷(內衣)과 같은 機能을 갖는 物理的인 環境이 곧 「인테리어」라고 하겠다.

建築物에는 자연계와 구획하는 面인 構造體와 그 속에 사는 人間이 직접 닿는 內側面, 즉 바닥 · 벽 · 천정이 있다. 「室內」라 부르는 이 내측면은 1日 平均 사용시간이 긴 공간이기 때문에 구조체인 建築과는 전혀 다른 發想에서 디자인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보다 쾌적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室內이 아니면 안되며 또 그곳에 배치될 家具나 道具의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形態 · 色彩 · 接觸感 등을 상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인테리어 디자인」은 대단히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現代建築은 그 構造 · 材料 · 工法 · 技術 등의 급속한 진전에 의해서 구조적인 壽命이 비약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성장과 변화가 급속한 오늘날에는 인간의 生活速度나 新陳代謝의 週期變化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매우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특히 住居空間의 경우

- ① 가정용 電氣製品의 발명과 대량 보급에 의한 生活技術의 변화
- ② 世帯分離로 인한 核家族化 경향
- ③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에 의한 유행이나 감각의 壽命短縮
- ④ 個人生活의 尊重과 推進

## ⑤ 經濟成長

⑥ 生活水準의 向上 등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서의 内部空間의 改造과 改築이 처음부터 예상되지만 건축물의 장비나 설비에 의존하는 생활내용은 오늘날과 같이 부단한 科學技術의 변화 속에서는 고정시켜서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끊임없는 環境의 변화나 신진대사를 예상하고 生活機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消耗品의 部材·備品·設備·裝備(가구·집기·카펫트·커튼·조명기구等)가 크게 「클로즈 업」되었고 이들의 디자인·製作·선택이나 室內과의 有機的인 構成技術은 室內計劃의 새로운 분야가 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消費패턴은 大型消費時代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생활패턴의 변화도 큰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각종의 電化製品과 情報機器를 비롯해서 「컴퓨터」化한 收納空間 등은 제한된 住空間의 裝置化를 크게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 장치물들이 住空間內 요소요소에 거어들어 정리되면 새로운 재료와 기술로 제작된 새로운 형태의 「패러디이션」이 器具들의 구성을 보다 풍부하게 연출해 내기도 하는 것이다. 生活의 容器로서의 住居는 現代生活이 요구하는 다양성과 함께 文明의 혜택을 그 容器 속에 갖추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 ●인테리어의 目標과 役割

建築은 건물전체의 구조와 디자인에 관여하는 반면, 「인테리어」는 機能的·美學的인 면은 물론 心理的인 문제의 해결이나 독자적인 個性表現에 이르기까지 보다 섬세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적합한 환경, 즉 生活空間을 쾌적하게 이름이 「인테리어 디자인」의 目標이며 課題인 것이다. 그것은 건축공간에 機能的 요소와 感性的인 요소의 密

度를 높여 文化的인 空間을 構築하는 작업인 것이다. 그러나 그 계획의 기본은 人間行態에 따른 삶의 方式을 이해하고 人間생활의 原初本能에 호소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 적야 함이 중요한 課題라 하겠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고도의 産業社會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人間생활의 복잡성을 절충하여 社會를 이끌어 가는 主役인 인간에게 업무능률을 높일 수 있는 業務空間, 안락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住居空間 등에 참다운 의미의 생활공간, 즉 文化空間을 창조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그 과제로 삼고 있다.

戰後에 복구된 소위 「國民住宅」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인테리어라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쓰라린 기억을 할 수 있다. 얼키설키 피난의 연장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방의 數를 채우기에 바빴지 機能이고 審美性이고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사회적 안정과 國力の 伸張으로 우리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또한 都市環境이 복잡해짐에 따라 생활공간의 美化 내지 便利化는 필수적으로 附帶되는 요인이 되었다. 아울러 경제적 풍요로 인한 人間性의 解放, 정신적인 권태로움, 게다가 절두철미한 엔조이식 사고방식 등은 새롭고 直說的이며 자극적인 것으로 大衆의 「어필」은 기울고 있다. 아울러 空間本質에 대한 예리한 추구는 時代精神을 반영하고 있으며 裝飾에 대한 혐오, 科學의 눈이 아니어서는 볼 수 없는 秩序와 形式에 대한 탐구, 벽면이나 家具 기타 디자인에서의 單一한 造形化로 인한 直線과 直角의 범람 등이 현대적 인테리어 디자인의 基底를 이루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대두되는 또다른 경향을 분석해 보면 「휴머니즘」運動의 영향에 의해서 自然主義·復古主義가 主流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機械

文明이 발달되고 그로 인한 고도의 산업사회가 導出해 낸 人間性의 상실은 그 回復의 돌파구를 自然復歸에 두고 있다. 옛것이나 自然에 대한 동경, 그것은 機械文明社會가 주는 「드라이」함을 정서적으로 메꾸어 보려는 현대인의 안간힘이다. 形態·色相·材料感 등에서 옛것이나 자연적 質感의 內裝材가 어필되고 있음은 그 단적인 예가 된다. 그러나 인테리어 디자인을 그 時代를 반영하는 훌륭한 作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재료와 加工技術 그리고 새로운 工法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 ●美的造形과 構成因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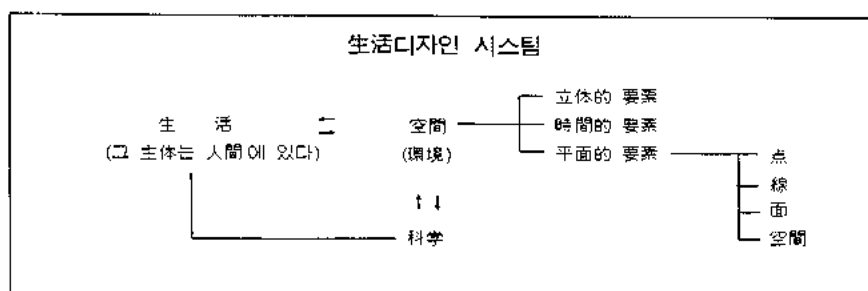
文明이 발달할수록 藝術的 創造意識이 일반대중에게도 침투하여 그들의 美的水準은 높아지고 디자인적 觀念이 實生活化되어 가는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行爲는 五官—視覺·聽覺·味覺·臭覺·觸覺—의 作用이기 때문에 디자인 감각은 모든 디자인에 공통되는 기초적인 造形의 전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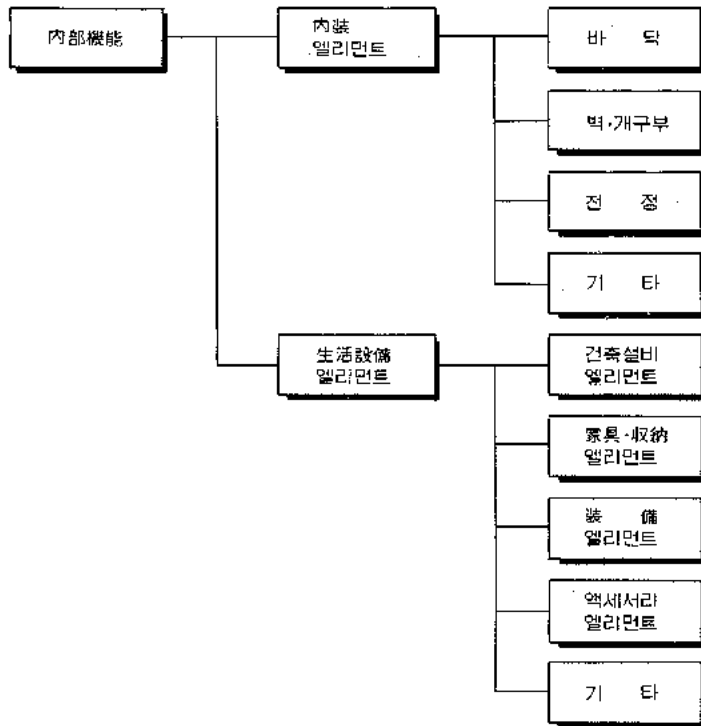
「디자인」(Design)은 어느 環境에서의 변화를 창조하고 社會에 유익한 변화를 일으키는 社會的 技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는 建築을 하는 일부 사람들도 「디자인」을 美術의 한 분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序頭에서 말한 바와 같은 加飾하여 늘어놓는 식의 裝飾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機能性和 審美性을 동시에 해결하는, 다시 말하여 實用的·美的造形을 計劃하고 이것을 可視的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디자인」의 分野는 상당히 광범위하여 근대적 생산방식을 전제로 하는 광의의 「産業디자인」(Industrial Design)과 근대디자인의 개념에서는 유리되었지만 手工作을 주로 하는 「工芸디자인」(Arts & Craft Design), 그리고 人間環境에 걸친 것으로서 「都市」·「國土」·「造景」·「建築」·「室內디자인」등 環境디자인(Environmental Design)으로 대별된다.

오늘날 人間과 環境에 대한 문제는 생존의 可否를 묻게까지 되는 極限狀況에 도달된 느낌이다. 이처럼 環境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모여서 살 수 밖



## 内部機能의 構成分類



에 없는 人間社會 속에서는 절대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代人은 고달픈 생활의 연속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서울과 같은 大都市일 때는 더욱 그렇다. 고도의 기계문명은 인간에게 편익을 가져다 준 반면 살인적인 公害要素를 선사해 주었다. 각종 媒煙으로 하늘은 시커멓고 언제 달려들런지 모르는 車輛의 질주와 횡포, 거리의 騒音과 짜증스런 歩行의 불편, 형형색색의 看板과 건물들이 연출해 내는 視覚公害 등 汚染된 도시환경은 우리를 公害의 골짜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五感은 부지부식간에 병들고 무디어져서 짜증스럽고 非正常的인 思考와 생활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神經性이라는 接頭語가 붙는 病名을 통털어 「現代病」이니 「文化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연유된다고 본다면 이것은 가공할 만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아름다운 도시에 사는 市民은 마음도 곱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곧 인간의 環境이 心性和 人格形成에

절대적인 因子가 된다는 것을 실증하는 얘기이다. 이것은 都市環境이나 住居環境이 스케일의 차이일 뿐, 다같이 인간의 생활환경이라는 同質性 때문에 그 醇化가 철저히 요구됨이 우리들의 至高한 과제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感性的인 面의 추구가 왜 필요한 가는 자명해 지는 것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보고서 憫心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機能의 해결을 전제로 한 室內空間에 시각적 造形性을 추구함이란 쾌적한 생활과 心理的 安靜을 주게 되는 것이다.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藝術이라고 정의한다면 「인테리어」와 그 構成因子가 美的造形으로 처리된 「室內」은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原形을 찾게 되는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現代住居와 인테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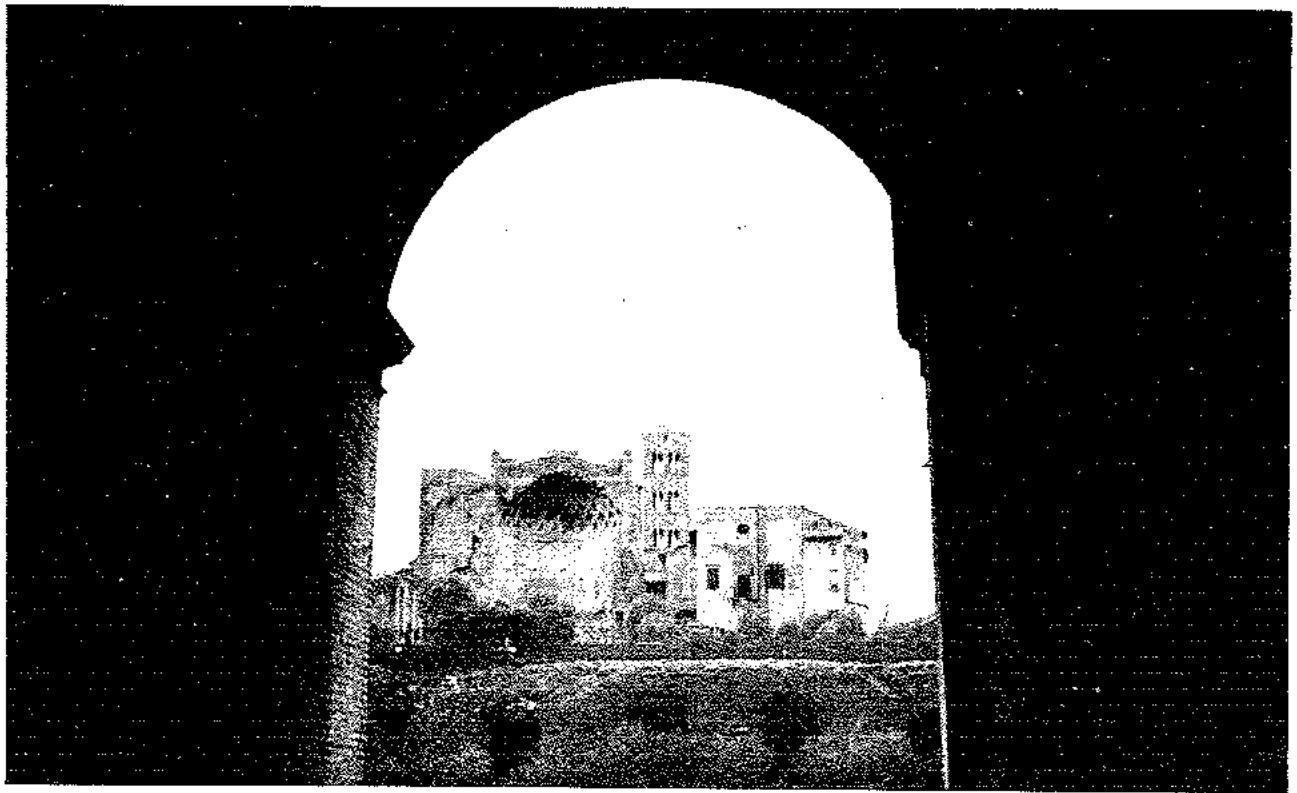
人間的 생활을 담는 그릇이 建築이요 그 室內이기 때문에 住居空間(Living Space)의 중요성은 불이 그릇의 형태에 따르듯이 人間性的의 형성에 절

대적 요소가 된다. 「인테리어」란 人體와 外衣와의 사이에서 절충하는 中間因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생활의 쾌적함을 돋우어 주는 構成要素가 된다 함은 前記한 바와 같다.

흔히 「인테리어」라고 하면 호화롭고 高價의 것으로만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생활의 쾌적함을 提高시키는 機能性和 審美性에 입각하여 볼때 그 근본이 되는 사상은 實用性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곧 「웰터」의 개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當爲性과 일치하는 것이다.

現代 인테리어의 方向은 종래의 煩亂하고 허식적이며 裝飾過多인 住居空間이 배제되고 있으며, 솔직하고 단순하며 기능적·기계적이라는 現代적 美意識으로 일관되고 있다. 하나의 물결과도 같은 復古風의 自然材를 導入하는 室內도 곧 실증나기 때문이다. 몇십년 전에는 좋았다고 생각되던 機能이 과학의 진보에 따라 더 편리한 새로운 기능으로 발전되고 이러한 진보에 따른 視覺的 變化는 오늘의 形을 오늘 창조할 수도 있고, 차츰 개량되어 점차 오늘의 形으로 移行하여 왔다는 점진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생활용 器具의 본질적인 기능은 그리 변하지 않았으나 材料·色彩·形態는 現代적 감각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이 현대적 실재를 연출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는 基本的 背景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적 환경이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인간의 行動樣態도 思考方式과 함께 변질되기 마련이다. 아파트가 없던 韓屋에서의 住居와 현대적인 생활패턴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로해서 機能은 인간의 육체적·사회적·정서적 욕구에 따라야 한다고 「엘리어트 베브린」은 말한바 있다. 이것은 생활의 機能化·機械化가 자칫 人間性을 유린하고 사람의 生態學的 均衡을 깨트릴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인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한 空間과 人間과의 有機的 關係가 순조롭지 못하다면 「인테리어 디자인」의 근본적인 사명감을 잃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連載〔5〕

## 잃어버린 古代都市

### V. 都市를 형성했던 裝置란 무엇일까?

古代의 都市를 보면, 그 도시가 문화적 想像에 의한 産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계와 인간이 一體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이미지를 共有하기 위한 裝置가 도시를 도시답게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神聖한 神의 代理人인 王이 도시의 중심에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편리한 지배를 위해 도시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王이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은 통일된 세계를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또한 도시에는 神聖한 神을 모시는 神殿이나 神의 代理人인 王이 사는 궁전, 혹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祭式과 儀禮를 행하는 광장이나 건물이 만들어졌던 것이며 조직적인 종교가 발달하면서 부터 墓所나 寺院이 도시의 중심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볼 수 있다.

더우기 도시에는 소리나 오락·쾌락을 위한 장치가 피할 수 없는 要素였으며 따라서 투기장·경기장 또는 예술적인 축제를 위한 대극장과 육장·경마장 등이 생겨났다. 이러한 것들은 종교적인 행사만큼 신화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음과 쾌락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더욱 感覺化하고 官能化한, 일종의 祭禮에 의한 일체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유희〉나 〈예술〉은 궁극적으로 어떤 事物을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자신의 감성을 공동의 법칙 속에서 발견하여 통일감·일체감을 체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도시는 여러가지 장치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본 바와 같이 도시란 부분적인 기능의 集積만이 아니며, 〈이미지〉 속에 인간이 있드시 세계와 인간을 표현하기 위한 통일된 장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도시 속에서 생활할 때, 그들은 하나의 폐쇄되고 일관된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체험한다. 또한 도시를 떠나서 생각할 때도 하나의 잘 정돈된 분위기가 떠오르게 된다. 그러한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도시라고 부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란 문화의 장치이며 문명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말하자면 도시란 〈이미지〉이며 하나의 神話的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들의 도시도 近代나 資本主義 등으로 일컬어 지는 神話의 심볼이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가 나타내는 〈이미지〉가 차츰 변해가고 있다. 그것은 문명이 부드럽고 크게 전환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古代都市의 폐허에서 얻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은 인간의 삶의 참모습을 어떻게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 왔을까? 그 걸어온 길 자체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都市란 역사를 초월하여 輪廻하는 星雲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 “푸른 漢江”을 만든다

— 漢江綜合開發事業을 살핀다 —

고수부지·체육공원·선착장 만들어 유람선 띄워

오염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졌던 한 설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도  
같이 앞으로 수년 내에 옛날의 정취를 하겠다.

되찾고 대도시 서울의 휴식처로서 재      인공의 매스로 병든 자연을 되살려  
동작할 푸른계획이 펼쳐졌다.      높겠다는 의욕과 패기가 「마스터 플

지난달 28일에 발표된 「한강종합개발」에는 여실히 나타나 있고 이에 거듭사업의 우 폭과 깊이에 있어서 일대 는 국민의 기대가 사뭇 크다.

역사로 꼽히고 있으며 이제까지 개발  
이라는 이름의 전설사업이 자연을 이  
용해서(이용이라기 보다는 자연을 채  
손해서...) 새로운 인공의 구조물을 세  
워놓은 것에 불과한 반면 이번의 한강  
개발사업은 훼손된 자연에 생기를 불  
들여 줄 것이다. 총 공사비 3천4백83억원으로 다목  
적 개발가능성을 최대 활용하는 한편  
넓은 하천공간의 이용을 극대화 한다  
는 것이 한강개발사업의 주목적이다.  
부문별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  
다.

어떻게든 치유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건

□저수로정비 金浦대교~岩寺洞간  
36km를 강폭 6백50m~9백m, 수심  
평균 2.5m가 유지되도록 하상을 굴착  
하고 길이 54km, 면적 8백53km<sup>2</sup>의 호  
안시설을 해 항상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 전구간을 10개 공구  
로 나누고 이번에 1차로 3.5공구를  
착공하는데 나머지 8개 공구도 늦어  
도 내년 3월까지지는 모두 착공한다.

□고수부지조성 하천변에 모두 2백 10만평의 고수부지를 조성, 시민들의 휴식처와 체육시설로 제공한다. 시설 광장구역은 85만평으로 계획,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위 시설 광장마다 2~3군데씩 20군데의 접근도로를 개설한다. 시설 광장은 체육공원 7군데 56만평, 유원지 2군데 25만평(쑥섬 15만평, 광나루 10만평)과 주차장 1군데(蠶室 4만평) 등으로 이중 체육공원이 조성되는 곳은 ▲汝矣

島嶼단 (15만평) ▲제 1 한강교 외편 (8만평) ▲제 2 한강교 오른쪽 (4만평) ▲제 3 한강교 오른쪽 (4,5만평) ▲蘭芝島南단 (7.5만평) ▲蛭室島단 (7만평) ▲千戶岾단 (10만평) 등이다.

이들 체육공원에는 야구·축구·정구·씨름·배드민턴 등 각종 운동연습장 이외에 교통공원과 모험·유흥시설·샤워장 및 잔디·모래 광장이 들어서게 된다.

□강변도로확충 제 2한강교와 千戶대교를 잇는 26km의 강변쪽에 4차선~6차선의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한다. 제 2한강교~汝矣島의 5.5km구간에 폭18m의 기존도로와 별도로 4차선도로가 신설되고 제 1한강교~국립묘지(3km)에도 4차선교량이 신설돼 기존 黑石洞 방면 도로는 일반도로화한다. 국립묘지~千戶대교의 17.5km

는 현재 4차선인 것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데 폭 18m의 기존 4차선도로는 3차선으로 줄여 일방통행토록 하고 강변쪽에 3차선을 확장한다. 이와함께 폭 3m, 길이 81.8km에 이르는 자전거도로와 40.2km의 산책로를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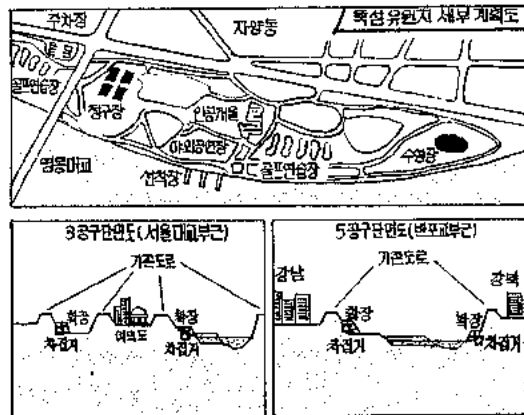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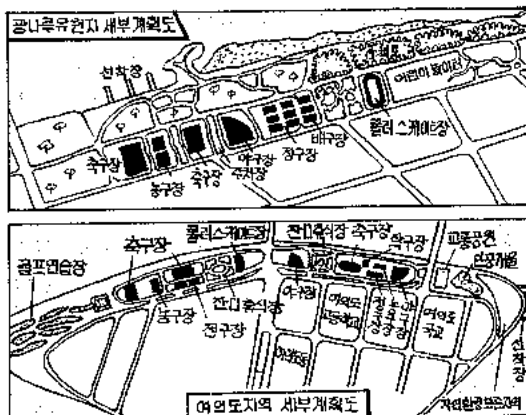
□舟運계획 金浦대교~八堂에 이르는 52km구간에 11개의 옛나루터를 찾아 재현하는데 선착장이 조성되는 곳은 ▲開花 ▲楊花橋 ▲제 2한강교 ▲제 1한강교 ▲汝矣島 ▲麻浦 ▲제 3한강교 ▲應峰橋 ▲독섬 ▲蚕室 ▲광나루 등이다.

이 나루터를 50~2백톤급의 유람선과 바지선이 다니게해 시민들의 관광·적성순화에 기여케 한다.

□하수처리장건설 하루 처리 용량 36만톤인 것을 4백10만톤으로 늘릴 것을 목표로 1단계로 浹川과 淸溪·中浪처리장을 건설·확충하며 蘭芝島(70만톤)와 安養川(1백20만톤)에도 2단계로 85년 이후 시설한다.

85년까지 끝날 1 단계 사업은 炭川에 1 일 처리용량 30만톤의 처리장을 신설하고 淸溪·中浪에도 60만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를 추가한다는 것.

□ 하수차집관거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등이 漢江으로 직접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 하·폐수를 모아 흘러보내는 대형하수도관 2백87km를 漢江 일원에 묻는다. 1 단계로 炭川하수처리장일원(高德~炭川 등)에 42.5km, 淸溪·中浪일원에 79km, 蘭芝島 일원(漢南~麻浦~佛光川~蘭芝)에 13km, 安養川일원(盤浦~汝矣島~楊花橋~安養)에 10.5km 등 모두 1백45km의 하수차집관거를 설치하고 2 단계로 蘭芝島일원의 지류(旭川·弘濟川·佛光川)에 39.4km와 安養川일원의 지류(道林川·大方川·安養川)에 1백2.6km를 설치한다.



## 病院施設作品

### 의료법인 성남병원

金英瓚 - 도화건축설계사무소

### SUNG NAM GENERAL HOSPITAL

Kim, Young Chan - Do Wha Architects & Engineers Association

### 의료법인 제천 중앙병원

成河哲 - 명성건축

### JECHEON CENTER HOSPITAL

Sung, Ha Chul - Myung Sung Architect & Associates

### 순천향 천안병원

李元澤 - 권익건축설계사무소

### SOON CHUN HYANG HOSPITAL

Lee, Wan Taick - Kuen Ik Architects & Engineers Association

### 동래 광혜병원

金伸幸 - 서강건축설계사

### DONG RAE KWANG HYEI HOSPITAL

Kim, Shin Jae - Seo Kang Architects & Engineers

### 가야병원

李珍煥 - 대륜건축설계사무소

### KAYA HOSPITAL

Lee, Jin Hwan - Dae Ryun Architects & Engineers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영동병원

金希洙 · 李彰斗 - 현신건축기술공사

### YOUNG DONG HOSPITAL OF YONSEI MEDICAL CENTER

Kim, Hie Soo · Lee, Chang Doo -  
Hyun Shin Architects & Engineering



# 의료법인 성남병원

金 英 璦 - 도화건축설계사무소 / 건축사

SUNG NAM GENERAL HOSPITAL

Kim, Young Chan - Do Wha Architects & Engineers Association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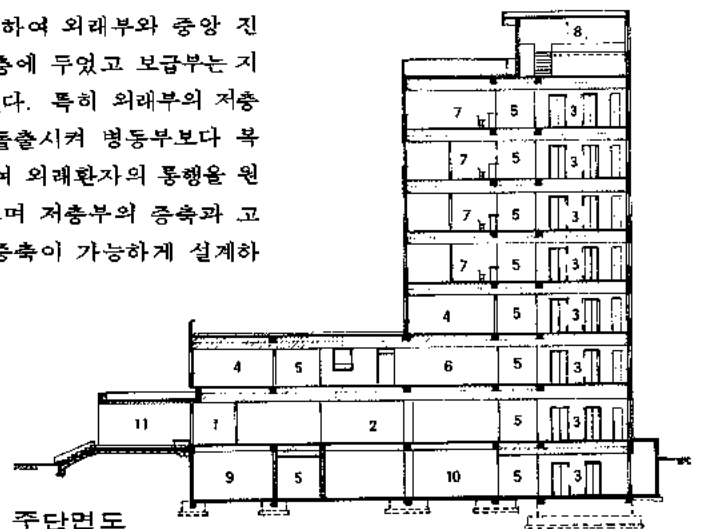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대지면적 : 7,849㎡  
 건축면적 : 1,461㎡  
 연면적 : 7,806㎡  
 규모 : 지하 1층 · 지상 7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設計概要

인구 50만의 성남시에 위치한 이 병원은 지역주민과 공업단지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정부시책에 따라 건립된,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현대식 종합병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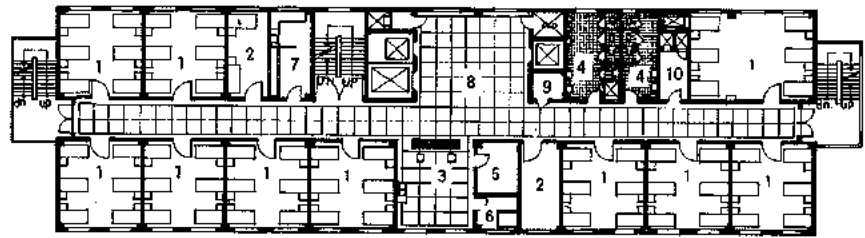
따라서 설계자는 기본계획에서 立体

集中形式을 택하여 외래부와 중앙 진료부를 1·2층에 두었고 보급부는 지하로 배치시켰다. 특히 외래부의 저층을 전면으로 돌출시켜 병동부보다 복도를 넓게 하여 외래환자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저층부의 증축과 고층부의 병동 증축이 가능하게 설계하였다.



● 기준층평면도: 4, 5, 7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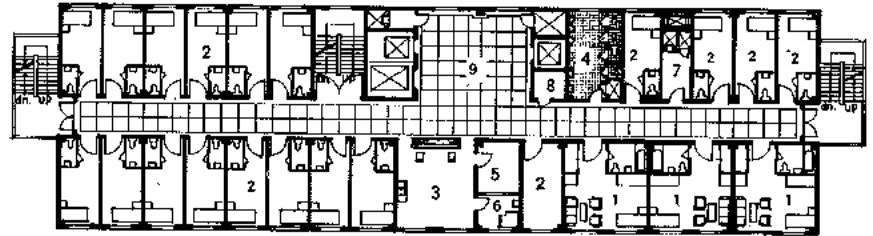
- 1 - 6인방실
- 2 - 2인방실
- 3 - 간호원실
- 4 - 화장실
- 5 - 부속실
- 6 - 욕조실
- 7 - 세면실
- 8 - 에레베이터홀
- 9 - 창고
- 10 - 린넨처리실



기준층평면도

● 6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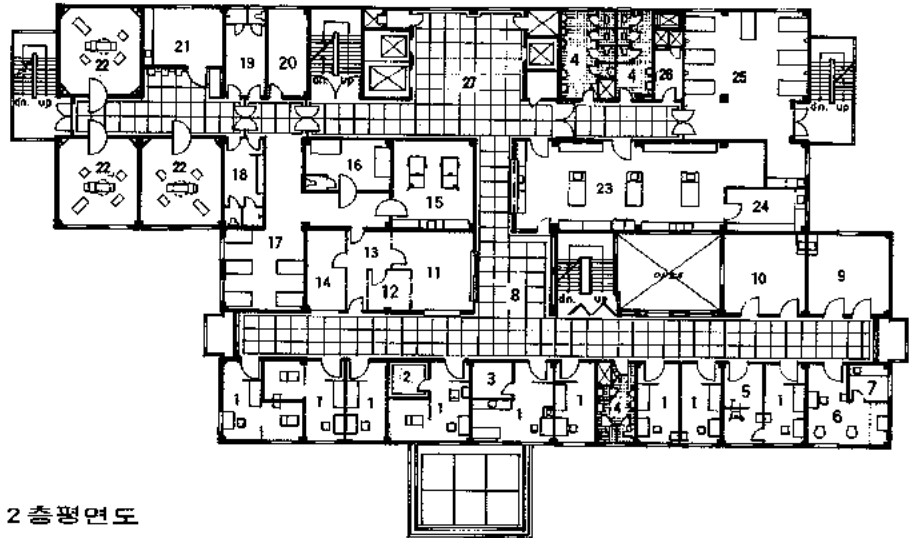
- 1 - 복실
- 2 - 1인방실
- 3 - 간호원실
- 4 - 화장실
- 5 - 부속실
- 6 - 욕조실
- 7 - 린넨처리실
- 8 - 창고
- 9 - 에레베이터홀



6층평면도

● 주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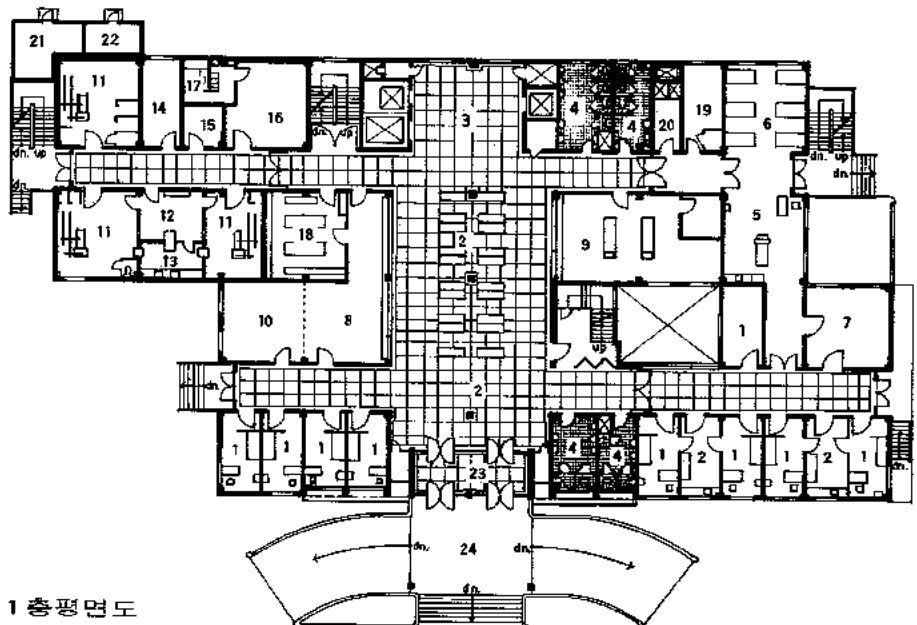
- 1 - 현관
- 2 - 로비
- 3 - 에레베이터홀
- 4 - 진찰실
- 5 - 복도
- 6 - 외래환자대합실
- 7 - 간호원실
- 8 - 에레베이터기계실
- 9 - 물리치료실
- 10 - 창고
- 11 - 포취



● 2층평면도

- 1 - 진찰실
- 2 - 창력실
- 3 - 암실
- 4 - 화장실
- 5 - 방광경실
- 6 - 치과
- 7 - 가공실
- 8 - 외래환자대합실
- 9 - 내시경실
- 10 - EKG, EEG
- 11 - 신생아실
- 12 - 조유실
- 13 - 간호원실
- 14 - 미숙아실
- 15 - 분만실
- 16 - 진통실
- 17 - 회복실
- 18 - 간호원실
- 19 - 의사실
- 20 - 마취과
- 21 - 준비실
- 22 - 수술실
- 23 - 검사실
- 24 - 세척실
- 25 - 중환자실
- 26 - 린넨처리실
- 27 - 에레베이터홀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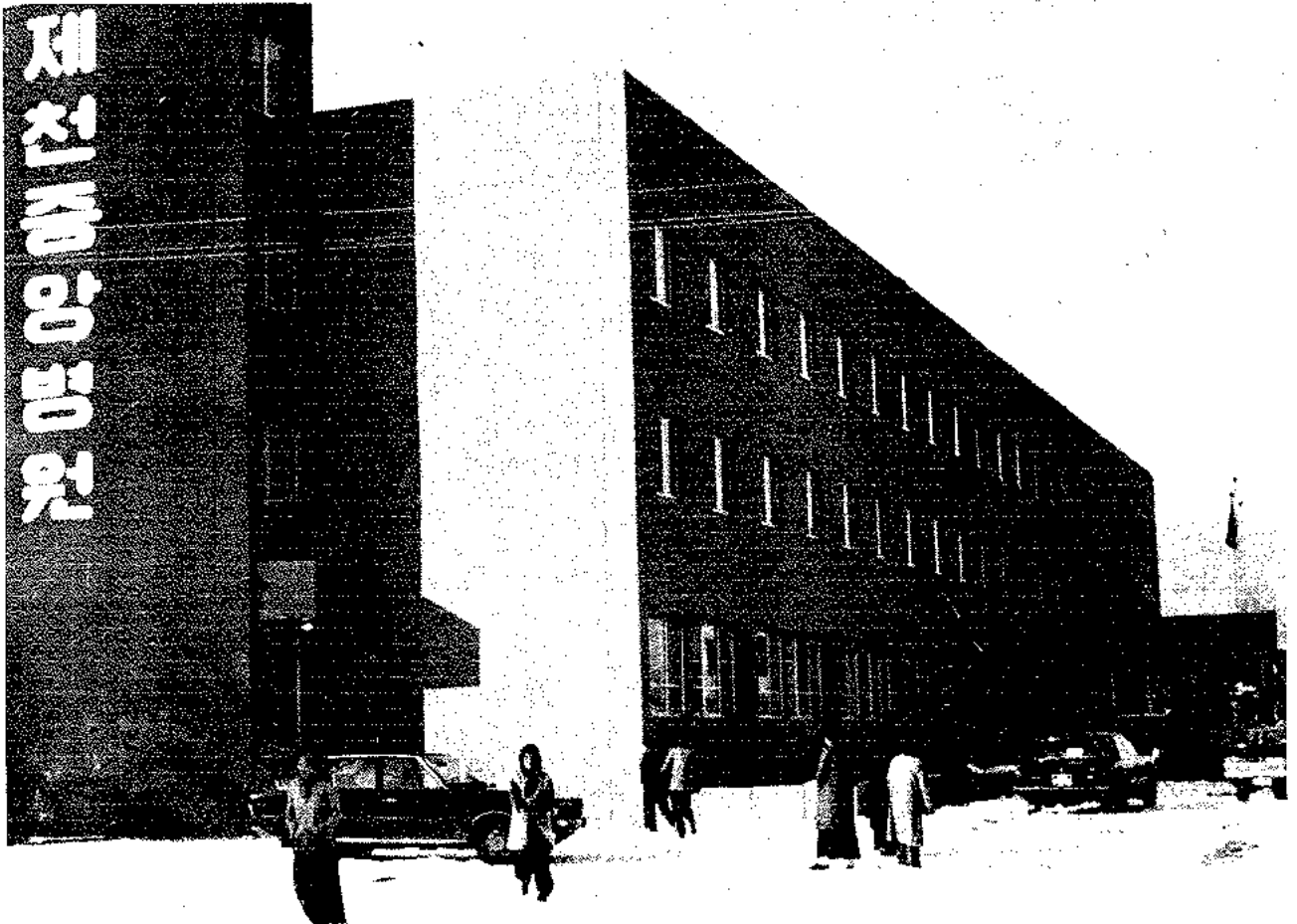
1층평면도

# 의료법인 제천 중앙병원

成 河 哲一 명성건축 / 건축사

JECHEON CENTER HOSPITAL

Sung, Ha Chul—Myung Sung Architect & Associates / Architect



소 재 지 : 충북 제천시 고압동

대지면적 : 10,762.88㎡

건축면적 : 1,30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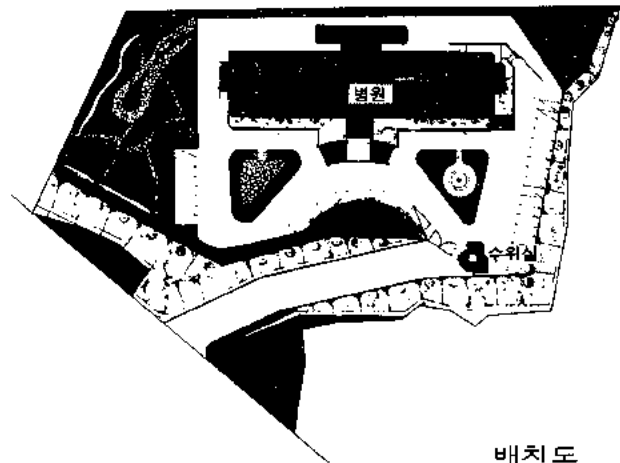
연 면 적 : 4,614.76㎡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 設計概要

이 병원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의료보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키 위해 교외 한적한 야산에 80病床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하였다.

병원의 관리·운영을 능률적으로 정상화시킴으로써 환자의 진료업무를 개선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1·2층에는 외래 및 중앙 진료시설을 두어 진료에 여유있는 공용스페이스를 할애했으며 3층에는 병동부를 계획하여 장차 100病床까지의 증축을 고려하였다.



배치도

- 3층평면도
- 1 - 1인병실
- 2 - 2인병실
- 3 - 남자화장실
- 4 - 여자화장실

- 2층평면도
- 1 - 대수출실
- 2 - 소독실
- 3 - 간호로카
- 4 - 의사로카
- 5 - 회복실
- 6 - 산부인과
- 7 - 공조실
- 8 - 창고
- 9 - 남자화장실
- 10 - 여자화장실
- 11 - 안과
- 12 - 육실
- 13 - 검사실
- 14 - 영실
- 15 - 도서의국
- 16 - 소회의실
- 17 - 육실·병소
- 18 - 휴게실·방
- 19 - 원장실

- 1층평면도
- 1 - 투시실
- 2 - 입실
- 3 - 촬영실
- 4 - 관독실
- 5 - 보관실
- 6 - 원무과
- 7 - 기록실
- 8 - 교환실
- 9 - 남자화장실
- 10 - 여자화장실
- 11 - 창고
- 12 - 내과
- 13 - 내과
- 14 - 심전도실
- 15 - 위내시경실
- 16 - 주사실
- 17 - 일반외과
- 18 - 일반외과
- 19 - 정형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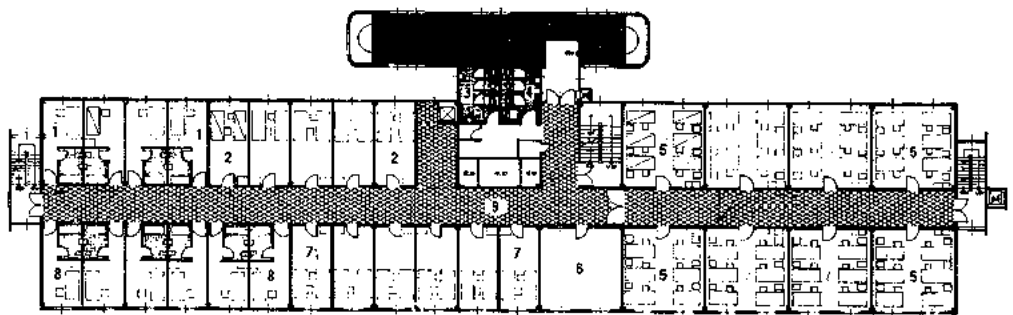
- 지하층평면도
- 1 - 식료품창고
- 2 - 냉동창고
- 3 - 주방
- 4 - 휴게실·방
- 5 - 영양사
- 6 - 창고
- 7 - 린넨창고
- 8 - 전기실
- 9 - 빗데리실
- 10 - 변전실
- 11 - 부검실
- 12 - 시체실
- 13 - 냉동실
- 14 - 분할실

- 5 - 6인병실
- 6 - 간호원실
- 7 - 2인병실
- 8 - 1인병실
- 9 -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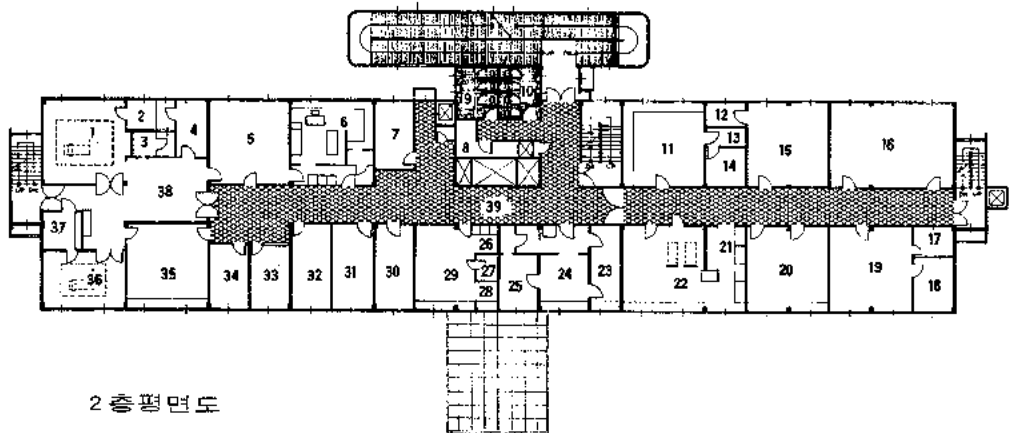
- 20 - 건강관리과
- 21 - 기재소독실
- 22 - 중앙급탕실
- 23 - 방광경실
- 24 - 비뇨기과
- 25 - 결노실
- 26 - 대기실
- 27 - 무음실
- 28 - 검사실
- 29 - 이비인후과
- 30 - 간호과장실
- 31 - 마취과장실
- 32 - 진통실
- 33 - 미숙아실
- 34 - 신생아실
- 35 - 분만실
- 36 - 소수출실
- 37 - 소독실
- 38 - 홀
- 39 - 복도

- 20 - 정형외과
- 21 - 기브스실
- 22 - 대기실
- 23 - 홀
- 24 - 수직실
- 25 - 응급실
- 26 - 기압원실
- 27 - 신경외과
- 28 - 약제창고
- 29 - 조제실
- 30 - 약국
- 31 - 접수실
- 32 - 서무과
- 33 - 기초대사내과
- 34 - 창고
- 35 - 임상병리과
- 36 - 재활물리요법
- 37 - 소아과
- 38 - 대기실
- 39 - 복도 및 홀
- 40 - 펄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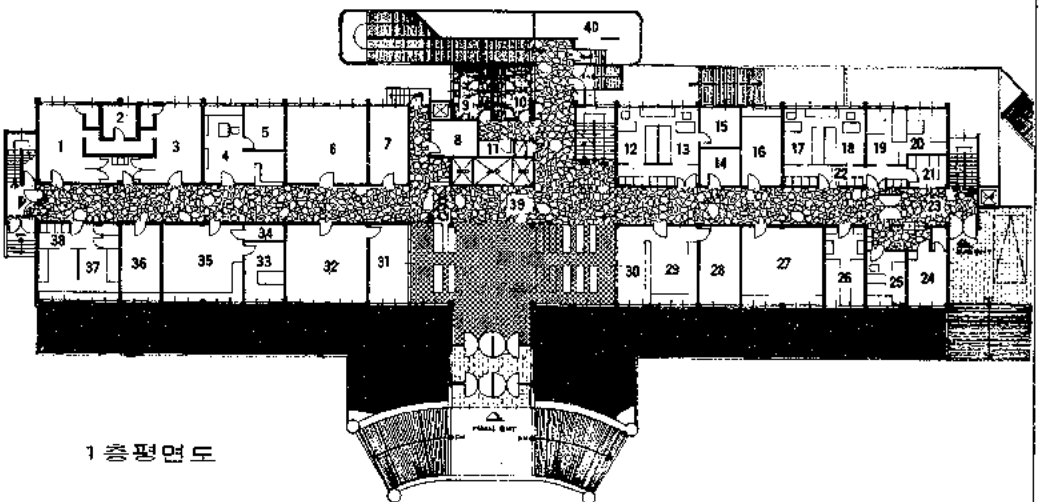
- 15 - 화장실
- 16 - 소각장
- 17 - 계단실
- 18 - 전실
- 19 - 영유탱크
- 20 - 펌커C유탱크
- 21 - 보일러실
- 22 - 창고
- 23 - 감시실
- 24 - 창고
- 25 - 세탁실
- 26 - 재봉실
- 27 - 린넨실
- 28 - 식당
- 29 - 정수물탱크
- 30 - 식수물탱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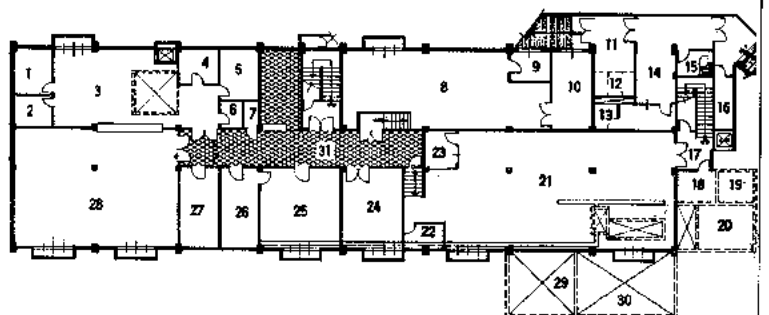
3층평면도



2층평면도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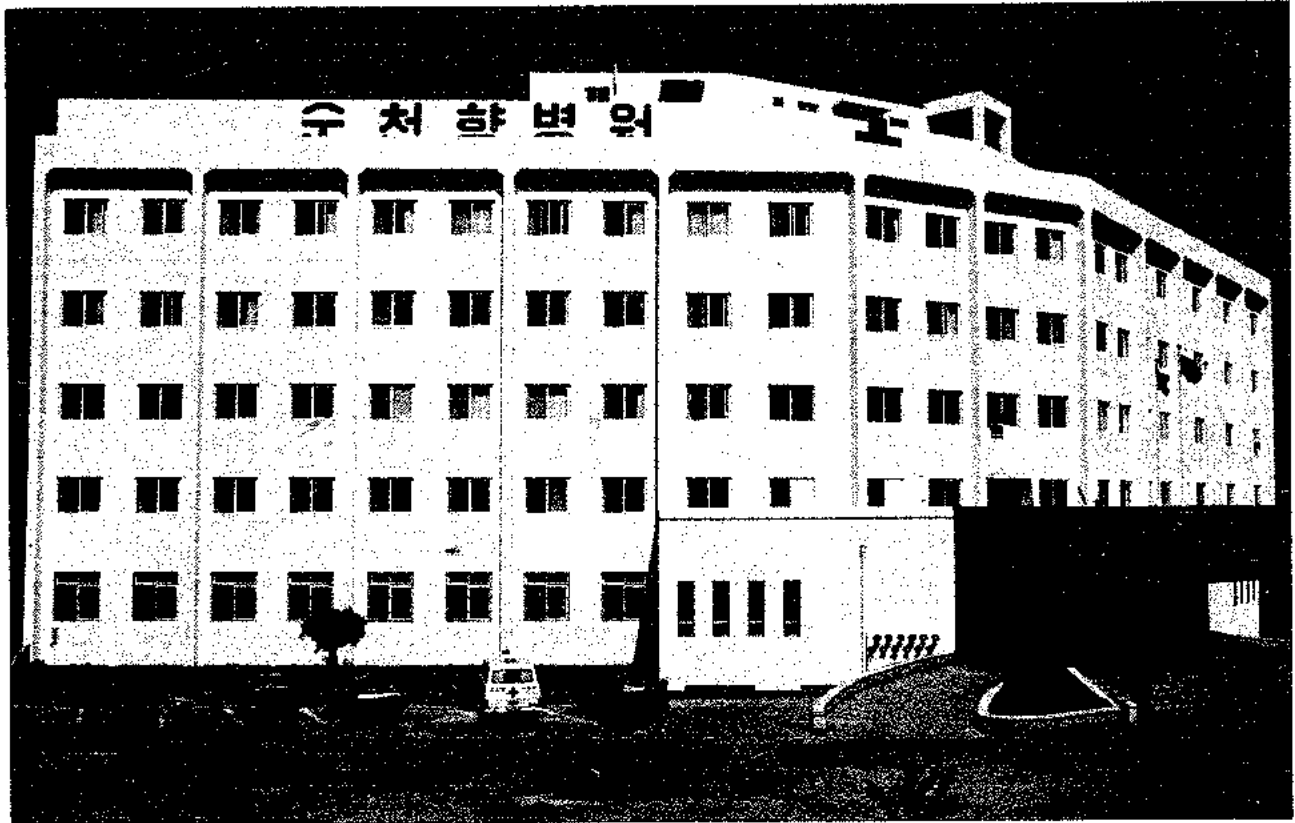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 순천향 천안병원

李 元 澤 — 권익건축설계사무소 / 건축사

SOON CHUN HYANG HOSPITAL

Lee, Wan Taick — Kuen Ik Architects & Engineers Association / Architect



소 재 지 : 천안시 봉명동 23의 20

대지면적 : 6,148.50㎡

건축면적 : 1,381.76㎡

연 면 적 : 7,958.13㎡

규 모 : 지하 1 층 · 지상 6 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설계담당 : 안 의중 · 지 중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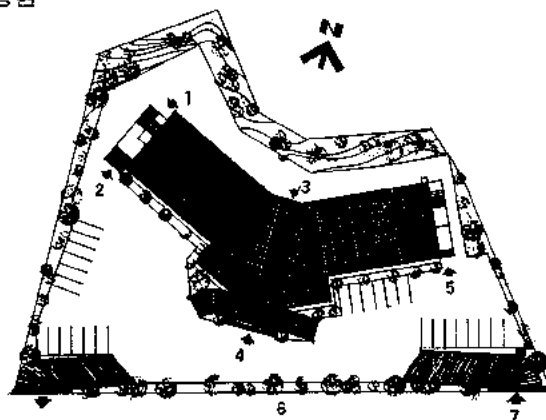
## ◆ 設計概要

본 병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지역병원 건립계획에 의거, 의료시설이 부족한 충남 서북부 일대 및 이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외래환자의 이용 동선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외래부를 1층에 배치하였고 임상병리·X-Ray室·주사실 등은 각과가 공동으로 이용토록 하였으며 접수 및 약국을 환관 대합실에 위치케 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였다. 또한 간호단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병동부를 배치하였고 동선을 독립시켜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외래직원의 동선을 분리시켰다.

###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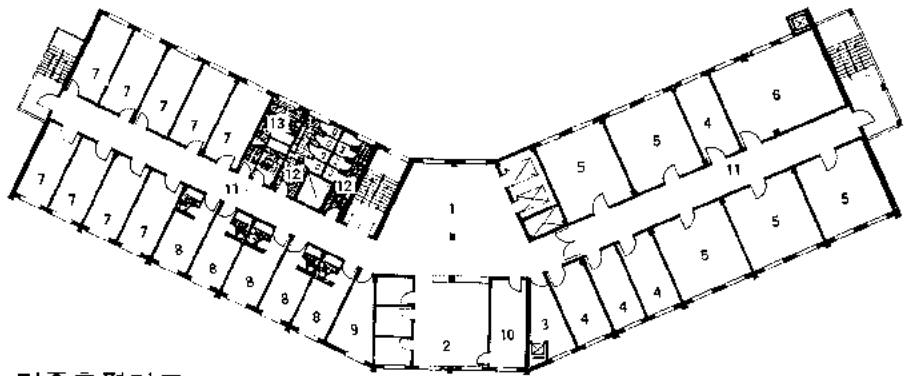
- 1 - 열안
- 2 - 응급
- 3 - 비상
- 4 - 외래(일반)
- 5 - 기능
- 6 - 주도로
- 7 - 주입구



배치도

● 기준층평면도

- 1 - 홀
- 2 - 간호과
- 3 - 배선실
- 4 - 3인실
- 5 - 6인실
- 6 - 8인실
- 7 - 2인실
- 8 - 1인실
- 9 - 약국
- 10 - 처치실
- 11 - 복도
- 12 - 화장실
- 13 - 욕실



기준층평면도

●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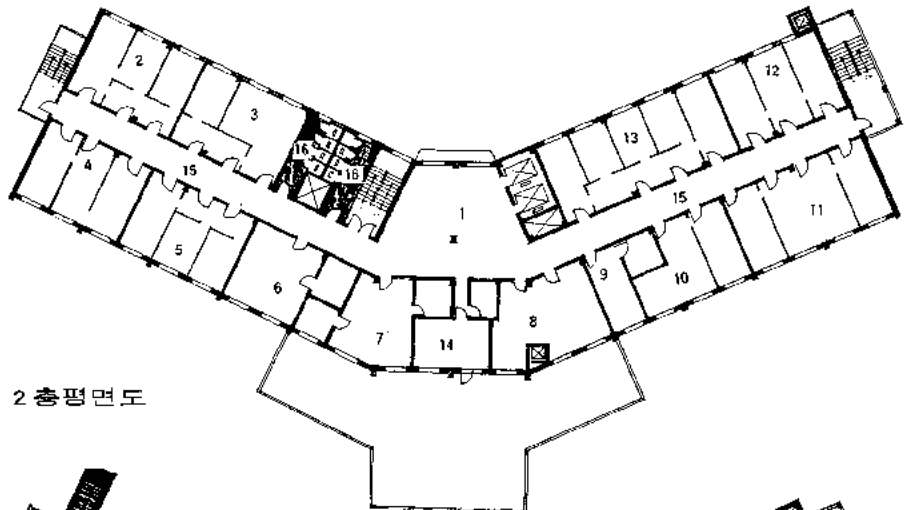
- 1 - 홀
- 2 - 대기실
- 3 - 문안실
- 4 - 진통실
- 5 - 신생아실
- 6 - 격리실
- 7 - I.C.U
- 8 - 마취과
- 9 - 최복실
- 10 - 석고실
- 11 - 수술실
- 12 - 준비실
- 13 - 의사실
- 14 - 간호실
- 15 - 복도
- 16 - 화장실



3층평면도

●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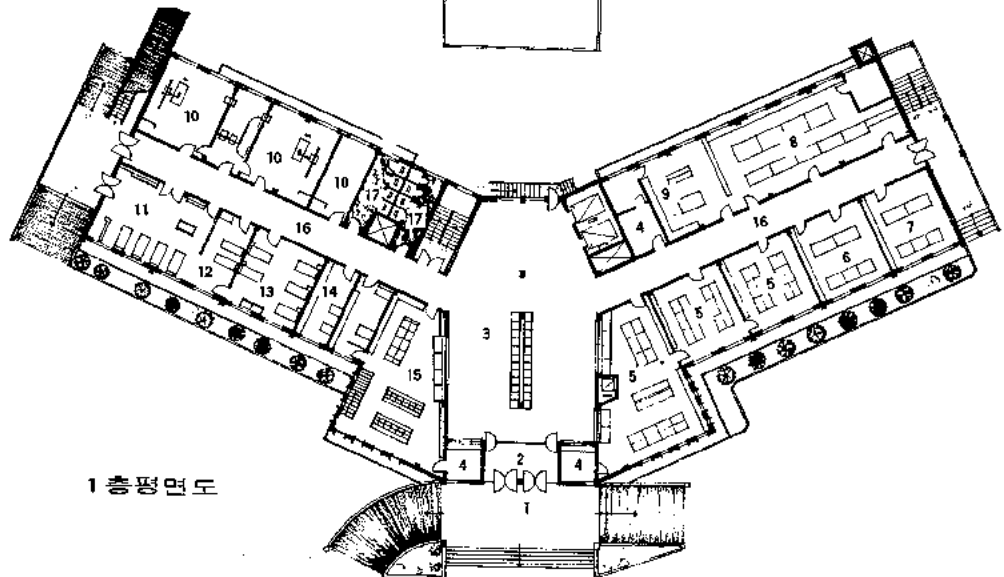
- 1 - 홀
- 2 - 피부과
- 3 - 비뇨기과
- 4 - 소아과
- 5 - 산부인과
- 6 - 이비인후과
- 7 - 안과
- 8 - 치과
- 9 - 신경정신과
- 10 - 위종실
- 11 - 내과
- 12 - 외과
- 13 - 상결장형외과
- 14 - 교합실
- 15 - 복도
- 16 - 화장실



2층평면도

● 1층평면도

- 1 - 포치
- 2 - 방독실
- 3 - 홀
- 4 - 수납
- 5 - 원무, 사무, 서무
- 6 - 간호과
- 7 - 건강관리과
- 8 - 검사실
- 9 - 혈액은행
- 10 - X-레이실
- 11 - 응급실
- 12 - 주사실
- 13 - 중환자실
- 14 - 판독실
- 15 - 약국
- 16 - 복도
- 17 -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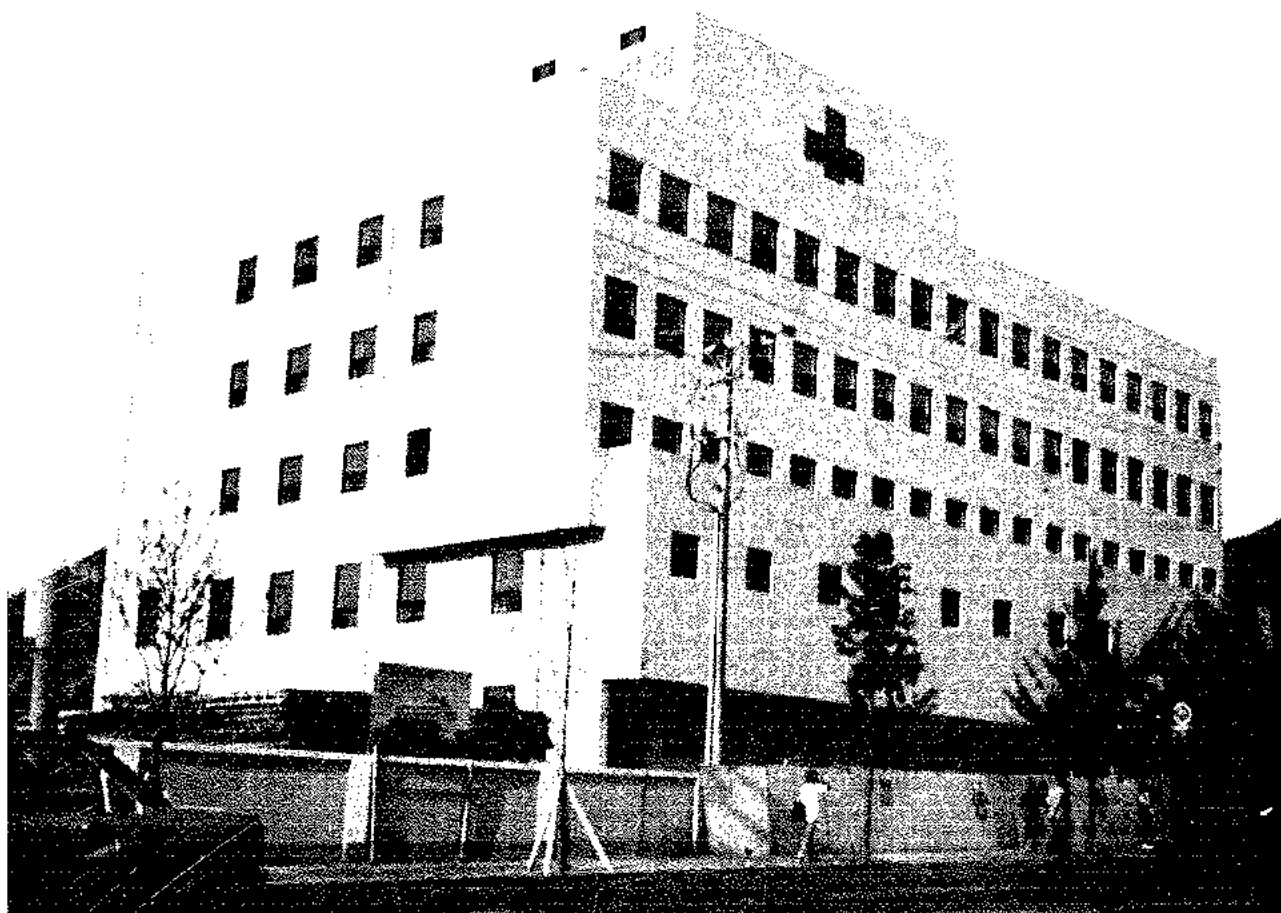
1층평면도

# 동래 광혜병원

金 伸 宰 - 서강건축설계사 / 건축사

DONG RAE KWANG HYEI HOSPITAL

Kim, Shin Jae - Seo Kang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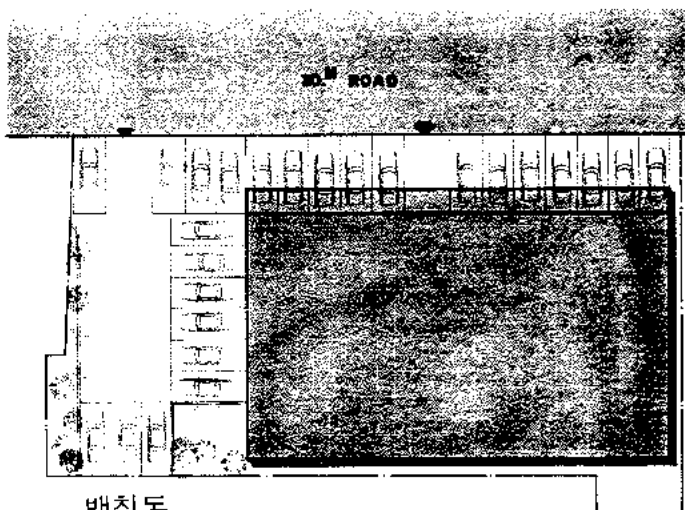


## ◆ 設計概要

도심지에 소형 종합병원을 설계하여 본다.

부지길이에 비해 비교적 폭이 넓은 편이어서 블록타입을 채택하여 외래환자는 저층부에, 병동부는 상부층에 두어 동선을 분리시켰다. 또한 각 병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중복도식 편복도로 하였으며 중앙의 코어 부분 앞에 간호실을 두어 환자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였다.

외관은 용도를 고려하여 단순하고 청결한 백색타일을 선택하여 보았다.



배치도

소재지 : 부산직할시 동래구 은천동  
 대지면적 : 1,361.60㎡  
 건축면적 : 760.74㎡  
 연면적 : 4,779.85㎡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15-식품창고
- 16-교합실
- 17-여자강의실
- 18-남자강의실
- 19-중앙공급실
- 20-공무과
- 21-전기발전실
- 22-장화조
- 1층평면도
- 1-접수
- 2-통목·약국
- 3-응급실
- 4-의사당직실
- 5-외래검사실
- 6-정신신경과
- 7-여자화장실
- 8-남자화장실
- 9-방사선촬영실

- 10-기상실
- 11-암실
- 12-화장실
- 13-방사선과장실
- 14-초음파진단실
- 15-접수실
- 16-수납
- 17-로비
- 18-기계실
- 19-소아과
- 20-산부인과
- 21-내과
- 22-외래주사실
- 23-외과
- 24-정형외과
- 25-신경외과
- 2층평면도
- 1-수술실

- 2-수술준비실
- 3-회복실
- 4-간호원실
- 5-중환자실
- 6-임상병리과
- 7-혈액원
- 8-건강관리과
- 9-여자화장실
- 10-남자화장실
- 11-마취과장실
- 12-남자탈의실
- 13-여자탈의실
- 14-화장실
- 15-샤워실
- 16-복도
- 17-기계실
- 18-분만실
- 19-진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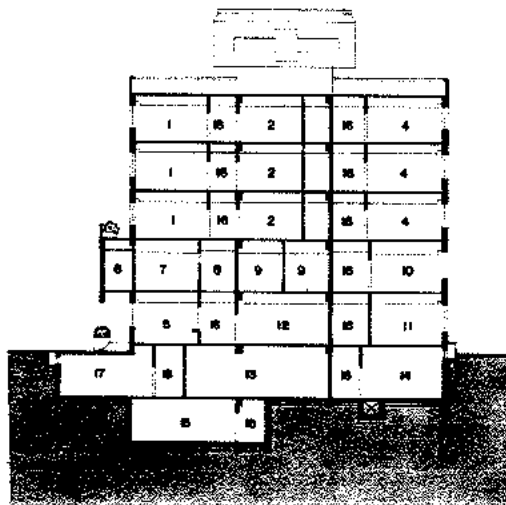
- 20-신생아실
- 21-치과
- 3, 4, 5층평면도
- 1-5인병실
- 2-4인병실
- 3-2인병실
- 4-5-1인병실
- 6-휴게실
- 7-중환자실
- 8-치치실
- 9-세면실
- 10-수간호원실
- 11-간호원실
- 12-여자화장실
- 13-남자화장실
- 14-침소부실
- 15-배식실
- 16-복도

- 주단면도
- 1-5인병실
- 2-치치실
- 3-수간호원실
- 4-중환자실
- 5-접수실
- 6-준비실
- 7-회복실
- 8-마취과장실
- 9-화장실, 샤워실
- 10-분만실
- 11-주사실
- 12-수납계
- 13-식당
- 14-여자강의실
- 15-참고
- 16-복도
- 17-의무기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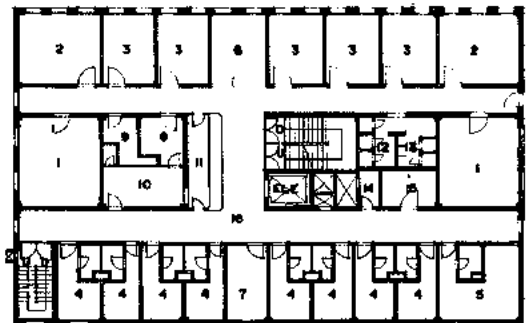
● 지하 1층평면도

- 1-간호과(영양실)
- 2-의무기록실, 원우과
- 3-약제과
- 4-기획실
- 5-총무과
- 6-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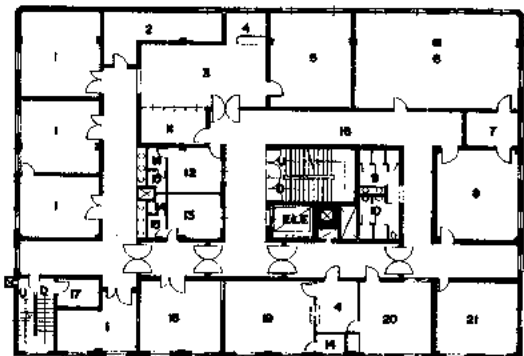
- 7-주방
- 8-식당
- 9-매점
- 10-약품창고
- 11-물리요법실
- 12-의공실
- 13-까스실
- 14-직물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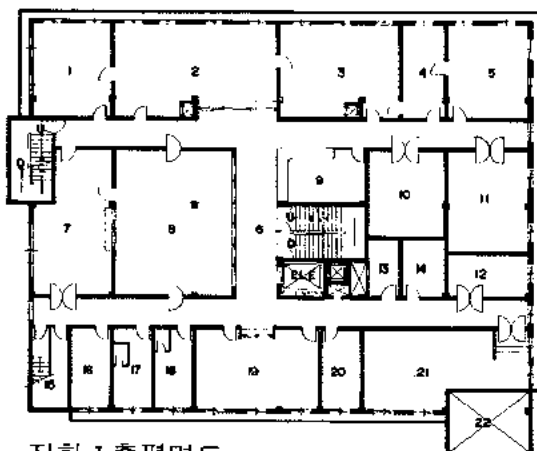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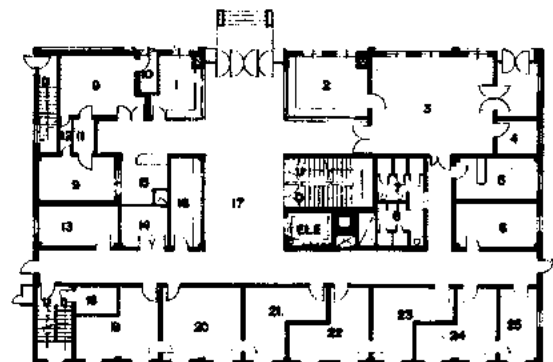
3, 4, 5층 평면도



2층평면도



지하 1층평면도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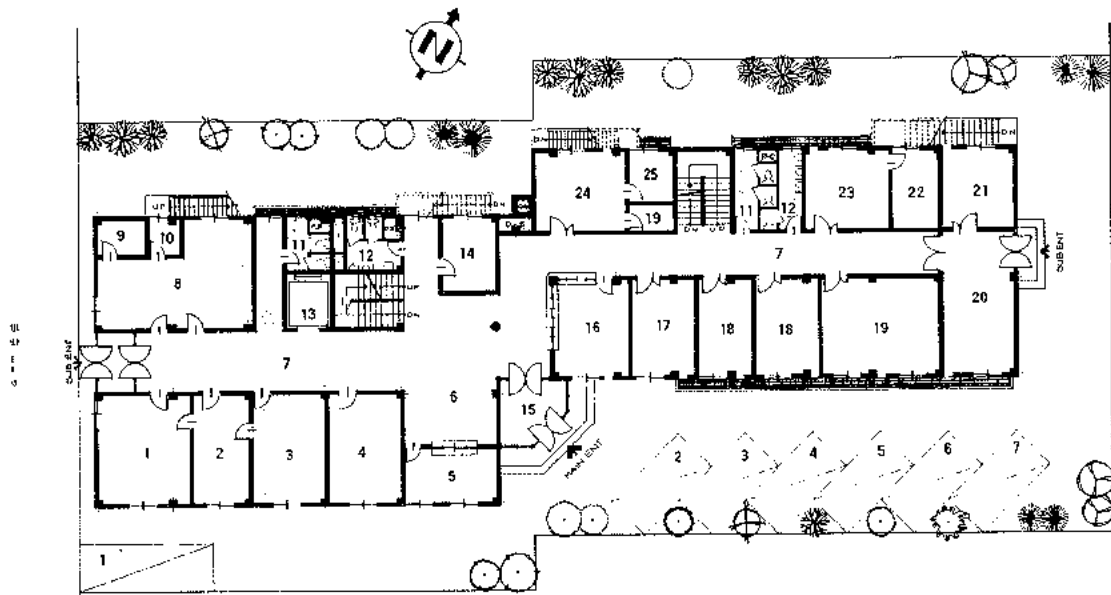


# 가야병원

李 珍 煥 - 대륜건축설계사무소 / 건축사

## KAYA HOSPITAL

Lee, Jin Hwan - Dae Ryun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배치도 및 1층평면도

소재지: 서울 강남구 방배동 99  
 대지면적: 1,318㎡  
 건축면적: 644.21㎡  
 연면적: 2,501.8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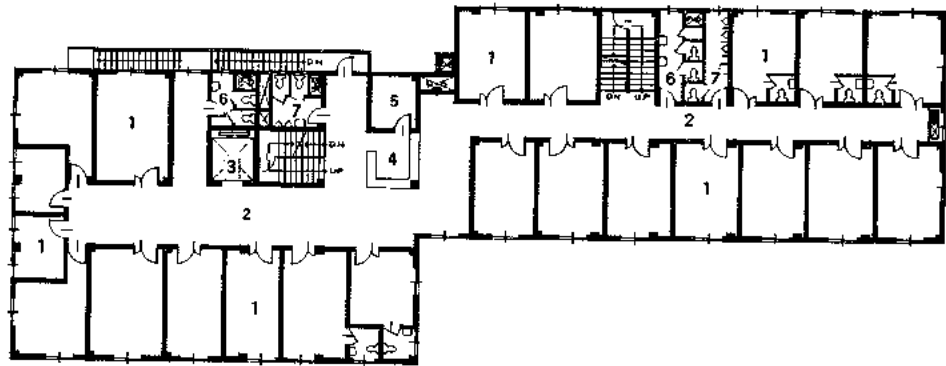
### ◆ 設計概要

1차 증축된 이 건물은, 최초의 계획에서는 증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증축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어떤 건축물이나 마찬가지로 평면적인 증축이 될 경우 동선처리에 많

은 애로를 느끼게 된다. 특히 병원과 같은 건축물에서는 기능면에 지장을 초래할 요소가 산재하여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해결하여 운영과 관리가 편리한 병원을 계획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다.

#### ● 3층평면도

- 1 - 입원실
- 2 - 복도
- 3 - 승강기실
- 4 - 간호원실
- 5 - 찜질실
- 6 - 여화장실
- 7 - 남화장실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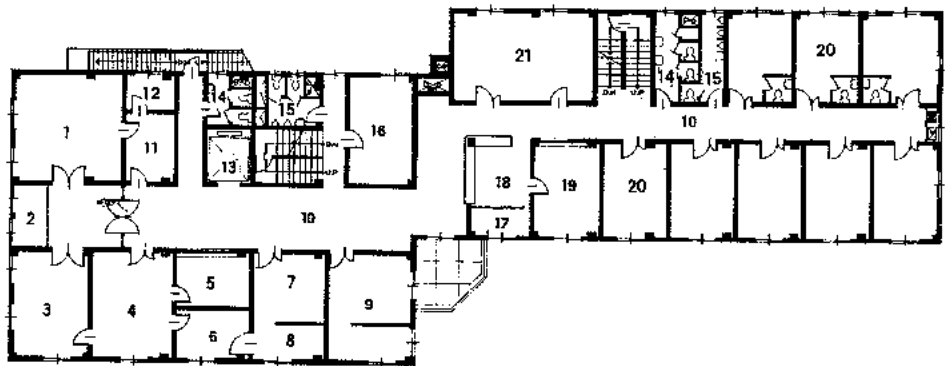
#### ● 배치도 및

##### 1층평면도

- 1 - 정형외과
- 2 - 처치실
- 3 - 외과
- 4 - 소아과
- 5 - 약국
- 6 - 대기실
- 7 - 복도
- 8 - X-RAY실
- 9 - 암실
- 10 - 화장실
- 11 - 여화장실
- 12 - 남화장실
- 13 - 승강실
- 14 - 주사실
- 15 - 환관
- 16 - 원무수납실
- 17 - 신경외과
- 18 - 내과
- 19 - 검사실
- 20 - 흉급실
- 21 - 화복실
- 22 - 기공실
- 23 - 치과
- 24 - 이비인후과
- 25 - 과장실

#### ●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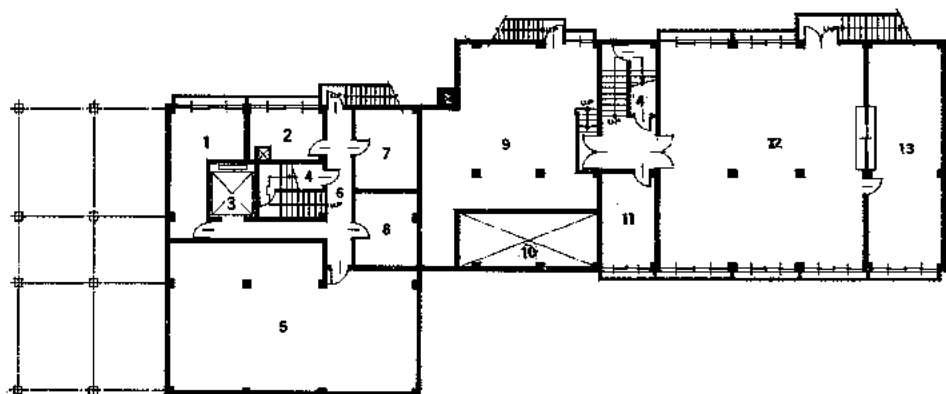
- 1 - 수술실(1)
- 2 - 강의실
- 3 - 수술실(2)
- 4 - 중환자및회복
- 5 - 미숙아부속실
- 6 - 미숙아실
- 7 - 분만실
- 8 - 분만대기실
- 9 - 산부인과
- 10 - 복도
- 11 - 중앙공급실
- 12 - 소독실
- 13 - 승강실
- 14 - 여화장실
- 15 - 남화장실
- 16 - 원장실
- 17 - 찜질실
- 18 - 간호원실
- 19 - 신생아실
- 20 - 입원실
- 21 - 소아과병실



2층평면도

#### ● 지하층평면도

- 1 - 열현실
- 2 - 사무실
- 3 - 승강기실
- 4 - 창고
- 5 - 약품창고
- 6 - 복도
- 7 - 대기실
- 8 - 전기실
- 9 - 보일러실
- 10 - 유통크실
- 11 - 교환실
- 12 - 식당
- 13 - 주방



지하층평면도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동병원

金 希 洙 · 李 彰 斗 (현신건축기술공사) · 金 光 文

YOUNG DONG HOSPITAL OF YONSEI MEDICAL CENTER

Kim, Hie Soo · Lee, Chang Doo (Hyun Shin Architects & Engineering) · Kim, Kwang Moon



소재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5  
대지면적: 23,801㎡  
건축면적: 3,706.16㎡  
연면적: 21,744.24㎡  
규모: 지하 2층 · 지상 9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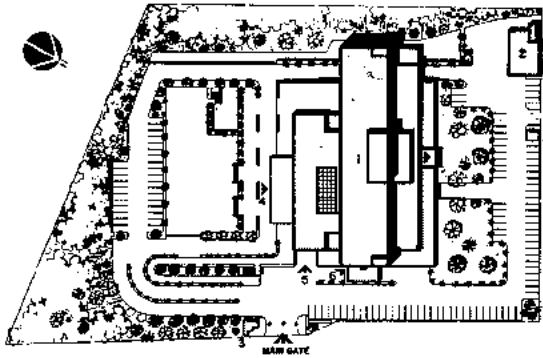
본 병원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2차진료병원(500病床)으로서 감

실체육단지 서남쪽 5Km지점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기둥스팬 6.6m×6.6m 모듈화와 외벽은 P.C판넬을 사용하여 여유있는 공간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주현관홀 상부의 Top Light, 기준층 복도 양끝의 Day Room 등 평면구성에서 모든 거실에 대한 자연채광을 고려한 점과, 공원과 인접한 대지조건을 이용, 최대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환자의 요양을 위한 쾌적한 분위기 조성에 주안점

을 두었다.

독일차관에 의해서 건설된 본 병원의 설계과정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독일 Joint Consulting Group인 Lippes Meier 설계사무소와 수차례의 설계협의 및 승인을 거쳐 이루어 졌으며 최신 의료장비 및 시스템을 한국실정에 적합하게 도입시켜 지역의료시설로서의 역할은 물론 88년도 세계올림픽대회의 지원시설로서의 일익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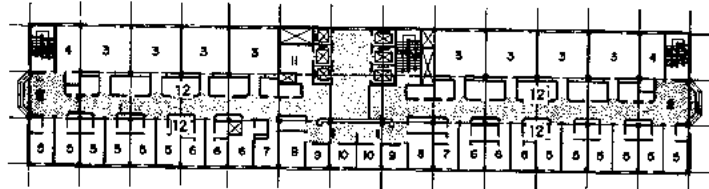
● 배치도

- 1 - 병원본건물
- 2 - 간호원실
- 3 - 수위실
- 4 - 주출입구
- 5 - 입, 퇴원자출입구
- 6 - 응급환자출입구

배치도

● 기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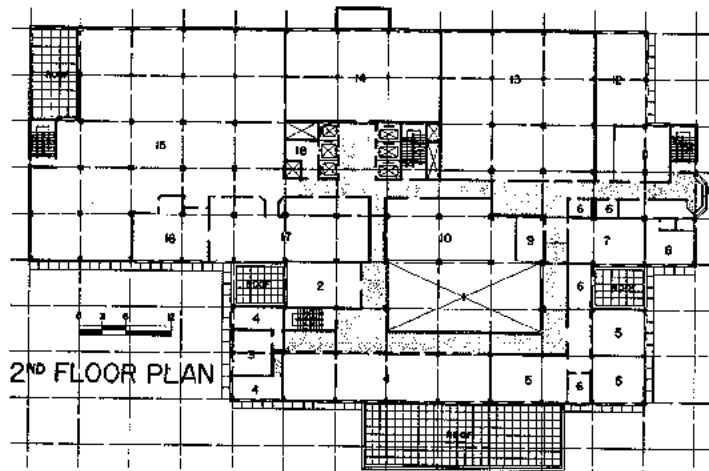
- 1 - 간호원근무실
- 2 - 휴게실
- 3 - 6 인실
- 4 - 3 인실
- 5 - 2 인실
- 6 - 1 인실
- 7 - 의사실
- 8 - 처치실
- 9 - 작업실
- 10 - 수간호원실
- 11 - 배선실
- 12 - 욕실 및 화장실



기준층평면도

●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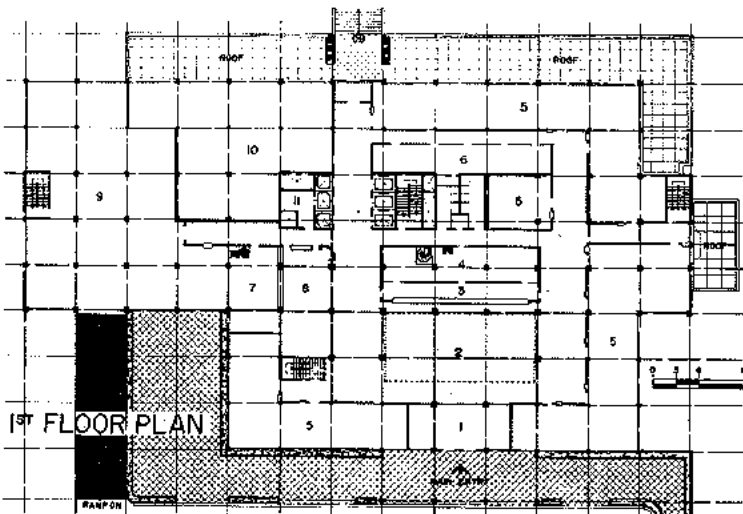
- 1 - OPEN
- 2 - 회의실
- 3 - 라운지
- 4 - 과장실
- 5 - 교실
- 6 - 화장실
- 7 - 도서실 및 회의실
- 8 - 원장실
- 9 - 간호부장실
- 10 - 일반사무실
- 11 - 교련실
- 12 - 조직검사실
- 13 - 문만실
- 14 - 중앙소독공급실
- 15 - 수술실
- 16 - 회복실
- 17 - 응환자실
- 18 - 배선실



2층평면도

● 1층평면도

- 1 - 전실
- 2 - 로비
- 3 - 수납실
- 4 - 의무기록실
- 5 - 외래환자실
- 6 - 기능검사실
- 7 - 무약실
- 8 - 대기실
- 9 - X-레이실
- 10 - 종합촬영실
- 11 - 배선실



1층평면도



## 會員設計作品 및 原稿接受

〈원고 마감 매월 10일까지〉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건축사”지가 날로 그 면모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새롭고 보다 뜻있는 회지 발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 작품 및 기타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있기를 바랍니다.

### 1. 會員設計作品

- ☐ 대상 : 최근 1년 이내에 완공된 작품
- ☐ 요령 : ① 드래싱지에 잉킹된 도면 / 배치도 · 평면도 · 단면도 등 (室名은 따로 기재할 것)
- ② 사진은 전면사진 2매, 실내사진 3매 이상으로 선명한 것 / 설계자 인물사진 1매
- ③ 설계개요는 원고지 (200자) 3매 이내
- ☐ 기타 요령은 회지회원작품면 참조

### 2. 기타 原稿

- ☐ 내용 : 研究論文 / 時評 / 評論 / 經營 / 기타
- ☐ 길이 : 원고매수는 제한없음 / 1회원고 길이 원고지 (200자) 30매 정도

#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Ⅱ)

## 組織의 役割

자료: 田中 清著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에서

서구적인思潮와 技術을 모체로 하여 서기 1885년부터 1895년 사이에 발생했던 설계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서기 1935년경까지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거의가 아틀리에의 경영의 원맨 컨트롤에 의해 존재했었다. 당시의 제벌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사무소라 할지라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거기에는 경영적 개념을 토대로 한 조직과 체계는 있었지만, 建築主는 페이트런(Patron)이었고 소장은 선생격인 보스였으며 직원은 어시스턴트 또는 제자로서 인간적·제도적인 연대관계에 있었다.

그후 제 2차 세계대전의 격화로 인하여 政府·軍關係 또는 軍需企業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규모를 피하여 일부 사무소는 기업적인 경향으로 변모하였고 아틀리에의 사무소는 서기 1945년대 후반까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후 한때 進駐軍施設建築에 대한 협력요청에 의해서 활발해진 설계사무소 업무는, 빛나간 업무활동의 是非는 차치하고서라도 커다란 제질적 변화를 이루어 부흥기를 맞이하였으며 '그것이 새로운 高度經濟成長期였다.

이상의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표면적으로 하나의 비약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설계사무소 현황은 실질적인 存在基盤에 있어서도 戰前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변화하여 온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그 변화에 대한 長短点·功罪를 비교하여 볼 때 조직과 경영, 조직과 직원의 人위에 관계되는 문제의 근본을 찾는 작업이 순서일 것이다.

### 1. 組織上的 變化

(1) 대규모 건축의 증대에 의한 기업적 규모의 대형사무소 출현. 거기에 따른 설계사무소의 일반화된 영업행위

(2) 설계사무소와 건축가의 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동시에 건축가 지방 학생의 급격한 증가

(3) 모색적 단계에서 보인 경영·조직의 근대화 및 합리화로의 탈피경향

(4) 기술적인 진보의 스피드 업(Speed-up)에 대응하기 위한 각 관련분야와의 전문적 연계수법의 진보발달

(5) 조직력·자본력을 배경으로 한 大建設業者의 영업·기술적인 추세 부상

(6) 일본의 설계사무소와 건축가들의 實力高揚에 따른 국제적 활동의 전개와 높은 평가

(7) 국내 교통기관의 발달과 情報化時代의 필연적 경향으로 영업성과 지역성의 無限定化. 거기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경합 격화

(8) 건축관계법령의 복잡화·엄격화에 따른 고도의 전문화 요구

(9) 고도화·복잡화 아래에서는 설계감리업무를 적용시킬 수 없다는 일반사회·건축주의 인식과 경제적 평가의 모순

(10)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교양과 문화의 未成熟으로 인한 연발판스의 노출

이상의 변화가 오늘날 프로페션으로서의 건축가들이 갖고 있는 고뇌를 증대시키는 원인과 관계된다.

프로페션의 존재는 社會動向에 따

라서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오늘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 경제우선주의가 文化와 人心을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일본인 다수의 정신상태와 생활에서 나타나듯 세상에 부상하자마자 하막세를 보이고 있는 未成熟의 民主主義社會의 자세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과도기에 처해 있다.

다음은 업무에의 対応理念과 자신의 능력에 따른 지향성에 의한 선택의 기준에서 오는 차이의 문제. 그리고 組織論의 전개를 위해 편의상 中型事務所에 목표를 두고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 2. 組織의 基本條件

(1) 組織集團의 자격으로 우선 이념과 職能에 대한 높은 정열이 밑바탕에 존재하여야 한다.

(2) 조직구성을 중심으로 하여 人間의 集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개의 관계가 理解와 張力(Tension)으로 긴밀히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3) 특히 조직의 존재에 의해서 전개의 효율과 업무의 정확도가 상승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얻어서는 안된다.

(4) 완전한 조직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용과 전문능력을 독점하여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능이 뛰어나야 한다.

(5) 조직은 만들어지지만 단순하지 않으며, 관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조직의 長(소장 또는 경영간부)이 임의로라도

人材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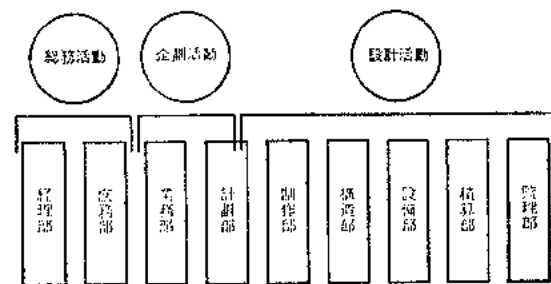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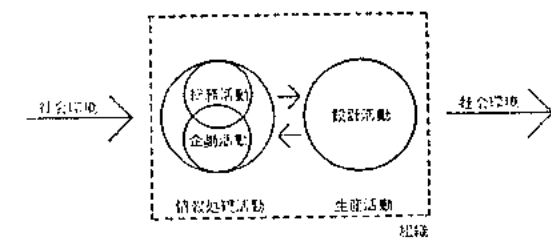
(7) 조직은 시대와 함께 진화한다.  
또 조직은 그 목적에 부응하여 構築  
하지 않으면 안된다.

### 3. 設計事務所の 組織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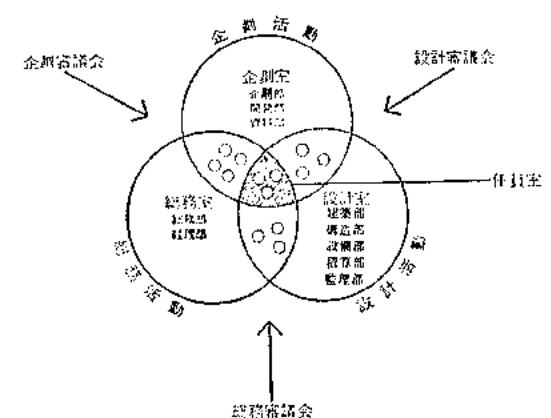
설계사무소 경영에 있어서의 조직  
활동은 總務活動・企劃活動・設計活  
動의 3가지의 기능에 의해 지배된다.

사무소 경영의 성과는 이 3가지 그  
룹활동이 합쳐자므로서 이상적으로 얻  
을 수 있다.

다음은 某有力事務所의 組織圖를 인  
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모델 1 : 設計事務所の 組織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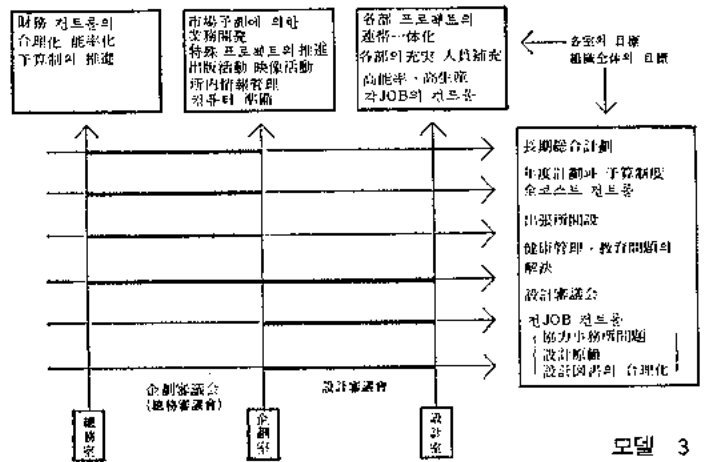


모델 2 : 組織의 骨組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 (1) 각각의 기능이 2개씩 融合되어 심의  
회로 나누어져 평가 (Evaluation)
- (2) 3개의 기능이 오버랩 (Overlap) 하여  
任員會가 되어 결정 (Decision)
- (3) 기획・총무・설계와 같은 각각의 기능  
영역이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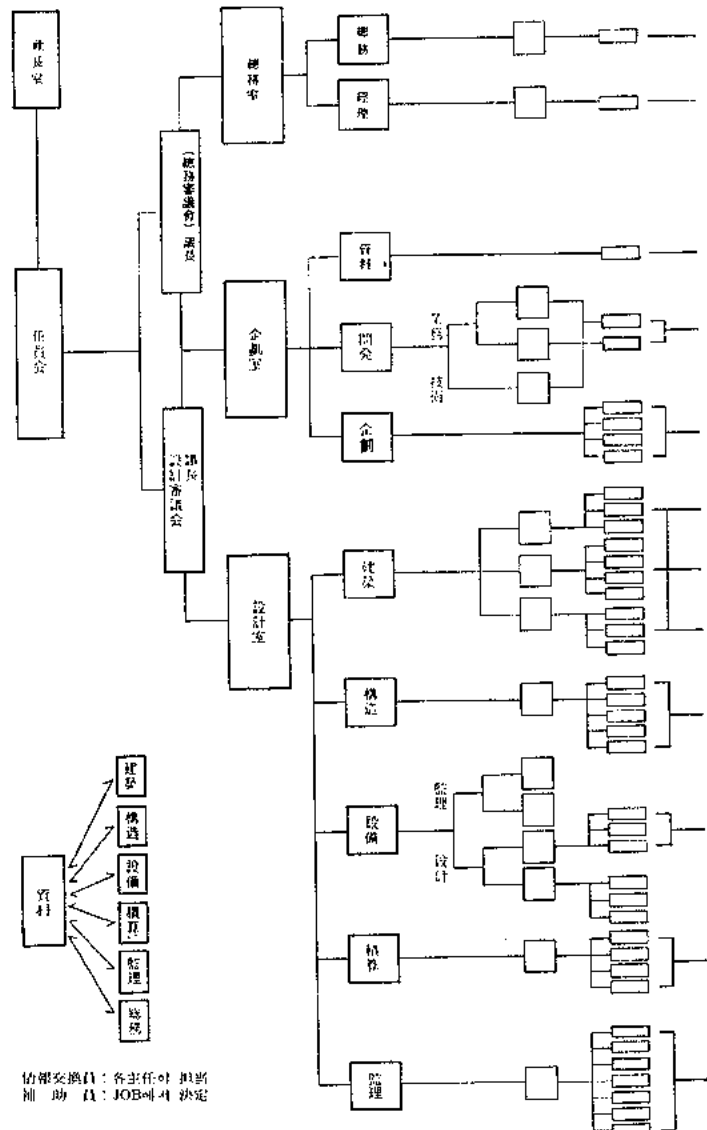
즉 행동 (Action)



모델 3

목표를 명확히 한다.

조직활동은 명확한 定義로서 이루어진 目  
표群의 총계에 의해서 성립된다. 목표群이  
란, 즉 조직전체의 목표, 총무・기획・設計  
各室의 목표, 그리고 그 가운데의 각 그룹  
의 목표, 각 개인의 목표 등이다.



情報交換員: 各主任의 担当  
補 助 員: JOB에서 決定

註: □ 部長 ○ 部長補佐 ▢ 主任

組織의 人員配置圖와 情報交換圖 (左下)

#### 4. 組織과 個人

조직의 一員으로서 자신의 存在理由를 표현하는 것은 경영자와 직원을 불문하고 모두의 공통된 과제이며, 또 개인자격으로서의 직업관·인생관의 문제와 관련되는 일이기도 하다.

직원을 그 예로 들면 건축에의 정열과 일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理念과 方法을 추구하는 것이 조직의 역할이며 教育·訓練의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수한 조직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능력과 인격이 前提로서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조직의 모델과 士氣(의욕)의 高揚을 목표로 침체와 저하를 방지하는 제반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정열을 가지고 소장자 직원이 일체가 되어 일에 임하여야 한다.

(2) 건축가로서의 올바른 營業姿勢를 堅持하여야 한다. 설계사무소에 있어서의 영업목적은 自社の 존재의식을 높이고 사회·건축주와의 신뢰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와 기획을 업무에 결부시켜야 한다.

(3) 僱傭受注의 배제. 僱傭은 직원 모델의 저하, 경제환경의 악화를 초래한다. 그 하나의 예로 직원 생활조건 압박과 사기를 저하시킨다. 또 同業事務所 사이에 불신이 발생하며 自社の 신용과 평가를 손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4) 연간 實勤務回數의 下限(損益分岐點)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경영자는 노력하여야 한다. 실은 이러한 조건을 커버하는 것은 안이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악질적인 방법으로 僱傭受注를 일삼는 일부 사무소가 존재하여 건축계에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러한 수단은 자기희생을 동반함과 동시에 他社에도 영향을 끼친다.

(5) 이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矛盾이나 相剋을 견디어내야 하며, 프로페션에 적합한 경영조직체를 형성하여 수주업무에 대한 선택능력을 길러야 한다. 無差別의인 수주에 의해서 점차적인 경영을 유지하려는 것은 모래 위의 누각 격이므로 피해야 한다.

(6) 組織內的의 경우 건축가교육·전문

가교육 또는 목표설정에 의한 조사·연구의 시스템 등, 교육·훈련의 기회를 만들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창조적 사고와 적극적인 의욕을 유지하여, 간부나 직원은 조직의 士氣를 지속시키는 중심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조직의 역할은 共通目的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어떤 방법을 규정하여 개인의 능력을 고도로 발휘케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 集團의 힘에 의한 상승효과를 좀더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개의 약점을 상호보완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은 단순히 내부를 규제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으며 조직자체를 형성하는 개인도 사회조직의 一員으로서, 또는 그 가운데의 한 그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조직은 사회와의 連帶에 의해서 존재하므로 그와같은 사실을 잊고서는 사회로부터의 容認도 承認도 기대할 수 없다.

개인이 조직에 기대하는 것은

(1) 업무를 통한 전문가로서의 성장 경험과 그 기회

(2) 프로페셔널로서의 생활의 자립과 향상

(3) 組織內와 社會에서 인식하고 기대하여 주는 전문가 능력과 자신의 프라이드 요구

(4) 자신이 추구하려는 건축의 창조에 대한 더 좋은 환경과 조건 요구

(5) 더 좋은 그룹 속에서 자기완성을 원함

개인이 조직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1) 조직에 의해서 개인의 존재이유와 존재가치를 인식하게 한다.

(2) 그와같은 경우 직무에 대해서 일정레벨 이상의 직책을 수행하게 되며 조직역할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

(3) 조직 가운데의 연계능력(상승효과를 높이는 능력 등) 및 지도능력(리더쉽)

경영자가 해결해야 할 개인과 조직의 관계

(1) 개인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組織人으로 하여 개인 talents를 평가-사무소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중요하다.

(2) 조직으로서의 책임과 명예, 개인

으로서의 책임과 명예 혹은 신용·신뢰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3) 人材의 유기적 조직화 또는 교육·훈련방법을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추진하여 향상시킬 것인가.

(4) 업무영역의 확대·변화와 개인능력의 적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適材適所의 개념과 조직상의 요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5) 경영관리자와 기술자, 전문가와의 價值體系 비교, 処遇評價의 연구

#### 5. 組織과 人材

조직은 사회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비즈니스로서 성립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신용·지원·자본 등의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組織內部에 있어서 人材가 우선이라는 것은 누차 말한바 있다.

人材로는 조직을 유도하고 통솔하는 인재, 조직에 융화하여 조직력을 키우는 인재, 조직 가운데에서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 업무를 취급하고 소화시키는 인재 등이 있다. 그러한 예를 보더라도 사람의 힘은 개개의 존재에 의해서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같은 생각에서 오늘의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해 내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나 고도화된 전문지식을 체득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과 자신의 의식과 노력에 의하여 素材로서 평가받는 사람과는 커다란 개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생각할 때 학교차·학력차·교수진과 학생의 질의 관계, 혹은 學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여실히 감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일류대학을 보더라도 인재배출에 있어서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一流校와 二流校, 一流素材와 二流素材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교육환경·가정환경·본인의 노력과 재능의 차이가 集積되어 결과로서 나타나는 한 사실이라 하겠다.

다음은 시대풍조에 따른 오늘날 설계사무소의 人事構造상의 변화를 살펴본다.

#### 6. 組織·人事上的의 構造變化

(1) 건축가 지방생의 증가로 인해 필



연적으로 전문가능력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量的으로 몹시 차이가 나는——이익만을 앞세운 건설업자에 의해 생산되는——건축물과 혼재하여 있는 都市建築群은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건축에 대한 평가를 불가피하게 한다.

(2)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수한 人材를 필요로 한다. 특히 근대화·합리화에 따른 사무소 조직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정착되고 확장되는 건축활동에 만족하여 반드시 자주독립을 최종목표로 삼는다.

(3) 조직·인사관리기술이 주목을 받는 시대에서, 内部單位로는 취업규칙 등이 정비되었고 직원협의회·사원조합이 용인되었다. 그리고 國家單位로는 年金法·노동기준법에 의한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戰前에서부터 延長線上에 있던 自由職業人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어느 정도 組織從屬型職業人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

(4) 프로페션의 이념과 모순에 의해 발생한 組合이 주로 대형사무소의 일부에 결성되어 설계사무소의 모체로서 공존하는 것은 是非濫觴을 불문하고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경제우선의 사회적 풍조와 민주주의에 의한 권리의식의 獨走에 의해 자칫하면 勞動者的 觀念에 빠지기 쉬우며 쉬운 예로 엘리트意識을 상실할 염려가 있다.

(5) 조직의 대형화 경향과 稅制의 불합리에 의해서 법인조직에 의한 설계사무소로의 移行이 증가하고, 형태나 意識까지 변혁을 꾀하는 현상, 즉 積極營業에 의한 競合現象 등이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이나 개인의 개념변화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후 사이에 발생하여 근후에는 지나친 변모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건축가 세계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어떠한 유동적 상황의 방법으로 변형되는 알 수 없다.

조직의 위기를 피하고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방안은 人材를 양성하여 우수한 人材를 확보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뛰어난 재능을 확보하여 조직의 양상과 확립을 표현하여야

한다.

필자 자신에게도 그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으며 다만 하나의 이미지로서 構想을 표현하는 방법 밖에 도리가 없다. 그 하나가 個人經營의 소규모 사무실이다.

소규모 사무소라 할지라도 최소한 불가결적인 경영기능은 필요한 것이며 어디까지나 소장 개인의 책임에 의한 운영과 능력, 신용의 범위에서 외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경영이 행해져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이다.

(1) 소장의 경영능력과 전문가능력의 범위 내에서 건디야 내야 한다. 또 소장 자신의 대외적 평가와 대내적 신뢰가 그 활동범위를 한정시키는 요소이다.

(2) 濫存하여야 할 人材와 내보내야 할 人材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각 직원의 성격과 특장을 파악하여 본인의 자질·능력에 합당한 지도를 성의껏 하여야 한다.

(3) 신뢰로서 이루어진 協力事務所나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연계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하나의 어소우시에이트(Associate)로서의 조직에 의한 경영이 있다.

이 조직은 既成概念이 가지고 있는 共同經營과는 작은 차이의 의미가 있으며, 대등한 입장이거나 직무권한에 의한 共同化組織은 아니다. 때문에 법인조직에 가까운 계통화된 조직형태 가운데에서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企業法人의 조직에 있어서는 경영진 가운데에 株主經營者가 있고 종업원이 있어 혼성적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어소우시에이트의 경우는 경영자 선원이 주주경영자인 점이 다르다.

물론 어소우시에이트의 조직에도 경영자와 직원의 지위 구별은 존재하지만 직원이 합의에 의해 경영자로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는 일반법인과 같이 개방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은 우수한 인재를 집결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본다.

(1) 조직의 中心存在인 경영자의 경영능력·전문가능력·인간적 매력 등을 종합하여 비상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하다.

(2) 조직운영(업무운영·인사운영)에 있어서 계획적인 운영원칙은 계획→실행→관리통제→평가→대책→계획의 순서가 항상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조직구성의 인자로서 인간적인 輔와 기술적인 輔의 조합에 의한 하나의 유닛이 생각나는데, 그 유닛의 集合數에 의해서 전체규모가 결정된다. 즉 個人레벨→小集團레벨→全組織레벨이 개개의 업무 및 全社의業務와 관계되어야 한다.

(3) 조직의 構成分子인 직원의 소질(입사 전)과 교육·훈련(입사 후)의 문제가, 조직전체의 질의 레벨과 장래의 成長性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少數精銳主義를 일관하려는 경우에서도 적은 인원이지만 직원의 교육·훈련을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4) 知性和 프라이드로서 집결된 집단이어야 한다.

프로페션을 지망하는 자는, 사소한 일은 손해를 각오하고 참으며 정신적인 엘리트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본래 엘리트의 진정한 의미는 정신적·인격적인 데에 있다. 따라서 좋은 의미의 프라이드를 자신과 관련시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知性和 프라이드는 연구심과 직무에의 추구심을 자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건축가의 질이 엄격하고 유달리 멀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建築에 대한 愛情에 있다. 따라서 직원교육은 전문교육과 인간교육을 병행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점에 있어서 이윤추구를 최대목표로 하는 기업의 社員教育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5) 조직규모에 적응할 수 있는 經營管理機能이 필요하다.

過大·煩瑣한 기구가 결코 근대적·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조직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외지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원맨 컨트롤方式이 효율적이며, 업무운영에 있어서는 플랜(위원회·심의회 등)에 의한 協議制가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뛰어난 情報管理機能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정보는 경영·영업관계 정보와 기술적·전문적인 정보로 大別되며 조직의 개성 및 경영규모에 적응하여 방향설정과 한계설정을 훌륭하게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 7. 人材에게 활력을 부여하는 조건

조직의 규모나 형태를 불구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개인에게 활력을 부여하는 목적과 조건을 열거하여 본다.

(1) 목표를 명확히 한다. 또 그 목표에 의해서 意義를 자각하게 한다.

(2) 목표달성의 목적과 수단에 관해

서는 기본적인 지도를 해야 하며, 세부실행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주적인 판단과 활동에 맡긴다.

(3)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세가 자기성장과 관계되는 조건 중의 하나이다.

(4) 조직 가운데에서 創意工夫·創造性を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

(5) 개인의 업적이 정당하게 평가되는 기준과 룰(Rule)을 만들어 그것을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 8. 人事考課의 목적과 방법

人事考課의 목적을 大別하면 다음의 2가지이다.

(1) 능력의 육성과 활용

인재배치·교육훈련·인사이동의 기초자료가 된다.

(2) 처우관리의 자료

각 개인의 능력과 공헌도에 대한 평가와 업적에 대응한 임금, 또한 상여금의 기준 평가를 만들어 공정하게 실행할 수 있다.

다음의 모델은 표준적인 예로서 각 개인의 업적평가와 능력평가에 主目標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행동에 관계되는 비평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명쾌하다. 즉 업적에 의한 본인의 프로세스와 결과를 주관점으로 하는 방법이다.

| 勤 務 成 績 考 課 |                                                                             | 이 름                      |                          |
|-------------|-----------------------------------------------------------------------------|--------------------------|--------------------------|
| 業績面         | 구체적인 업적을 채택하여 등급을 올린다.<br>회사의 이익과 관련된 창조력, 야심을 증대시키는 발상, 그 실현에 대한 수완을 채택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業務面         | 실제·감리·대외접촉·사무처리 등의 사업수행 수완을 채택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Staff業務     | 助言·助力·報告·進行 등에 대한 보좌는 철저·양직을 우선으로 함.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經濟面         | 최소한의 시간과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완 여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知力          | 신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洞察力         | 당면한 사태와 관련된 문제로서 사태의 발전·방향 등의 통찰력 여부. 임기응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創造力         | 직무상 필요한 리더십에 불가결한 창조성의 가능성 여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分析力         | 문제의 파악과 관련된 문제, 인식 및 그 輕重의 판단력 여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判斷力         | 進言·결단 및 조치에 대한 선견한 태도능력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管理能力        | 관리자로서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計劃性         | 필요의 예측·목표·방침·수속절차의 확립 등, 기획력에 역점을 둔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組織化 및 權限委任  | 직책을 효과적으로 부하에게 분담시켜 권한을 부여하는 점에서의 능력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指導力         | 공통된 목적을 놓고, 부하에게서 마음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그 일을 부하와 함께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教育訓練統制力     | 부하를 선택하여 평가하고 훈련시키는 능력<br>부하의 직책 범위를 한정시켜 업무태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수정조치를 부여하는 능력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人間關係        | 대인관계는 어떤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協調性         | 회사이익을 목적으로 관계자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P·R性        | 관공서·타회사·지역사회·공중과의 접촉관계에서의 수완 능력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自制力         | 억제에 처했을 때 사태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취급하는 수완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勤 務 成 績 考 課 |                                                                                                                                   | 이 름                      |                          |
|-------------|-----------------------------------------------------------------------------------------------------------------------------------|--------------------------|--------------------------|
| 커뮤니케이션      |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口頭나 書面으로 助言하여 자기와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知識          | 자기 직무상의 지식 및 보조적 지식을 업무에 적용시키는 능력은 어떤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職務上補助的範圍    | 자기 직무에 대한 지식의 정도<br>회사업무에 대한 제반 보조적인 지식은 어떤가.<br>인간 및 사회·경제·정치 등의 지식을 자기 직무와 관련시킬 수 있는 일반적 지식은?<br>직무상의 보조적 지식을 업무에 활용시키는 점은 어떤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活用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綜合評價        | 上記 업무에 관한 각종 요소를 참고로 함과 동시에 본인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고려한다. 그런 다음 업무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기입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評 価       | 備 考 |
|-----------|-----|
| 5 - 우수    |     |
| 4 - 표준 이상 |     |
| 3 - 보통    |     |
| 2 - 보통 이하 |     |
| 1 - 불가    |     |
| X - 불명    |     |

※ 리스트의 사용방법

(1) 직속상사(상계부장·장비부장·총무부장 등) 이상, 소장을 포함한 경영진부가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그것을 종합한다.

(2) 별도로 본인이 자기평가를 附載에 의해서 기입하여 제출한다.

(3) 이상의 방법에 의한 경우 본인의 자기평가는 실제와 20~30%의 격차가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분적인 자기평가가 간부회의 평가와 반대의 결과를 낳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4) 비교원은 상기의 각 항목에 표시하기 어려운 특기사항이나 微評·惡見 등을 기재한다.

(5) 이 표와는 별도로 개인은〈자기개발의 목표〉를 작성한다.

(6) 근무성적 考課의 종합내용의 결과를 본인에게도 알려 대화를 나누고 장래의 지도 지침으로 삼는다.

(7) 1년마다 考課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다.

(8) 업무배치·승진·승급·상여금 등의 점토자료로서 사용한다.

## 건축계 뉴스 / 정보

### 신축건물에 주차·녹지의무화 미관向上 외벽단장도

공항로,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변과 폭20m 이상의 도로변에 신축되는 건물은 전면에 주차 및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건물의 외벽을 단장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공항로 등 주요도로변과 미관도로변의 신축건물의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조례에 새로운 건축 및 조경기준을 마련, 앞으로 발급하는 건축허가에 적용키로 하고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새로운 건축기준에 따르면 상가 점포 등 비주거용의 경우 건물의 후면 배치 원칙을 적용, 반드시 건축선을 후퇴하여 그 앞면에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건물형태는 주변의 기존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관을 꾸미고 골뚝 환기설비 등 옥상구조물은 건물후면에 배치,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벽면은 돌·타일 등 불연재를 사용 건물 품위를 높이되 인접건물과 조화 있는 색깔을 써야 한다.

조경기준은 블록담장대신 높이 1~2m 정도의 나무를 심어 생울타리를 만들거나 불가피할 경우는 투시형 담장을 만들도록 했으며 건물앞에는 반드시 낙엽교목으로 조경하도록 했다.

주거용건물(주택)도 주요 도로변이므로 외관·형태·구조·재료 등을 고급화하고 대문·담장 등 부속시설이 건물

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시에 대문과 담장의 설계도를 첨부하도록 했는데 담장은 생울타리나 투시형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지붕은 평슬라브를 피하고 기와를 얹도록 권장했으며 조경계획서에 수종, 규격, 위치, 수량을 반드시 명기토록 하고 단풍나무나 목련 등 낙엽이 지는 교목을 심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來年부터 新改築 規制 都市設計技法 도입

서울시는 세종로를 비롯한 종로·을지로 등 3개 도로를 국제도시인 서울의 면모를 나타내는 상징도로로 개발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시설계기법을 도입, 명년부터 이 지역에 신축·증축·개축하는 모든 건물은 시의 도시설계도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받게 할 방침이다.

시에 의하면 이를 위해 이미 지난 연초에 한국종합기술개발회사에 1억 2천만원의 용역비를 지불하고 세종로·종로·을지로 등 3개 도로변의 도시설계도 작성을 의뢰,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시안을 완료케 한 예정이다.

시는 시안이 나오는대로 곧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 명년 1월초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도시설계기법은 도로변 전체를 망라한 설계도를 작성, 이 설계도대로 개발을 해나가는 것으로 이 설계도에는 블록별 개발계획(용도규정)을 비롯하여 건물의 위치, 건물의 규모(건폐율·용적율) 등이 상세히 규정되며 특히 도로변의 특성을 부여키 위해 건물의 외양도 위치별로 정해진다.

도로별 적용구간은 세종로는 중앙청에서 남대문까지, 종로는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을지로는 시청에서 을지로 6가까지로 되어 있다.

이 도시설계기법이 적용되면 건물의 신·증·개축시엔 엄격한 통제를 받게돼 행정당국은 도시개발을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8개 生活圈 계획 조사 수도권 등 국토균형개발

건설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인구지방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8개 생활권에 대한 계획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지역기능에 적합한 생활권을 조성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부에 의하면 오는 86년까지 실시될 이들 8개 생활권계획조사는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권·대구권·광주권·전주권·충청권·대백권 및 제주권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제상해 두고 있다.

### 건축사 대행업무 확대 2층이하 3백평미만도

건축물의 허가과 준공에 따른 건축사의 대행업무가 확대됐다.

서울시는 전경 2백평 미만의 단독주택에 한하여 허가 및 준공에 따른 조사와 검사업무만을 대행케 했던 건축사에게 2층 이하에다 3백평 미만의 점포까지 맡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법건물 단속반을 운영, 적발된 건축물은 즉시 철거하고 건축주와 건축사를 연대처벌하기로 했다.

또 건축허가와 준공과 관련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지난 8월24일 이후 건축사가 대행, 처리한 건축물을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다.

### 大型공사 입찰제도 개선 재무부, 회계규정 개정안 마련

설계·시공일괄(턴키방식) 및 代案 등 대형공사의 입찰제도가 더욱 개선된다.

재무부가 마련한 「대형공사 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개정안」에 의하면 최저가격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제를 개선, 입찰금액과 設計点数를 고려한 우수설계 채택위주의 낙찰자 결정 방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입찰자의 과다한 설계비 부담을 경감키 위해 기본설계 입찰과 實施설계 입찰로 분리 시행하여 5인 이내의 기본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후 이들에 대해서만 실시설계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기준결정 이후 공고하여 설계서 및 입찰금액을 附記한 기본설계 입찰을 한 뒤 중앙설계 심사위원회에 설계적격여부를 심의의뢰하고 입찰금액과 설계점수를 고려, 5인 이내의 실시설계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입찰을 하고 다시 설계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했다.

설계시공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기본설계 입찰시 일괄입찰금액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최저인 것부터 5인 이내를 선정, 실시설계 입찰적격자로 하고 실시설계 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서는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괄입찰의 채택여부를 결정해야하며 입찰금액과 설계점수를 통한 평가방식에 의거,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또한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기본설계 입찰에 있어 提案部分에 대해서는 대안부분 입찰금액을 대안부분의 설계점수로 나누어 총 공사 중 대안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原案部分에 대해서는 원안부분 입찰금액을 원안부분 예정가격에 기준한 評点으로 나누어 총 공사 중 원안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자를 합한 수치가 최저인 것부터 5인 이내를 선정, 실시설계 입찰적격자로 한다.

이어 실시설계 입찰에 참가한 자 중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기본설계입찰 때의 평가방식에 의거하여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대안입찰에서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규정에 의한 입찰 중 繼續費工事인 때는 중공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 입찰자를,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제 1차 공사입찰금액과 附記한 총 공

사 입찰금액이 각각 예정가격 이하이고 부기한 총 공사 입찰금액이 최저가격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했다.

그러나 최저가격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85/100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개정되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가격심사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때의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입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했다.

이 개정안은 대안입찰에서 필요한 때는 기본설계 입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기본설계 입찰에는 △대안에 대한 배치도·평면도·입면도·일반단면도 △대안에 대한 설계설명서 △대안에 따른 이점 및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을 제출케 했다.

또 실시설계 입찰에는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대안부분에 대한 설계서·구조제안서 △대안채택에 따른 이점, 기타 참고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 입찰은 △일괄입찰에 대한 배치·평면·일반단면도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설명서 △일괄입찰에 따른 이점 및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을 내야 한다.

실시설계입찰 때는 △설계서·구조제안서 △이점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시하게 했다.

재무부는 이 개정안을 연내 공포할 방침이다.

## 建築大展 개최

대상에 박물관 뺀다

제 1 회 대한민국 건축대전이 문예진흥원 전시장에서 지난 15일부터 막을 올렸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국전에서 분리되어 열리는 첫번째 건축대전으로 건축가협회가 주관이 되어 개최한 것이다.

이번 건축대전에는 모두 45개 작품이 출품, 지난 12일 심사를 거쳐 26개 작품이 입선작으로 뽑혔다. 대상을 비롯한 우수상 3개 작품은 다음과 같다.

□대상= 제목 "박물관(Museum)" 양남철·최운경·이현수 공동작품

□우수상= ① 제목 "민족수난·극복의지·승화" 김문덕·김성기·김성택 공동작품 ② 제목 "맑은물·푸른서울" 홍사엽·김주연·공순구 ③ 제목 "고전과 현대의 만남" 노광현 작품

## 五輪組織委 건물 현상 발표

'88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건물 현상 계획설계 심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총 공모작품 14점 가운데 김 원(건축연구소 광장)·김 기웅(건축설계연구소 삼정:본회회원)·최 관영(종합환경연구소 일건:본회회원)씨 등 공동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국외환은행 본점 4층에서 제출작품 14점에 대한 전시회가 있었다.

한편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공모된 작품 중에서 최우수작이 없어 추후 다시 현상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건축상 마감 박두

전시회 통해 일반에 공개

서울시가 시내의 우수건축물을 선정포상해서 도시미관조성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하고자 추진 중인 '82년도 서울시 건축상 후보 작품 출품 마감'이 오는 10월31일로 닥아왔다.

출품대상은 82년도 준공 또는 준공예정인 건축물 중 본회 및 한국건축가협회, 건축학회가 추천한 작품으로 건축사 설계사무소를 낸 건축사가 제작한 작품으로 한정되어 있다.

금상(1명 부상 1백만원)·은상(2명 부상 각50만원)·동상(3명 각30만원) 작품 등으로 선정되는 이번 건축상의 출품요령은 원공사진 또는 투시도(모형제출은 임의)와 배치도, 평면, 입면, 주단면도, 그리고 건물명, 건물개요(위치·규모·주위환경·기능도등)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하고 규격은 판별(90cm×90cm) 2~5개

## 서울대학교 건축전 개최

서울대학교 82년 건축전이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同校 학생회관에서 열렸다.

82년도 졸업작품전이기도 한 이번 건축전에는 도심교향곡·농촌개발을 위한 제언·한강을 살리자·서울대 기숙사 확장안 등 4학년 56명의 건축과 학생들이 17개 팀으로 나누어 작품을 내놓았으며 2·3학년과 대학원생의 창조작품도 출품되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본회 具琬會회장 및 이사진은



□건축전을 참관하는 具琬會회장과 朴商浩이사

건축전 개막일에 참석하여 화분을 전 달하고 참가 학생들을 격려해 주었다.

정도로 되어 있다. 한편 작품제출시 제출자명 표기는 작품과 분리해서 표기해야 한다.

출품작품은 전시기간을 갖고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 來年 住宅사업 적극 전개 新都市 건설사업도 계속

정부는 명년도 주택 및 도시부문 사업에 총 사업비 3조 8천 152억원을 투입하여 주택 28만호 건설과 21.8km<sup>2</sup>에 달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반월과 파천 등 2개 신도시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중 2차년도인 오는 83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시행해 온 주택건설사업을 집중 건설하여 전국의 주택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무주택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11만호를 건설하고 민간부문에서 17만호를 건설하는 등 총 28만호를 신축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으로는 도시 환경에 역점을 두고 구획정리 16.2km<sup>2</sup>와 재개발사업 3km<sup>2</sup>, 공원설치 기반조성사업 2.6km<sup>2</sup> 및 도로사업 146km를 전개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또 신도시건설사업으로는 수도권공해공장 이전과 인구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공업도시건설은 195만평을 추

가로 조성키로 했으며 간선도로 789아루를 포장키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전원도시로 건설되는 파천 신도시건설사업도 계속 시행하여 오는 84년도에 완공키로 계획하고 있다.

이들 사업 중 주택건설부문에는 총 3조 4천 751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공공부문 11만호 건설에 9천 267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부문 17만호 건설에 2조 5천 484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부문에는 총 3천 401억원이 투자되는데 이중 도시개발 공공시설사업인 16.2km<sup>2</sup>의 구획정리사업과 3km<sup>2</sup>의 재개발사업 등에 484억 7천만원을 계상해 두고 있고 2.6km<sup>2</sup>의 공원설치 기반조성사업에 13억 2천 500만원을 투자하며 도로연장 146km 건설사업에는 588억 500만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신도시건설사업에는 2천 315억을 투자하여 오는 84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인데 이중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에는 1천 191억원을 투입하여 공장건축부지를 비롯한 택지조성 등 195만평을 더 조성하고 간선도로 등 789아루를 확장, 포장키로 계획되어 있으며 파천 신도시 건설사업에는 1천 124억원을 투자하여 중앙관통도로와 우회도로, 택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3차년도인 오는 84년에는 총 4조 1천 547억원을 들여 공

공과 민간주택 등 29만호를 건설하고 구획정리 16.4km<sup>2</sup>, 재개발사업 3.1km<sup>2</sup>, 공원설치 기반조성사업 2.7km<sup>2</sup>, 도로사업 147km와 반월 신공업도시에 195만평의 부지조성과 789아루의 도로포장, 그리고 파천 신도시건설사업을 전개해나가기로 계획하고 있다.

## 獨立紀念館 입지 확보키로 추진일정 등 계획세워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하오 3시 서울 중구 필동 「한국외의 집」에서 첫 이사회를 열고 위원장에 전 광복회 회장 安椿生씨를, 부위원장에 金相吉(광복회 회장), 崔昌圭(순국선열유족회 회장) 兩氏를 선임하는 등 이사 30명과 감사 3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했다.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이사회를 통해 올해 안에 100만평 규모의 기념관 부지를 확보하고 83년 말에 공사를 착수, 8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추진일정을 세웠고 건축·설계·전시 등 각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를 분담할 각계 전문인사로 기획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날 밝혀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총 5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독립기념관은 80년대의 우리 국력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營造物로 1백만평 이상의 넓은 대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독립기념관에는 6·25전란을 포함한 우리 민족의 모든 국난극복사 자료가 아울러 전시되며 이 매지는 정부에서 제공토록 협조요청할 방침이다.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이를 위해 10월 중으로 기획단을 구성, 종합기획·기념비·기념관·전시물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12월까지 각 시설물의 배치, 시설의 규모, 공원조성 등 기본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8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념비와 기념관·광장·공원 등의 설계를 마치며 조경·토목·건축·전기·통신기계 등의 기본설계도 마치기로 했다.

이어 11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전시내용은 오는 12월까지 연대별·사건별·인물별·지역별로 체계화하며 개인·가정·단체·機關所藏史料蒐集運動을 명년 12월까지 적극 전개한다.

해외에 흩어진 자료의 조사와 수집은 정부 및 민간차원 두가지 경로를 통하기로 했다.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업무추진 과정의 모든 계획을 공청회에 붙여 국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으며, 국민성금모금운동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까지 추진위원회가 집계한 건립모금성금은 1백92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독립기념관 추진일정과 추진위원회 기획위원회위원 중 건축부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 □ 추진일정

△입지선정 (82.10) △기획단 구성 (82.10) △基本計劃成案 (82.12) △기본설계 (83.9) △주변토목공사 (83.6월부터) △實施設計 (83.10월부터) △착공 (83.11) △좌공 (86) △전사 내용 확정 (82.12) △전시자료수집 (82.9~83.12) △전시물제작·장치 (83.1~86)

#### □企劃위원(건축부문)

△건축·조경=김 중업·김 원·윤 승중·김 석철·오 휘영·민 경현

## 건축사 거래질서 문란신고센터 활용안내

본회에서는 건축사 업무의 작준비리, 패습인 ①면허대여 ②동업행위 ③설계비 덤핑 ④불실설계 및 감리 등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본협회 및 각 시·도 지부에 <건축사 거래질서 문란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질서의 생활화와 직업 윤리의식 함양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축사 거래질서 문란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정의로운 사회정화 구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사 거래질서 문란 신고서

|                                                                                             |     |     |  |
|---------------------------------------------------------------------------------------------|-----|-----|--|
| 문란유형                                                                                        |     |     |  |
| 문란자                                                                                         | 상 호 | 전 화 |  |
|                                                                                             | 주 소 |     |  |
| 신고내용 - 6 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바랍니다.                                                          |     |     |  |
| 신고자 : (인)<br>주 소 : (전화)<br>198      년      월      일<br>대한 건축사 협회 건축사 거래질서 문란신고 센터(723-9491) |     |     |  |

## 住宅재개발 84地區 해제 서울·부산·마산등 3개도시

정부는 서울·釜山 馬山 등 3개도시에 지정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2백82개지구의 5백53만 4천평 중 84개지구 1백24만 6천평을 해제하고 2개지구 8만 4천평을 추가지정, 고시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 지역이 장기적으로 재개발지구로 묶임으로써 지장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증·개축행위를 완화하고 도심미관상 재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속성있게 조정키 위한 것으로 건설부는 3개시에서 내 주택개량재개발지구조정안을 中央都市計劃委員會에 올려 심의, 확정할 방침이다. 해제될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지구는 ▲서울 三淸제 2지구(鍾路구 三淸동 산 2의 10일대) 등 74개지구 1백16만 8천평과 ▲釜山 동대신동지구 등 8개

지구 6만 4천평 ▲馬山 서성지구 등 2개지구 1만 4천평으로서 이중 전역이 해제될 지구는 36개지구의 60만 3천평, 일부만 해제되는 지구면적은 48개지구 64만 3천평 등이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서 해제되면 각시에서 개발심의에 들어가 무허가건축물이라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제대상이 되면 양성화 되며 위촉됐던 거래도 풀리게 된다.

해제될 주택개량재개발지구의 무허가 주택 및 건물은 모두 1만 4천 2백 17동에 달하고 있다.

한편 건설부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城東구행당동 122일대와 金湖동 317일대 8만 4천평을 주택개량 재개발지구로 추가지정한 계획인데 이 조정안대로 확정되면 전국의 재개발 지구는 2백개지구에 면적은 4백37만 4천평이 남게된다.

## 질의응답

### □ 건축법

- **㉠** 직통계단 설치에 따른 시행령 변경으로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행거리 30미터에서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경우 50미터로 완화되었습니다.
- **㉡** 지하 1층 지상 2층은 R.C조 3층은 조적조인 경우 구조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답** 3층 이상이면 구조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 **㉢** 판매시설이 1,00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선으로부터 4미터를 후퇴하도록 되어 있는바 주차 건물도 이에 해당되어 후퇴하여야 하는지요?  
**답** 경비용 건물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아닌 건축물은 본 건물에 준하여 후퇴하여야 됩니다.
- **㉣** 제 1종 미관지구인데 대지가 도시계획으로 철거되고 잔여대지가 150평인 경우 몇층까지 가능한지요?  
**답** 서울시 건축조례에 자투리 땅인 경우 제 1종 미관 지구는 5층 이하만 허가 가능합니다.
- **㉤** 대지내 통로 규정이 개정 되었다고 하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때는 대지내 통로 폭 3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피난 계단으로부터 공지에 이르는 통로폭도 3미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 주거지역내 40미터 도로변에 접한 대지는 상호 대지간에 일조권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까?  
**답**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하는 대지 상호간에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일단의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 높이 제한은 어느 도로에 준하여 적용합니까?  
**답** 건축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그 대지가 12미터 이상 접하고 그 접한 길이가 대지 둘레의 1/6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 **㉧** 조경 산정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이나 온실 같은 곳은 면적을 얼마나 산정합니까?  
**답** 문의하신 부분에 조경한 면적의 1/2을 인정하며 상업지역내에서는 조경부분 전체를 산입합니다.
- **㉨** 제 4종 미관지구로써 층수 규제가 4층일 경우 대지 고저가 도로변보다 5.0미터 낮아서 4층을 설계할시 도로변에서는 3층이고 대지측에서는 4층일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답** 대지측에서 4층인 것을 적용합니다.  
 도로 4종 (미관지구) 대지 지 1 2 3 4
- **㉩**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치 않고 있는 경우 유효 기간은?  
**답** 허가를 득하여 미 착공상태인 경우 유효 기간은 1년이며 3개월에 한하여 1차 연기할 수 있습니다.
-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통계단의 이격거리 규정이 생겼는데 거리는?  
**답** 직통 계단은 10미터 이상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 자투리대지 완화 대상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자투리 대지도 똑같이 포함됩니까?  
**답** 구획정리 사업 지구로 인한 기존미달대지라도 도시계획 시설 설치로 인한 자투리 대지와 같이 건축기준이 완화됩니다.
- **㉬** 공해 공장의 정의는?  
**답** 건축법상 공해 공장은 환경 보전법에 의한 배출 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입니다.
- **㉭** 중간검사 기준이 완화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종전법에는 기초와 옥상 2차에 걸쳐 받았으나 지금은 기초 1회만 받습니다.
- **㉮** 5층이하 건축물로 여유 공지가 있는 경우 지하층을 설치 하는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요?  
**답** 5층이하 건축물로 법정 공지의 1/8 이상의 여유 공지가 있는 경우는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상주공사 감리대상 건축물은?  
**답**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개층 이상 건축물입니다.
- **㉺** 사선제한의 완화 규정은 없는지요?  
**답**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따라 상업지역인 경우 도로로부터 각각 6미터 이상 후퇴하고 대지 둘레의 1/2이상이 도로에 접한 경우는 1.8배까지 완화받습니다.
- **㉻**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은 얼마 이상의 면적과 층수에

적용 되는지요?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구내통신 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 ☞ 바닥면적 산정시 다스트슈트는 면적에서 제외되는게 옳습니까?

☞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옥상 및 옥외의 배관팩트 및 닥트와 이와 유사한 부분을 말하며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산입됩니다.

- ☞ 기념탑을 건립하는데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 기념탑의 높이 6미터가 초과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인 경우 본인명의로 된 사도인 때와 일단의 대지에 포함되는 부지 연장인 경우 건축허가시 어떻게 다른지요?

☞ 도로는 최소폭이 4미터 이상 되어야 하고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면 건축 가능하므로 전자는 건축선 후퇴후 건축가능하고 후자는 일반소규모 건축은 가능합니다.

- ☞ 지역지구예 주용도가 합당한 건축물의 부속용도로써 용도제한 대상 용도로 건축 가능한지요?

☞ 불가능합니다.

## □ 건축행정

- ☞ 일단의 대지내 주거용 건물 2동이 허가 가능한지요?

☞ 주택은 일단의 대지내 2동이상 가능합니다.

- ☞ 주거지역에 엘, 피, 지 충전소를 설치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 가능하나 기존 엘, 피, 지 건물과의 거리는 시 연료과에 문의하시고 저장 용량 10톤이하로서 지하에 저장 탱크를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 ☞ 복욕탕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제반 규제 조건이 있습니까?

☞ 종전에는 기존 업소와의 직선거리를 규제하여 왔으나 현재는 전지역 거리제한 없이 허가 가능하며 용도 가능지역에만 적합하면 됩니다.

- ☞ 공부상토지와 측량상 토지면적이 상이할 경우 허가 면적 적용은?

☞ 실제 대지면적을 적용합니다.

- ☞ 제척예정지구란 어떤 것인지요?

☞ 구획정리 사업에서 미완료된 땅 측 환지 확정되지 않은 땅으로 건축이 보류됩니다.

- ☞ 도시계획 확인원에 중앙 도매시장이라고 찍혀 있는데 다른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나요?

☞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을 건축하여야 합니다.

- ☞ 지방에 콘도미니엄 허가를 득한 후 서울에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지어 분양하려 합니다. 서울에서 가설 건축물 허가가 가능한지요.

☞ 모델하우스는 전시장으로서 가설 건축물 허가가 가능합니다.

- ☞ 도시계획법 제정 이전의 기존시장을 헐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을 득하여야 합니까?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이전의 시장이라도 증축이나 개축 재축시에는 도시계획사업(시장) 시설결정을 득하여야 합니다.

## □ 주차장법

- ☞ 주차장 면적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 출구와 입구를 분리합니까?

☞ 주차면적이 6,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출구나 입구를 분리합니다.

- ☞ 관람시설인 경우 주차장 대수는?

☞ 서울시에서는 150제곱미터당 1 대입니다.

- ☞ 기계주차로 옥내주차를 계획시 전면 공지는 얼마를 계획하여야 하는지요?

☞ 기계주차의 전면공지는 소형자동차의 경우 9.8미터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 □ 기타규정

- ☞ 단독사무소에서 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단독 사무소에서 단독 주택설계가 가능합니다.

- ☞ 연립주택의 세대별 면적 규모는?

☞ 연립주택은 세대별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합니다.

- ☞ 연립주택 인동간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 서울시에서는 인동간의 거리를 1.25배로 합니다.

- ☞ 콘도미니엄은 용도가 건축법상 호텔입니까? 아니면 여관에 해당됩니까?

☞ 콘도미니엄은 호텔의 용도로 간주됩니다.

- ☞ 아파트 비상 급수시설로 지하수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지하수 용량의 얼마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지요?

☞ 3배 이상입니다.

- ☞ 공동주택의 건물길이의 한계가 있는지요?

☞ 공동주택은 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건물 1동의 길이가 120미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 연면적 1,000평방미터인 건축물을 용도 변경시 건설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대수선을 포함하는 경우의 적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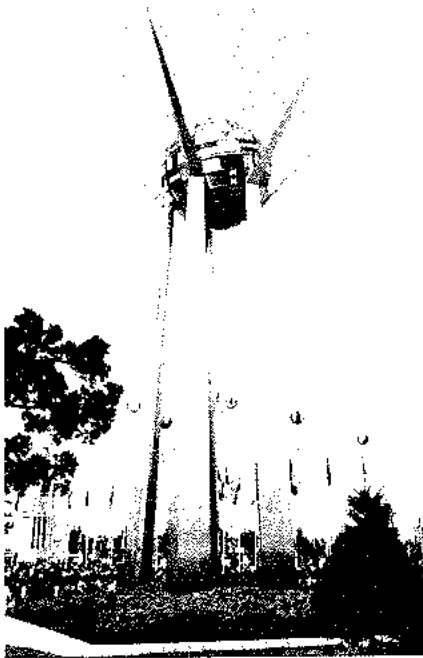
☞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 선정이 필요없으나 대수선인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

- ☞ 개발제한구역내 사설 유아원 건축이 가능한지요?

☞ 건축 불가능합니다.



# “눈길끄는 各社の 獨立館들”



□ 심볼·타워

## □ 모양 / 소재도 제 각각

6만여명의 「국제장터」—, 참가국 41개국, 참가업체 약 1천여, 예상 관람인과 1백여만명(이미 개장 10여일만에 불과했지만)—, 지난 달 24일 테이프를 끊은 '82 SITRA 의 규모다.

전국이래 몇차례 박람회가 있었으나 참가국 면에서나 규모면에서 이번 박람회가 첫손에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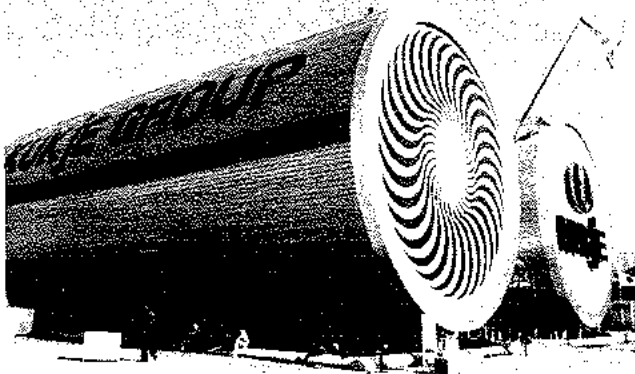
전면과 양측면에 나있는 출입구로 들어서면 금세 눈에 띄이는 것이 국내 10대 재벌그룹들이 세운 독립관들의 위용이다.

이들 독립관들은 기존전시장을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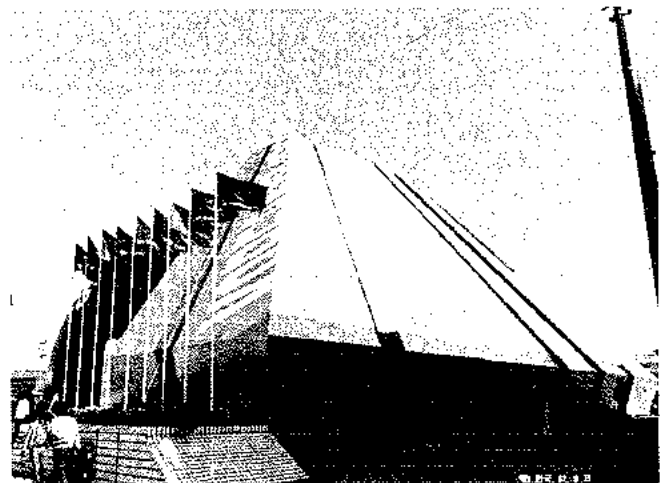
하그 양쪽과 전면에 들어서 있으며 그 중심부 '82 SITRA 심볼·타워가 서있다. 네사의 온백색 금속제 삼각기둥이 참가국 국기를 아로새긴 철제 지주의를 떠 받치고, 기둥을 1백20도가량 꺾은 가시나래는 사위(四位)를 향하고 있다. 그 자태는 그대로 이번 박람회의 주제인 「내일의 번영」을 표상해 주고 있다.

박람회장은 크게 이들 독립관과 국내관, 국제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바이어들이나 관람인과가 몰린 곳은 역시 재벌기업들의 독립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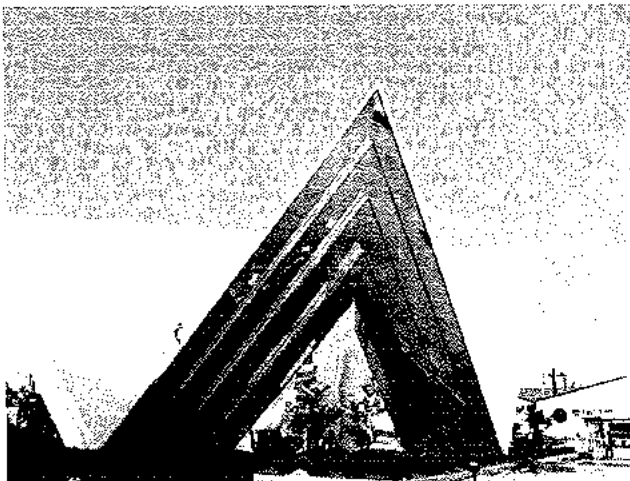
아이디어를 차내 나를대로의 조형미를 뽐내고 있는 독립관은 우선 꾸며놓은 외관부터가 휘황찬란해서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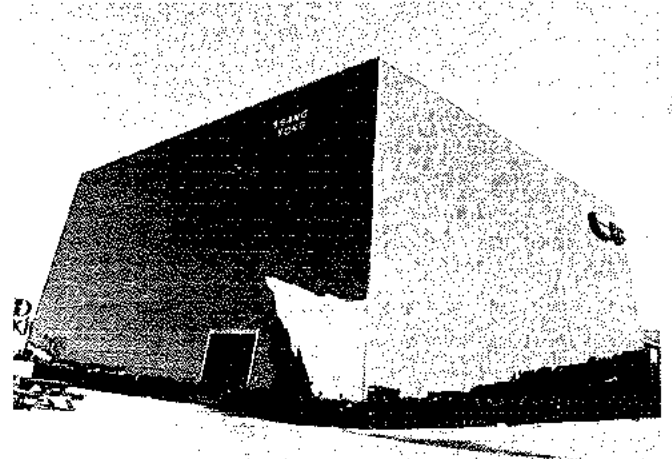
□ 국제그룹관



□ 한국화학관



□ 선경그룹관



□ 상용그룹관

## “6 만여평 垆地위에 제각기 웅크린 怪物들…… 10大 企業들의 獨立館”

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다.

### □ 건축적 배려 아쉬워

형태도 각양각색이어서 왕관 형상을 한 것, 돔모양, 거대한 원통형, 정육면체, 터어빈을 본뜬 것 등등에다가 온통 거울로 외양을 덮은 것, 은백색을 씌운 것, 붉은 페인트로 도장한 것 따위가 흡사 신기한 동물처럼 웅크리고 있다.

결국 자사(自社) PR을 위한 치열한 경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적인 규모의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에는 해를 넘기는 많은 시간과 이에따른 인력, 자금 등 제반

여건이 수반된 가운데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작업이어야 한다. 불과 3, 4개월에 끝낼 수 있는 급조된 것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케 하려는 생각은 무리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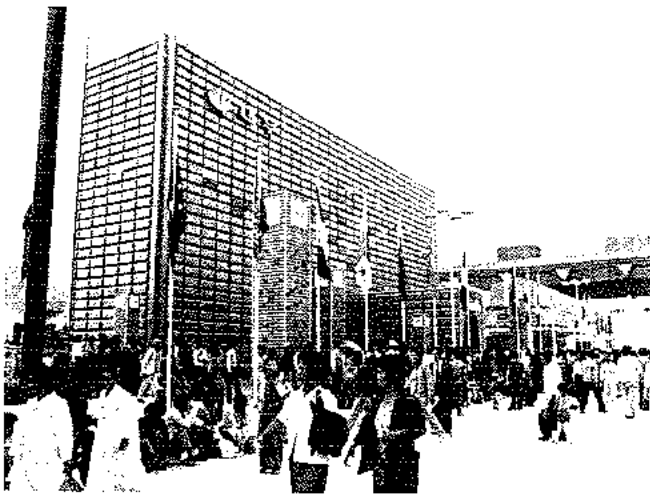
박람회장의 구조물(독립관 등)이 감각적인 면에서는 금세 대중의 호기심을 끌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충분한 배려가 있었다면, 특히 건축적인 측면을 계산에 넣었다면 질높은 각종 수출제품을 파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훨씬 강하게 심어 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는 바와 같이 각국이 같은 비중으로 참가하는 국제박람회의 경향은

### □ 감각적인 면보다 들직한 이미지 심었어야

자국의 제품소개라는 국부적인 면에서 떠나 한 나라를 소개하고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국가 PR장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따라서 참가국들은 모든 제품을 크게 하나로 묶어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각종 시설에 많은 정력을 쏟고 있다. 때문에 건축적인 배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름든 6 만여평의 대지 위에 제각기 서있는 구조물들이 제몫을 다해서 '82 SITRA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길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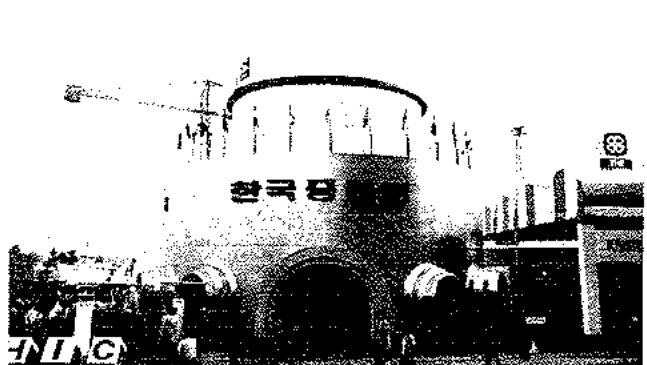
□대우그룹관



□롯데그룹관



□한국중공업관



□삼성그룹관

# 建築搬送設備工事標準示方

宋 煥—漢陽大學校教授(本會建築設備研究分科委員會委員)

## 第1章 一般共通事項

### 第1節 總 則

#### 1. 適用範圍

이 示方은 特記示方(이하 特記라고 함)을 제외하고 建築物·建造物에 시설하는 搬送設備工事に 適用한다.

#### 2. 一般事項

이 示方의 一般共通事項은 建設部制定 建築電氣設備工事標準示方書 第1章 一般共通事項의 各項을 準用한다. 그리고 이 工事와 관련이 있는 다른 工事의 示方은 各기 當해 示方事項을 準用하고 특히 아래 사항에 依한다.

(1) 監督이 지시하는 裝置, 機器, 材料 등은 제작전에 設置圖面, 製作圖面 또는 見本을 제출하여 그 承認을 받는다. 그리고 裝置, 機器, 材料 등의 선정은 미리 監督의 승인을 받아 그 檢査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2) 監督이 지시하는 곳은 미리 施工圖를 제출하여 그 承認을 받는다.

#### 3. 機器 및 其他

各 機器의 種類, 形式, 規格, 數量, 配置 및 特性은 特記에 依한다. 特記가 없을 경우에는 監督의 指示를 받는다. 그리고 製作所의 標準品으로 그 功能이 만족한 것은 監督의 承認을 받아 그 標準品을 사용한다.

#### 4. 示方의 漏落

이 示方에 漏落된 事項과 遺漏된 事項이 있더라도 製作 施設者는 이 示方書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제반 功能이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製作施設을 하여야 한다.

#### 5. 關係法規 및 官公署 手続

이 工事는 建築關係法規, 勤勞安全關係法規, 電氣法規 및 KS規格 기타 官公署의 規程, 基準 등에 依하여 製作 施工하여 모든 機器, 部品, 材料 등은 新품을 사용하고 KS指定品은 그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第2節 工事区分

### 1. 搬送設備의 建築工事

搬送設備과 관계되는 아래의 建築工事は 特記하지 않는 한 建築工事に 포함한다.

(1) 搬送設備의 機械室, 開口部 및 補強

(2) 搬送設備의 機械室의 바닥 輕量콘크리트工事 및 機械設置後 바닥 천정 및 벽의 마감工事

(3) 機械室의 천정, 에스컬레이터의 최상층의 천정 등에 機器引揚用 혹은 트롤리 빔의 설치

(4) 機械室의 防音工事와 換風機設置用 프레임 설치공사

(5) 機械室의 도어 그릴 설치

(6) 昇降路內의 中間보 및 핏트 내 간막이공사

(7) 鉄骨構造인 경우 中間보의 브래킷 설치

(8) 鉄骨보에 耐火處理할 部分의 브래킷 부착용 베이 스프레이트 및 昇降場 문턱받침 보 또는 도어機構 支柱支持用 베이스프레이트의 설치

(9) 昇降機의 各 층 出入口 및 통과층의 非常口 설치와 非常用 사다리 설치

(10) 핏트 点檢口 설치공사

(11) 핏트의 防水 및 排水桶 설치

(12) 핏트 하부를 사용할 경우의 建築上 補強

(13) 昇降路의 雨水 침입방지공사

(14) 昇降場 밀인방 콘크리트 내어치기

(15) 昇降場 各층 表示器設置用 구멍뚫기

(16) 에스컬레이터 주위의 防火·防犯샷터 설치

(17) 에스컬레이터 天井狹角部의 保護裝置

(18) 에스컬레이터 層表示, 保護台, 落下防止 등의 설비

(19) 에스컬레이터용 상부 機械室 点檢用 뚜껑

(20) 상기 외에 技術的으로나 意匠的으로 建築工事に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監督과 협의하여 建築工事に 포함한다.

### 2. 搬送設備의 空氣調和·衛生設備工事

搬送設備과 관계되는 아래의 空氣調和·衛生設備工事は 特記하지 않는 한 空氣調和·衛生設備工事に 포함한다.

(1) 機械室의 換氣 및 冷暖房工事

(2) 에스컬레이터의 低面 스프링클러設置工事

(3) 상기 외의 技術的으로 空氣調和·衛生設備工事に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는 監督과 협의하여 空氣調和·衛生設備工事に 포함한다.

### 3. 搬送設備의 電氣設備工事

搬送設備과 관계되는 아래의 電氣設備工事は 特記하지 않는 한 電氣設備工事に 포함한다.

(1) 機械室內 受電開閉器 1次側 端子의 電源 및 接地線 供給工事와 受電開閉器設置工事

(2) 非常用엘리베이터設備의 경우 電源의 非常轉換裝置 工事

(3) 機械室內의 放送設備의 配管配線工事

(4) BGM 放送設備의 配管配線工事

(5) 各층 電動機의 進相콘덴서 설치와 配管配線工事

(6) 機械室內, 昇降路內 및 핏트內의 보수용 콘센트 설치공사 및 機械室의 電灯工事

(7) 火災警報設備工事

(8) 昇降路外의 인터폰用, 監視用, 表示 信号用 등의 配管配線工事 및 昇降路外의 엘리베이터監視盤用 配管工事. 다만 結線 및 通話導通試驗은 엘리베이터 設置工事に 포함한다.

(9) 상기 외에 技術的으로 電氣設備工事中에 施工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는 監督과 협의하여 電氣設備工事に 포함

한다.

#### 4. 其他 除外工事

다음 搬送設備工事用 物資 및 場所는 特記하지 않는 한 무상으로 지급 공급한다.

- (1) 設置工事用 電力, 물, 시멘트, 모래 및 비계재료의 지급
- (2) 試運転用의 電力供給
- (3) 다른 공사용으로 사용할 경우의 비용 일체
- (4) 設置工事 現場事務所, 機材倉庫, 공사 중의 주위울타리의 假設工事
- (5) 기타 搬送設備工事에서 할 수 없다고 監督이 인정하는 사항

## 第2章 昇用엘리베이터 設備

### 第1節 一般事項

#### 1. 適用範圍

이 示方은 一般 昇用엘리베이터 設置工事に 適用한다.

#### 2. 特記示方

아래 사항은 特記示方에 의한다.

- (1) 種類와 각 부분의 意匠
- (2) 台數
- (3) 昇降行程과 停止數
- (4) 運転方式과 運転管理
- (5) 附加裝置 (過負荷保護裝置, 인터폰裝置, BGM 放送裝置, 非常照明裝置 등)
- (6) 電源의 電圧과 周波數
- (7) 耐震措置

### 第2節 機械室

#### 1. 捲揚機

捲揚機는 아래에 의한다.

- (1) 기어레스 捲揚機는 電動機軸에 驅動로우프車와 브레이크드럼을 圧入하여 直結構造로 한다.
- (2) 기어드 捲揚機는 電動機의 회전을 워엄기어로 감속하고 驅動로우프車로 전달하는 것으로 한다.
- (3) 驅動로우프車는 高級鑄鉄製로서 호이스팅로우프에 적합한 特殊슬롯形을 정밀하게 機械加工한 것으로 그 徑은 로우프 直徑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 (4) 기어드 捲揚機의 워엄휠일은 高級靑銅製, 워엄은 特殊鋼製로 하고 그 샤프트 끝은 쓰러스트荷重을 받는 베어링을 사용하고 워엄기어는 潤滑油를 넣은 기어케이스 안에서 회전하는 구조로 한다.
- (5) 主베어링은 구름베어링을 사용하거나 또는 潤滑裝置가 있는 高級베어링 舍金製 平面베어링으로 한다.
- (6) 기어드 捲揚機인 경우는 停電時 수동으로 용이하게 카를 승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2. 共通台盤

捲揚機에 共通台盤을 요하는 것은 그 構造를 單一構造로 하고 鑄鉄製 또는 形鋼, 혹은 鋼板을 熔接한 것으로 荷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3. 머시인 비임

머시인 비임은 安全係數 4 이상의 I形鋼, C形鋼 또는 H形鋼으로 한다.

#### 4.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直流電磁式으로 운전 중에는 항상 개방되며, 電流가 차단되는 동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카의 積載荷重의 125%를 적재하고 하강할 경우에도 카를 감속 정지시키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브레이크슈는 강력한 스프링 힘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브레이크 드럼을 조이는 것으로 그 힘은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브레이크를 制御하는 回路는 다음 어느 경우에도 安全裝置가 작동하여 카의 이동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정지하여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가) 行程의 兩限界에 도달했을 때

(나) 카가 過速度가 되었을 때

(다) 카의 非常停止스위치가 작동했을 때

(라) 動力이 차단되었을 때

(마) 카의 安全裝置를 유지하는 장치의 일부에 결함이 생기었을 때

#### 5. 電動機 및 電動發電機

電動機 및 電動發電機는 아래에 의한다.

(1) 電動機 및 電動發電機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設計製作한 것으로 비교적 적은 始動電流로 큰 回轉力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빈번한 始動停止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그리고 또 電動機의 始動電流 突効値는 다음 범위 내로 한다.

(가) 直流엘리베이터인 경우 450% 이하

(나) 交流엘리베이터인 경우 500% 이하

(2) 電動發電機의 설치는 防振고무 등으로 基礎와 絶緣시키어 振動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 電動機 및 電動發電機는 KS C 4002(回轉電氣機械 通則)에 의하여 다음 각종 試驗을 하여 그 試驗成績書를 監督에게 제출한다. 또 필요에 따라 電力会社의 試驗을 받아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가) 特性試驗

(나) 溫度上昇試驗

(다) 耐電壓試驗

#### 6. 盤 類

電源盤, 制御盤, 起動盤 등은 아래에 의한다.

(1) 캐비닛은 두께 1.6mm 이상의 鋼板製에 磷酸鹽被膜 処理를 한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 구조로 한다.

(2) 각 盤類는 동일 캐비닛에 모아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3) 각 盤類는 機械室에 설치하여 각 盤間의 配線接統은 端子台 또는 커넥터와 같은 것으로 한다. 다만 항상 通電狀態로 되어 있는 것은 端子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器具端子로 접속하여도 무방하다.

(4) 電源盤은 自立形 또는 壁付形으로 하며 다음 器具와 기타 필요한 裝置, 器具 등을 구비한 것으로 한다.

(가) 配線用遮斷器

(나) 電流計(KS C 1305 電動機用 延長金電流計)

(다) 電源表示燈

配線用遮斷器를 부착한 電源盤은 문짜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5) 制御盤은 원칙적으로 自立形으로 하여 엘리베이터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電磁接觸器, 繼電器 및 기타 필요한 裝置, 器具 등을 구비한 것으로 한다.

(6) 電動發電機의 起動盤은 원칙적으로 自立形으로 하여 다음 器具와 기타 필요한 裝置, 器具 등을 구비하는 것으로 한다.

(가) 電源用 電磁接觸器

(나) 加速用 電磁接觸器

(다) 抵抗器(抵抗起動方式인 경우)

(라) 過負荷保護繼電器

(7) 電磁接觸器 및 制御用 繼電器는 아래에 의한다.

(가) 主回路用은 KS C 4504 交流電磁開閉器의 3号 1種으로 한다. 다만 電氣的 壽命은 10萬回 이상으로 한다.

(나) 制御回路用은 機械的 壽命이 500萬回, 電氣的 壽命이 150萬回 이상으로 한다.

#### 7. 信號回路 및 電燈回路

信號回路에 접속한 遞降變壓器의 2次側을 사용하고, 電燈回路(220V 카內的 電燈) 電源은 별도공급한다. 그리고 카內的 非常用 電源은 特記하지 않는 한 카內에 내장하는 것으로 하며 별도공급할 경우는 特記에 의한다.

#### 8. 盤外配線과의 接統

盤外로 부터의 配線의 接統은 모두 端子接統으로 하며 端子는 線番號를 附記한다.

#### 9. 自動着床裝置

카는 電壓變動 5% 이내, 周波數變動 1% 이내, 機械室內 溫度 10~40℃에 있어서 積載荷重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着床하는 것으로 그 精度는 表 1의 값 이내이어야 한다.

〈表 1 着床精度〉

單位 mm

| 制御方式<br>定格速度 | 交流 2 段速度 | 直流可變電壓 |
|--------------|----------|--------|
| 45m/min 以下   | ± 20     | —      |
| 60m/min 以下   | ± 25     | —      |
| 90m/min 以下   | —        | ± 10   |

#### 10. 昇降場 選択裝置

信號方式, 群昇全自動方式 등의 運轉操作方式外의 경우는 制御盤 이외에 乘降場 選択裝置를 설치하고 昇降場의 다수 호출을 정확히 선택하여 운전한다.

### 第 3 節 카

#### 1. 카의 規格과 意匠

카의 速度, 積載量, 크기 및 意匠은 特記에 의한다.

#### 2. 카의 프레임

카의 프레임은 아래에 의한다.

(1) 카의 프레임의 구성은 상부 프레임, 하부 프레임, 수직 프레임, 바닥 프레임 등으로 구성하며 主要構造部는 鋼材를 사용하고 프레임의 이음은 리벳, 보울트 조임

이나 熔接으로 견고히 제작한다. 카의 상하부의 프레임의 휨은 積載荷重을 적재했을 때 프레임의 유효길이의 1/10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카에 사용하는 材料의 安全係數은 7.5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카의 프레임과 카의 바닥 및 카室과의 사이를 防振構造로 한다.

#### 3. 카 바닥

카 바닥은 아래에 의한다.

(1) 카 바닥은 두께 3.0mm 이상의 고무타일 또는 2.0mm 이상의 合成樹脂系 타일을 부친 것으로 鋼質알루미늄製의 문지방으로 한 다음, 다음 (가) 또는 (나) 중 어느 한 가지의 구조로 한다.

(가) 프레임을 鋼製로 짜서 鋼棒으로 가로질러 그 위에 두께 2.3mm 이상의 鋼板을 熔接한 것으로 한다.

(나) 프레임을 鋼製로 짜서 鋼棒이나 통나무를 가로질러 그 위에 두께 1.0mm 이상의 普通合板을 잔다. 바닥 뒷면 전체는 두께 0.5mm 이상의 鋼板을 부쳐서 防火構造로 한다.

(2) 카 바닥의 앞면에는 出入口의 全幅에 걸쳐서 길이 750mm 정도의 金屬性 에이프런을 설치한다.

#### 4. 카室

카室은 아래에 의한다.

(1) 카室의 안쪽은 形鋼으로 보강된 高級研磨鋼板을 사용하여 조립한다. 板의 두께는 1.6mm 이상으로 하고 板 자체의 휨, 熔接에 의한 휨, 기타에 의한 휨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카의 천정과 카의 벽 등의 接合은 스프링워셔가 붙은 보울트 등으로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인다.

(3) 熔接은 薄板熔接에 적합한 방법으로 한다. 電氣熔接으로 할 경우는 스폿트熔接을 주로하고 아아크熔接을 할 경우는 薄板熔接을 사용한다.

(4)天井에는 최소한 폭이 400mm 이상, 넓이가 0.2m<sup>2</sup> 이상의 非常救出口를 설치한다.

(5) 카 상부에 補修 点檢用 콘센트와 補修 運轉用 푸쉬 버튼開閉器 및 運轉 停止用 安全開閉器를 설치한다.

(6) 카室內에는 다음 裝置를 설치한다.

(가) 카操作盤

(나) 照明器具

(다) 換風機

(라) 過積警報裝置

(마) 인터폰

(바) 非常燈(電源은 自動充電式 蓄電池로 하고 停電時는 自動轉換裝置, 復旧時는 自動復旧裝置에 의한 것으로 30分 이상 点燈되어야 한다)

(사) 카內 位置表示器

(아) 각종 案内表示板

(자) 用途, 積載荷重 및 最大定員을 명시한 標識

(차) 構內放送用 스피커

(가) 補修用 콘센트

(타) 백미러

(파) 핸드레일

(하) 기타 필요한 기구

## 5. 카의 門

카의 門은 아래에 의한다.

(1) 카의 門은 두께 1.2mm 이상의 商級研磨鋼板製 볼랫 슈門으로 그 示方은 2·3·4 카室에 준한다.

(2) 中央開閉門의 끝부분에는 緩衝物을 삽입 설치한다.

(3) 自動方式의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門에 세이프티 슈를 설치하든가, 또는 光電裝置 등을 설치하여 門이 自動적으로 닫혀질 때 인체 등이 세이프티슈에 닿는 경우, 또는 光線을 차단했을 경우 즉시 반전하여 門이 열리는 구조로 한다.

(4) 門은 도어행거에 의하여 견고히 달아매고 附屬部品을 설치하는 장소는 보강을 충분히 한다.

## 6. 門의 開閉裝置

門의 開閉裝置는 電動自動開閉裝置로서 카의 門과 昇降場의 門을 정속하고 원활하게 開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7. 카의 操作盤

카의 操作盤의 커버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 鋼板製로서 헤어라인 마감한 것으로 하여 카의 내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그리고 盤에는 다음 設備을 갖춘다.

(가) 行先層用 버튼 또는 操作用 레버 또는 버튼

(나) 照明用 開閉器

(다) 非常停止用 開閉器

(라) 換風機用 開閉器

(마) 電動發電機의 電源스위치 및 表示灯

(바) 기타 運転에 필요한 裝置

(2) 手動操作式과 自動操作式の 併用엘리베이터는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轉換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8. 카內 位置表示器

카內 位置表示器는 点灯에 의하여 카 位置를 표시하며 커버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 鋼板製로 헤어라인 마감 또는 알루미늄製로 하여 카內의 出入口 상부에 설치하든가 카 操作盤에 같이하여 조립한다.

## 第4節 昇降路

### 1. 세컨다리 시이브

세컨다리 시이브를 필요로 할 경우는 高級鋳鉄製로 하여 와이어로우프에 적합한 홈을 정밀하게 機械加工한 것으로 그 直径은 로우프 直径의 36배 이상으로 한다.

### 2. 레 일

레일은 아래에 의한다.

(1) 레일은 엘리베이터용으로 특수제작한 T形鋼을 사용하며 그 길이는 5m를 원칙으로 한다.

(2) 레일의 使用区分은 表 2를 원칙으로 한다.

(3) 레일은 素材의 翳를 제거하고 三면을 정밀하게 機械마감한 것으로 한다. 이의 두께의 치수公差는 0.1mm 이내로 한다.

(4) 이음은 장부이음(mortise)으로 하고 아음板으로 접속한다.

(5) 레일은 레일브래킷으로 핏트 바닥에서 昇降路 상부 슬러브까지 설치한다. 다만 昇降路 상부 슬러브까지의 여

유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表 2 레일의 使用区分〉

單位 kg

| 카의 自重과 積載荷重의 合計 또는 非常停止가 붙은 均衡錘의 重量 | 非常停止가 없는 均衡錘의 重量 | 레일의公稱重量 |
|-------------------------------------|------------------|---------|
| 1,750 以下                            | 3,800 以下         | 8 以下    |
| 2,500 以下                            | 6,800 以下         | 13 以下   |
| 4,500 以下                            | 9,500 以下         | 18 以下   |
| 6,800 以下                            | 13,600 以下        | 24 以下   |
| 9,500 以下                            | 19,000 以下        | 30 以下   |

### 3. 레일 브래킷

레일 브래킷은 아래에 의한다.

(1) 레일 브래킷은 강도 높은 鋼板 또는 形鋼으로 제작하여 昇降路 벽체 또는 보에 레일의 중심이 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設置間隔은 레일사이즈, 엘리베이터에 걸리는 荷重 등을 고려하여 定格速度에 의한 간격은 원칙적으로 表 3에 의한다.

〈表 3 레일의 支持間隔〉

單位 mm

| 定 格 速 度 (m/min) | 最 大 間 隔 |
|-----------------|---------|
| 45 以下           | 3500    |
| 45 以上 95 以下     | 3000    |
| 90 以上           | 2500    |

### 4. 레일의 潤滑裝置

레일의 潤滑裝置는 슬라이딩 가이드슈를 사용하며 給油가 필요한 경우는 레일에 적절한 給油裝置를 설치한다.

### 5. 메인 로우프

메인 로우프는 KS D 3514(와이어 로우프)의 규정에 의한 엘리베이터용 와이어 로우프로 하여 그 安全係數는 10 이상으로 한다.

(2) 로우프의 直径은 12mm 이상으로 한다.

(3) 메인 로우프는 3줄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은 1줄마다 鋼製소켓에 바비트로 채우거나 쪼기式 로우프 잡아 매는 鐵物로 결박한다.

### 6. 張力平衡用 스프링

메인 로우프의 끝을 잡아 매는 부분은 張力平衡用 스프링을 설치하여 각 메인 로우프의 張力이 될 수 있는 한 균등하게 걸리도록 한다.

### 7. 로우프 重量의 補償裝置

엘리베이터의 昇降行程이 길어 로우프串의 索引力 등에 악영향을 줄 경우에는 捲揚로우프의 重量을 보상하는 均衡체인 또는 均衡로우프를 설치한다.

### 8. 均衡錘

均衡錘는 鋼製 브럭으로 하여 용이하게 가감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鋼製函 또는 2개 이상의 관통 보울트 혹은 締結棒, 로크너트 分割핀 등으로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 9. 가이드슈

가이드슈는 레일면을 적당한 압력으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가이드슈 또는 로우라 가이드로 하여 어떤 경우라도

레일 방향의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均衡錘用 가이드슈는 固定式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 10. 中間보

엘리베이터를 동일한 昇降路에 2台 이상 설치할 경우와, 昇降路가 너무 넓을 경우에는 레일, 配管 등을 부설하기 위하여 강도가 충분한 I形鋼 또는 C形鋼으로 中間보를 설치한다.

### 第5節 昇降場

#### 1. 出入口의 意匠

昇降場의 엘리베이터 出入口의 意匠은 特記에 의한다.

#### 2. 三面 틀받이

三面 틀받이는 아래에 의한다.

(1) 三面 틀받이는 두께 1.5mm 이상의 高級研磨鋼板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이면에 적절한 보강을 하며 板 자체의 뒹 및 熔接 기타에 의해서 생긴 뒹을 제거하여야 한다.

(2) 板의 구부림加工은 각도를 정확하게 내며 모서리線은 똑바로 하여 비틀어진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3) 熔接은 2·3·4 (카室) (3)항에 준한다.

#### 3. 밀인방

밀인방은 硬質알루미늄으로 하여 보울트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 4. 昇降場門

昇降場에서 엘리베이터에 출입하는 昇降場門은 아래에 의한다.

(1) 昇降場門은 두께 1.5mm 이상의 高級研磨鋼板을 사용한 플랫슈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이면에 적절히 보강한다. 기타는 2·5·2 三面 틀받이에 준한다.

(2) 도어행거는 베어링을 넣은 것으로 경쾌하게 동작하여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도어행거 기타 附屬器具를 다는 곳은 모두 충분히 보강한다.

#### 5. 昇降場 버튼

昇降場의 버튼은 点灯式으로 하며 커버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鋼板製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 6. 位置表示器

位置表示器는 아래에 의한다.

(1) 位置表示器는 点灯式으로 하여 카의 位置, 進行方向, 自動, 滿員, 停止 등을 표시하며 각층 엘리베이터 출입구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거나 昇降場 버튼 커버플레이트 상단에 같이 설치한다. 그 意匠은 특기에 의한다.

(2) 커버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鋼板製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3) 群管理方式인 경우는 도착공을 설치하여 特記에 의하지 않는 한 카의 進行方向表示器만 설치한다.

#### 7. 도어록

도어록은 각 昇降場마다 한조씩 설치하고 運轉中 昇降場門이 외부에서 열리지 않도록 완전히 잠글 수 있는 인터록과 電氣스위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인터록식으로 한다.

### 第6節 安全裝置

#### 1. 리미트 스위치

이 스위치는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지나쳐 버리기 전에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그 방향으로의 운전을 減速停止하는 것으로 한다.

#### 2.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이 스위치는 昇降行路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하여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아 카가 현저히 지나쳐 버린 경우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정지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 스위치가 동작했을 경우는 카내의 조작으로 는 엘리베이터의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3. 過速安全스위치

본 裝置는 調速機에 설치한 電氣開閉器로서 카의 速度가 定格速度의 130% (카의 定格速度가 45m/min 이하인 때는 63m)를 초과하기 전에 電動機의 入力電源을 遮斷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한다.

#### 4. 非常停止裝置

본 裝置는 調速機에 연동된 機械的 安全裝置로서 카의 下降速度가 140% (카의 定格速度가 45m/min 이하인 때에는 68m)를 초과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잡아 조여 카를 정확하게 정지시키는 것으로 한다. 形式은 定格速度에 따라 表 4와 같다.

〈表 4 非常停止의 形式〉

| 定 格 速 度(m/min) |           |
|----------------|-----------|
| 45 以下          | 早期 非常停止裝置 |
| 45를 超過하는 것     | 점차 非常停止裝置 |

#### 5. 緩衝裝置

緩衝裝置는 아래에 의한다.

(1) 본 장치는 카 및 均衡錘의 바로 밑에 설치하는 것으로 緩衝器는 엘리베이터 궤트 바닥에 설치한 鋼製台에 견고히 조여 붙인다. 形式은 엘리베이터의 定格速度에 따라 表 5와 같다.

〈表 5 緩衝器의 形式〉

| 定 格 速 度(m/min) | 形 式      |
|----------------|----------|
| 60 以下          | 스프링式 緩衝器 |
| 60을 超過한 것      | 油圧式 緩衝器  |

(2) 스프링式 緩衝器는 강력한 코일스프링을 사용하며 스프링材料는 KS D 3701 (스프링鋼)에 규정된 스프링용 鋼으로 소정의 材料試驗을 거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카용 緩衝器의 必要行程은 表 6을 따르고 緩衝器用의 必要行程은 40mm 이상으로 한다.

〈表 6 카용 스프링 緩衝器의 必要行程〉 單位 mm

| 定 格 速 度(m/min) | 形 式    |
|----------------|--------|
| 30             | 50 以上  |
| 30을 超過 45 以下   | 65 以上  |
| 45를 超過 60 以下   | 100 以上 |

(3) 油圧式 緩衝器는 플랜지와 油圧시린더로 구성된 것으로 어느 것이나 耐壓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시린더의 내면의 움직이는 부분은 정밀하게 機

械研磨마감으로 하며 플랜저 외면은 円筒研磨로 研磨마감으로 하여 기름이 새지 않아야 한다. 必要行程은 表 7 과 같게 한다.

〈表 7 油圧式 緩衝器의 必要行程〉

単位 mm

| 定格速度(m/min)    | 形 式     |
|----------------|---------|
| 60을 超過 90 以下   | 150 以上  |
| 90을 超過 105 以下  | 200 以上  |
| 105을 超過 120 以下 | 270 以上  |
| 120을 超過 150 以下 | 420 以上  |
| 150을 超過 180 以下 | 600 以上  |
| 180을 超過 210 以下 | 820 以上  |
| 210을 超過 240 以下 | 1080 以上 |

## 6. 인터폰

인터폰은 KS C 5515(인터폰 通則)의 규정에 의한다. 그 形式은 電話·스피커形 同時通話方式의 母子式으로 하며 母機에는 送受話機, 子機에는 스피커와 마이크를 사용하여 상호간 서로 呼出通話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7. 其他

均衡鍾의 非常停止裝置 및 定員·荷重을 초과했을 경우 또는 警報裝置의 適否는 特記에 의한다.

## 第 7 節 電氣配線

### 1. 一般事項

엘리베이터의 電氣配線은 內線規程에 의하여 施工한다. 다만 인터폰裝置에 있어서는 建設部制定 建築電氣設備工事標準方書 第 8 章 第 5 節 8·5·2 인터폰裝置에 의한다.

### 2. 配線方法

機械室內, 카室, 昇降路 및 각종 盤類에 시설하는 電氣配線은 아래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金屬管配線, 金屬몰딩配線, 金屬덕트配線, 버스덕트配線 및 케이블配線으로 한다.

(1) 配線 終端函에서 機械器具에 이르는 짧은 부분을 可撓電線管配線으로 할 경우

(2) 配線 終端函에서 機械器具에 이르는 配線을 케이블 또는 纜타이어케이블을 사용했을 경우

(3) 金屬管配線, 金屬몰딩配線 및 配線 終端函 등에서 직접 機械器具에 이르는 露出部分의 長이가 6m 이하로서 이 사이를 600V 비닐絶緣電線으로 配線했을 경우

### 3. 移動電線

昇降路內의 接統函 또는 制御盤의 端子에서 카의 接統函까지의 移動電線은 엘리베이터용 케이블로 配線한다.

### 4. 材 料

엘리베이터의 電氣配線材料는 아래에 의한다.

(1) 配線은 KS C 3302(600V 비닐電線(1V)), KS C 3328(600V 二重비닐絶緣電線(HIV)) 및 KS C 3330(制御用 비닐絶緣 비닐취이즈케이블)로 한다. 溫度가 60℃가 넘는 장소에 사용하는 電線은 耐熱性 被覆을 한 것을 사용한다.

(2) 配線用 金屬管은 KS C 3609(銅製電線管)에 의한

薄鋼電線管으로 한다.

(3)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은 KS C 3609(엘리베이터용케이블)로 하고 纜타이어케이블은 KS C 3602(비닐 纜타이어케이블)로 한다.

(4) 昇降路 및 카에 시설하는 電線 및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의 굵기는 表 8에 의한다.

〈表 8 電線 및 케이블의 굵기〉

| 電線의 種類 또는 導體의 構造 |     | 導體의 굵기                      |
|------------------|-----|-----------------------------|
| 絶緣電線             | 單 線 | 1.2mm <sup>2</sup> 以上       |
|                  | 撚 線 | 1.4mm <sup>2</sup> 以上(註 1)  |
| 케 이 블            | 單 線 | 0.8mm <sup>2</sup> 以上(註 2)  |
|                  | 撚 線 | 0.75mm <sup>2</sup> 以上(註 2) |
|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     | 0.75mm <sup>2</sup> 以上      |

註 1. 配線 終端函에서 機械器具에 이르는 짧은 부분은 0.75mm<sup>2</sup>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過電流가 생겼을 경우에 制御用 또는 停停用 回路에서 自動的으로 이들 電路에서 遮斷하는 裝置를 設置했을 경우는 사용 할 수 있다.

## 5. 施 工

엘리베이터 電氣配線工事의 施工은 아래에 의한다.

(1) 昇降路內 配線은 機械的 손상을 받지 않는 위치를 택하여 가이드 레일 등의 構造体에 견고히 설치한다. 그리고 昇降路內 및 카내부의 電氣器具의 充電部分은 絶緣被覆한다.

(2)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은 자체 하중에 의하여 국부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絶緣性 支持物로 견고히 고정시키고 그리고 運행으로 진동이나 다른 機構에 접촉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接統函內의 電線과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의 心線과의 접속은 端子로 하고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의 이동부분에는 接統部를 설치하지 않는다.

(4) 電灯用, 制御用, 信號用 및 인터폰回路에 사용하는 電線을 동일 파이프, 덕트 또는 케이블로 시설할 경우는 사용목적 및 電氣方式이 다른 弱電流 電線에 있어서도 다른 電線과 동등이상의 絶緣効力이 있는 電線이나 케이블을 사용하며 그리고 識別하여야 한다.

## 6. 絶緣抵抗値

導體部分과 大地間의 絶緣抵抗値는 아래값 이상으로 한다.

|          |     |
|----------|-----|
| (가) 動力回路 | 1MΩ |
| (나) 制御回路 | "   |
| (다) 信號回路 | "   |

## 第 8 節 塗 裝

### 1. 一般事項

카內의 三面 틀받이, 門의 노출부분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의 塗裝마감을 필요로 하는 곳은 락카, 하이소릿락카, 아미노알키트樹脂塗料 등의 合成樹脂塗料에 의한 塗裝으로 한다. 기타 裝置의 部材는 防銹效果가 높은 塗料를 사용하여 塗裝한다.

### 2. 塗 料

塗料는 그 塗裝, 工法 등에 따라 적절한 것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建築工事 塗裝工事示方에 준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락카는 KS M — (락카 에너멜) 또는 KS M — (크리어 락카)를 주성분으로 한 것.

(2) 하이소릿 락카는 KS M — (하이소릿 락카 에너멜) 또는 KS M — (하이소릿 크리어 락카)를 주성분으로 한 것.

(3) 아미노알키드樹脂塗料는 KS M — (아미노 알키드樹脂 에너멜) 또는 KS M — (아미노알키드樹脂 와니스)를 주성분으로 한 것.

### 3. 塗裝標準

塗裝標準은 아래에 의한다.

(1) 前處理는 磷酸塩化被膜處理로 한다.

(2) 塗裝工程은 表 9에 의한 標準塗裝工程으로 한다.

〈表 9 塗裝工程〉

| 種 類 |            | 1 種 | 2 種 | 3 種 |
|-----|------------|-----|-----|-----|
| 工 程 |            |     |     |     |
| 초   | 벌          | ○   | ○   | ○   |
| 머   | 1 회        | ○   | ○   | —   |
|     | 2 회        | ○   | ○   | —   |
| 研   | 磨          | ○   | ○   | —   |
| 1 회 | 재 벌        | ○   | ○   | ○   |
| 研   | 磨          | ○   | ○   | ○   |
| 2 회 | 재 벌        | ○   | ○   | ○   |
| 研   | 磨          | ○   | ○   | ○   |
| 정   | 벌          | ○   | ○   | ○   |
| 研   | 磨, 비 프 研 磨 | ○   | ○   | —   |

(3) 表面마감의 정도 및 表面平面度는 表 10에 의한다.

〈表 10 塗裝程度 및 表面平面度〉

| 種別  | 塗 裝 程 度                                              | 表 面 平 面 度 | 適 用            |
|-----|------------------------------------------------------|-----------|----------------|
| 一 種 | 塗裝面에 凹凸이 거의 없고 프엘트 研磨의 자국이 보이지 않는 程度로 광이 나는 面에 마감한다. | 0.2mm     | 기어리스 直 流 엘리베이터 |
| 二 種 | 塗裝面에 凹凸이 거의 없고 프엘트 研磨의 자국이 다소 보이는 程度로 광이 나는 面에 마감한다. | 0.3mm     | 기어드 直 流 엘리베이터  |
| 三 種 | 金屬面에 凹凸이 다소 보이는 程度의 面에 마감한다.                         | 0.4mm     | 交流 엘리베이터       |

註: 表面平面度는 길이 600mm의 直線尺을 表面에 대었을 때 表의 數值 以上の 凹凸이 있어서는 안된다.

(4) 塗裝色은 日本엘리베이터協會 엘리베이터용 色見本에 의하며 기타는 塗裝見本을 제출하여 監督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 第 9 節 附屬品 및 工具

### 1. 附屬品

엘리베이터는 ※ 아래 附屬品을 목록을 작성하여 監督의 확인을 받아 별도로 납품한다. (※기계실 1개당)

- (가) 捲揚電動機더닝핸들(기어드式 捲揚機인 경우) 1개
- (나) 브레이크解放裝置(기어드式 捲揚機인 경우) 1개
- (다) 非常停止 復梯用 핸들(필요할 경우) 1개
- (라) 点檢램프(코오드 包含) 1조
- (마) 起動用 또는 轉換用 키 2개
- (바) 도어록 解放用 키 2개

### 2. 予備品

予備品은 엘리베이터 1대당 信号表示器用 小形電球 20개를 監督의 확인을 받아 별도로 납품한다.

### 3. 工 具

工具는 엘리베이터 機械室 1개당 아래 工具물 목록 작성하여 監督이 확인하고 별도로 납입한다.

- (가) 스패너 세트 1조
- (나) 드라이버 (No. 2 15cm) 각 1개
- (다) 플라이어 (15cm), 앵치 (15cm) 각 1개
- (라) 몽키렌치 (15cm, 30cm) 각 1개
- (마) 한손 해머 (225g) 1개
- (바) 注油器 1개
- (사) 구리이스 注入器 1개

## 第10節 試 驗

### 1. 試 驗

試驗은 KS F 2802(昇降機의 檢査標準)에 준하여 실시하며 또 이 工事に 사용하는 機械器具中 監督이 지시하는 機械器具는 소정의 工場試驗을 한 후에 납입한다. 그리고 試驗成績表를 작성 제출한다.

### 2. 檢器의 調整

機械器具의 설치 및 受電設備 완료 후 綜合動作試驗, 回路의 絶緣抵抗測定을 하며 着床裝置, 門의 開閉 등 필요한 調整을 하는 것으로 한다.

### 3. 竣工檢査

竣工檢査는 管轄官公署의 立會檢査로서 한다.

# 建築物의 開口部에 對한 氣密性能基準 制定의 試驗分析

丁 鍾 汶 — 國立建設研究所 建築資材科

## I. 序 言

### 1. 研究의 目的

최근들어 세계각국의 심각해진 부자원의 고갈현상은 建築物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代替資源開發의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로 自然에너지의 하나인 太陽熱의 이용방안을 추진하여 이를 實用化 단계에 이르게 하였고,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人爲的인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斷熱材를 사용한 斷熱構造의 개선을 政策的으로 적극 勸奨推進토록 하게 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전설부에서도 1975년 建築法 개정시 법 제23조의 4 (建築物에 있어서의 熱損失防止) 조항을 신설하여 벽·天井(最上層)·바닥(最下層)·窓을 一定水準 이상의 斷熱性能이 있는 構造로서 施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建築物이란 공장에서 完製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組立加工하는 工程이 대부분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벽이나天井 또는窓 등이 일정한 斷熱性能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部品の 組立이나 施工의 不適定으로 인해 그 斷熱構造의 斷熱性能은 얼마든지 低下될 수 있는 것이며 아무리 완벽한 施工이나 組立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換氣를 위한 開口部나窓틈을 통한 熱의 損失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30평 정도의 소주택에 있어서 各部位를 통한 熱損失率의 예를 들어 보면 천정을 통한 손실이 16%, 외벽이 34%, 개구부 18%, 바닥(最下層) 18% 정도이고窓틈과 환기구 등을 통해서 14% 정도가 손실되고 있는데 창·벽·지붕·바닥 등은 斷熱施工 기준에 의해서 시공하면 소기

의 斷熱性能이 기대될 수 있으나窓틈이나 환기구 등은 이를 斷熱處理할 수 없기 때문에 氣密性能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곳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熱損失이 上記한 바와 같이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斷熱性能의 가장 취약점인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나 법적인 規制條項이 없어 放置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本研究에서는 이제까지의 외국외 開口部와窓틈을 통한 熱損失防止에 관한 연구와 각국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조사분석하였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基準을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窓戶業體의 各種窓戶를 수집, 氣密性能의 실태를 直接試驗을 통해서 조사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性能의 改善 및 試驗方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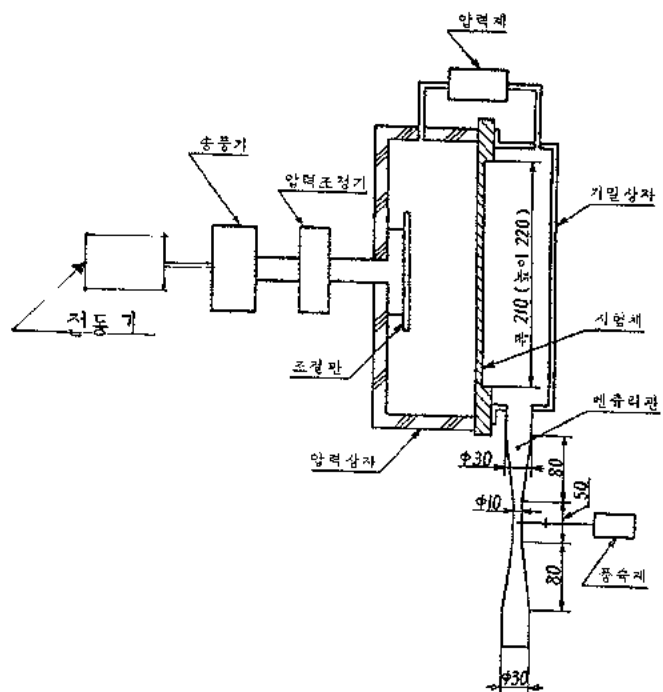
제시함으로써 熱損失防止 및 騒音性能을 확보하여 쾌적한 住居環境을 조성하는데 그 目的과 背景이 있다고 하겠다.

## 2. 研究의 方法

### ① 試驗機의 確保

國立建設研究所에 확보되어 있는 氣密試驗機는 防火門 및 防火셔터의 차연성능시험을 위해 확보한 차연試驗機를 개조하여 차연試驗 및 氣密試驗을 병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氣密상자와 壓力상자와의 壓力差에 대한 最大用量은 50 mmH<sub>2</sub>O 까지 測定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다. 또한 여기에 따르는 후레임(Frame)을 제작하여 각종 크기의窓戶를 자유로이 시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氣密試驗裝置 構造圖



## ② 試驗機의 構造說明

氣密試驗機의 構造는 그림 1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壓力상자는 송풍기에 의해 발생한 一定風壓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氣密상자는 試驗體의 틈을 통해 흐른 風量을 모아 벤츄리관으로 보내게 하는 구조로서 壓力상자와 크기는 같다. 또한 송풍기는 試驗時에 소요되는 소정의 風壓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고 壓力調整機는 송풍기에서 바람의 壓力을 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벤츄리관은 氣密상자에서 보내진 풍속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氣密試驗機의 구조란 송풍기에서 바람을 일으켜 壓力상자와 氣密상자 사이에 試料를 설치하여 일정한 壓力差를 가한 다음 벤츄리관으로 흐르는 풍속을 X-Y 레코더(Recorder)로 측정하는 것이다.

## ③ 計算方法

벤츄리관의 풍속을 1 m/sec로 측정하고 벤츄리관의 단면적(A)은 직경을 100mm로 사용할 때

$$A = \frac{\pi}{4} D^2 = 0.785 \times 0.1 \times 0.1 \\ = 0.00785 \text{ m}^2$$

풍량 = 단면적 × 풍속

$$0.00785 \text{ m}^2 \times 1 \text{ m/sec} = 0.00785 \text{ m}^3/\text{sec}$$

sec로 가정하면 시간당 風量의 환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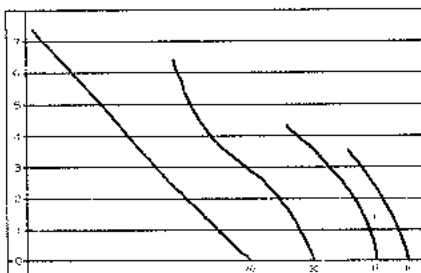
$$0.00785 \text{ m}^3/\text{sec} \times 60 \text{ sec/min} = 0.47 \text{ m}^3/\text{min}$$

$$0.47 \text{ m}^3/\text{min} \times 60 \text{ min/h} = 28.26 \text{ m}^3/\text{h}$$

의 風量이 측정된다.

예: 窓門의 크기가  $1.176 \times 1.456$  (틈의 유효길이)에서 試驗結果 유출된 풍량이 도표 1과 같이 도시되었다면 壓力差가 10mmH<sub>2</sub>O일 때 Opening Joint法, 즉 틈의 길이당 m로 계산하면

표 1 試驗結果(단위 mmH<sub>2</sub>O)



$$28.26 \text{ m}^3/\text{h} \div 3.5 \div 6.44 \text{ m} = 15.35 \text{ m}^3/\text{hm}$$

이고

Opening Light法, 즉 틈의 면적당 (m<sup>2</sup>)으로 계산하면

$$28.26 \text{ m}^3/\text{h} \div 3.5 \div 1.71 \text{ m}^2 = 57.84 \text{ m}^3/\text{hm}$$

의 값이 나오게 되며 이 計算方法은 베르누이(Bernoulli) 定理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上記의 값에 標準狀態의 계산은 보일샤르法測에 의하나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II. 氣密性能에 對한 各國의 現況

### 1. 노르웨이의 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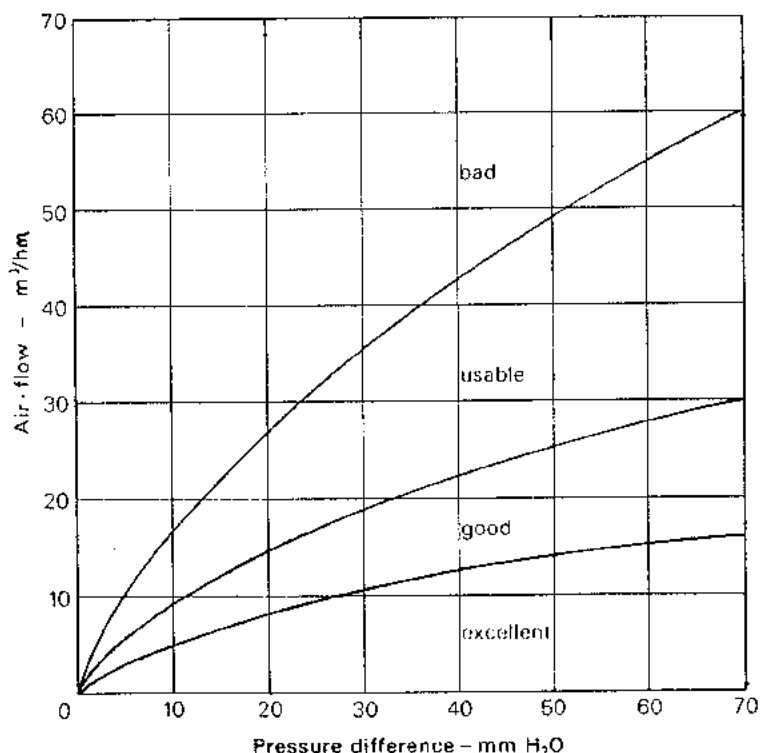
노르웨이 基準에서는 壓力差를 표 2에서와 같이 70 mmH<sub>2</sub>O까지 측정하며 Opening Joint法, 즉 길이당 m를 사용하고 있으며 NBRR, 즉 노르웨이 建築研究所에서도 표 2에서와 같이 氣密性能에 대한 여러가지 등급을 도표화하고 있다.

이 도표를 보면 3개의 곡선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壓力差가 10mmH<sub>2</sub>O일 때 고급창의 基準은 5 m<sup>3</sup>/hm이고 좋은 것은 9 m<sup>3</sup>/hm이며 使用可能은 15 m<sup>3</sup>/hm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급창이 70mmH<sub>2</sub>O일 때 15 m<sup>3</sup>/hm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物理的인性能이 強化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 2. 英國의 基準

英國에서도 유럽의 다른 지역이나 北美에서와 같이 窓틈의 길이당, 즉 m를 일반화하고 있으나 BS 4315에서는 면적당(m<sup>2</sup>), 즉 Opening Light法과 길이당(m), 즉 Opening Joint法을 선택하여 측정하게 되어 있고 통기량을 窓틈의 길이당(m) 1시간에 12 m<sup>3</sup> 이상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규정에서는 하급·중급·상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하급의 풍압차는 10mmH<sub>2</sub>O, 중급은 15mmH<sub>2</sub>O, 상급은 20mmH<sub>2</sub>O로서 풍압차를 결정하고 통기량은 어느 것이든 12 m<sup>3</sup>/hm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수요자가 이들 중의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上記의 12 m<sup>3</sup>/hm의 基準은 최소한의 것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상향 조정하고 있다. 또한 英國協會에서도 일반적인 통기량을 10mmH<sub>2</sub>O에서 60 m<sup>3</sup>/hm 이하나 또는 길이당(m) 12 m<sup>3</sup>/hm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노르웨이 基準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 수치이다. 또 英國의 環境省에서도 창문의 氣密性能基準을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여기에서 이들 두

표 2 노르웨이基準



개의 도표를 보면 표 3 (Opening Joint)과 표 4 (Opening Light)에서와 같이 성능은 6등급으로 나누었고 5개의 곡선은 하급에서 상급으로 점점 상향조정한 것이며 첫번째 곡선은 보다 강력한 규정으로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건물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4개의 곡선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표시를 하지않고 단지 A<sub>1</sub>·A<sub>2</sub>·B·C 등급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두개의 그래프의 값을 수치적으로 보면 서로 5배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 3이 좀 엄격한 기

준이며 노르웨이에서도 이 기준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루버창은 그 창이 가지고 있는 특징때문에 표 4의 기준에 의해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길이당(m)으로 측정하게 되면 많은 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기준의 소재가 있는 이유에서이다. 英國의 기준은 낮은 壓力差에서는 좀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으나 50 mm H<sub>2</sub>O에서도 12m<sup>3</sup>/hm로 규정하고 있어 높은 壓力差에서는 노르웨이 기준과 같다.

### 3. 美國의 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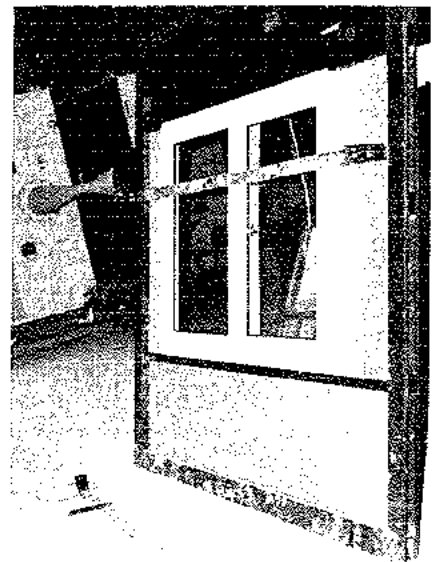
美國에서도 다른 유럽地域과 같이 길이당(m), 즉 Opening Joint法을 사용하고 있다. 이곳의 氣密性能基準은 美國알루미늄협회(AAMA)가 ASTM E 283 試驗方法에 따르고 있으며 알루미늄窓의 통기량을 壓力差 7.6mm H<sub>2</sub>O에서 2.1m<sup>3</sup>/hm 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또 일반적인 美國의 한계치는 7.6 mm H<sub>2</sub>O에서 2.8m<sup>3</sup>/hm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좀 고급창에는 30mm H<sub>2</sub>O에서 2.8m<sup>3</sup>/h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7.6mm H<sub>2</sub>O에서 2.8m<sup>3</sup>/hm의 누출량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대략 10mm H<sub>2</sub>O에서 3.5m<sup>3</sup>/hm가 빠지는 것과 같으며 20mm H<sub>2</sub>O에서는 5m<sup>3</sup>/hm가 빠지는 것과 같다. 이 수치의 기준은 英國의 하급의 1/3밖에 되지 않으며 상급의 1/2보다 적다. 또 북아메리카의 공인 試驗所 등에서도 ASTM 試驗方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기의 흐름량을 난지 하나의 공칭된 壓力差, 즉 7.6 mm H<sub>2</sub>O에서만 시험을 하고 있다.

### III. 試驗實施 및 結果分析

#### 1. 試驗實施

本研究試驗을 위해 우리나라 우수窓戶業체의 窓戶를 서울·인천·창원·부산·울주 等地에서 수집하였으며 試驗實施는 20여일에 걸쳐 관련窓戶業체와 관심있는 분들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사진은 試料를 후레임에 제작하여 氣密試驗機에 넣고 있는 장면이다.



□ 試驗實施전경

표 3 Opening J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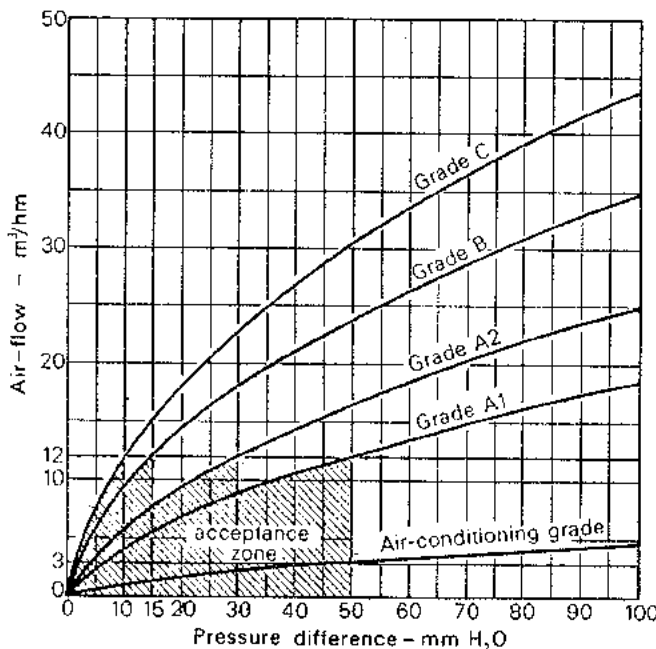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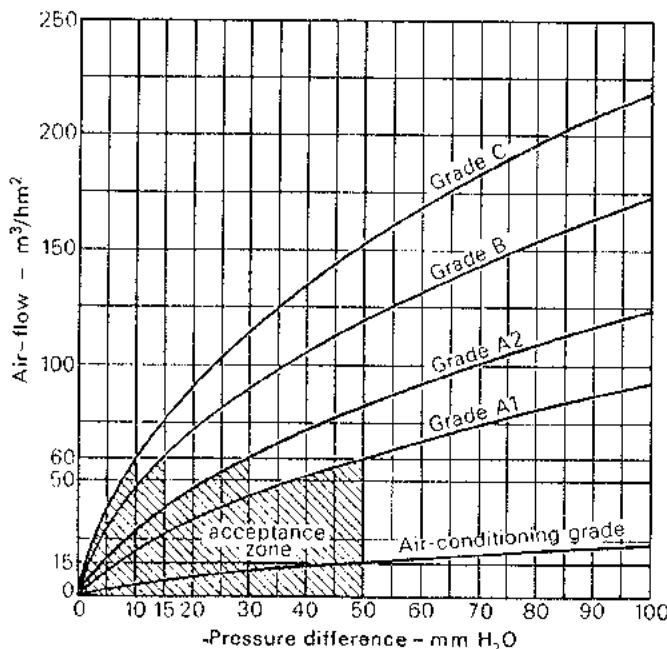


표 4 Opening Light



## 2. 結果分析

試驗結果는 표 5와 같으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業体の 製品이 外國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를 比較分析하여 보면 표 6과 같다. 이 값은 窓窓의 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木材窓窓의 경우 5.8~6.8배나 공기의 누출량이 많은 값이다. AL窓窓의 경우는 3.4~4.3배 기타 窓窓는 5.7~6.3배이고 木材 出入口도 5.7~9.4배의 차이가 났으며 다만 합성수지 제품만이 노르웨이나 英國의 기준을 능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렴한 가격의 생산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國內窓窓의 대부분이 氣密性能에 대한 각종 보안이 개발되지 않은 때문이다. 또한 창틀의 홈의 깊이나 넓이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홈의 깊이는 목재창의 경우 대부분 6mm였으며 깊이가 8mm일 때와 비교하여 볼 때 대략 3.5m<sup>3</sup>/hm의 양이 더 빠져 나갔다. 레일(Rail)의 위치에 따라서도 빠져나가는 누출량이 달랐는데 그림

A보다 그림 B가 1.2m<sup>3</sup>/hm나 덜 빠져 나갔으며 또 그림 B는 압력이 가해질수록 빠져나가는 누출량이 급증하였다. AL窓窓의 경우는 레일의 두께가 4mm인 것이 3.5mm인 것보다 대략 1.8m<sup>3</sup>/hm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氣密性能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제작시 틈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窓窓가 닫혔을 때 공기의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림 C와 같이 맞닿는 선대를 제혀보 하거나 그림 D와 같이 창틀에 고무버킹을 부착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면(綿: Wool이나 Cotton·모헤아)을 공기의 유통이 될만한 곳에 그림 E와 같이 부착시켜 氣密하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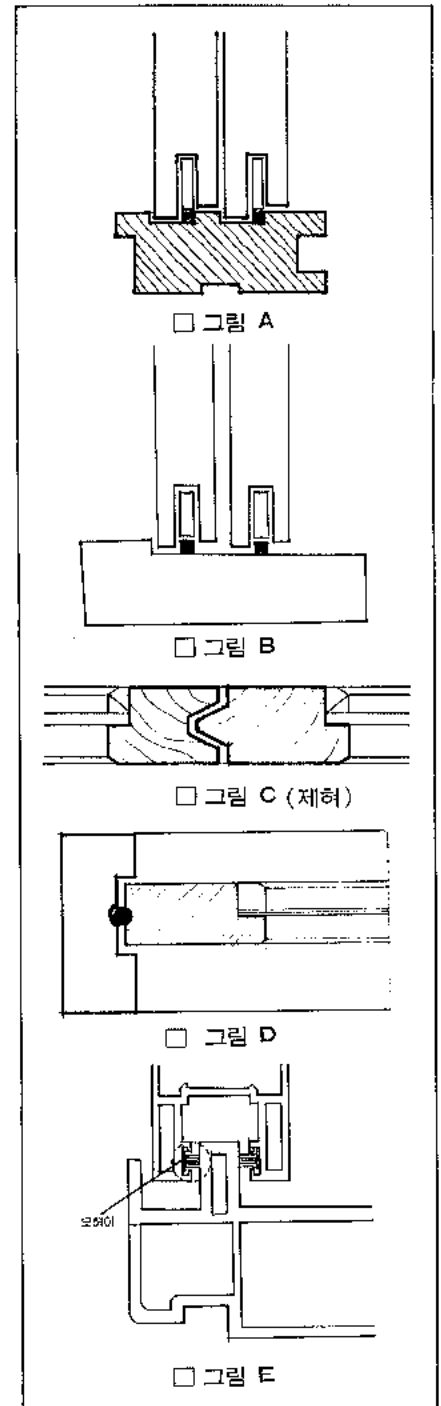
다음은 Ingenar Hoglund博士와 Bent Wanggran 研究官의 共同研究에 의한 氣密性能 유지방안의 내용을 보면 그림의 설명과 같이 O형·U형·D형 등의 스트립(strip)을 제안하고 있다.

표 5 시험결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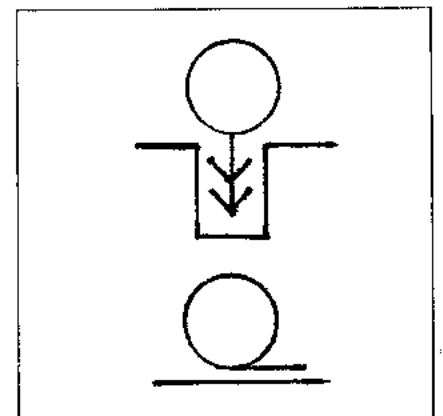
| 시    | 료       | 시 험 결 과 (m <sup>3</sup> /hm) |                       |                       |                       |
|------|---------|------------------------------|-----------------------|-----------------------|-----------------------|
|      |         | 10mm H <sub>2</sub> O        | 15mm H <sub>2</sub> O | 30mm H <sub>2</sub> O | 40mm H <sub>2</sub> O |
| 알미늄창 | 2 중 창   | 11.9                         | 14.6                  | 20.76                 | 23.63                 |
|      | 2 중 창   | 14.92                        | 18.43                 | 27.64                 | 32.03                 |
|      | 2 중 창   | 15.09                        | 19.3                  | 28.03                 | 32.47                 |
| 목재창  | 목재단창    | 20.5                         | 23.24                 | 28.24                 | 35.55                 |
|      | 목재단창    | 23.12                        | 28.26                 | 38.17                 | 40.73                 |
|      | 목재2중창   | 24                           | 33                    | 50.6                  | 52.4                  |
| 합성수지 | 합성수지    | 10.26                        | 12.9                  | 20                    | 23.3                  |
| 철재창  | 철제복층리   | 17.67                        | 21.66                 | 27.6                  | 28.38                 |
| 기타창  | 합성수지+목재 | 9.85                         | 13.9                  | 22.02                 | 24.92                 |
|      | AL+목재   | 20.11                        | 25.6                  | 35.66                 | 41.15                 |
|      | "       | 22.02                        | 27.23                 | 38.25                 | 44.62                 |
| 목재문  | 목재문     | 19.9                         | 24.32                 | 31.37                 | 33.27                 |
|      | 목재문     | 33                           | 41.2                  | 58.69                 | 60.32                 |
| 철재문  | 철제문     | 22.73                        | 25.69                 | 37.55                 | 42.98                 |
|      | 철제문     | 26                           | 31.89                 | 42.65                 | 52.4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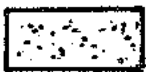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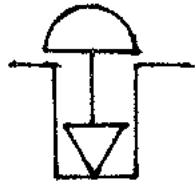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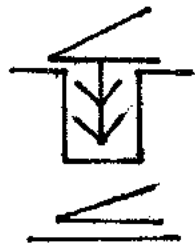
표 6 비교표

| 국내 시험결과 |                               | 외국 기준 |                        |                       |
|---------|-------------------------------|-------|------------------------|-----------------------|
| 시료명     | 시험결과                          | 국명    | 최저기준                   | 에어콘설치실용               |
| 목재2중창   | 24m <sup>3</sup> /hm          | 미국    | 3.5m <sup>3</sup> /hm  | 미상                    |
| 알미늄2중창  | 11.9—15.09m <sup>3</sup> /hm  | 영국    | 12.0m <sup>3</sup> /hm | 1.0m <sup>3</sup> /hm |
| 목재+알미늄  | 20.11—22.02m <sup>3</sup> /hm | 노르웨이  | 15.0m <sup>3</sup> /hm | 0.6m <sup>3</sup> /hm |
| 합성수지+목재 | 9.85m <sup>3</sup> /hm        |       |                        |                       |
| 목재출입문   | 19.9—33m <sup>3</sup> /hm     |       |                        |                       |
| 철제출입문   | 22.7—26m <sup>3</sup> /hm     |       |                        |                       |



- 튜브형(O형) Strip: 홈 속으로 화살촉 모양의 허가 들어가게 됨.
- 튜브형(O형) Strip: 튜브에 달린





끼리를 접착제 또는 못으로 고정한다.

○모 (角) 스트립 (Angle Strip · V 스트립) : 평활한 표면에 스테이플·못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D 스트립 : 홈 속으로 밀어 넣는다.

○팽창 스트립 (Expanded Strip) : 평활한 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폼 스트립 (Foam Strip) : 평활한 표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화이버 스트립 (Fibre Strip) : 평활한 면에 못 또는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 IV. 氣密性能의 基準制定

표 5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窓·門의 氣密性能은 外國의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실정하므로 窓戶의 氣密性能 基準制定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建設部에서는 建築法 施行規則에 氣密性能에 대한 條項을 추가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유도할 계획으로 開口部의 氣密性能試驗方法을 建設部 고시 201호로 공고한바 있으며 건축사지 6월호에도 기재된바 있다.

#### 맺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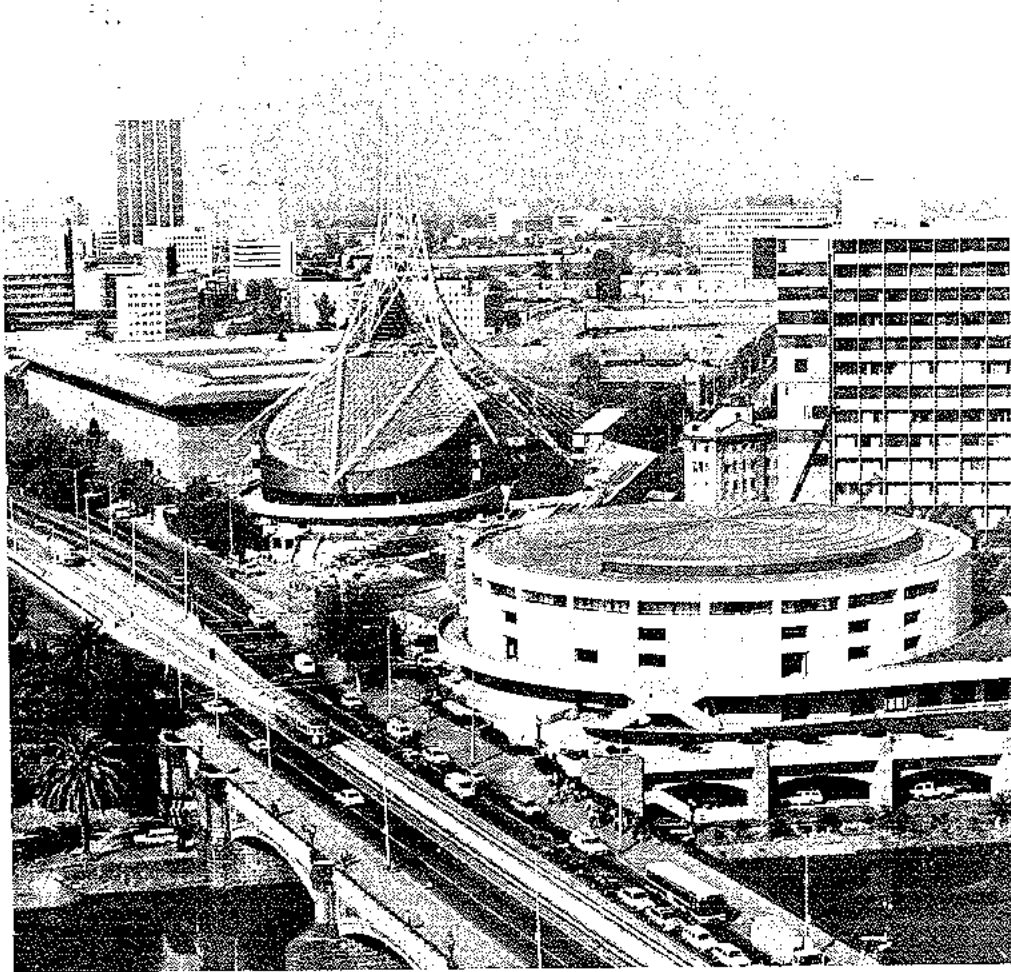
建築物에 있어서 공기의 누출은 틈으로의 바람의 침입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熱量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창을 통한 공기의 지나친 누출을 방지하여야 하는데 창을 통한 공기의

누출문제는 주로 창틀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窓틈이나 벽의 조인트 기타 유리판의 단부나 유리창과 틀의 틈으로 공기가 누출된다는 것은 기능공의 미숙함에 의한 때문이거나 불합리한 시공관리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창을 통한 공기의 누출은 비록 찬바람이 밖에서 들어오든 아니든 더운바람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현상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즉 이러한 현상은 실내의 壓力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가지의 복합된 요인들에 의한 공기의 누출인데 이는 겨울철에 찬바람이 실내에 흘러다니는 공기에 함유되어 천정 속과 외벽내면에 응결되어 결로현상을 가져오며 또한 화재시에도 연기의 차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開口部의 氣密性能基準制定으로 에너지절약은 물론 차음성능의 확보로 국민보건안전상 쾌적한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試驗의 궁극적인 목적인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本研究의 의의라 하겠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氣密性能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규제보다도 美國·英國·노르웨이와 같이 窓戶 제조업자들이 자체협회를 구성하여 자발적인 규제가 형성되는 것이 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 ◆ 建築宣言文 / 아테네憲章 - 그 條條 중에서

**도**시는 그 영향이 미치는 지역 전체의 테두리 안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지역계획은 단순한 市域計劃을 대체하여야 한다. 人口集塊 (agglomeration)의 한계는 그 경제활동의 半徑과 일치할 것이다. □ CIAM

## 새 오스트레일리안 콘서트 홀



멜버른의 새 콘서트 홀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광업은 멜버른의 Victorian Arts Centre의 내부설계에 근거를 제공했다.

내부는 John Truscott의 작품으로 그는 멜버른 태생의 설계사이자 연극영화제작으로도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랍이다.

그의 영화작품 중에는 외상과 디자인의 2개부분의 아카데미상을 탄 Camelot가 있다. Arts Centre 건축가인 고(故) Roy Grounds경이 연극에 재능을 지닌 디자이너를 원해서 1980

년 그를 실내장식 고문으로 선택했다.

“내가 그 일에 눈을 뜰었을 때 나는 오스트레일리아를 미묘한 방법으로 대표할 수 있는 주제를 생각해 내려 했다” “광산이야말로 오스트레일리아 개발에 다이내믹한 부분이며 광물이야말로 일련의 따뜻한 색깔을 내게하는 것이므로 광물을 생각했다”고 Truscott씨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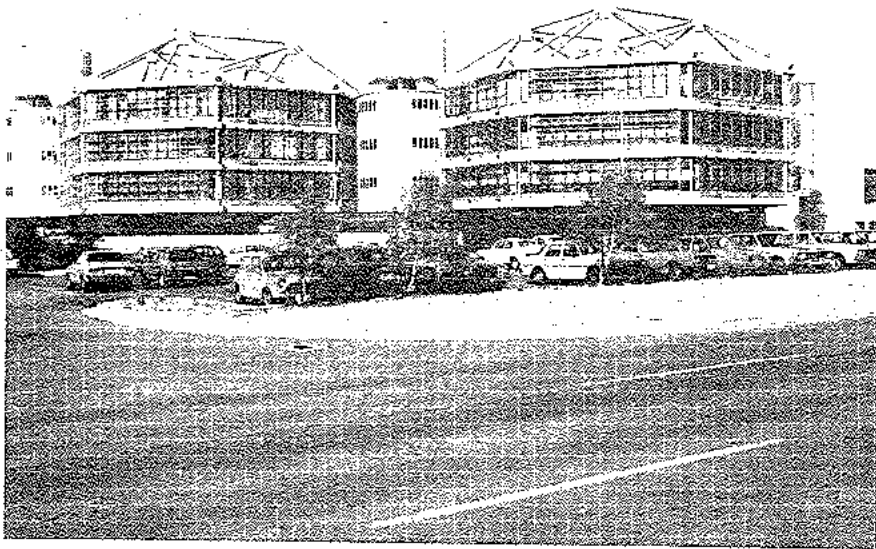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광석과 보석의 다양성을 택해 그것들을 얹게 배어 그 낱알과 색깔을 사용하여 대형 관객석에서 휴게실과 분장실에 이르기까지

실내장식에 대한 그의 영감의 단면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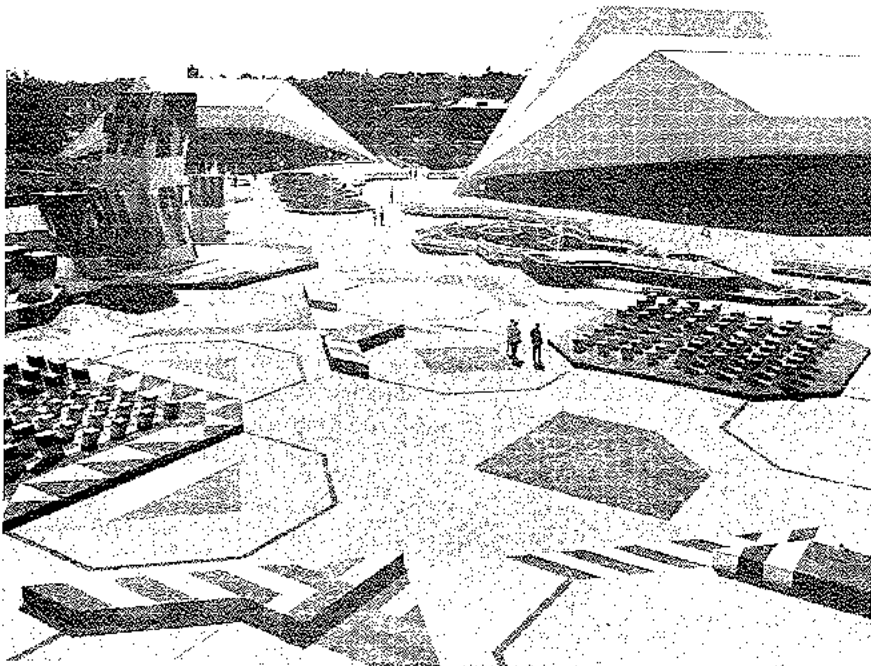
관객석의 벽과 천정은 원로 그대로의 콘크리트로 마감했다.

Truscott씨는 일단의 연극무대 화가들을 고용해 회색시멘트를 땅색으로 보이게 손으로 물감을 들이게 했고 바위의 단층을 나타내기 위해 측면을 조각하게 했다.

이 일은 거의 일년동안 작업을 했다. 관객석의 의자에서 바라보면 음악애호가가는 자신이 광산의 한 가운데 앉아있는 듯한 상상을 하게 된다.



캔버라의 Woden Town센터 근처의 Woden TAFE대학 외관



남오스트레일리아의 아델라이데 페스티벌센터의 남쪽광장. 서독의 조각가 Herbert Hajek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Truscott씨는 관객석의 천정에 89개의 투사기를 보이지 않게 설치했으며 각각의 석영유리판은 벽단면의 무늬에 초점을 맞추어 되반사시킨다. 투사기가 켜지면 바위단층 무늬에 무언의 색깔에 불이 켜질 때와 마찬가지로 방향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투사기들은 여러가지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빛을 흐릿하게도 보통으로도 할 수 있다. 관객석의 좌석 색깔은 벽과 천정의 자연스러운 색조와 밀접하게 관계된 4가지 색깔로 되어있다. 1982년 중반에 개장되기로 예정된 콘서트

홀은 멜버른 중앙의 강가로 모든 예술인들을 불러들일 2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상당의 3층 건물로 제2단계의 것이다.

제1단계는 빅토리아의 국립 화랑으로 1968년 완성되었다. 마지막 단계는 3층의 관객석을 가진 대규모 영화관으로 1984년에 개관될 예정이다.

다른 광물들과 아이디어를 상상적으로 사용하여 광물질의 주제를 변형시킨 것이 콘서트 홀로 하여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찬란한 내부장식을 갖게끔 한 것 같다. 그러나 외부는 건축상의 자유재량의 본보기가 된다. 회색

의 사암(砂岩)모양의 원형건물은 1973년부터 건축 중에 있다. 그 건물의 대부분이 지하에 있다. 지상층 단면도의 아래층 측면도로는 크기를 알 수 없으나 내부장식은 웅대할 것이다.

관객석의 좌석은 2,500개가 될 것이다. 여러모양 중 하나는 휴게실을 부풀어 오른 듯한 효과를 내는 시멘트로 마감할 것이다. Truscott씨는 이 방법을 상당히 보유하고 왔으며 다른 물질을 써 그 효과를 부드럽게 했다.

벽은 3가지 품질의 가죽으로 장식했으며 윤이 나는 낫쇠줄로 군데 군데 장식했다. 금박과 낫쇠로 천정을 광범위하게 장식했다.

분장실과 같은 보다 적은 공간도 이와같이 화려하게 장식했다. 지휘자의 방은 거북등 모양의 벽과 구리로 된 천정으로 되어 있다. 콘서트 홀에는 4개의 휴게실이 있으며 관객석의 원형으로 된 외부에 각기 다른 높이로 지어졌다.

공간은 휴게실에 연결되고 또 대형 상들리에를 달 충분한 여백을 위해 각 층에서 단절된다. Truscott씨는 시드니 조각가 Michael Santry에게 위탁하여 상들리에를 디자인하게 했는데, 그것은 다면체의 석영 크리스털과 윤을 낸 낫쇠와 강철로 이루어져 있다. 상들리에의 안쪽에는 전통이 없지만 투사기의 빛을 광범위하게 반사하여 휴게실의 각 부분에 무지개빛 조명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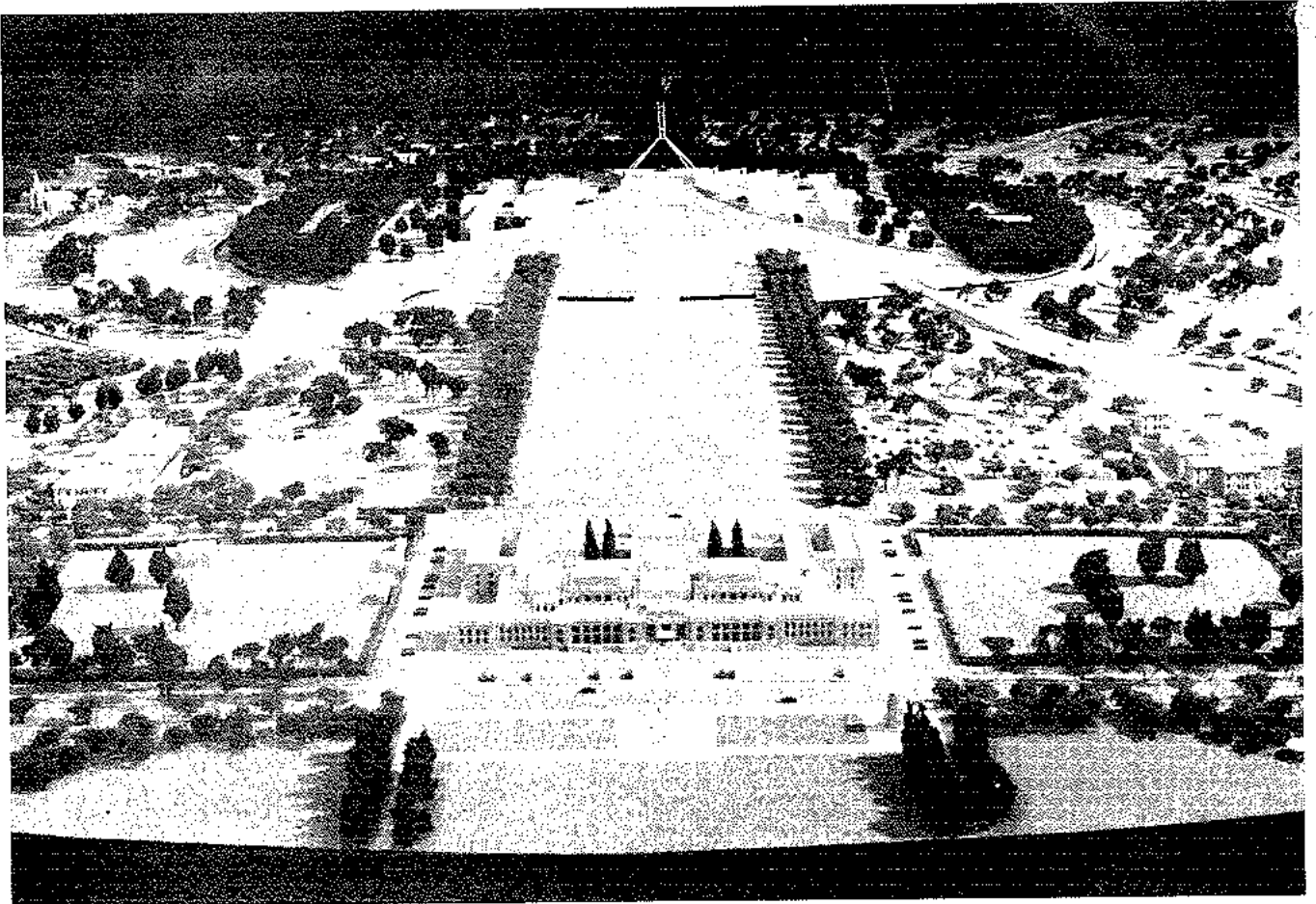
휴게실은 3명의 오스트레일리아인 화가의 주요작품, Sidney Nolan경의 220개의 개인소장품, 식물들의 한살이를 그린 6개 1조의 그림들이 전시될 것이다.

음악회 후원자가 주차장을 경유해 온다면 그는 먼저 윤이 나는 강철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 다음 대형 광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극장건물이 달린 콘서트 홀로 연결된다.

그가 위를 쳐다 본다면 우주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 거울을 사용하고 천정에 달린 수천개의 조그만 전구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을 느낄 것이다. 광장을 떠난 후 이 세상의 가장 큰 Hologram과 만나게 될 것이며 거기에는 레이저 광학기술이 3차원적 상상을 만들어 내는데 사용된다.



## 호스트레일리아의 새 국회의사당



영구히 사용될 새 국회의사당 설계 당선작 모형

호스트레일리아의 새 국회의사당의 운  
박은 수도 캔버라의 언덕 위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계획을 위해 시도된 세계적 경쟁  
에서 입상한 설계도에 의하면 Capital  
Hill에 아담하게 지어진 입법부 건  
물과 직면하고 있다.

캔버라는 이 지구상의 몇몇 안되는  
완벽한 계획에 의해 형성된 도시 중의  
하나로 Capital Hill은 美건축가 월터  
벌리 그리핀(Walter Burley Griffin)  
이 설계한 것이다.

Mitchell, Giurgola and Thorp의뉴  
욕상사에 근무하는 Richard Thorp

(36세)가 새 국회의사당의 설계사다.  
그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남겨둔채 언  
덕에 건물을 배치시켰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입상하게 된 중요  
요인이다.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첫단계로  
Capital Hill을 사실상 현 상태대로 이  
전시키는 것이다.

매형트릭과 땅고르는 설비가 언덕으  
로부터 백만입방미터 이상 실려갔다.

결국은 Capital Hill 안에 서게될 국  
회의사당의 위치에 십만입방미터가 할  
당될 것이다.

새 의사당은 1987년 중반에 나 사용

될 것이며 의회 회기인 1988년 5월에  
공식적으로 개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비용은 5억 5천만 호스트레  
일리아 달러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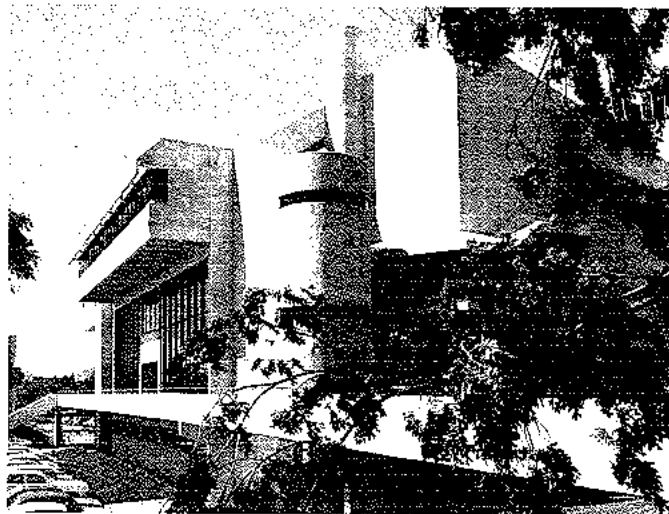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현 의사당은  
내구기간을 50년으로 작성하고 1927년  
Griffin에 의해 완성되었다.

50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번 확장되  
고 설계가 수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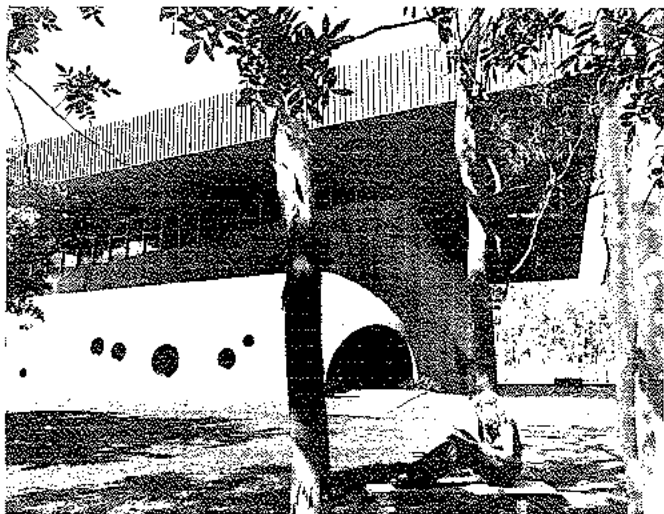
1978년에 시작된 새 의사당의 경쟁  
에는 28개국의 961명의 건축가들이 등  
록 하였다.

그 중 329명을 참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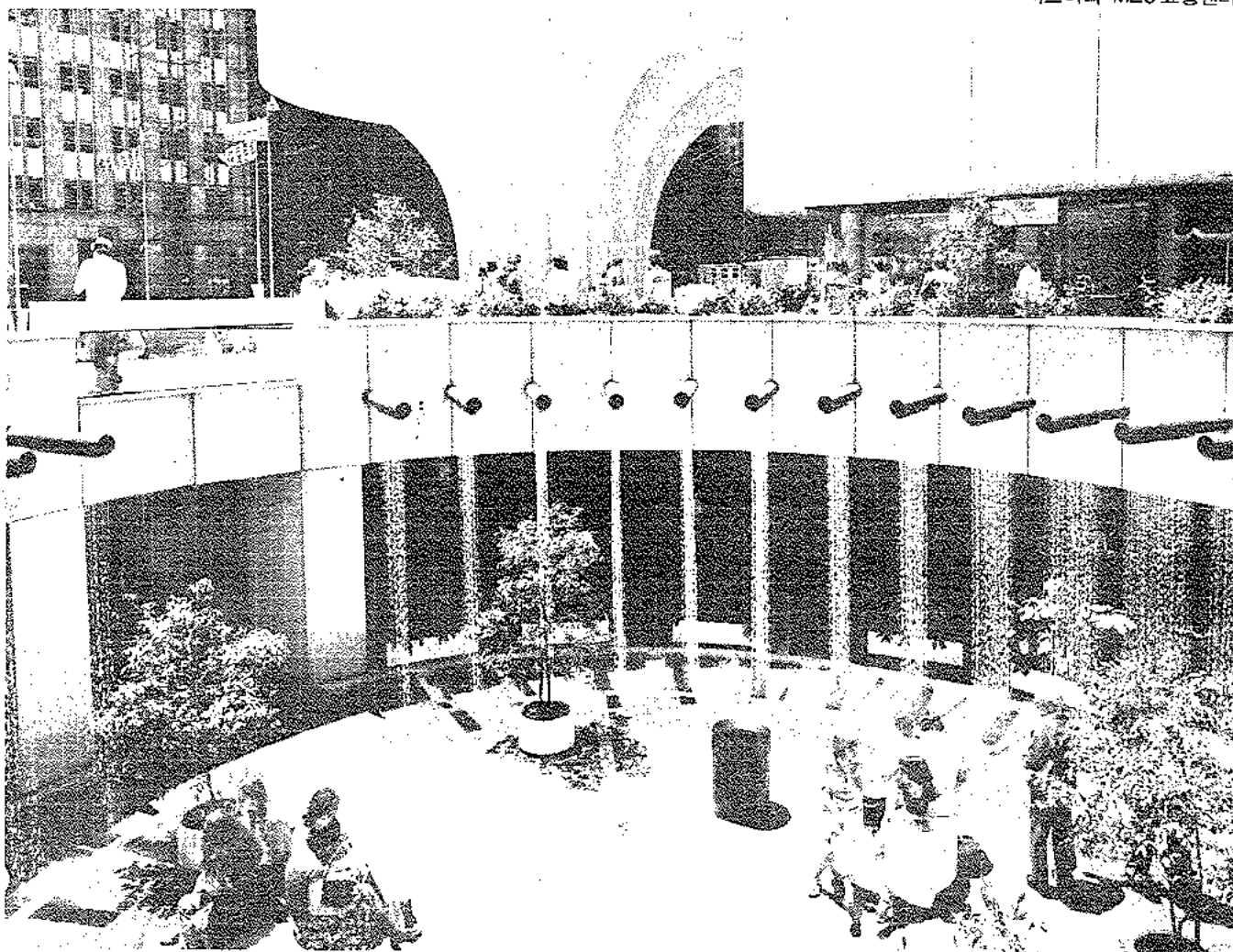
오스트레일리안 캐피털 테리토리에 있는  
캔버라 음악학교



노스 퀸즐랜드 제임스 쿡 대학의 중앙도서관,  
유려한 건축구조는 현대건축을 대표한다.



시드니의 MLC 쇼핑센터



# 構内通信線路設備에 關한 解説〔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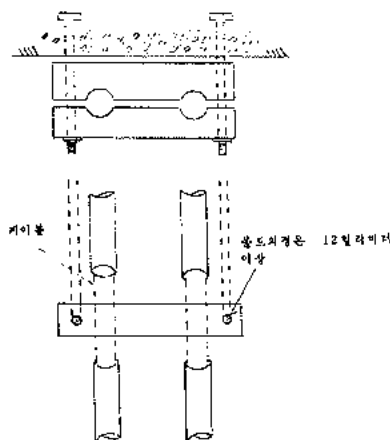
金 文 洙 — 逓信部通信政策局通信技術課

이번 호에서는 끝으로 構内通信線路設備에 關한 規定 중 屋內에 設置되는 각종 배선용덕트·접속함·단자함 및 단자반의 요건·電話回線의 끝을 마무리하는 전화 기용 콘센트·배선계통 및 배선용 선조의 요건과 設備의 保全管理에 關한 규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제105조(수직덕트) ① 수직덕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9의 도면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직덕트의 크기는 배선작업을 하기 위한 충분한 넓이로서 각층의 입구에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디딤대를 설치하고, 수직덕트 내면벽에는 30cm 내지 40cm 간격으로 디딤작정을 설치할 것.
  2. 수직덕트의 벽에는 토판 및 선조 등의 포설에 필요한 침목 또는 지지물을 60cm 내지 150cm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보수작업용 조명등 또는 콘센트를 설치할 것.
  3. 수직덕트 내부의 배관은 각층의 상면으로부터 1m 높이에서 중단하고, 케이블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물을 설치할 것.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직덕트는 배관만으로 선조의 포설이 가능한 경우와 배선 또는 보수 등의 작업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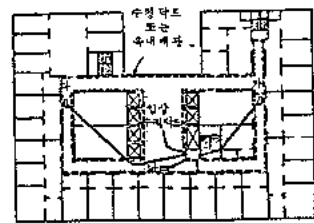
수직덕트내의 케이블지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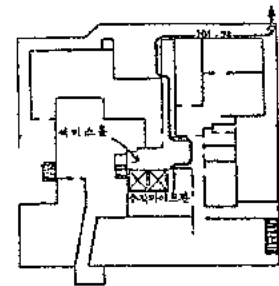
第105條(수직덕트)는 배선용량이 많은 대형 건축물에 서 배선 또는 보수 등의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수직덕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규정 중 제1호는 덕트의 크기와 배선 및 보수시 필요한 디딤대와 디딤작정의 설치 및 그 위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배관용 지지물의 설치위치와 모든 작업의 편리를 위하여 照

明燈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3호는 각층의 床面으로부터 1m 높이에서 배관을 끝맺음하여 主端子函 등으로 分岐되는 케이블을引出할 수 있도록 하고 배관의 終端으로 인하여 케이블이 노출되는 곳에는 케이블의 流動을 막기 위하여 지지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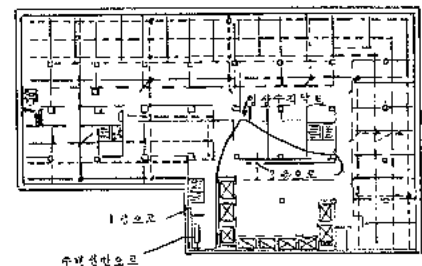
수직덕트구성에(사무실건물)



수직덕트구성에(아파트건물지하층)



수직덕트구성에(16층사무실건물의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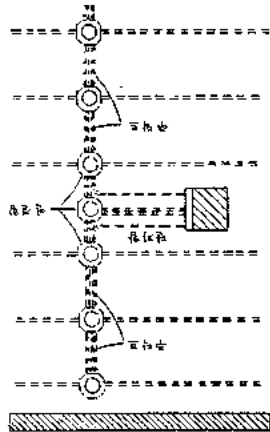


제106조(수평덕트) ① 옥내전화선의 길이가 7.5m를 넘는 경우에 옥내의 상면에 설치하는 수평덕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0의 도면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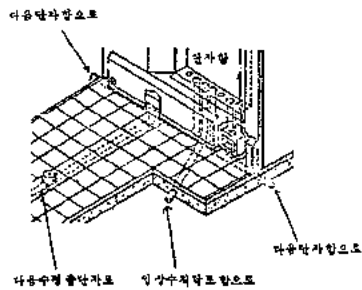
1. 실내단자함·출단자 또는 연결함의 설치는 별표 11의 도면에 의할 것.
2. 수평덕트내에 포설하는 옥내선은 피복물을 포함한 전체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로단면적의 50%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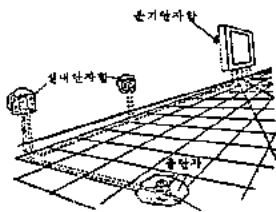
## 2. 수평덕트 및 연결함 시설표준도



## 3. 단자함과 배관표준도



## 4. 수평덕트를 시설하고 완성된 그림



제 107조 (접속함의 요건) 접속함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습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견고히 제작된 것을 사용할 것.
2. 규격은 별표 13에 의할 것.
3. 관로의 완곡점·선조의 분기점·타관로와의 연결점 또는 긴 관로의 구간에 배선 및 보수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4. 관구는 그 내부에서 사용케이블의 곡률반경이 최대가 되도록 할 것.

제 107조 (접속함의 요건)는 管路가 구부러져 설치되는 점·선조를 分岐하기 위하여 管路를 열어야 할 지점·다른 管路와 연결을 하여야 할 지점 또는 긴 관로의 구간에 배선 및 보수 등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접

속함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布設되는 케이블의 대수 및 條數에 따라 그 크기를 정하고 있다.

제 108조 (단자함 및 단자반의 요건) 단자함 및 단자반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자반의 단자수는 10단자를 기본으로 하고 이의 증가는 10의 배수가 되도록 할 것.
2. 단자함은 배선영역의 중심부에 설치할 것.
3. 주단자함에 수용하는 단자반은 국선방향의 케이블과 실내방향의 케이블의 접속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의 것일 것.
4. 주단자함에서 동일 방향으로 실내단자함이 집중설치될 경우에는 그 사이에 중간 단자함을 별표 14의 도면과 같이 설치할 것.
5. 구내교환설비의 주 배선반은 교환실 내에 설치할 것.
6. 국선용단자함은 국선과 주단자함의 배선에 충분한 용량의 단자반을 수용하여야 하며, 습기가 없고 구내 인입점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케이블의 대부분이 구내교환설비에 수용될 경우에는 국선용단자함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내교환 설비의 주 배선반에 이를 수용할 수 있다.

7. 실내단자함은 15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7.5m 이내의 옥내전화선을 분담 배선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상가일 경우에는 각실마다 단자함을 설치할 것.

제 108조 (구내단자함 및 단자반 등의 요건) ① 단자함·단자반 및 단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자반의 단자수는 10단자 (5 회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본으로 하고, 이의 증가는 10의 배수가 되도록 할 것.
  2. 단자함은 배선영역의 중심부에 설치할 것.
  3. 단자함에 수용하는 단자반은 인입과 인출의 양 방향케이블을 접속하는 데 필요한 용량의 것일 것.
  4. 주단자함에서 동일 방향으로 실내단자함이 집중 설치될 경우에는 그 사이에 중간 단자함을 별표 14의 도면과 같이 설치할 것.
  5. 구내교환설비의 주 배선반은 교환실 내에 설치할 것.
  6. 하나의 장소에 5 회선이상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실내 단자함을 설치하여 실내의 배선을 동단자함에서 분기할 수 있도록 할 것.
- ② 단자함의 규격은 별표 7의 규격표에 의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습 및 오염방지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 (82. 6. 2 改正)

| 케이블 조수        |         | 1          | 2            | 3            | 4          | 5          |
|---------------|---------|------------|--------------|--------------|------------|------------|
| 케이블 대수        |         | 폭-길이-깊이    | 폭-길이-깊이      | 폭-길이-깊이      | 폭-길이-깊이    | 폭-길이-깊이    |
| 케이블을 접속치 않을 때 | 5-26    | 200-300-70 | 200-300-70   | 250-300-70   | 300-350-70 | 400-450-70 |
|               | 30-50   | 300-300-70 | 300-400-70   | 350-450-70   | 400-500-70 | 500-700-70 |
|               | 100-200 | 500-500-80 | 600-700-80   | 700-800-80   | -          | -          |
| 케이블을 접속할 때    | 5-26    | 200-500-80 | 250-500-80   | 350-500-80   | 400-650-80 | 450-700-80 |
|               | 30-50   | 300-600-80 | 300-600-80   | 400-700-80   | 500-800-80 | -          |
|               | 100-200 | 500-900-90 | 600-1,000-90 | 700-1,200-90 | -          | -          |

주 (1) 1, 2 밀리미터 철판을 사용할 것.

(2) 뚜껑은 여닫이 문으로 하거나 개폐가 가능하도록 할 것.

## 직 선 용 접 속 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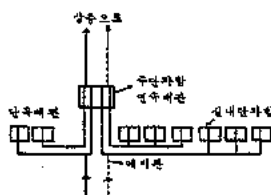
| 케이블 조수        |         | 1          | 2          | 3          | 4          | 5          |
|---------------|---------|------------|------------|------------|------------|------------|
| 케이블 대수        |         | 폭-길이-깊이    | 폭-길이-깊이    | 폭-길이-깊이    | 폭-길이-깊이    | 폭-길이-깊이    |
| 케이블을 접속치 않을 때 | 55-26   | 150-300-70 | 150-250-70 | 200-300-70 | 250-350-70 | 300-350-70 |
|               | 30-50   | 150-300-70 | 200-300-70 | 250-300-70 | 300-250-70 | 400-350-70 |
|               | 100-200 | 200-400-80 | 300-400-80 | 450-400-80 | 600-450-80 | -          |
| 케이블을 접속할 때    | 5-26    | 150-450-80 | 250-450-80 | 250-450-80 | 300-450-80 | 350-450-80 |
|               | 3-50    | 200-600-80 | 350-600-80 | 350-600-80 | 400-600-80 | -          |
|               | 100-200 | 350-700-90 | 350-700-90 | 550-700-90 | -          | -          |

주 (1) 1, 2 밀리미터 철판을 사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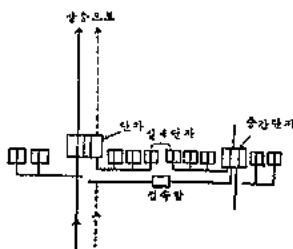
(2) 뚜껑은 여닫이 문으로 하거나 개폐가 가능하도록 할 것.

## 배 관 계 통 도

## 1. 단자함의 배관



## 2. 단자함의 배관



제 108조의 2 (전화용 회선 등) ① 전화용 회선은 전화기용 콘센트로서 종단하여야 한다.

② 전화기용 콘센트는 매립형의 것 (전면만을 외부에 노출시켜 벽체에 매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노출형의 것 (벽면에 노출시켜 고정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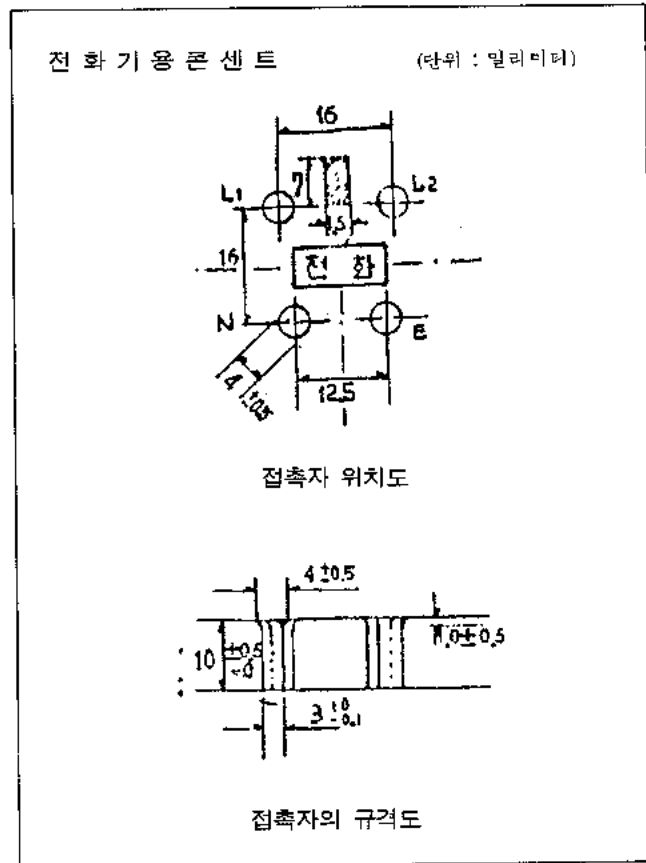
1. 별표 17과 같은 구조로서 전화기의 콘넥팅블럭과 완전·확실하게 조합될 수 있을 것.

2. 매립형의 경우에는 매립부에서 배선의 연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출형의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배선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접속부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2. 6. 2 新設)

第108條의 2 (전화용 회선 등)는 전화기를 전화회선으로부터 분리 또는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화기용 콘센트의 규격과 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화기를 이용자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 고장수리까지를 하도록 제도화 함에 따라 플러그식 콘넥팅블럭이 부착되도록 규격화된 전화기에 접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설비이다

전화기용 콘센트는 埋立型의 것과 露出型의 것 2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既存 건축물에 전화설비만을 하고자 할 때에는 露出型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으며 콘센트의 단자와 전화회선의 연결을 모두 内部에서 하도록 하여 外觀을 整備하고 고장요소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주”

- (1) 외관이 미려하고 견고할 것.
- (2) 매립형의 몸체는 KSC8414 1개용 스위치박스의 앞은형에 수용할 수 있고, 색깔이 잘 조화되는 플레이트를 취부할 수 있도록 할 것.
- (3) 노출형의 몸체는 나사못으로 벽체에 견고히 부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
- (4) 접속자는 물체에 견고히 고정되어 전화기의 콘택팅블럭을 500회 이상 연속하여 삽입 및 인출하여도 위치변동과 탈락됨이 없고 기본전기적 특성을보유할수 있을것.
- (5) 접속단자의 가까운 위치에 6포인트 활자(凸각 고딕체)크기로 단자명(L<sub>1</sub>, L<sub>2</sub>, E, N)을 각각 표시할 것.
- (6) 상면 중앙에 가로, 세로, 길이(15×7×1)의 홈을 파고 12포인트 활자로 “전화” 문자(凸각 고딕체)를 표시할 것.
- (7) 몸체상면 L<sub>1</sub>, L<sub>2</sub> 단자 사이에는 길이, 폭, 높이(7×1.5×1)의 돌출부가 있어 삽입위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할 것.
- (8) 몸체, 플레이트 및 카바의 재질은 초 유동성 ABS 수지로 하고 접속자는 인칭동, 접속볼트는 황동(Ni도금), 조립볼트나트는 황동(크롬메이트 처리), 불임치는 연강(아연도금)으로 할 것.
- (9) 접속자는 탄성을 가져 핀의 접속이 완전·확실하게 할 것.
- (10) 설치와 회선연결이 용이한 구조로서 간편하게 할 것.
- (11) 배선의 접속이 용이하고 배선상호간 및 배선연결부

와 외부몸체간이 혼촉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12) 전화기의 콘택팅블럭이 삽입되었을 때 접속자와 핀은 기계적·전기적 접속이 완전하여 8킬로그램 이상의 유지력을 가져야 하며, 그 접속저항은 100분의 1옴 이하일 것.

(13) 도체와 몸체간 및 도체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볼트로 측정하여 200메그옴 이상일 것.

| 제 109조(배선제통) 국선용                                                       | 제 109조(배선제통) 국선용                                                                                                               |
|------------------------------------------------------------------------|--------------------------------------------------------------------------------------------------------------------------------|
| 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으로부터 단말기기까지의 배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5의 도면과 같이 한다.           | 수용단자로부터 단말기기까지의 배선은 다음 각호에 따라 별표 15의 도면과 같이 한다.                                                                                |
| 1. 인입케이블은 국선용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에 성단할 수 있을 것.                                  | 1. 국선수용단자로부터의 배선은 주단자함 또는 구내교환설비의 주배선반으로 분기할 것. 다만, 주단자함 또는 구내교환설비의 주배선반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간단자함·실내단자함·또는 전화기용 콘센트에 직접 분기할 수 있다. |
| 2. 국선용단자함으로부터의 케이블은 주단자함 또는 구내교환설비의 주배선반으로 분기할 것.                      | 2. 주단자함 또는 구내교환설비의 주배선반이로부터의 배선은 중간단자함·실내단자함 또는 전화기용 콘센트로 분기할 것.                                                               |
| 3. 주단자함으로부터의 케이블은 중간단자함 또는 실내단자함으로 분기할 것.                              | 3. 중간단자함으로부터의 배선은 실내단자함 또는 전화기용 콘센트로 분기할 것.                                                                                    |
| 4. 중간단자함으로부터의 케이블은 실내단자함으로 분기할 것.                                      | 4. 실내단자함과 단말기기 사이의 배선은 옥내전화선으로 할 것. 이 경우 옥내전화선이 상면에 노출되는 때에는 보호조치를 할 것.                                                        |
| 5. 실내단자함과 단말기기사이의 배선은 옥내전화선으로 할 것. 이 경우 옥내전화선이 상면에 노출되는 때에는 보호조치를 할 것. | 5. 단말기기 사이의 배선은 옥내전화선으로 할 것. 이 경우 옥내전화선이 바닥에 노출되는 때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82. 6. 2改正)                                           |

제 109조(배선제통)는 局線收容端子로부터 단말기기까지의 室内배선제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단자함·주배선반·중간단자함·실내단자함 등은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상 필요한 것만 설치하도록 자율화하여 시설의 간편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제 110조(배선용선조의 요건)                 | 제 110조(배선용선조의 요건)                 |
|-----------------------------------|-----------------------------------|
| 옥내배선으로 사용하는 선조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옥내배선으로 사용하는 선조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1. 실내단자함과 단말 기기간의 배선은 직경 0.8mm 피·브이·씨 옥내전화선 또는 피·브이·씨 쌍심케이블을 사용할 것.
2. 단자함 사이의 배선은 직경 0.5mm 이상의 피·이 케이블 또는 동등 이상의 선조를 사용할 것.
3. 구내교환기와 주배선반 사이 또는 주단자함 사이의 배선은 피·브이·씨 국내케이블을 사용할 것.
4. 선조를 벽면에 노출시킬 경우에는 절연된 것으로 고정시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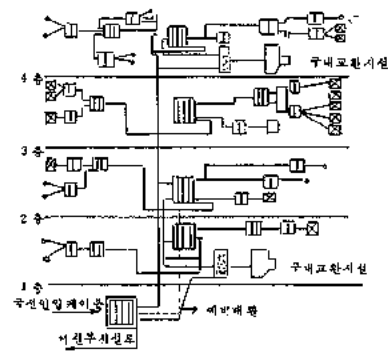
1. 국선수용 단자·주단자함·중간단자함 또는 실내단자함과 전화기용 콘센트간의 배선은 직경 0.8mm 피·브이·씨 옥내전화선 또는 피·브이·씨 쌍심케이블을 사용할 것.
2. 옥내단자함 사이의 배선은 0.5mm 이상의 피·이 케이블, 피·브이·씨 국내케이블 또는 동등이상의 선조를 사용할 것.
3. 구내교환기와 주배선반 사이 또는 주단자함 사이의 배선은 피·브이·씨 국내케이블을 사용할 것.
4. 선조를 벽면에 노출시킬 경우에는 절연된 것으로 고정시킬 것.
5. 동일구간의 배선이 5회선 이상일 경우에는 제91조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82. 6. 2改正)

③ 구내통신선로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공중통신설비에 접속된 설비를 우선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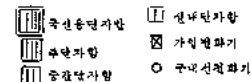
—해설 생략—

별표 15 배 선 계 통 도

### 1. 국선-주배선반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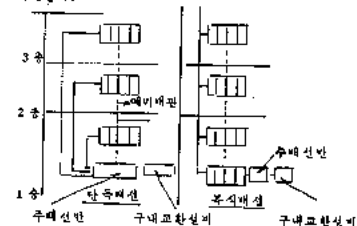
범 배



### 2. —삭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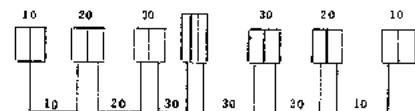
### 3. 수직배선방법

주단자반과 중간단자반과의 케이블배선은 벽 중첩단자반마다 단독으로 배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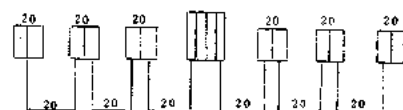


### 4. 체감식 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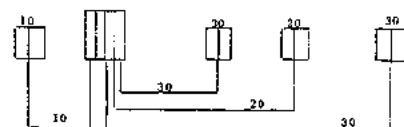
단위 : 피



### 5. 복식배선



### 6. 단독배선



제110조(배선용선조의 요건)는 屋內배선용으로 사용되는 선조류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局線收容端子·主端子函·中間端子函 또는 室內端子函 등에서 5회선미만의 회선이 전화기용 콘센트로 배선되는 경우에는 0.8mm 피·브이·씨 屋內전화선 또는 피·브이·씨 쌍심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屋內端子函 사이의 배선은 從前에는 0.5mm 이상의 피·이 케이블 또는 동등이상의 선조를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屋內端子函 사이의 배선은 배관 속에 배선되어지므로 절연 또는 케이블 보호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남뚝작업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피·브이·씨 국내케이블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호에서는 동일구간의 배선이 5회선 이상인 경우에는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하여 고장요소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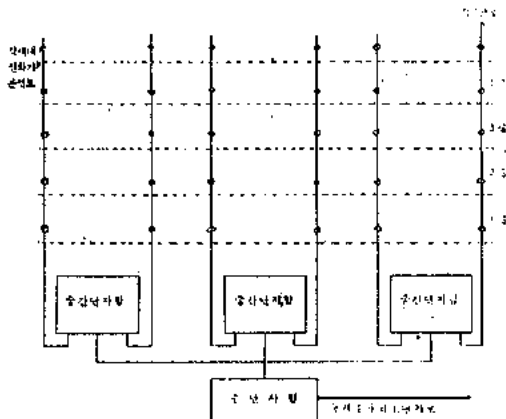
제111조(회선수의 산출기준) —삭제— (82. 6. 2改正)

제112조(보수의 책임 등) ①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유지·보수는 시설주가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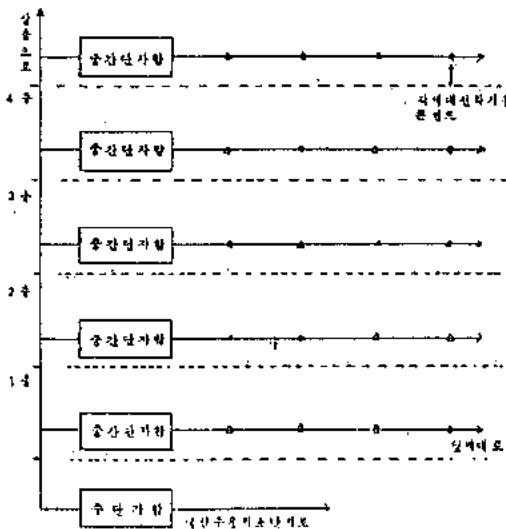
②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고장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시설 또는 예비선로를 설치하여 고장회선을 전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 계단식 아파트 배선도



## 8. 복도식 아파트 배선도



제113조(보전수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보전기준은 체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보전수준에 의한다.

제113조(보전수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보전기준은 공중통신설비의 보전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82. 6. 2改正)

—해설 생략—

제114조(기록관리)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도면들을 배치하고, 설비의 보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점검표 및 고장수리기록표  
2. 관로도

제114조(기록관리) 5회선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도면들을 배치하고, 설비의 보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점검표 및 고장수리기록표

3. 선로도  
4. 단자배선도  
5. 선번장

2. 관로도  
3. 선로도  
4. 단자배선도  
5. 선번장(82. 6. 2改正)

제114조(기록관리)는 5회선 이상의 局線을收容하는 경우 구내통신선로설비에 대한 圖面 및 점검표 등을 비치하여 변동사항이나 고장수리 내역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치나 선조 등의 특성과 시설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改修나 유지보수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중통신설비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115조(시험점검) 전기통신업무 취급국에서 구내통신선로설비에 대하여 회선시험 등을 행할 경우에 시설주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생략—

제116조(시험기 등의 상비)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시설주는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보수에 필요한 시험기·공기구 및 보수용자재를 상비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유지보수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생략—

## IV. 맺는말

從前에는 管轄 電話業務取扱局에서 一括하여 施行하던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認·許可 제도 및 협의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建築物을 建築 또는 大修繕할 때에 한하여 建築物의 준공검사에 포함하여 市長 또는 郡守가 시행하도록 建築法에서 규정하고 있다.

周知하는바와 같이 통신은 사람의 신경에 비유되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特性 또한 정밀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자가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만 요구하는바의 特性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建築物의 설계 및 工事監理 등에 통신설비에 관한 전문가가 이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工事完了 후 基準未達로 인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공중통신설비에 접속이 금지되는 등의 불상사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갖추어야 할 建築物의 규모에 대하여는 建築法施行令의 改正(82. 8. 7)에 따라 체신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따른 補充작업이 早晚간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는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하면 될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과 工法 등의 導入으로 본규정은 계속 보완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끝으로 본해설이 구내통신선로설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여러분에게 다소간의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 )

## 건축자재해설

### 冷・暖房機器

#### (1) 全自動 小型 溫水보일러

보일러의 소형화, 무소음, 완전연소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15坪이상 30坪미만 주택의 난방용으로 15坪미만 住宅은 연탄보일러와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 (2) 전타입 오일 버너

30坪이하 주택용으로 부터 1,000坪이하 공장용까지 다양하다. 견고한 알루미늄 주물동체와 부품은 정밀기계가공, 바란스미신, 동량 풍속조절기, CO<sub>2</sub>·CO분석기, 정밀전기 시험기등 최신 검사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될 수 있다. 동 製品은 버너의 정밀성과 고도의 성능을 얻기 위하여 버너의 생명인 모터첸 펌프의 회전수를 종래 1725 R.P.M에서 3450 R.P.M으로 높였으며 소음전동 50포이하 연소 효율 98%이상, 모터마력 1/18HP, 1/6HP, 1/4HP, 1/2HP, 1HP등으로 製作되어 있다.

#### (3) 노통 연관식 보일러

1 ton에서 10ton까지 容量이 規格別로 다양하며 진수명과 높은 성능으로 연관보일러의 특성을 살린 제품이다.

#### (4) 전자동 증기보일러

직물공장 건조 세팅용, 증기 다리미용으로 가장 적합하며 규격은 0.2에서 0.5ton의 전자동 소형 스팀 보일러로 관리에 편리하고 연료비 40%가 절감되며 전 자동이기 때문에 관리원이 필요없으며 1,000명미만 기숙사 취사는 20분내에 가능하다.

#### (5) 多目的 溫水보일러

취급이 간단한 One-Touch式으로 난방용 목욕탕 전용 보일러이다. 停電時 또는 오일버너 고장시는 연탄화목 및 폐품을 폐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본제품은 5단에서 40단kcal까지 용량이 규격별로 다양하다. 또한 내부가 完全 도금 처리된 급탕용과 동코일이 삽입된 급탕 난방겸용이 있다.

#### (6) 가정용 온수보일러

全自動 完全 安定性의 급탕 난방겸용으로 40坪이상 100坪미만에 가장 現想的인 보일러로써 최상급 수입부품을 사용한 자동장치로써 안전도 100%이다. 특수설계와 엄선된 재료로 제작되어 수명이 10년이상 사용 가능하며 특수설계된 2차연소실로 완전연소시켜 적절한 熱效果와 연료비 절감을 기할수 있는 製品이다.

#### (7) 보일러

콘트롤러를 부착하여 버너의 점화 및 실내온도가 원전 자동 조절될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완전 자동식이며 불꽃이 연소실과 횡연관을 통해 3회전 하는 동안 열을 완전히 흡수하므로 열효율이 최상인 횡연관 특수식 3패스

#### ◇종류 및 규격

| 구분    | 단위             | 형식 | S-2    | S-3    | S-5    | S-7     | S-10    | S-15    | S-20    |
|-------|----------------|----|--------|--------|--------|---------|---------|---------|---------|
| 발 열 량 | kcal/hr        |    | 20,000 | 30,000 |        | 70,000  | 70,000  | 150,000 | 200,000 |
| 연료소비량 | l/hr           |    | 2.4    | 3.6    | 6.0    | 8.4     | 12.0    | 17.5    | 24.0    |
| 전열면적  | m <sup>2</sup> |    | 2.15   | 2.65   | 3.71   | 5.62    | 7.40    | 11.57   | 16.20   |
| 급탕량   | l/hr           |    | 300    | 500    | 700    | 800     | 800     | 주문에 의함  |         |
| 연통직경  | mmφ            |    | 200    | 200    | 250    | 250     | 250     | 300     | 300     |
| 배관구경  | mmφ            |    | 50     | 50     | 65     | 65      | 80      | 80      | 80      |
| 버너    | 출력             | Hp | Gun1/8 | Gun1/8 | Gun1/8 | Gun1/8  | Gun1/6  | Gun1/4  | Gun1/3  |
|       | 사용연료           |    | 경 유    |        |        |         |         |         |         |
| 외형 치수 | 너비             | mm | 520    | 520    | 570    | 610     | 610     | 800     | 900     |
|       | 높이             | mm | 915    | 915    | 1,050  | 1,220   | 1,220   | 1,400   | 1,520   |
|       | 깊이             | mm | 550    | 700    | 820    | 925     | 1,230   | 1,200   | 1,500   |
| 난방면적  | 평              |    | 30~40  | 40~60  | 60~100 | 100~140 | 140~200 | 200~300 | 300~400 |

#### ◇로보트 보일러의 종류

| 품명     | 단위                 | 기름보일러  |        |        |        |         |         |
|--------|--------------------|--------|--------|--------|--------|---------|---------|
|        |                    | KR-40  | KR-60  | KR-80  | KR-150 | KR-200  | KR-300  |
| 발 열 량  | kcal/hr            | 20,000 | 30,000 | 50,000 | 70,000 | 10,000  | 150,000 |
| 난방평수   | 횡탄에리어              | 20~30  | 30~50  | 60~80  | 100    | 100~150 | 150~200 |
| 관수용량   | l                  | 110    | 129    | 167    | 178    | 309     | 396     |
| 연료소비량  | L/HR               | 3~5    | 5~6.5  | 6.5~8  | 8~11   | 11~15   | 15~20   |
| 수압시험압력 | kg/cm <sup>2</sup> | 5.25   | 5.25   | 5.25   | 5.25   | 5.25    | 5.25    |
| 배관구경   | m/m                | 50     | 50     | 65     | 65     | 75      | 75      |
| 연통구경   | m/m                | 150    | 150    | 200    | 200    | 200     | 250     |
| 바나     | Hp                 |        | 1/8    | 1/8    | 1/4    | 1/4     | 1/4     |
| 외형치수   | A                  | 470    | 540    | 610    | 610    | 690     | 800     |
|        | B                  | 1,150  | 1,150  | 1,280  | 1,450  | 1,600   | 1,750   |
| 중량     | kg                 | 320    | 340    | 420    | 440    | 480     | 520     |
| 제작방법   |                    | 프레스성형  |        |        |        |         |         |

| 품명     | 단위                 | 연탄보일러  |        |        |        |
|--------|--------------------|--------|--------|--------|--------|
|        |                    | KR-191 | KR-192 | KR-193 | KR-194 |
| 발 열 량  | kcal/hr            | 3,110  | 5,300  | 9,120  | 12,300 |
| 난방평수   | 횡탄에리어              | 3평     | 7평     | 12~14  | 14~18  |
| 관수용량   | l                  | 35     | 81     | 105    | 130    |
| 연료소비량  | L/HR               | 19공탄   | 19공탄   | 19공탄   | 19공탄   |
| 수압시험압력 | kg/cm <sup>2</sup> | -      | -      | -      | -      |
| 배관구경   | m/m                | 30     | 40     | 40     | 50     |
| 연통구경   |                    | 100    | 100    | 100    | 100    |
| 바나     | Hp                 |        | -      | -      | -      |
| 외형치수   | A                  | 430    | 650    | 950    | 1,250  |
|        | B                  | 590    | 590    | 950    | 590    |
| 중량     | kg                 | 780    | 138    | 203    | 269    |
| 제작방법   |                    |        |        |        |        |

용으로 배기온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 또한 넓은 연소실과 전열면적을 확보 하였으므로 연소 기능이 좋고 열효율이 높아 연료비를 30%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보일러의 上部 水室內에 특수 온수코일을 부설하여 규격에 따라 300~800l/hr의 온수(45℃ 기준) 사용이 가능하다.

#### (8) Mideco보일러

가스의 흐름을 3 패스로 채택함으로써 연료의 완전연소와 전열효과를 증가시켜 주는 보일러로 연소실 체적을 높여줌으로써 사용연료의 완전연소를 기하였으며 보일러

내 관수량이 적어 짧은 시간내에 난방과 온수를 사용할수 있다. 동 보일러는 물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일러 후부에 별도 강수관을 설치, 보일러내 물순환을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보일러 외동 내에 25mm유리면 보온을 하므로써 외부로 放出되는 熱量을 막지 하였다. 외장관은 완전조립식 캐비넷형 절연 특수도장으로 외장이 미려함과 동시에 1mm철판으로 제작되므로 견고한 난방과 급탕 및 음료수의 온수, 난방 겸용으로 제작되었다.

#### ◇ 연관식 보일러의 종류별 성능

| 구분<br>형식   | 증발량<br>KG/HR | 연소도량<br>KG/HR | 수증기<br>mm | 버너<br>전동기<br>Hp | 전동기<br>Hp | 규격 mm |       |       |
|------------|--------------|---------------|-----------|-----------------|-----------|-------|-------|-------|
|            |              |               |           |                 |           | 폭     | 길이    | 높이    |
| K. J. P-10 | 1,000        | 77.5          | 76        | 1               | 3         | 2,379 | 2,522 | 2,385 |
| 15         | 1,500        | 116.3         | 75        | 1               | 5         | 2,414 | 2,522 | 2,402 |
| 20         | 2,000        | 115           | 75        | 2               | 5         | 2,544 | 2,800 | 2,437 |
| 25         | 2,500        | 193.75        | 75        | 2               | 5         | 2,594 | 3,064 | 2,452 |
| 30         | 3,000        | 232.5         | 100       | 3               | 7.5       | 2,724 | 3,328 | 2,502 |
| 35         | 3,500        | 271.3         | 100       | 3               | 7.5       | 2,724 | 3,328 | 2,689 |
| 40         | 4,000        | 310.04        | 100       | 3               | 10        | 2,774 | 3,526 | 2,814 |
| 45         | 4,500        | 348.8         | 100       | 3               | 10        | 2,824 | 3,592 | 2,864 |
| 50         | 5,000        | 387.5         | 125       | 5               | 15        | 2,954 | 3,856 | 2,914 |
| 60         | 6,000        | 465.06        | 125       | 5               | 15        | 3,054 | 4,130 | 3,018 |
| 70         | 7,000        | 542.57        | 150       | 7.5             | 15        | 3,124 | 4,410 | 3,223 |
| 80         | 8,000        | 620.08        | 150       | 7.5             | 20        | 3,264 | 4,610 | 3,417 |
| 100        | 10,000       | 775.1         | 200       | 10              | 30        | 3,574 | 5,000 | 3,725 |
| 120        | 12,000       | 930.12        | 200       | 10              | 40        | 3,924 | 5,340 | 3,958 |
| 150        | 15,000       | 1160          | 250       | 15              | 50        | 4,134 | 5,670 | 4,125 |
| 200        | 20,000       | 1150          | 250       | 20              | 60        | 4,364 | 5,910 | 4,574 |

#### (9) High Pressure 연관식 보일러

Forced Draft 팬에 의한 가압식 연소방식을 택함으로써 도내의 열부하 및 연소 효율을 높여준 보일러로서 전 열面積의 합리적인 배치와 완전 수냉벽을 설치, 연소실에 의한 방사열 및 수관구에 의한 열흡수를 최대한 유효하게 설계 하였으며 보일러수 순환에 완전하게 설치된 강수관에 의해 보일러치는 명확한 회로를 형성하는 장점이있다.

#### (10) High Pressure 수관식 보일러

구조가 견고하고 수리 및 점검이 용이하며, 운전 조작 관리에 이상적이다. 개스의 유통은 3패스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단위 전열 면적당의 증발량이 높으며 효율이 높다. 동 보일러는 후부 연소실에 완전 수냉벽을 설치함으로써 측노부분이 필요 없으며 이장치로 인해 外部로 放出되는 열량을 방지한다. 동 제품은 보일러를 가동후 증기의 발생이 빠른 장점도 가지고 있다.

#### ◇ 수관식 보일러의 종류별 성능

| 구분<br>형식   | 증발량<br>KG/HR | 연소도량<br>KG/HR | 수증기<br>mm | 버너<br>전동기<br>Hp | 송풍기<br>전동기<br>Hp | 규격 (mm) |       |       |
|------------|--------------|---------------|-----------|-----------------|------------------|---------|-------|-------|
|            |              |               |           |                 |                  | 폭       | 길이    | 높이    |
| K. J. F-05 | 500          | 38.75         | 50        | 1/2             | 2                | 1,450   | 2,000 | 1,740 |
| " 10       | 1,000        | 77.5          | 75        | 1               | 3                | 1,650   | 2,400 | 1,850 |
| " 15       | 1,500        | 116.3         | 75        | 1               | 5                | 1,650   | 2,600 | 1,850 |
| " 20       | 2,000        | 115           | 75        | 2               | 5                | 1,740   | 3,200 | 1,940 |
| " 25       | 2,500        | 193.75        | 75        | 2               | 5                | 1,740   | 3,700 | 1,940 |
| " 30       | 3,000        | 232.5         | 100       | 3               | 7.5              | 1,980   | 4,000 | 2,180 |
| " 35       | 3,500        | 271.3         | 100       | 3               | 7.5              | 1,980   | 4,200 | 2,180 |
| " 40       | 4,000        | 310.04        | 125       | 3               | 10               | 2,050   | 4,450 | 2,250 |
| " 45       | 4,500        | 348.8         | 125       | 3               | 10               | 2,050   | 4,650 | 2,250 |
| " 50       | 5,000        | 387.5         | 125       | 5               | 15               | 2,270   | 4,650 | 2,470 |
| " 60       | 6,000        | 465.06        | 150       | 5               | 15               | 2,400   | 5,030 | 2,600 |

#### ◇ 주철재 온수보일러 종류별 성능

| 보일러의호수           | OBT-3             | OBT-5             | OBT-6             | OBT-7             | OBT-8             |
|------------------|-------------------|-------------------|-------------------|-------------------|-------------------|
| 난방 평수            | 30~50평            | 60~80평            | 80~100평           | 100~130평          | 130~160평          |
| 정격발열량<br>kcal/hr | 30,300            | 46,900            | 55,200            | 69,100            | 82,600            |
| 정격열효율%           | 86.4              | 87.2              | 87.2              | 87.2              | 87.2              |
| 연료사용량            | 4.16              | 6.62              | 7.57              | 9.47              | 11.35             |
| 매시당급탕량<br>t/hr   | 650               | 680               | 680               | 720               | 720               |
| 굴뚝의 크기<br>m/m    | 200×200×<br>6,000 | 200×200×<br>6,000 | 200×200×<br>6,000 | 300×300×<br>8,000 | 300×300×<br>8,000 |
| 중량 kg            | 201               | 281               | 319               | 357               | 396               |
| 노즐의 규격<br>galon  | 1.10~80"          | 1.70~80"          | 2.00~60"          | 2.50~60"          | 3.00~60"          |

註: 1) 난방 평수는 각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음.  
2) 급탕량은 7℃의 물을 45℃로 하였을 때의 양임.

#### (11) 45~0 오일버너

美 ABC로부터 중요部品을 수입 사용하고 있는 製品으로 自動 燒損防止器付着으로 사고가 없고 수명이 보장되며 최신형 콤비네이션 자동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 ◇ 오일버너의 종류별 특성

| 종류        | C <sub>1</sub>   | C <sub>2</sub>   | C <sub>3</sub>   |
|-----------|------------------|------------------|------------------|
| 사용연료      | 경유               | 경유               | 경유               |
| 버너모타      | 100V1/8Hp        | 100V1/8Hp        | 100V1/8Hp        |
| 연료펌프      | 美Max. 6 G.P.H    | 美Max. 6 G.P.H    | 美Max. 6 G.P.H    |
| 점화장치      | 1차100V 2차10,000V | 1차100V 2차10,000V | 1차100V 2차10,000V |
| 연료량       | 0.75~3.00 G.P.H  | 1.00~3.00 G.P.H  | 1.75~3.00 G.P.H  |
| 연소<br>감시기 |                  |                  |                  |

# 개 정 법 령

## 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0,878호 · 1982. 8. 5)

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되, 제4항(종전의 제3항)중 “150제곱미터 이상으로”를 “150제곱미터”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으로 한다.

1. 국민학교는 12학급까지는 학급당 290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학급마다 36학급까지는 105제곱미터, 37학급이상은 85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2. 중학교는 12학급까지는 학급당 350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학급마다 36학급까지는 115제곱미터, 37학급이상은 95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3. 고등학교는 12학급까지는 4천900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학급마다 36학급까지는 125제곱미터, 37학급이상은 105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③ 각급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체육장의 규격은 한 변의 길이 또는 대각선 길이가 1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차도의 거리로 2킬로미터 이내에 학교·공원·광장·기타 시설물에 직선길이 130미터 이상의 공공 시설이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유치원의 원사는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한 것으로서 원사에는 적어도 다음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보충교실(반당 실면적의 기준은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원아의 수가 반당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상)

2. 유희실(실면적의 기준은 50제곱미터 이상)

3. 변소(대변기는 반당 1개 이상)

제10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각실(유치원에 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제3조제3항”을 각각 “제3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장실과 사무실” 및 동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중 “(단위:평방미터)”를 “(단위: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유치원의 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치실의 면적이 제5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유치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 ◇学校施設・設備基準令 改正理由

幼稚園, 初・中等学校の 施設基準을 緩和함으로써 学校設立을 위한 用地確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들 学校の 設立을 容易하게 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初・中等学校の 体育場의 基準面積을 現行基準面積에서 平均 30퍼센트 緩和함. (令 第3條第2項)

나. 幼稚園의 普通教室 最小基準面積을 66제곱미터에서 5제곱미터로 緩和함. (令 第5條第9項)

다. 幼稚園의 必須施設로 되어 있는 園長室・事務室・宿直室・倉庫等 管理用 各室을 勤奨施設로 하여 幼稚園의 設立을 容易하게 함. (令 第10條第1項第12号)

(법제처 제공)

## 시장법시행령개정령

(대통령령 제10,887호 · 1982. 8. 9)

시장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사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이라 한은 시장의 주된 기능

인 물품의 매매·교환기능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공부령이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상설시장의 업태별종류·내용 및 영업자수)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설시장의 영업자수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설시장의 업태별 종류 및 그

내용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 (상설시장개설자의 자기소유건물등의 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의 기준은 상설시장개설허가건물면적 또는 상설시장개설허가매장면적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 (상설시장의 건물·매장면적 및 시설)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매장면적 및 시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도 상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상설시장 개설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상설시장의 조건부허가)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설시장이 포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공공의 이익 기타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제7조 (사업의 양도·양수)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상설시장개설자는 그 신청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설시장사업의 양도·양수가 시장운영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와 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정기시장의 시설기준등)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의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이하 “계절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급수시설·배수시설·위생시설(화장실·오물 수거장)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 다만, 계절시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 (계절시장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등)

①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시장개설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설시장개설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3.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시장개설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절시장개설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설시장개설 허가가

취소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계절시장개설자로 지정을 받은 때
3. 제8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③ 계절시장개설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계절시장안의 입주자로부터 그 대지·점포 및 시설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때
2. 정기시장의 관리·운영상 시장관리인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③ 시장관리인은 정기시장안의 입주자로부터 그 대지·점포 및 시설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조례에의 위임)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계절시장 및 정기시장의 운영·관리와 관리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경영진단기관의 지정)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타 상공부장관이 경영진단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 상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와 그 운영·관리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3조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시장개설자·시장관리인 및 연쇄화사업자의 경영·판매의 지도와 판매요원의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3. 기타 상공부장관이 경영·판매의 지도능력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연수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와 그 운영·관리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4조 (판매사의 자격기준등)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사의 자격시험실시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판매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한 자로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사자격시험의 실시·등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③ 상공부장관은 판매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판매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계속해서 2년이상 유통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판매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감 독) 상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9조제 1항의 검사를 행한 후 연쇄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장의 적합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 (권한의 위탁) 상공부장관은 법 제2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사의 자격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허가기준 구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 2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 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기존시장개설자가 그 기간내에 법 제 7 조 제 1 항의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 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도지사는 법 제 7 조 제 1 항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존시장개설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후 2 년이내에 시장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시장개설자가 부칙 제 2 항의 기간내에 그 허가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 기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상설시장의 업태별종류·내용 및 영업자수(제 3 조 관련)

| 기능별 | 업태별 종류     | 내 용                                                                              | 영업자수  |
|-----|------------|----------------------------------------------------------------------------------|-------|
| 도 배 | 도배시장       | 주로 최종소비자 외의 자에게 공산품 위주로 매매·교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시장                                     | 10인이상 |
| 소 배 | 1. 일반소매 시장 | 주택가시장·상가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물품의 매매·교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시장                       | 10인이상 |
|     | 2. 백화점     | 각종 상품을 부문별로 구성하여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일괄구매할 수 있도록 직영 위주(직영매장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로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 1 인이상 |
|     | 3. 쇼핑센터    | 백화점·수퍼마켓등 핵심점이 있고 각종 전문점을 비롯하여 레저시설·공공시설등 편의시설과 주차장을 완비하고 직영 또는 임대로 운영되는 소매업의 집단 | 1 인이상 |
|     | 4. 대형점     | 대중종합점(G. M. S.)·열매점(D. S.)·수퍼마켓·전문점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하나의 점포가 별표 2 의 건물면적 이상인 대형 소매점   | 1 인이상 |

[별표 2]

상설시장의 건물·매장면적 및 시설기준(제 5 조제 1 항관련)

| 업태별 종류     | 건물면적(연면적)                               | 매 장 면 적      | 시 설                                     |
|------------|-----------------------------------------|--------------|-----------------------------------------|
| 1. 도배시장    | 5 천제곱미터 이상                              | 건물면적의 60% 이상 | 가. 유동물시설(전기, 급·배수시설 등)                  |
| 2. 일반소매 시장 | 1 천500제곱미터 이상(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700제곱미터 이상)  | 건물면적의 60% 이상 | 나. 소비자보호시설(상담실, 소비자, 휴게소, 자유계량대, 공동전화등) |
| 3. 백화점     | 5 천제곱미터 이상(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3 천500제곱미터 이상)  | 건물면적의 60% 이상 | 다. 점포기본시설(샷다, 점포의 내장, 간판, 표지물, 홍보판등)    |
| 4. 쇼핑센터    | 1 만제곱미터 이상(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5 천제곱미터 이상)     | 건물면적의 60% 이상 | 라. 위생시설(수세식화장실, 오물 수거장, 공동작업장등)         |
| 5. 대형점     | 1 천 500제곱미터 이상(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700제곱미터 이상) | 건물면적의 60% 이상 |                                         |

#### ◇市場法施行令 改正理由

市場法이 全文改正·公布(1981. 12. 31. 法律 第3,537号)됨에 따라 市場을 業態別로 区分하여 육성·管理하고 市場施設의 近代化를 圖謀하며, 販賣士制度의 導入에 따른 필요한 事項을 定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常設市場을 都賣市場·一般小賣市場·百貨店·쇼핑

센터 및 大型店으로 区分하여 그 特性에 맞게 육성·管理하도록 함. (令 第3條)

나. 常設市場開設法人은 一定比率이상의 市場의 建物 및 直營店鋪와 一定金額이상의 資本金을 保有하도록 하여 市場法人의 健全化를 誘導하고 市場의 近代化를 促進하도록 함. (令 第4條)

다. 常設市場의 建物 및 賣場面積을 業態別로 구분·設定

하고, 施設基準을 規定하여 市場의 機能을 높이고록 함.  
(令 第5條)  
라. 定期市場의 施設基準을 規定하고, 市場管理人 및 季節的 定期市場開設者의 指定要件을 정하여 定期市場의 運營·管理를 改善하도록 함. (令 第8條, 令 第9條

및 令 第10條)  
마. 販賣士의 資格 및 登錄에 관한 基準과 流通研修機關의 指定基準을 規定하여 流通從事員의 資質을 향상하도록 함. (令 第13條 및 令 第14條)

〈법제처 제공〉

## 건축조례준칙개정령

(건설부훈령 제581호 · 1982. 8. 11)

건축조례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건축조례준칙

####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조례(준칙)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준칙)는 □□도(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군)·□□시(군)에 있어서는 당해 시(군)의 조례에 의한다.

\*도시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하는 □□군의 구역에 대하여는 □□시의 조례를 준용한다.

#### 제2장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

제3조 (용도제한) 풍치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작성기준

○제한건축물의 범위

- (1) 영 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중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2) 격리병원
- (3) 직업훈련소·시설강습소

(4) 일반업무시설

(5) 일반숙박시설

(6) 판매시설

(7) 위락시설

(8) 광 장

(9) 창고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운수시설

(12) 자동차관련시설

(13) 동물관련시설

(14) 쓰레기오물처리장

(15) 교정시설

(16) 묘지관련시설

(17) 아파트

제4조 (건폐율)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로 한다.

\*작성기준

○건폐율: 2/10~4/10

○단서규정에 의한 건폐율: 3/10~4/10

제5조 (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층을 초과할 수 없다.

\*작성기준

건축물의 높이: 3층~6층

제6조 (대지안의 조경)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성기준

조경면적: 대지면적의 40~60퍼센트

제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곱미터로 한다

\*작성기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300~600제곱미터

○단서규정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100~200제곱미터

제8조 (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이상을 떨어져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미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미터

**\*작성기준**

- (1) 건축선으로부터의 거리 : 2~4미터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 1~2미터

**제3장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제9조** (지구의 세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2. 제2종 미관지구 : 상업지역등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
3. 제3종 미관지구 :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
4. 제4종 미관지구 :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5. 제5종 미관지구 :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도 가함.**

**제10조** (건축심의) ① 시장(군수)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용도제한) ① 제1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2.
3.
4.
5.
6.
7.
8.
9.
10.

**\*작성기준**

○제한건축물의 범위

- (1) 도매시장·시장
-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전재상·공구상·철물점
- (3) 공장
- (4) 창고시설
- (5) 교정시설

(6) 격리병원

(7) 정육점·세탁소·장외사

(8) 묘지관련시설

(9) 자동차관련시설

(10) 단독주택(공과율 제외한다)·공동주택·기숙사

② 제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③ 제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⑤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12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제곱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제곱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제곱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제곱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제곱미터

**\*작성기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1) 제1종 미관지구 : 300~600제곱미터
- (2) 제2종 미관지구 : 200~400제곱미터
- (3) 제3종 미관지구 : 200~400제곱미터
- (4) 제4종 미관지구 : 150~300제곱미터
- (5) 제5종 미관지구 : 200~400제곱미터

**제13조** (대지의 최소폭)

**\*필요시의 규정**

**제14조** (대지의 공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종 미관지구 : 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미터

**\*작성기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의 거리 : 2~4미터

**제15조** (건축물의 높이)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성기준**

건축물의 높이 : 2층~4층

**제16조** (건축물의 규모) ①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다음 표에 정



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미터)

| 구     | 분    | 건축물의<br>앞면길이         | 건축물의<br>옆면길이         |
|-------|------|----------------------|----------------------|
| 제 1 종 | 미관지구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제 2 종 | 미관지구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제 3 종 | 미관지구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제 4 종 | 미관지구 | —                    | —                    |
| 제 5 종 | 미관지구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작성기준

(단위: 미터)

| 구     | 분    | 건축물의<br>앞면길이 | 건축물의<br>옆면길이 |
|-------|------|--------------|--------------|
| 제 1 종 | 미관지구 | 10~20        | 8~16         |
| 제 2 종 | 미관지구 | 8~16         | 6~12         |
| 제 3 종 | 미관지구 | 8~16         | 6~12         |
| 제 4 종 | 미관지구 | —            | —            |
| 제 5 종 | 미관지구 | 8~16         | 6~12         |

② 제 1 종 내지 제 3 종 및 제 5 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층의 수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제곱미터)

| 층         | 의 | 수 | 건 | 축 | 면 | 적                    |
|-----------|---|---|---|---|---|----------------------|
| 3 층이하     |   |   |   |   |   | <input type="text"/> |
| 4 층~10 층  |   |   |   |   |   | <input type="text"/> |
| 11 층~15 층 |   |   |   |   |   | <input type="text"/> |
| 16 층이상    |   |   |   |   |   | <input type="text"/> |

\*작성기준

(단위: 제곱미터)

| 층       | 의 | 수 | 건 | 축 | 면 | 적       |
|---------|---|---|---|---|---|---------|
| 3 층이하   |   |   |   |   |   | 50~100  |
| 4 ~10 층 |   |   |   |   |   | 100~200 |
| 11~15 층 |   |   |   |   |   | 200~400 |
| 16 층이상  |   |   |   |   |   | 400~800 |

제17조 (부속건축물의 규모) 시장(군수)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조례에 직접 규정도 가함.

제18조 (건축물의 모양) 시장(군수)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 및 색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조례에 직접 규정도 가함.

제19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골목·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제 4 장 교육연구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0조 (용도제한) 교육연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작성기준

○제한건축물의 범위

- (1) 영 부표 제 4 항(근린생활시설) 중 제 6 호 내지 제 9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2) 격리병원
- (3) 숙박시설
- (4) 판매시설
- (5) 위락시설
- (6) 관람집회시설
- (7) 공 장
- (8) 창고시설
-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10) 운수시설
- (11) 자동차관련시설
- (12) 동물관련시설
- (13) 쓰레기소각처리장
- (14) 교정시설
- (15) 묘지관련시설

#### 제 5 장 업무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1조 (용도제한) 업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2.
3.
4.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작성기준**

○제한건축물의 범위

-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공동주택·기숙사
- (2) 종교시설
- (3) 격리병원
- (4)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 (5) 시 장
- (6) 위락시설
- (7) 관람장
- (8) 공 장
- (9) 창고시설
-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11) 자동차관련시설
- (12) 동물관련시설
- (13) 쓰레기오물처리장
- (14) 교정시설
- (15) 표지판면시설

**제 6 장 임항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2조 (용도제한) 임항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작성기준**

○허용건축물의 범위

○영 제 74조제 1 항에 계기한 것

**제 7 장 공지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3조 (용적율)

**\*필요시에 규정**

제2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공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 종 공지지구 : ☐ 제곱미터
2. 제 2 종 공지지구 : ☐ 제곱미터
3. 제 3 종 공지지구 : ☐ 제곱미터

**\*작성기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1) 제 1 종 공지지구 : 300~600제곱미터
- (2) 제 2 종 공지지구 : 200~400제곱미터
- (3) 제 3 종 공지지구 : 150~300제곱미터

제25조 (대지안의 공지) 제 1 종 공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 미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 미터

**\*작성기준**

- (1)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의 거리 : 4~6미터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 2~4미터

**제 8 장 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6조 (용도제한) 공항지구안에서는 영 제7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
2. ☐
3. ☐
4. ☐

**\*작성기준**

○제한건축물의 범위

- (1) 발전소
- (2) 제련소
- (3) 요업공장
- (4) 화학공장

제27조 (건축물의 높이) 시장(군수)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조례에 직접 규정도 가함**

**제 9 장 자연환경보전지구안의 건축제한**

제28조 (용도제한) 자연환경보전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
2. ☐
3. ☐
4. ☐
5. ☐
6. ☐

7. ☐

**\*작성기준**

○ 허용건축물의 범위

- (1) 자연환경보전지구안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
- (2) 농수산물시험장 및 검사소
- (3)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건축물
- (5) 수족관·동물원·식물원
- (6) 근린공공시설
- (7) 일용품 소매점·이용원·미용원·약국·의원·대중음식점·일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근린생활시설

**제10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제한**

**제29조 (건축제한)**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
2. ☐
3. ☐
4. ☐

**\*작성기준**

○ 허용건축물의 범위

- (1) 자동차관련시설
- (2) 동물관련시설
- (3) 운동시설
- (4) 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준치기간 6 개월이내의 가설건축물

**제11장 대지안의 조경**

**제30조 (대지안의 조경)** 법 제 9 조의 2 제 2 항 및 영 제 1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식수등 조경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수고 2 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 구                              | 분                          | 식재밀도<br>(제곱미터당) | 상록비율<br>(퍼센트)                |
|--------------------------------|----------------------------|-----------------|------------------------------|
| 교 목                            |                            |                 |                              |
|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 <input type="checkbox"/> 본 | 이상 상록수          | <input type="checkbox"/> 낙엽수 |
| 관 목                            |                            |                 |                              |
|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 <input type="checkbox"/> 본 | 이상              | —                            |
| <b>*작성기준</b>                   |                            |                 |                              |
| 기                              | 분                          | 식재밀도(제곱미터당)     | 상록비율(퍼센트)                    |
| 교                              | 목                          | 0.2~0.4본 이상     | 상록수 40~60<br>낙엽수 40~60       |
| 관                              | 목                          | 0.4~0.6본 이상     | —                            |

**제31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영 제15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취득자 2 인 이상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12장 용 적 율**

**제32조 (용적율)** 법 제40조제 1 항 단서 및 영 제86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전용지역: ☐ 퍼센트
2. 주 거 지 역: ☐ 퍼센트
3. 준주거지역: ☐ 퍼센트
4. 상 업 지 역: ☐ 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 퍼센트
6. 자연녹지지역: ☐ 퍼센트
7. 생산녹지지역: ☐ 퍼센트

\*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의 조례에 한하여 적용함.

**\*작성기준**

○ 영 제86조제 1 항 각호의 용적율의 1/2 이상 1.5 배미만의 범위

○ 각 지역안에서 다시 행정구역(구·동등)별로 세분하여 규정도 가함.

**제33조 (용적율의 완화)** ① 법 제40조제 3 항 및 영 제86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영 제86조제 1 항(제32조)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 배로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작성기준**

적용용적율의 배수: 2 배이하

**제13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

**제34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53조의 7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 3 장 내지 제 5 장의 규정완화대상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장(군수)이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건폐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 로 한다. 다만, 주거전용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영 제102조 제 4 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10을 가산한 비율이하로 한다.

**\*작성기준**

건폐율: 9/10이하

**제36조 (용적율)** ①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의 최소한도의 1/2이하의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배로 한다.

\*작성기준

적용용적율의 배수 : 2 이하

②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2를 초과하는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제1항에서 적용하는 용적율 이하로서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 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text{배수} = \frac{\text{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면적}}{\text{당해대지면적}}$$

제37조 (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이상으로 한다.

\*작성기준

□□ : 1/4 이상

제38조 (대지안의 공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피어야 할 거리는 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92조 또는 이 조례(준칙) 제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어야 할 거리의 1/2이상으로 한다.

제39조 (기능상 부득이한 증축등) 건축물의 기능상(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부득이한 구조부·실·설비등은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과 종전규모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 제14장 건축위원회

제40조 (기능)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9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 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41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작성기준

(1) 위원의 수 : 7~15인

(2) 위원의 임기 : 2~3년

제4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4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

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45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군수)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6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8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49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전문위원·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장 보칙

제50조 (적용의 특례) 이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로서 기준면적의 □□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10년 안에 한하여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

\*작성기준

□□ : 10분의 5 이상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준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시(군)조례 제○○○호 □□조례, 시(군)조례 제○○○호 □□조례, 시(군)조례 제○○○호 □□조례 및 시(군)조례 제○○○호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건축허가와관련된복합민원처리에관한규정

국무총리훈령제179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와 관련된 타법령상의 각종 인·허가 및 협의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지등에 관한 심의) 건축허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검토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따라 건축허가 부서에서 처리하며, 그 해당사항의 주관부서와 개별협의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세부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1.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2. 배수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상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유기장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시장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
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설치가능 여부
10.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설치가능 여부
11.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설치가능 여부
12. 지하철 및 철도시설에의 저촉 여부
13. 항공장애사항에의 저촉 여부
14. 항만구역내에서의 규제에 대한 저촉 여부

제3조 (타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동시처리절차) 건축허가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건축법 제5조제6항에 규정된 타법령상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시에 동시에 제출받아 건축허가시 일괄검토 처리한다.

제4조 (타법령에 의한 준공검사) 건축물의 준공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준공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물의 준공검사시 일괄검토 처리한다.

1. 건축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타법령상의 준공검사
2.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확인
3.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사용확인
4.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내에서의 조건부 협의시 그 조건이행의 확인

제5조 (심의기준등) ① 제2조에 의한 심의기준 및 제4조에 의한 검사기준은 그 해당사항의 주관부서에서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거 작성하여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의기준 및 검사기준은 법령 및 법령에 관련된 규정과 방침에 근거를 두고 작성하여야 한다.
2. 처리담당자의 재량판단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이며 명백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심의기준 및 검사기준중 국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항은 일정기간 고시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심의기준 또는 검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부서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점용 관련 심의기준  
가. 도로점용허가대상건축물의 범위  
나. 점용장소(도로)·기간·면적등의 기준  
다. 기타 도로점용허가시 검토사항
2. 배수설비관련 심의기준  
가. 위치·대지·인구·시설의 유형 및 용도등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나. 시설주의 부담으로 가능한 공공배수시설의 범위  
다. 기타 하수도시설망등도 참고사항
3.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관련 심의기준  
가.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그 설치기준  
나. 설계의 적정성 판단기준(구조·재료·사용·인원·용량·정화기능등)
4. 상수도관련 심의기준  
가. 상수보호구역등 행위제한 사항  
나. 급수가능 및 제한구역내 건축가능 범위  
다. 기타 상수도시설망등도 참고사항
5. 유기장시설의 설치관련 심의기준  
허가 불가능한 지역·지구 및 시설기준
6.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의 설치관련 심의기준  
허가 불가능한 지역·지구 및 시설기준(업종별)
7. 시장시설의 설치관련 심의기준  
시장의 입지허용지역 및 시설기준
8. 공장입지관련 심의기준  
공업배치기본계획에 의한 공장입지 및 시설기준
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심의기준  
가. 건축물의 용도 및 업종별 설치가능기준  
나. 조건부 협의시 조건의 종류 및 범위  
다. 별도 협의시 필요한 사항
10.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심의기준  
가. 건축물의 용도 및 업종별 설치가능기준  
나. 건축물의 규모등 행위제한 내용  
다. 조건부 협의시 조건의 종류 및 범위
11.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심의기준  
가.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등에 대한 협의기준  
나. 조건부 협의시 조건의 종류 및 범위
12. 지하철 및 철도시설관련 심의기준  
가. 지하철도로선 및 철도시설 주변의 위치  
나. 설치불가능한 시설의 종류 및 행위제한 내용  
다. 조건부 협의시 조건의 종류 및 범위
13. 항공장애사항관련 심의기준  
가. 건축물의 높이·위치·종류등 협의기준  
나. 항공장애등의 설치기준

14. 항만구역내에서의 규제 관련 심의기준

항만구역내에서의 협의기준

③ 검사기준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검사기준

가. 설계도에 따른 구조 및 부속기기등의 시공확인 사항

나. 정화조의 기능 검사방법

다. 기타 유지관리기준등과 관련된 확인 사항

2.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검사기준

가. 사용자재의 품질규격 기준

나. 인입설비·단자함 및 보완선비등의 설치요건

3. 배수설비의 검사기준

가. 공공하수도와의 접속방법 및 위치등 시공기준

나. 사용재질의 내수성·누수방지등의 검사기준

다. 배수관의 직경 및 구배등의 설치기준

제 6 조 (세부시행지침) 이 훈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시행지침은 관련규정의 주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온수보일러설치시공기준제정

제정 82. 8. 27 동력자원부고시 제82-37호

###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열면적 14㎡ 이하의 유류 연소용 온수보일러 (이하 “보일러”라 한다)의 설치사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 2. 용어의 뜻

(1) 지정시공자

지정시공자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7조에 의한 특정 열사용기자의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상향순환식 : 송수주관을 상향구배로 하고 반방개소의 방열면을 보일러 설치 기준면보다 높게 하여 온수의 순환이 상향으로 송수되어 환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3) 하향순환식

송수주관을 연직으로 배관하여 팽창관 및 방출관을 설치하고 온수를 하향으로 흐르게 하는 배관형식을 말한다.

(4) 송수주관

보일러에서 발생된 온수를 난방개소에 매설된 방열관 및 온수탱크에 온수를 공급하는 관을 말한다.

(5) 환수주관

난방을 목적으로 방열관을 통과하여 냉각된 온수를 재가열하기 위하여 보일러에 환수시켜 주는 관을 말한다.

(6) 급수탱크

팽창탱크에 물이 부족할 때 급수할 수 있는 장치로서 수도관 또는 급수관이 직접 보일러 또는 배관 등에 직접 되지 않도록 설치된 탱크

(7) 팽창탱크

장치내 온수의 온도변화에 따라 체적팽창 또는 이상팽창압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일러의 부족수를 보충할 수 있는 장치 [그림 3, 그림 4]

(8) 공기방출기

순환수중에 함유된 기포를 외기로 방출하기 위한 장치로서 개방식과 밀폐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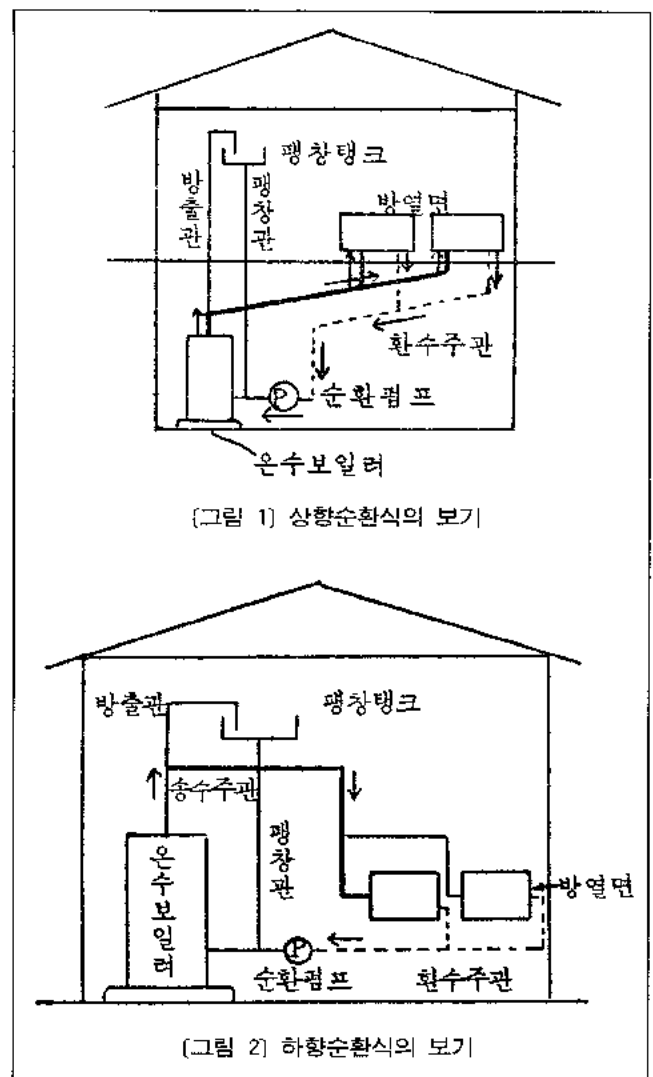
### 3. 설치시공 일반사항

가. 지정시공자(이하 시공자)는 설치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시공의뢰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시공도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의 시공도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

다.

- (1) 모든 배관의 크기·치수 및 경로
- (2) 매설된 배관의 경우에는 정확한 매설 위치와 연결부
- (3) 배관의 단열방식 및 단열재 두께
- (4) 밸브의 설치위치 및 종류
- (5) 팽창탱크 및 안전장치의 설치위치 및 규격
- (6) 전기사용기기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 배전도 및 규격



(7) 보일러 등의 기기의 제조업체명·규격 및 능력

(8) 시공자의 서명 및 계약일자·시공일자

나. 설치시공도의 척도는 1/50 또는 1/25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상에 기재하는 배관의 도시기호는 KSB 0051에 의한다.

라. 시공자는 시공시 설치시공 대상물의 장기보존과 안전을 필요로 하는 부재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호장치 또는 부식방지를 위한 피막·도장 등을 하여야 한다.

#### 4. 보일러의 설치

가. 보일러의 설치조건

(1) 보일러는 원칙적으로 보일러만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일러실이 없을 때는 풍우를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보일러의 설치위치는 통풍이 양호하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굴뚝과 되도록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3) 보일러실은 반드시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가 있어야 하며 강제배기 기구를 병설하면 더욱 좋다. 다만 외기와 접한 창문이 있는 경우는 이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4) 공기배출구는 유입구보다 높이 두는 것이 좋다.

(5) 보일러가 설치되는 바닥면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철저한 방수를 하여 습기에 의한 부식등의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보일러는 보일러실 바닥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7) 보일러의 한쪽 면이 벽면과 접할 때는 수리 또는 소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벽면과 적당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8) 보일러실은 천근·콘크리트·콘크리트블록 등의 내화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다만, 보일러실의 구조가 내화구조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내화단열 시공을 하여야 한다.

(9) 보일러본체와 천정과 보수·연도설치 등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일러 앞면에는 조작·보수등을 위한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10) 보일러실은 보수, 점검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배 관

가. 송수주관 및 환수주관

송수주관 및 환수주관의 관경은 32 A 이상으로 한다.

나. 배관의 보온재 시공

(1) 배관의 보온은 KSF 2803(보온 보냉공사 시공표준)에 따른다.

(2) 보온재의 시공은 수압시험을 행하여 누설부위가 없을 때 행한다.

(3) 밸브조작과 배관을 구별하기 위하여 보온시공 위에 배관의 종류 및 진행방향을 표시한다.

다. 배관재료

(1) 설치시공에 사용하는 관의 재료는 KSD 3507(배관용 탄소강관) KSD 3517(기계구조용 탄소강관)의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이음쇠는 KSB 1531(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KSB 1533(나사식 강관제 이음쇠) 또는 내식성의 조립·분해가 가능한 관이음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 밸브류는 KSD 2303(청동 5kg/cm<sup>2</sup> 슬로우스 또는 게이트 밸브)의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 배관재료 및 부품은 한국공업규격품의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작업은 분해조립이 가능하도록 한국공업규격에서 정한 나사이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나사식 이음 가공시는 연결부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 또는 테프론 테이프 등으로 감아 나사연결부에서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전계통이 연결된 후 물을 가압하여 개방상태로 통과시켜 배관내부에 있는 찌꺼기등의 장애물을 청소하여야 한다.

#### 6. 부대장치의 시공

가. 순환펌프

(1) 순환펌프의 규격은 난방순환계통 장치 내에서 충분히 순환시킬 수 있는 용량 및 규격의 것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순환펌프의 설치위치는 보일러본체등의 주위 방열과 배기가스 연도의 방열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비에 젖거나 물에 잠길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순환펌프의 설치위치에는 「바이패스」회로를 설치하여 보수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순환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바이패스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순환펌프의 배관 접속부는 공기의 흡입, 온수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5) 순환펌프의 흡입측에 펌프자체에 공기 배기 장치가 없을 때는 공기배기밸브를 만들어 공기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6) 순환펌프의 전원콘센트의 거리는 최단거리로 하고 전선피복등에 피해가 없도록 보호관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동초기의 허용전류용량 15A 이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순환펌프의 흡입측에는 여과거를 설치하여야 하며 펌프의 양측에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순환펌프는 방출관 및 팽창관의 작용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환수주관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순환펌프는 펌프의 모터부분이 수평되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급수탱크

물의 누수·증발등에 의하여 물이 부족할 때는 자동적으로 급수할 수 있는 급수탱크가 있어야 한다.

(1) 급수관은 수도관을 직접 보일러 또는 배관등에 직접 하여서는 안된다.

(2) 급수탱크의 구조는 KSC 5112(온수보일러용 시스템)에 따른다. 다만 탱크 크기는 변경할 수 있다.

다. 온수탱크

급탕이 필요한 때는 온수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1) 온수탱크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알루미늄 용융도금, 아연도금 등 동등 이상의 내식처리가 된 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온수탱크는 KSF 2803(보온보냉공사시공표준)에 의한 보온을 하여야 한다.

(3) 온수탱크는 100℃의 온수에도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온수탱크에는 「드레인」할 수 있는 판 및 밸브가 있어야 한다.

(5) 밀폐식 온수탱크의 경우 팽창관이나 팽창흡수장치 또는 안전밸브(방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안전장치

가. 접지

보일러는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나. 팽창탱크

(1) 팽창탱크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100℃ 이상의 온도에 견디는재질

(나) 온수의 수위를 쉽게 알 수 있는 재료 또는 구조일 것.

(2) 개방식의 경우 팽창탱크의 높이는 최고 높이를 가진 방열기 또는 방열코일면보다 1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얼지않도록 보온을 하여야 한다.

(3) 팽창탱크에 연결되는 관로에는 밸브·체크밸브 등의 것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4) 밀폐식 팽창탱크를 사용시는 보일러에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 배관계통내의 압력이 제한 압력 이상으로 되던 자동적으로 과잉수를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를 하여야 한다.

(5) 팽창탱크의 용량은 보일러 및 배관내의 보유수량이 200ℓ이하인 경우에는 20ℓ 이상으로 하고 보유수량이 100ℓ 씩 초과할 때마다 10ℓ를 가산한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6) 개방식 및 밀폐식 팽창탱크의 구조는 [그림 3] [그림 4] 또는 동등 이상의 구조로써 시공하여야 한다.

다. 팽창관 및 방출관

보일러내부의 온도에 따른 물의 체적팽창과 증기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팽창관 및 방출관(또는 방출밸브)을 설치한다.

(1) 설치위치

팽창관 및 안전관의 설치위치는 순환펌프의 작동에 의하여 작동이 폐쇄 또는 차단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2) 팽창관 및 방출관의 크기

(가) 팽창관의 크기는 다음에 따른다.

보일러 전열면적 5m<sup>2</sup> 미만 : 25A 이상

보일러 전열면적 5m<sup>2</sup> 이상 : 30A 이상

(3) 팽창관 및 방출관에는 물 또는 발생증기를 차단하는 어떠한 장치도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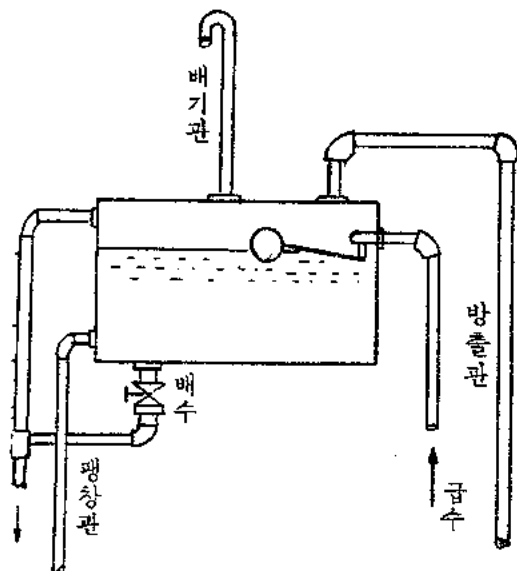
(4) 팽창관 및 방출관의 출구는 급수탱크 또는 팽창탱크 물 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5) 팽창관은 굵힘이 적고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온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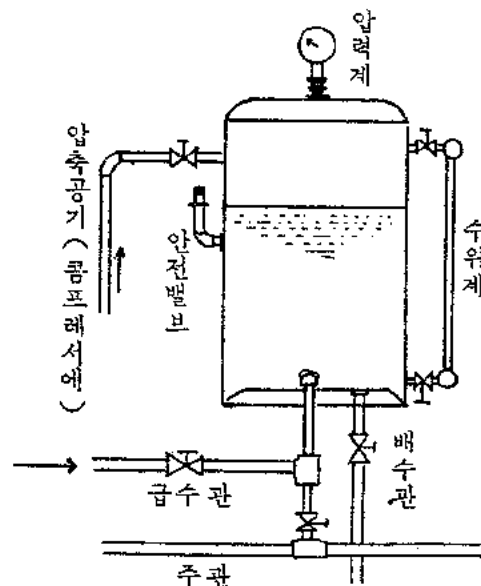
(6) 팽창관을 팽창탱크에 접속할 때에는 수평부분에 상향기울기를 주어야 한다.

라. 공기방출기

(1) 배관중에 이루어진 공기를 자연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관로에 공기방출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의 형식은 개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3] 개방식 탱크



[그림 4] 밀폐식 탱크



(2) 공기방출기의 높이는 개방식의 경우 팽창탱크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연 도

(1) 연도의 굴림부의 수는 3개소 이내이어야하고 수평부의 경사는 1/10기울기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단, 보일러 자체가 강압통풍식으로 화실내가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연소시킬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도의 재료는 보일러의 배기가스 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연도는 주위의 가연물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8. 연료배관

(1) 연료탱크의 위치에 따라서 단관식 또는 복관식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 (가) 단관식

연료탱크의 위치가 버어너의 펌프위치보다 높을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기배출 장치가 필요하다. ([그림 5]는

단관식 배관의 예를 나타낸다)

##### (나) 복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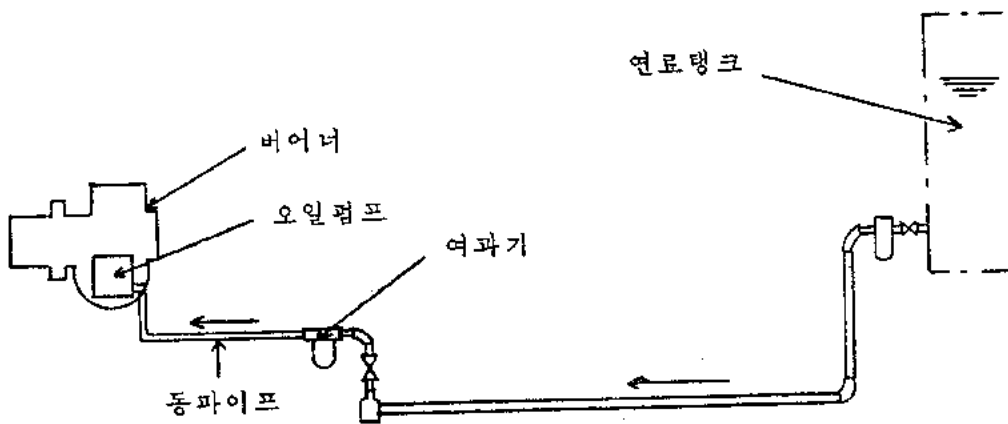
복관식 연료배관법은 연료탱크와 오일펌프와의 사이에 2개의 배관으로 하는 방법으로 연료탱크가 오일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사용하는 배관방식으로 공기배출 장치가 필요하다. ([그림 6]은 복관식 배관의 예를 나타낸다)

(2) 보일러와 연료탱크 사이의 배관에는 기름과 물을 분리할 수 있는 유수분리기가 있어야 하며 유수분리기에는 드레인 밸브가 부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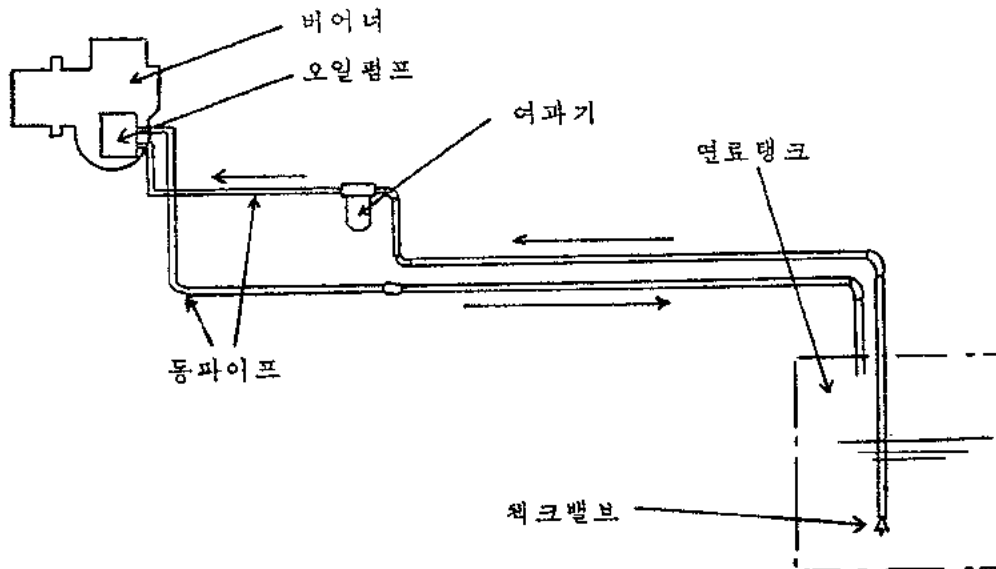
(3) 연료탱크와 버어너 사이의 배관에는 오일스트레너를 부착하여야 한다.

(4) 배관은 노출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통행 기타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하고 짧고 굵힘이 적어야 한다.

(5) 연료배관은 금속배관으로 하여야 하며 배관접속부는 시일테이프 또는 시일제를 사용하여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5) 단관식



(그림 6) 복관식

## 9. 설치시공검사 및 조치

### 가. 검 사

시공자는 시공의 양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의뢰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은 검사를 행하며 의뢰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1) 수압시험

배관 및 보일러의 설치작업이 완료되면 공기 방출기를 개방상태로 하여 배관속에 물을 급수시킨 후 팽창탱크의 판로를 일시적으로 밀폐시켜 실제사용 최고 압력의 2배 (그 값이  $2\text{kg}/\text{cm}^2$  이하일 때는  $2\text{kg}/\text{cm}^2$ )의 수압을 가하였을 때 변형이나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 (2) 보일러의 연소 및 배기성능검사

보일러를 점화하여 정상 연소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연도접속부의 가스누설 및 배연의 발생유무를 검사한다.

#### (3) 연료계통의 누설상태 검사

보일러 가동시 연료배관계통에 누설이 발생하는가를 검사한다.

#### (4) 순환펌프에 의한 온수순환 시험

보일러를 정상작동시킨 후 순환펌프를 가동시켜 온수의 순환상태를 검사한다.

이 때 방열관의 표면온도는 표면온도계 등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순환이 적당치 못하면 구배조절이나 순환펌프

의 용량을 다시 결정하여 순환이 양호한 상태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가열면의 「시멘트 몰탈」시공을 하여야 한다.

#### (5) 자동제어에 의한 작동검사

온수순환시험·시멘트 몰탈시공·양생완료후 실내온도 조절기의 지시에 따른 순환펌프의 작동 및 정지 버어너의 작동 및 정지상태를 검사하며, 실내온도 조절기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는 Hi-Lo 또는 ON-Off시 버어너의 정지 및 작동 순환펌프의 작동과 정지상태가 원활한가를 검사한다.

## 10.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설치시공검사 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9.1) 검사결과 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공자는 사용자 또는 시공의뢰자로부터 설치시공검사확인 서명을 받은 후 1부는 사용자 또는 의뢰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공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설치시공확인서 양식참조)

## 11. 기타(적용범위)

이 기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공공시험기관 연구소, 학회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설 치 사 공 확 인 서

|                                                                                           |                                                                              |              |           |                    |
|-------------------------------------------------------------------------------------------|------------------------------------------------------------------------------|--------------|-----------|--------------------|
| 설 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시 공 자                                                                                     | 업 체 명                                                                        |              | 전 화 번 호   |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지 정 번 호   |                    |
| 시 공 내 용                                                                                   | 시 공 기 간                                                                      | 19 년 ~ 19 까지 |           |                    |
|                                                                                           | 보일러형식                                                                        |              | 형식승인번호    |                    |
|                                                                                           | 제조회사명                                                                        |              | 난 방 면 적   | m <sup>2</sup> (평) |
|                                                                                           | 배 관 형 식                                                                      | 상향식 하향식 기타   | 방 열 관     | 직렬식병렬식기타           |
|                                                                                           | 굴 득                                                                          | 높이 m, 직경 mm  | 팽창탱크용량    | 개방식 밀폐식 ℓ          |
|                                                                                           | 검 사 항 목                                                                      |              | 이 상 유 무   | 비 고                |
| 설치시공검사                                                                                    | 1. 수압시험<br>2. 보일러 연소 및 배기성능<br>3. 연료계통의 누설상태<br>4. 온수 순환시험<br>5. 자동제어에 의한 작동 |              |           |                    |
| 시공보증기간                                                                                    | 19 . . 부터                                                                    |              | 19 . . 까지 |                    |
| 특 기 사 항                                                                                   |                                                                              |              |           |                    |
| 1. 조작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br>2. 보수 및 점검요령<br>3. 고장 및 이상의 발견방법 및 조치 :<br>4. 기타 사용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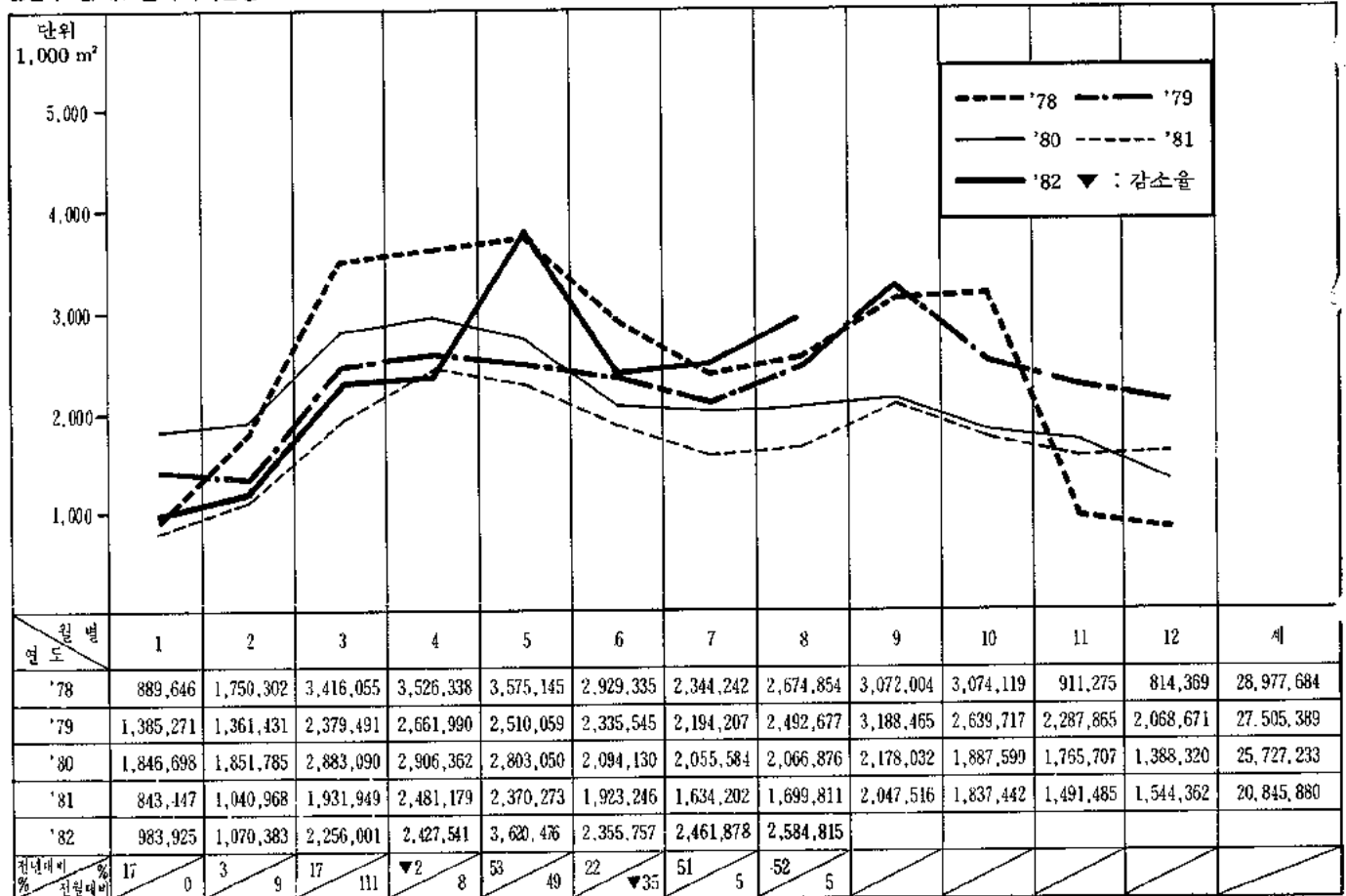
위와 같이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19 년 월 일  
시 공 자 : 인  
설 치 자 : 인

# 건축허가(도서신고) 면적 변동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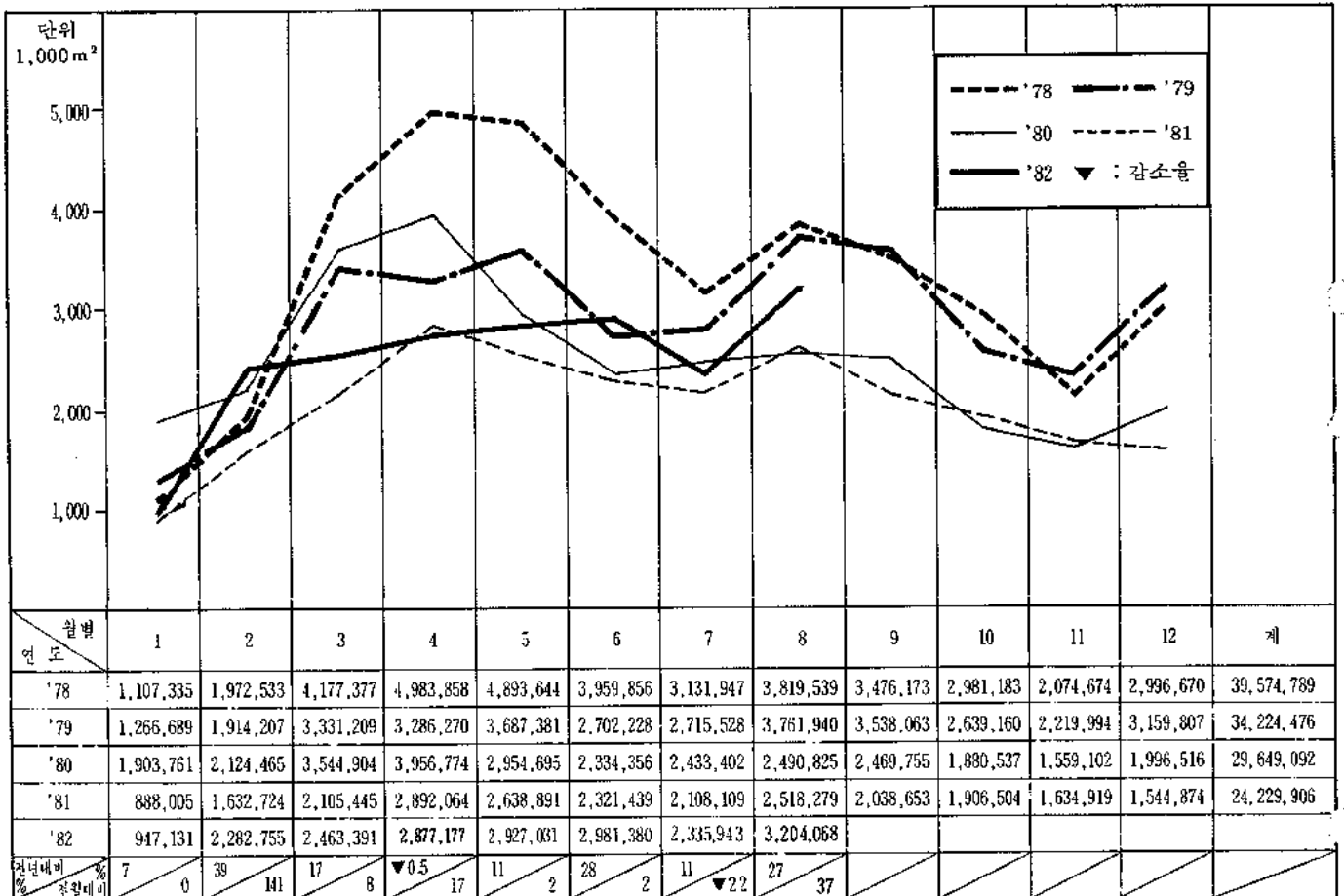
건설부 집계 / 건축허가현황

(82. 8 월말 현재)



건축사협회 집계 / 도서신고현황

(82. 8 월말 현재)



# 新 入 会 員

□趙 鎰 / 서울 / 20. 6. 12일  
생 / 한양대공대건축과 / 경우건축  
설계사무소 / 경기도용인군용인읍  
김량장리296-55 / 2360



□孫鍾潤 / 경기 / 28. 8. 16일  
생 / 한양대공대건축과 / 삼윤종합  
건축설계사무소 / 부산 중구 중앙  
동 4가85-2 / 44-3680



□金行源 / 서울 / 35. 3. 19일  
생 / 한양대공대건축과 / 한보건축  
설계사무소 / 경기안양시안양동414  
- 4 / 3-4949



□趙炳琄 / 서울 / 37. 11. 24일  
생 / 한양대공대건축과 / 정안건축  
/ 서울중구장교동26번지 / 273-  
5161



□宋丁憲 / 중남 / 40. 7. 15일  
생 / 단국대건축공학과 / (주)천일  
건축기술단 / 서울중구을지로 4가  
310-68 / 273-0381



□朴水鉉 / 경북 / 46. 5. 1 일  
생 / 한양대산업대학원 / 원건축설  
계사무소 / 대구 중구동문동 9-  
5 / 45-0019



□金光烈 / 전북 / 46. 5. 20일  
생 / 광주동실업전문건축과 / 코아  
건축설계사무소 / 전주시경원동 3  
가58-1 / 6-6745



□徐仁洙 / 대구 / 47. 1. 11일  
생 / 영남대공대건축과 / 한양건축  
설계사무소 / 대구중구동안동 2가  
185-2 / 45-4979



□朴英健 / 서울 / 47. 8. 24일  
생 / 서울대공대건축과 / 건축설계  
연구소심정 / 서울중로구행촌동27  
- 5 / 722-7833



□朴石圭 / 부산 / 49. 1. 6 일  
생 / 부산공고건축과 / 효성건축설  
계사무소 / 부산 북구 구포동 1121  
-12 / 92-3347



□張源烈 / 경북 / 49. 4. 11일  
생 / 영남대공대건축과 / 한라건축  
설계사무소 / 대구 중구 계산동 139  
/ 22-6656



□韓運吉 / 경북 / 49. 8. 21일  
생 / 영남대공대건축과 / 정우건축  
설계사무소 / 대구 중구 공평동 70  
- 3 / 44-1515



□李景鎮 / 부산 / 50. 2. 8 일  
생 / 부산공전건축과 / 진건축설계  
사무소 / 부산진구 부전동 394 -  
11 / 802-6500



□梁三容 / 전남 / 50. 3. 16일  
생 / 전남공고건축과 / 원건축설계  
사무소 / 광주시동구대인동133-1



□張榮周 / 서울 / 50. 4. 18일  
생 / 경기공전건축과 / 대호건축연  
구소 / 강남구압구정동819-1 /  
568-7068



□張元國 / 부산 / 50. 9. 17일  
생 / 경남공전건축과 / 예림건축설  
계사무소 / 부산 동구 초량동 1212  
-13 / 462-4468



## 會員動靜

### 변경

□ 대구지부 △송창섭회원 / 환경건축사무소 / 대구 중구공평동 59-4 / 46-0122 / 8·25일

□ 부산지부 △최봉용회원 / 거림건축설계사무소 / 부산북구갑전동 107-1 / 93-1476 / 이진△박윤채회원 / 남부건축설계사무소 / 부산중구충무동 1가 2 / 22-8379 / 업종변경△정병화회원 / 내건축설계사무소 / 부산중구충무동 1가 2 / 23-8900 / 업종변경△박재봉회원 / 원심건축설계사무소 / 부산진구부전동 396-3 / 87-0596 / 업종변경△여덕연회원 / 대정건축설계사무소 / 부산동래구북천동 338-2 / 53-7120 / 업종변경△윤석복회원 / 삼성건축설계사무소 / 부산동래구수안동 539 / 552-3375 / 업종변경△최현식회원 / 문화건축연구소 / 부산진구부전동 396-14 / 89-4523 / 업종변경△황기연회원 / 창일건축설계사무소 / 부산진구부전동 396-14 / 89-8227 / 업종변경△심상복회원 / 형태건축연구소 / 부산북구구포동 1123-1 / 92-7308 / 업종변경

□ 경기지부 △강신희회원 / 삼우건축설계사무소 / 경기수원시교동 64-2 / 2-8120 / △이인구회원 / 수원건축설계사무소 / 경기수원시교동 65-2 / 2-3607 △조병순회원 / 대흥건축설계 / 경기수원시교동 65 / 2-2837 △이상정회원 / 삼정건축기술공사 / 경기수원시교동 23-2 / 2-4479 △신현수회원 / 안산건축설계사무소 / 안산시인양동 674-42 / 2-2665

□ 전남지부 △김영식회원 / 국제설계사무소 / 동구금남로 4가 9-1 / 33-1302 △송양석회원 / 한미건축설계사무소 / 33-9516 △김덕수회원 / 삼남건축연구소 / 동구대인동 179 / 7-9888 △이하규회원 / 대성건축연구소 / 동구금남로 4가 9-1 / 34-5755 △이준형회원 / 아세아건축연구소 / 32-0391 △박현석회원 / 대림건축설계사무소 / 2-1778 △전도길회원 / 신일건축설계사무소 / 2-1778 △이경희회원 / 전남건축설계사무소 / 55-7500 △서영준회원 / 내외건축연구소 / 55-7400 △오갑윤회원 / 합동건축설계사무소 / 55-7222 △이현중회원 / 밀진건축설계사무소 / 2-6944 △조희경회원 / 제일건축설계사무소 / 2-6944 △이하중회원 / 대양건축사무소 / 33-3584 △조용조회원 / 한일건축사무소 / 33-0520 △김보현회원 / 에이스건축연구소 / 33-5436 △유연모회원 / 미도건축연구소 / 34-0397 △이계혁·김상준회원 / 동방·라인합동건

축사무소 / 33-3651 △빅웅회원 / 대도건축설계사무소 / 33-3353 △이덕로회원 / 제일건축설계사무소 / 목포시명륜동 2-3 △최수일회원 / 백제종합설계공사 / 34-3342 △박종성회원 / 우주건축연구소 / 34-8838 △민삼철회원 / 남도건축설계사무소 / 32-1307 △임금수회원 / 새한건축연구소 / 34-7883 △문형근회원 / 명건축설계사무소 / 2-0249 △공갑열회원 / 동남건축설계사무소 / 7-1062 △이수회원 / 우일건축연구소 / 7-0482 △신동립회원 / 한진건축설계사무소 / 2-5788 △고재선회원 / 중앙건축설계사무소 / 2-7977 △정경래회원 / 한남건축설계사무소 / 2-7977

### 회갑

□ 부산지부 △윤근수회원 / 중부건축설계사 / 회갑연 / 자택 / 8·7 일 △허선행회원 / 부산건축설계사 / 회갑연 / 8·11일 / 자택

### 결혼

□ 부산지부 △안종희회원 / 영애결혼 / 서라벌호텔 3층 / 8·20일

□ 충남지부 △정진경회원 / 영애결혼 / 대전중앙관광호텔 / 9·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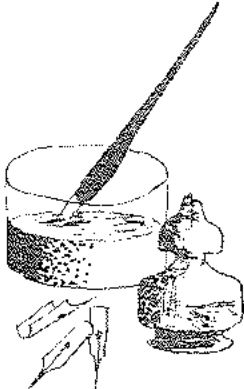
□ 경북지부 △김남수회원 / 차녀결혼 / 9·18일

### 별세

□ 충남지부 △김윤환회원 / 부친상 / 논산군성동면오관리자택 / 9·19일

□ 경북지부 △조성현회원 / 모친별세 / 9·1일

## ◆ 編輯後記 ◆



□ 모든게 풍성한 계절이다. 의·식·주 가운데서도 먹을 것(食)이 고독하면 다른 것은 별 걱정이 안되게 마련인 것이 사람의 천성임이라. 부디 이 포만감이 온통 충충마다 스며들어

단풍처럼 아름다움으로 승화했으면... (用)

□ 열달을 자란 나무가 한뼘도 안된다. 앞은 아예 없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려야 할 열매 대신 코딱지같은 부끄러움만 딱지닥지 붙었다. 기쁨을 주지않은 어리석은 농부는 망배를 메고 장대를 들었다. 그러나 돌아서는 발길에 떨어지는 후회의 편린들.....

일월에 심었던 마음의 나무를 시월에 보다. (京)

□ 행복의 척도가 점차 물질과 결부되어 온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담쟁이 덩굴이 드리워져 있고 계절마다 라일락 향기며 국화의 향기가 풍기는 빨간 지붕의 아담한 집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저 집은 얼마짜리의 집

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가을이 되면 주택 신축이 활발하다고 한다. 편히 쉴 수 있고 정서가 깃들인 집들이 세워졌으면 싶다. 이번 호의 작품은 병원 건축물을 위주로 엮어 보았다. 작품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회원님들과 회지의 원고를 작성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基)

□ 시월은 우리에게 여행과 독서와 또 그밖의 많은 것들을 생각해 한다.

상쾌한 바람과 단풍으로 곱게 물든 산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생활이란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까닭에 들뜬 마음은 가라 앉히고 이 가을을 마음의 양식인 책과 더불어 보내야겠다. (宙)